연구보고 20-R10

2020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저 자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4차년도 과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협약 클러스터별 정책모니터링과 2020년에는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주제의 심층 모니터링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로 지정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최종 16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별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승인통계 10주년을 맞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와 2011년 이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 2종을 담은 심화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지표관련 국제 동향 파악

●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자료원 개선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3)에 기반한 7개 대분류 영역 총 114개 지표항목(행정통계 및 타분야 조사결과 활용 지표 73개,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활용 지표 41개)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상황 분석

- 제5·6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 클러스터별 정책 모니터링
- 2020년 협약 이행 심층 모니터링 :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현황과 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및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인권실태 분석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결과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7개 대분류 영역별로 2~3개씩 총 16개 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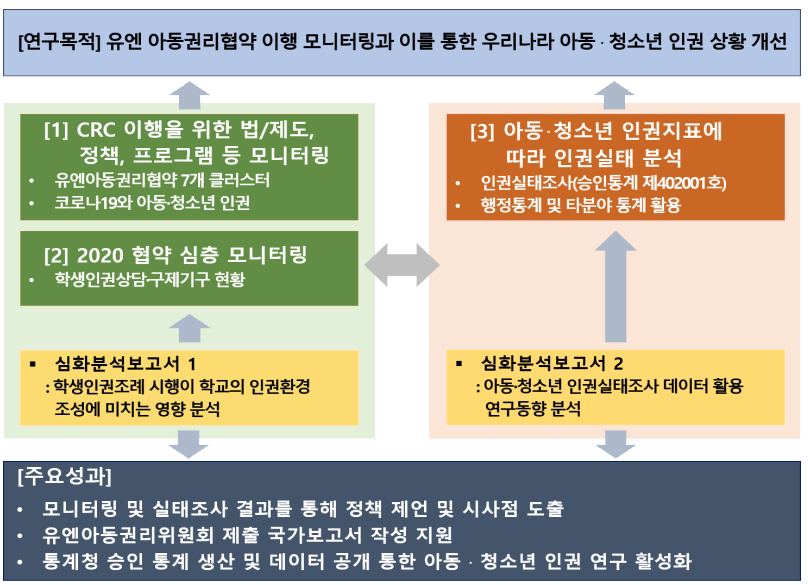
- 심화분석보고서 1. 2020 협약 심층 모니터링 연계 주제 선정 :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심화분석보고서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연구동향 분석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전국의 초4~고3 학생 총 8,623명 대상
- 전문가 의견조사 : 인권지표 자료원 개선 및 지표항목 중요도 조사(18명),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 의견조사(26명)
- 청소년 및 전문가 워크숍 :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과제 도출
- 정부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체계도

4. 연구결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14주를 기한으로 낙태죄 유지를 전제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음.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는 법·제도 체계 구축, 아동 및 원가정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등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며, 출생통보제 도입, 우범소년 제도 개선, 징계권 법제 개선 등 위원회의 권고를 폭넓게 반영함. 그러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부재함.
-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권고가 있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대책 전반에 아동의 특수성을 수용하며, 특히 아동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그러나 청소년 사망 원인은 지난 10년간 '고의적 자해(자살)'가 1위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는 심화되고 있음.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재하며, 아동의 의견청취 기회가 실제로 환류되는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출생등록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 아쉬움이 있으며, 한국의 출생등록 체계는 여전히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을 포괄하지 못함. 더욱이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는데, 유기아동 보호대책으로 '보호(익명) 출산제'가 추진됨.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익명출산제'를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임.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등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장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됨. 아동의 직접적 동의 권한을 전제로,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폭력 및 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이나, 폭력 및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함.
-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됨. '징계권 삭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등 아동성착취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법률에 반영됨.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됨. 다만, 성폭력과 성착취, 성매매를 구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성착취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가정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취약성이 드러난 영역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이 기능을 멈추어 돌봄의 책임이 온전히 가정에 떠넘겨졌으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현실이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서 이주아동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시한 위원회의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아동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양육시설의 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외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법무부 관할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여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수를 더불어 고려할 때, 사실상 아동의 시설보호는 증가한 실태임.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 단위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여전히 민간의 입양기관이 입양절차 전반을 주도하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관리, 공적 결연 절차,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9년 기준 전체 입양의 45%가 국외입양이며, 미혼모 자녀의 국외입양이 100%, 국내입양이 85%인 현실은 원가정 양육 지원 원칙과 국내입양 우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전국 46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구축될 예정이며,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운영 등 아동의 면접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됨. '관급지급 유아용품 목록' 등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 보장적 조치도 조금씩 보완됨. 부모의 체포 및 구속 단계부터 수용단계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을 조력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코로나19로 학교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동안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긴급돌봄은 사실상 공백이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 못한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55%로 나타남.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은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단서 조항 때문에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이 원활하지 않음.
-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는 유아동의 비율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스마트폰이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 중앙정부 간 정책조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청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2020년 7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전국에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되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조례안의 상당수 내용이 수정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가 단위의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확인됨.

-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배포한 직후 회수한 사건은 성소수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시각을 보여주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2015년 이후 적절한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교육부는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수교원 확충과 지원 강화, 학교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인적·재정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함.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령별 놀이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상황 속 각종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되며, 아동의 놀이·여가, 휴식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위축됨.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방지, 학교생활규정과 생활지도 내 차별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및 학생인권 내용을 명시한 법률 제정 등 적절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교육의 목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특별보호조치

- 법무부는 이주아동 구금금지를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유로 14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아동 구금 권고를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2019년 심의 당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없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도 밝히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불구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b)),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는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됨. 2020년 8월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24.1%,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은 각각 122.9%, 125.0%의 수용률을 보여, 특히 수도권 소재 소년보호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독방 구금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 특히 법에 저촉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처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관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이를 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은 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사항이나, 법무부는 모든 소년에 대한 무료 법률 조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심층 모니터링 :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생인권조례 설치 지역인 서울, 경기, 전북, 광주 교육청의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에 대하여 일반 및 조직 현황, 인권상담·구제시스템 운영현황,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함.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행·공포됨.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학생인권 교육·홍보·계획·평가, 학생인권상담·구제 업무를 수행함. 학생인권옹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는 인권조사관이 수행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종합 판단하여 권고하는 방식을 취함. 학생인권옹호관은 독임제의 형태이나

분기별로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는 상담 - 구제 신청 – 조사 – 분쟁조정 – 구제조치의 단계로 이루어짐. 2019년 권리구제 접수 건수는 164건이며, 체벌, 언어폭력, 개인정보 관련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사건의 조치는 기각, 학교조치, 권고로 이루어지며, 2019년 권고 이행률은 98%에 이름.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에 학생인권옹호관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인권 상담·조사·구제, 인권교육, 위원회 운영,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함. 상담·구제 절차는 접수 – 사안조사 –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4명의 옹호관이 권역을 각각 담당하며, 25개 교육지원청 내 학생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상담과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조사 사안은 권역별 학생인권옹호관이 독임제 형식으로 판단·결정하되 중대한 사안이나 결정문 형식의 권고가 필요한 사안 등은 합의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2019년 상담 건수는 66건, 조사접수는 40건, 구제조치는 33건이며, 학교폭력, 사생활/자유 침해 사안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학생인권센터는 정책·교육과 상담·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옹호관이 센터 업무를 총괄함. 인권옹호관은 상담·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의 처리·결정은 인권옹호관과 심의위원의 결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합의제 형태를 취함. 2020년 상담 건수는 77건, 구제·조사 건수는 11건이며, 폭력, 인격권, 성폭력 사안 순으로 많이 발생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광주교육청은 2011년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센터는 학생인권을 포함하여 민주, 평화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관련 교육의 시행·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상담·조사, 학생의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센터는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으로 운영되며, 학생인권옹호관 체제가 아닌 장학관을 팀장으로 조사구제 업무담당자로 구성됨. 학생인권 상담·조사구제 절차는 상담-접수-조사-판단-권고로 이루어지며,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합의제의 결정 형태를 취함. 2019년 상담 건수는 397건, 구제접수는 182건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를 제안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인권인프라, 인권 의식, 인권교육)과 일반원칙(차별경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개의 중분류 11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아동학대 업무의 공적 책임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법 개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놀권리,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확산되고 있음.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은 3.5%로 소폭 증가함.

- 유엔아동권리협약(21.2%), 학생인권조례(7.9%), 국가인권위원회(24.7%)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으나 낮은 수치임. 가정(96.3%), 학교(95.6%), 우리나라 전체(83.7%), 사이버 공간(82.3%) 에서의 인권존중도는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결정능력 존중(69.6%), 사회참여의 필요성(87.3%), 학생자치조직

의 의의(86.9%), 표현의 자유 보장(96.9%) 등에 높은 인식을 보였고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금지(97.8%), 양성평등 의식(97.1%),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4.3%) 보장 등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은 46.5%였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수업시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32.6%), 성차별(23.3%), 학업성적(22.6%), 외모·신체조건(20.8%) 등으로 인한 차별 순이었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나이(9.2%), 외모·신체조건(9.1%), 성별(8.1%), 학업성적(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난 10년간 차별받은 경험은 감소-증가-감소 추세를 보였고 차별한 경험은 꾸준히 감소 경향을 보이다 2019년에 미세하게 증가함. 2020년에는 모든 차별 경험률이 하락하여 코로나19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 의식은 높은 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인권교육 경험률이 낮고 10명 중 2~3명은 외모·신체조건, 성차별, 연령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인식과 인권상황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6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의사결정 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존중도는 진로·직업(94.2%)과 상급학교 결정(94.0%), 공부시간·방법 결정(91.0%), 집안의 중대사(9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89%로 높게 나타남.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1.9%로 계속해서 낮아짐.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0%로, 최근 상승 추세를 유지함.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3.1%)', '시간 부족(27.2%)', '참여활동 정보 부족(25.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상의 자유는 91.5%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함.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는 82.1%로 나타났고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비율은 44.1%로 모두 전년도 대비 개선됨.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8%이고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6.5%로 최근 감소 추세가 유지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27.8%), 복장(30.3%), 소지품(9.7%) 검사 경험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7.3%), 징계사항(15.2%), 시험성적(13.5%) 공개도 감소폭이 컸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6시간,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함.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0.2%로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나타남.
- 신규지표들의 경우, 학생 독서량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도움 정도 응답 비율이 낮아지며, 미디어 역량 관련 항목들의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민적 권리 수준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올해는 특히 사생활 보호 영역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과 교육비 미납, 징계사항, 개인시험성적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차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의 영향이 아닌지 내년 추이와 비교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폭력 및 학대」 영역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등 2개의 중분류 10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본 조사결과 응답청소년의 10명 중 3명 넘게 가정에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사로부터 정서적 피해 경험은 10명 중 1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됨. 사이버 상에서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응답은 전체의 16.1%로 나타났고, 1.8%가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학생 중 4.4%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9%였음.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학생이 전체의 28.7% 였음. 전체 응답학생 중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2.9%로 조사되었고,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0% 였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6,417건이었으며, 그 중 24,604건(73.4%)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음. 학대사례는 여아대상 학대가 51.8%로 남아대상 학대(48.2%)보다 더 높게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은 13세~15세가 24.7%(6,072건/5,090명)로 가장 많았음.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6.9%(18,919명)로 가장 많았음. 아동학대의 유형은 중복학대가 47.9%(11,792건)로 가장 많음.
- 방임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방임 경험률은 야간시간의 방임 경험이 50.5%, 비위생적 의복 및 침구사용 6.2%, 질병 발생 시 무관심 3.4%, 결식 방치 4.6%, 결석 무관심 1.1%로 나타남.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방임 경험의 차이는 학교급(중학생 가장 높음)과 가족유형(한부모가정 가장 높음), 경제

적 수준(경제적 수준 “하”집단 가장 높음)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는 24,604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로 기관 평균 396.8건을 담당함.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는 원가정 보호가 82.0%로 가장 많았음. 사망사례는 0.1%(32명)로 분석됨.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등 3개 중분류에 총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50.6%, 약간 만족은 30.4%로, 81%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낌. 보육시설의 수는 2019년 37,371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1,365,085명으로 모두 감소하였음. 방과후 학교의 2019년도 전체 참여율은 48.4%로, 초등학교 참여율이 58.7%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는 전체 84.0점으로 초등학교 86.4점, 중학교 83.8점, 고등학교 77.1점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는 2018년 기준 4,211개소이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109,610명, 만족도는 4.23점이었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2019년 기준 280개소, 10,985명이 이용중이며, 전체 만족도는 85.9점임.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결합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긴급돌봄체계를 운영하였음.

- 국내외 입양은 전체 704건으로 국내 55.0%, 국외 45.0%임. 보호대상아동은 2019년 4,047명이며 발생 현황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그 중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수는 2019년 말 기준 11,665명으로 전년대비 528명 감소하였음. 위탁아동은 2018년 전체 11,141명으로 전년 대비 842명 감소했으며, 그 중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7,426명으로 가장 많았음. 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58개소이며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남자아동 1,547명, 여자아동 1,325명으로 총 2,872명임.
-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은 2.9%였으며, 부모와의 문제(불화,

폭행 등)로 가출한 경우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청소년 쉼터는 2019년 총 134개소(일시:31/단기:63/중장기:40)가 운영 중임. 가출경험자의 91.5%는 이용한 기관이 없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가출청소년쉼터가 3.3%로 가장 많았음. 가출 이후 이용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2.49점(*SD*=.81)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응답률은 49.1%로 나타나 나머지 50.9%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2019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총 285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점은 88.8점으로 2016년 대비 0.8점, 2013년 대비 1.2점 하락함. A평가를 받은 기관 193개소(67.7%), B평가 기관 61개소(21.4%), C평가 기관 15개소(5.3%), D평가 기관 5개소(1.8%), F평가 기관 11개소(3.9%)로 나타남.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영역은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등 5개 중분류 2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2019년 특수학교의 수는 177개교, 특수학급 수는 11,150개, 학생수는 92,958명으로 조사되었음.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비율의 경우 71.6%인 66,499명은 일반학교에 배치, 그중 50,812명은 특수학급에, 15,687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음. 장애청소년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2019년 7,727명의 졸업자 중 49.3%가 진학하였고 11.0%가 취업하였음. 2018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을 합한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8명이며 사고사망의 원인은 0세는 타인에 의한 살인이 10만 명당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세는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10~14세, 15~19세, 20~24세 연령대서는 모두 자살이 2.1명, 8.5명, 17.8명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율의 결과는 2019년 기준으로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가 24,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의 안전(범죄로부터)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86.4%로 나타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9.7%로 나타남.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 수는 11,657개교이며 보건교사 배치율은 69.1%(8,035명)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대상 의료기관 설치현황의 경우 2020년 현재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진료센터는 2020년 현재 총 10개소가 운영 중임.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달빛 어린이병원은 총 23개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관 중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2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율은 전체 93.1%임.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 241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Wee클래스는 전국 6,930개소, Wee센터는 전국 20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취약계층 보건소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 아동·청소년은 2017년 기준 249,155명임. 미치료율은 2018년도 기준으로 3.1%였으며, 치과 미치료율은 9.4%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함. 중,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5.0%로 나타남. 평생 약물 경험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0.5%가 기분의 변화 및 환각, 살빼기 등의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 각성제, 히로뽕 등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대상 아동·청소년의 88.1%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은 '일주일에 3회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음.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이었으며 수면부족의 이유 1순위 응답은 숙제, 인터넷 강의 등 가정학습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신체적 건강 조사와 관련하여 2019년 전체 기준으로 비만은 15.1%로 나타났으며 정상 체중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7%

내외의 아동·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복한 정도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85.8%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0.6%가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함.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전체 평점은 7.04점으로 나타남. 고민을 나누는 상대는 약 50%는 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이었음.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전체 연령의 빈곤율은 최근 3년간(2016~2018)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동빈곤율은 모든 세부항목에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10~19세의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게 지속되고 있고, 10~19세의 청소년기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한부모가구 수는 2019년 1,529천 가구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세대수와 세대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등 3개 중분류 13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보장 정도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평균 36.5만원으로 조사됨.

- 학교부적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조사결과 5명 중 1명 이상 학업 중단을 생각해보았고, 이유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30%, '공부하기 싫어서' 27.2%, '성적이 좋지 않아서' 14.5%,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2.7% 순으로 조사됨.
-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존중과 배려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았고,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긍정 응답 비율이 71.4%로 나타남. 특성화고 졸업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32.4%, 취업자는 50.4%, 무직 등은 16.6%에 해당됨. 정부는 이에 직업교육을 위해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이름으로 4대 방안을 발표함.

-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주중 74.4%, 주말 67.3%), 휴식활동(주중 62%, 주말 62.4%), TV 및 DVD 시청(주중 59.5%, 주말 51.5%) 등의 순으로 복수 응답함. 청소년들의 평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전체 여가활동 시간 3.0시간 중 63.3%인 1.9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휴일에는 전체 여가활동 시간 5.5시간 중 47.3%에 해당하는 2.6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일에 여가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에 해당됨.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의 경우 2~3시간이 23.8%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2020년에 학습 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가 학원의 학습 시간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 「특별보호조치」영역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등 4개 중분류 2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2019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8%이며, 난민인정자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46.8%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자녀는 전체 외국인 주민수 중에서는 10.4%였으며, 이중 국내출생 자녀는 95.2%,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4.8%로 나타남. 제도권 교육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2.51%이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1.03%이며, 전체 학생들의 학업중단율보다 높음.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도 2017년 대비 증가함.

- 보호처분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2,077명이었으며, 범죄유형은 강간이 가장 많았음.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는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문제 역시 존재함. 소년교도소 처우 불복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 중에서 기각처리가 가장 많았음.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수치는 감소됨.
-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2019년에 10.4%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 역시 전년대비 증가함. 그러나 타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9.3%로 OECD 평균보다 낮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조사대상자 중 5.3%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처우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61.4%로 가장 높았고, 임금미지급/적게 받은 경험도 10.5%, 시간초과나 계약서와는 다른 일을 한 경험도 14.2%,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도 7.4%로 나타남.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36.1%였으며,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1.9%로 나타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처분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형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구속률은 낮았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함.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총 32개소이며, 입소 인원 중 24세 이하는 73.9%로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제재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5.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및 협약 이행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총 16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음.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
과제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과제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 개선
과제2.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조기 예방교육 도입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가정환경상실아동의 탈시설 정책 수립
과제2. 입양 관련 사후관리의 내실화
과제3.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활성화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인 통합교육 전면 실시
과제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직업계고 확대 방안 마련
과제2. 경쟁주의적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지구의 전국적 확대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과제2. 우범소년 규정 삭제
과제3. 이주아동 구금 금지

인권영역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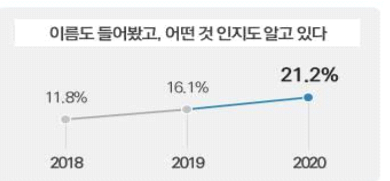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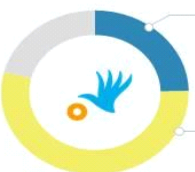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21.2%
이름만 들어봤다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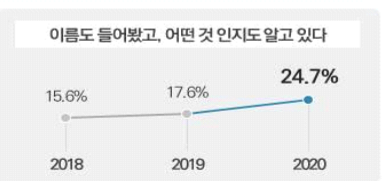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		30.1	48.6	21.2
학교급	초등학교	38.2	42.0	19.8
	중학교	24.3	51.4	24.3
	고등학교	27.7	52.5	19.8

국가인권위원회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
24.7%
이름만 들어봤다
54.3%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		21.0	54.3	24.7
학교급	초등학교	25.3	54.5	20.2
	중학교	18.8	53.3	27.9
	고등학교	18.8	55.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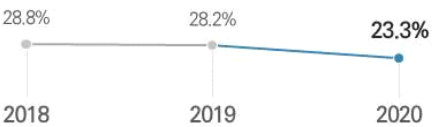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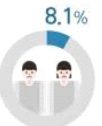


성차별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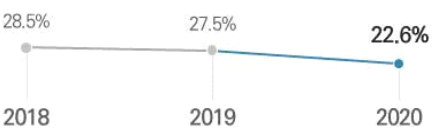


차별한 경험이 있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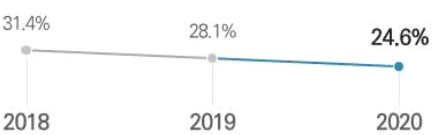


차별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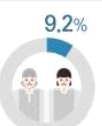


연령 차별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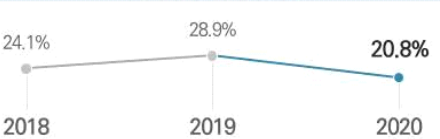


차별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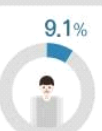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



차별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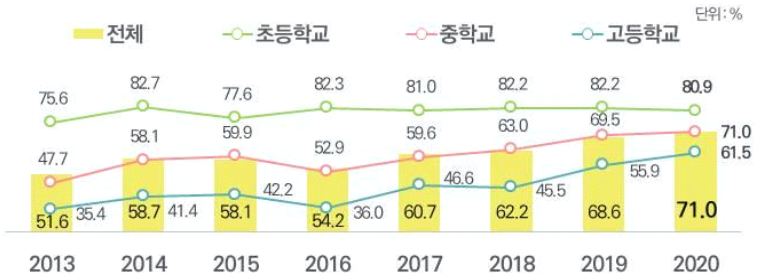
○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한다 | 71.0%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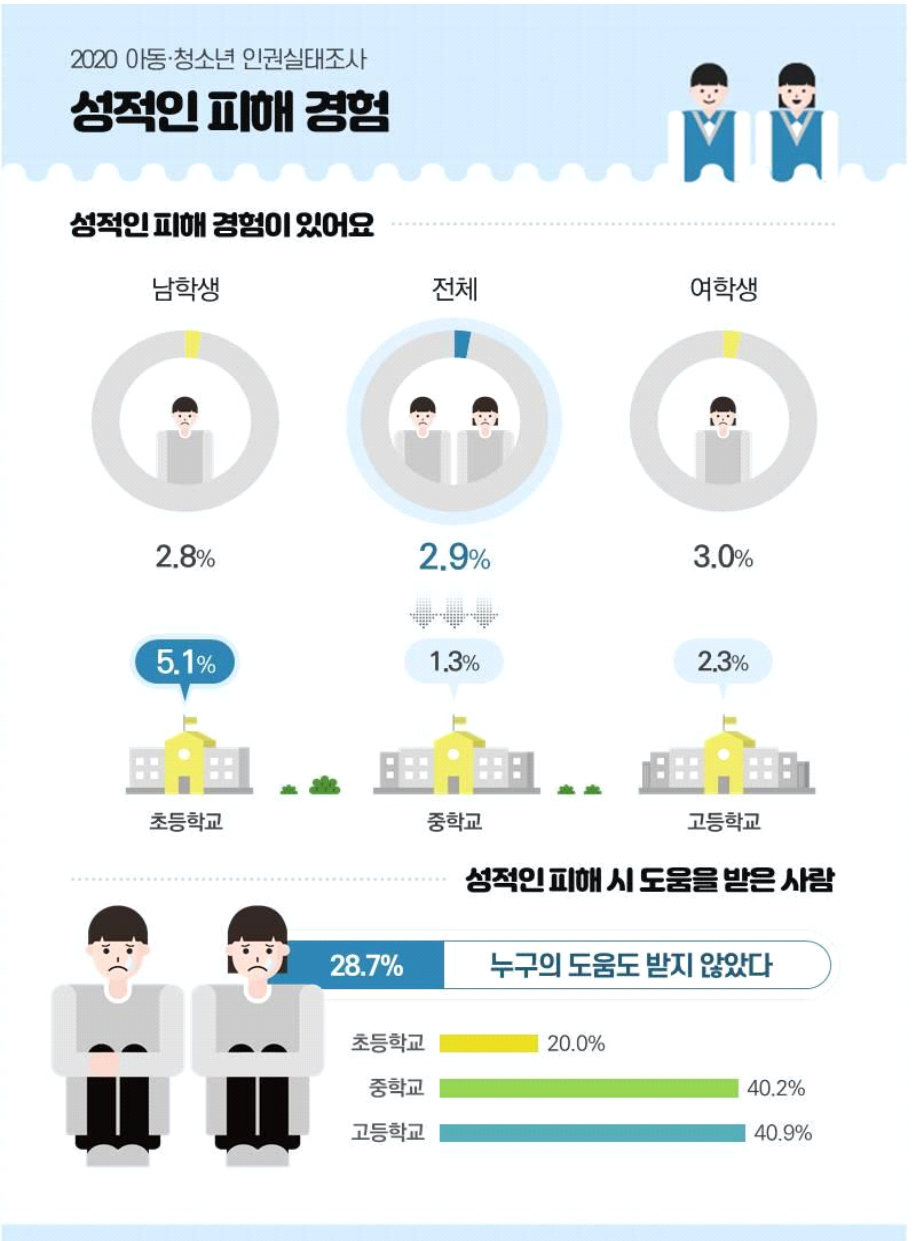
청소년 참여권의 장애요인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 (보호자)이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		27.2	25.1	1.8	1.2	33.1	11.6
학교급	초등학교	28.9	25.3	2.9	0.8	26.5	15.6
	중학교	27.2	22.6	1.3	0.7	38.8	9.5
	고등학교	25.5	27.3	1.3	2.1	34.2	9.6

※ 파란색 1순위, 노란색 2순위

○ 폭력 및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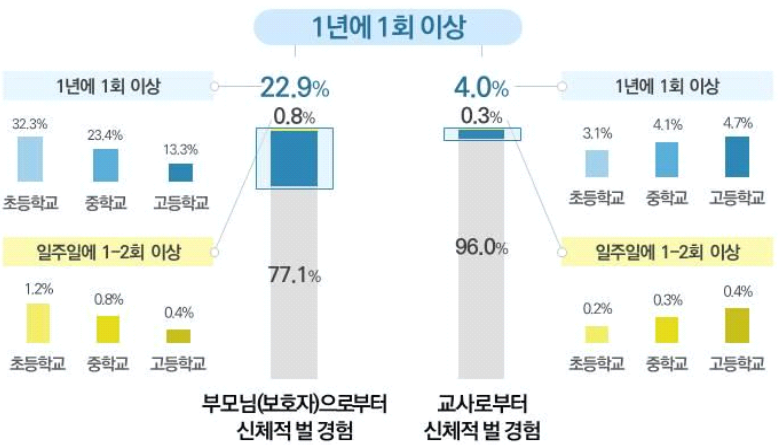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경험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남학생
전체
여학생
2.8%
2.9%
3.0%
5.1%
1.3%
2.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28.7%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초등학교 20.0%
중학교 40.2%
고등학교 40.9%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폭력 및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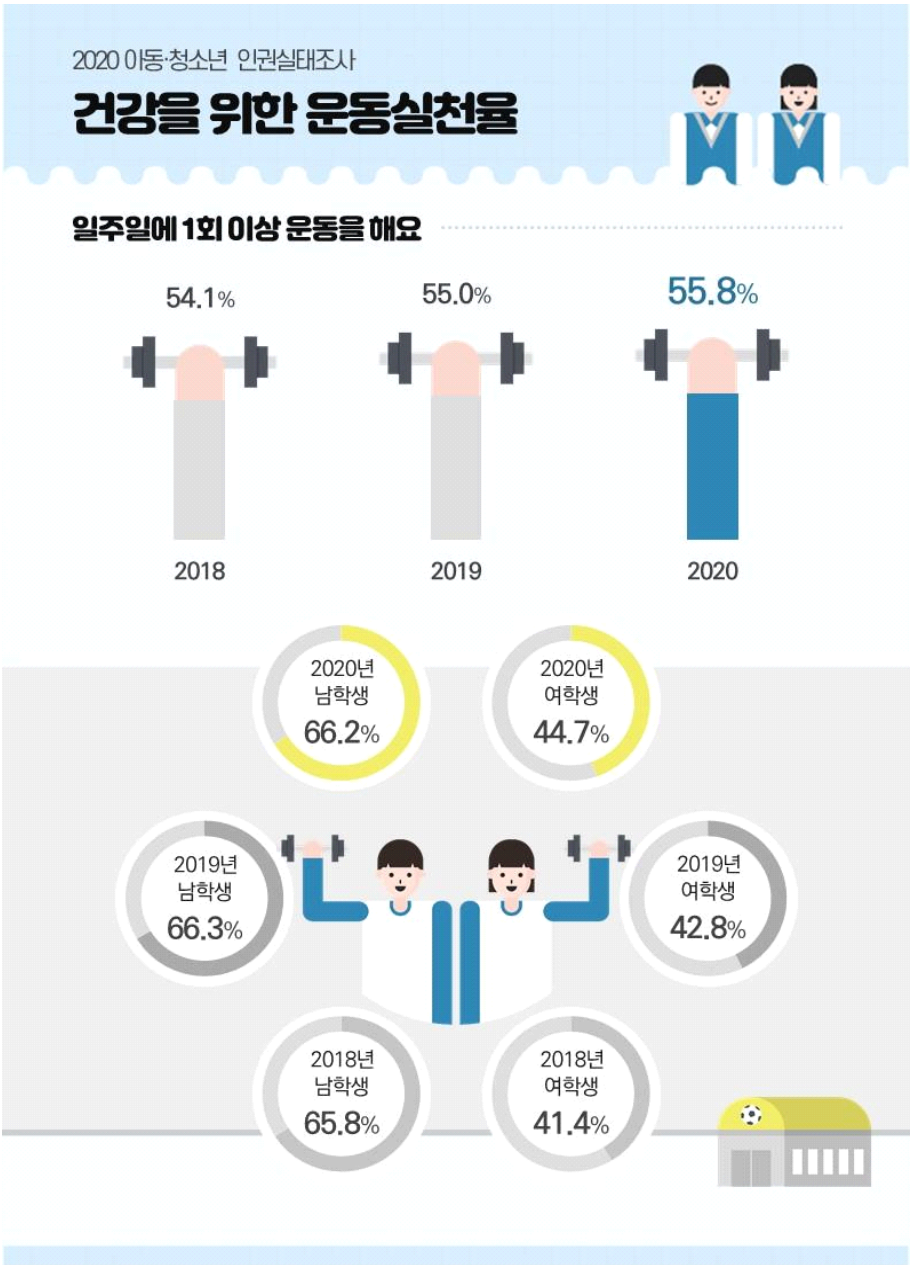
최근 1년 이내 부모,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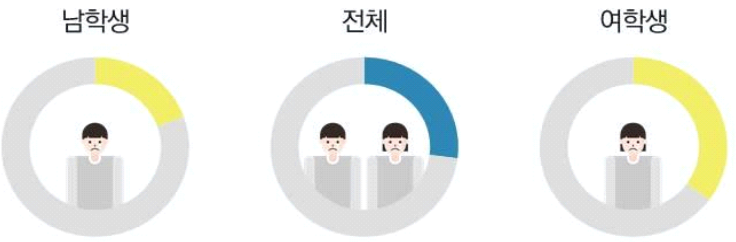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해요
54.1%
55.0%
55.8%
2018
2019
2020
2020년 남학생 66.2%
2020년 여학생 44.7%
2019년 남학생 66.3%
2019년 여학생 42.8%
2018년 남학생 65.8%
2018년 여학생 41.4%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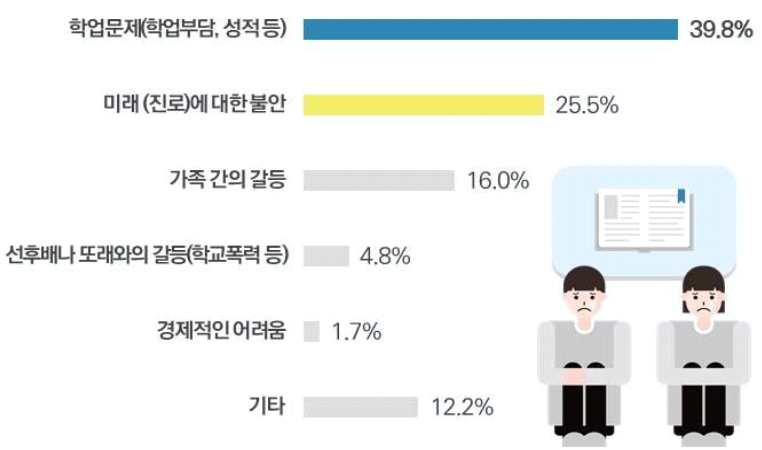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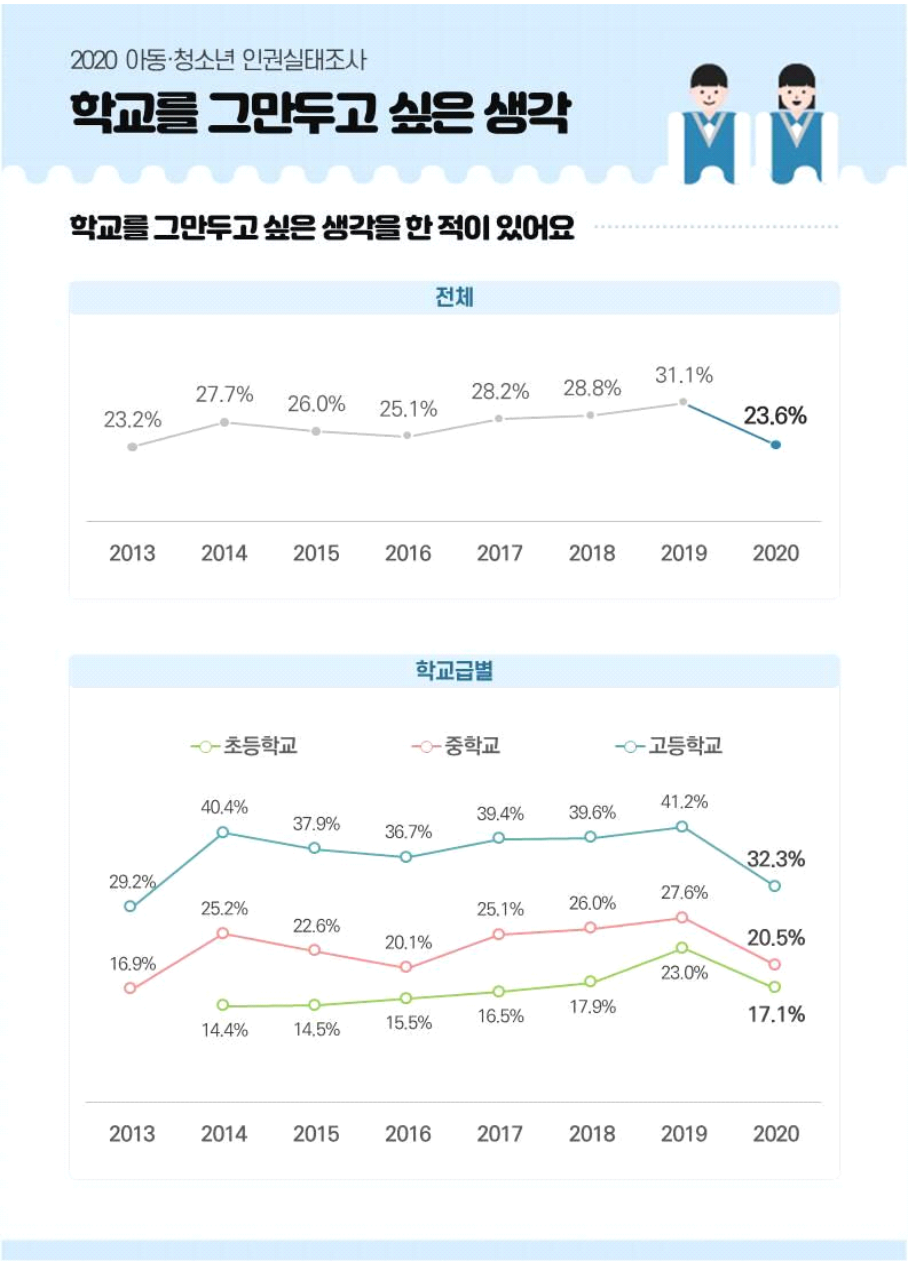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23.2%
27.7%
26.0%
25.1%
28.2%
28.8%
31.1%
23.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2%
40.4%
37.9%
36.7%
39.4%
39.6%
41.2%
32.3%
16.9%
25.2%
22.6%
20.1%
25.1%
26.0%
27.6%
20.5%
14.4%
14.5%
15.5%
16.5%
17.9%
23.0%
17.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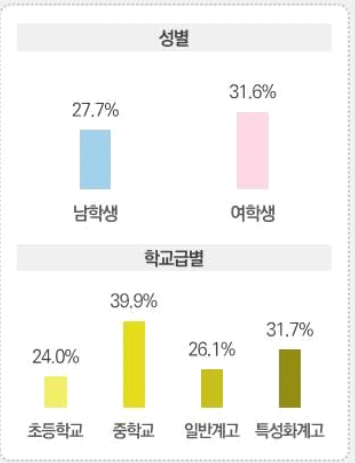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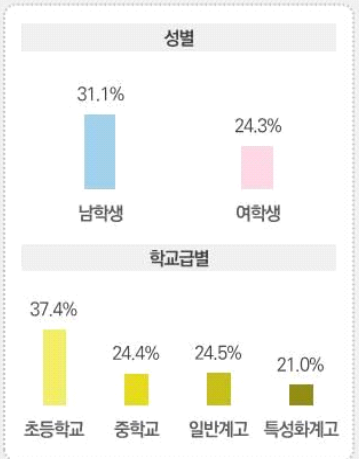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30.3%**



2 공부하기 싫어서 **27.2%**



3 성적이 좋지 않아서 **14.5%**

4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2.7%**

5 괴롭힘을 당해서 **5.1%**

6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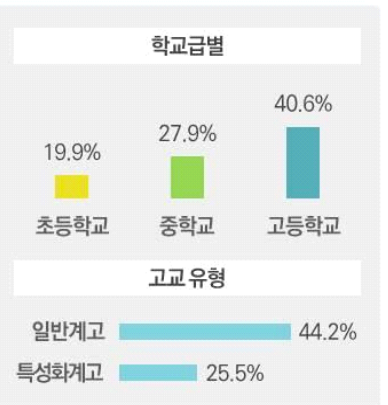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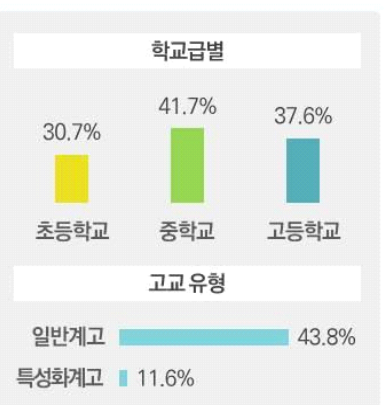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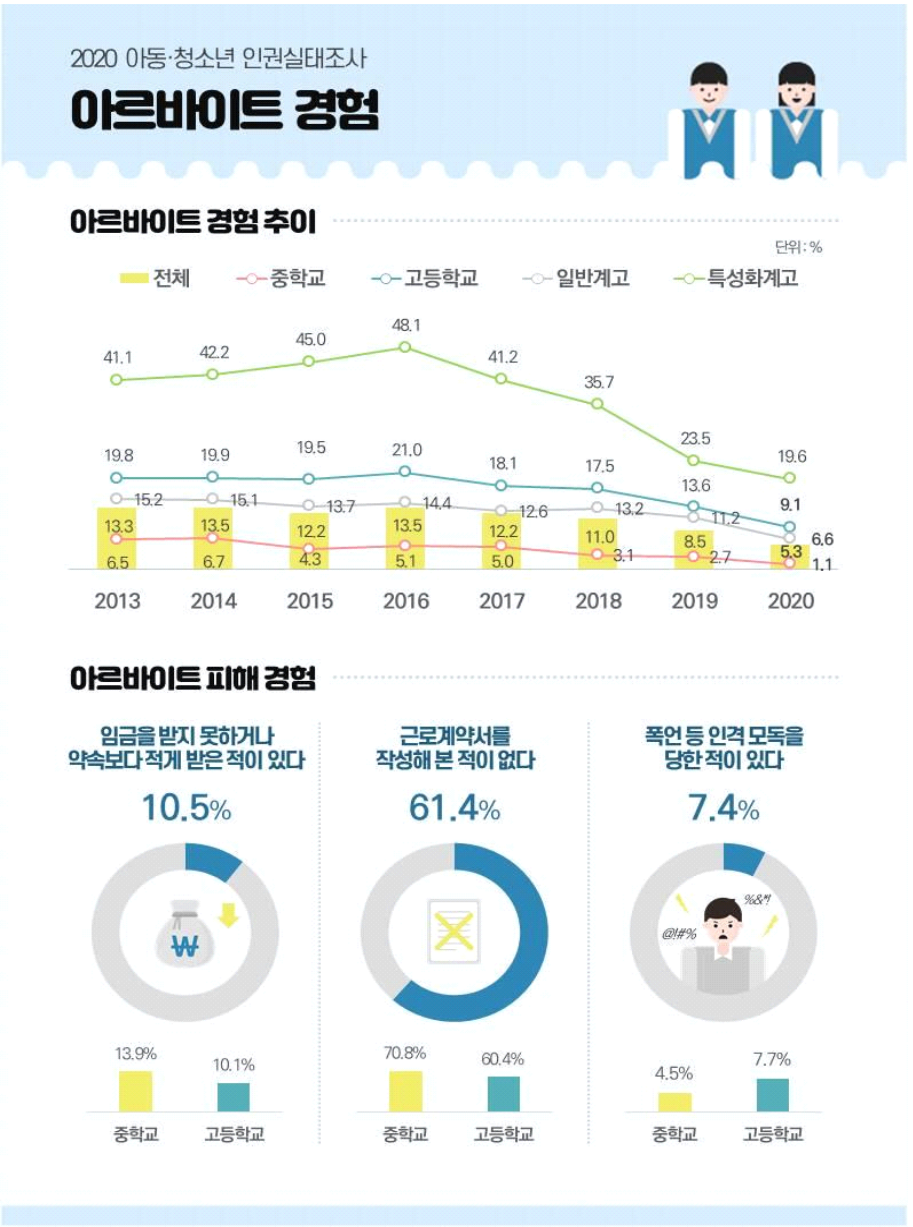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





○ **특별보호조치**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단위 : %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41.1
42.2
45.0
48.1
41.2
35.7
23.5
19.6
19.8
19.9
19.5
21.0
18.1
17.5
13.6
9.1
15.2
15.1
13.7
14.4
12.6
13.2
11.2
6.6
13.3
13.5
12.2
13.5
12.2
11.0
8.5
5.3
6.5
6.7
4.3
5.1
5.0
3.1
2.7
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0.5%
13.9%
10.1%
중학교
고등학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
61.4%
70.8%
60.4%
중학교
고등학교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7.4%
%&?!
@!#%
4.5%
7.7%
중학교
고등학교

차 례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11
3. 연구의 체계도 ····· 13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동향 ····· 17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현황 ····· 24
   1)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 ····· 24
   2)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축 현황 ····· 31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 34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 34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정비 ····· 39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48

Ⅲ.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및 2020 심층 모니터링

1.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개요 ····· 55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58
1) 협약이행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58
2)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별 이행현황 ····· 62
3)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인권 ····· 82
3. 2020 특별주제 모니터링: 학생인권 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 89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89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 103
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115
4)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126
5) 정책 시사점 ····· 140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0. 조사개요 및 방법 ····· 145
1) 조사목적 ····· 145
2) 조사대상 ····· 146
3) 조사내용 ····· 147
4) 조사방법 ····· 154
5) 모집단 분석 ····· 155
6) 표본설계 ····· 159
7) 가중치와 모수추정 ····· 166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170
1) 인권 일반 ····· 170
2) 일반원칙 ····· 206

3) 소결 ····· 2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213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213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27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230
4) 사생활의 보호 ····· 232
5) 정보접근권 ····· 237
6) 소결 ····· 246
3. 폭력 및 학대 ····· 24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24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271
3) 소결 ····· 293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97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297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 313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336
4) 소결 ····· 344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348
1) 장애 ····· 348
2) 생존 및 발달 ····· 352
3) 보건서비스 ····· 361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377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423
6) 소결 ····· 43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442
1) 교육에의 권리 ····· 442
2) 교육의 목표 ····· 454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466
4) 소결 ····· 483

7. 특별보호조치 ····· 486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 486
2) 소년 사법 ····· 503
3) 경제적 착취 ····· 520
4) 성적 착취 ····· 540
5) 소결 ····· 553

Ⅴ.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 561
1) 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시사점 ····· 561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 566
2.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79
1)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579
2)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 582

참고문헌 ····· 601

부 록

1.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641
2. 2020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 689
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696
4.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용 · 중등용) ····· 701
5.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공식 번역본) ····· 732

Abstract ····· 757

표 목차

표 Ⅱ-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22
표 Ⅱ-2-1. 아동권리 관련 SDG 지표 및 목표 달성 현황 ····· 25
표 Ⅱ-2-2. 아동 권리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 28
표 Ⅱ-2-3. 국가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현황 ····· 32
표 Ⅱ-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35
표 Ⅱ-3-2. 202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과정 ····· 39
표 Ⅱ-3-3.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48
표 Ⅲ-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과정 ····· 56
표 Ⅲ-1-2. 2020 심층 모니터링 :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모니터링 과정 ····· 57
표 Ⅲ-2-1. 2019 인권연구 전문가의견조사 정책과제(35개) ····· 58
표 Ⅲ-2-2. 2020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상황 모니터링(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61
표 Ⅲ-3-1.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보장 및 독립성 보장 규정 ····· 90
표 Ⅲ-3-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 92
표 Ⅲ-3-3.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현황(2018년 기준) ····· 93
표 Ⅲ-3-4. 각급학교 학생인권 운영학교 현황 ····· 94
표 Ⅲ-3-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접수 건수(2017~2019) ····· 97
표 Ⅲ-3-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유형별 현황(2017~2019) ····· 97
표 Ⅲ-3-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현황(2017~2019) ····· 99
표 Ⅲ-3-8.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권고 및 이행 현황 (2017~2019) ····· 100
표 Ⅲ-3-9.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현황 (2017~2019) ····· 101

표 Ⅲ-3-10.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주요 업무 ····· 104
표 Ⅲ-3-11. 학교의 교육대상별 학생인권교육 실시 현황 ····· 105
표 Ⅲ-3-12.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권한 규정 ····· 106
표 Ⅲ-3-13.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2017-2019년) ····· 107
표 Ⅲ-3-14.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유형별 현황(2017-2019년) ····· 107
표 Ⅲ-3-15.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주요 권고 사례 ····· 108
표 Ⅲ-3-16. 2020년의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조례 ····· 114
표 Ⅲ-3-17.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구성 ····· 116
표 Ⅲ-3-18.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의 종류 및 특성 ····· 120
표 Ⅲ-3-19. 학생인권교육센터 사건 처리방식 구분 ····· 121
표 Ⅲ-3-20. 상담 및 조사구제 현황(2014.11.1.~ 2020.10.30.) ····· 122
표 Ⅲ-3-21. 사건 영역별 현황(2014.11.1.~ 2020.10.30.) ····· 123
표 Ⅲ-3-22. 조사구제 처리 현황(2015. 1. 1. ~ 2019. 12. 31.) ··· 124
표 Ⅲ-3-23. 학생인권 업무 담당자 직급별 인원 및 업무 분장 ····· 127
표 Ⅲ-3-24. 광주학생인권조례 주요 개정 내용(2020. 4. 1.) ····· 128
표 Ⅲ-3-25.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 ····· 130
표 Ⅲ-3-26.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 136
표 Ⅲ-3-27. 유형별 처리 현황(2020.1.1.~ 11.11. 현재) ····· 137
표 Ⅲ-3-28. 민주인권교육센터 주요 권고 사항 ····· 138
표 Ⅳ-0-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147
표 Ⅳ-0-2.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 149
표 Ⅳ-0-3.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수정된 조사문항 ····· 150
표 Ⅳ-0-4.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151
표 Ⅳ-0-5. 2019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 개요 ····· 154
표 Ⅳ-0-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156
표 Ⅳ-0-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 156
표 Ⅳ-0-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 157
표 Ⅳ-0-9.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 157
표 Ⅳ-0-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 158
표 Ⅳ-0-11.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 158
표 Ⅳ-0-1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161

표 Ⅳ-0-1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 162
표 Ⅳ-0-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 162
표 Ⅳ-0-1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 163
표 Ⅳ-0-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 163
표 Ⅳ-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6~2020) ····· 177
표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 178
표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180
표 Ⅳ-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181
표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184
표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185
표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 187
표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188
표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190
표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191
표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93
표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94
표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 196
표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97
표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99
표 Ⅳ-1-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201
표 Ⅳ-1-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 202

표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 203
표 Ⅳ-1-19.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 205
표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의견존중 정도 ····· 213
표 Ⅳ-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15
표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217
표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218
표 Ⅳ-2-5.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13~2019) ····· 220
표 Ⅳ-2-6.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220
표 Ⅳ-2-7. 아동 총회 건의사항 및 정부 조치 현황 ····· 222
표 Ⅳ-2-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223
표 Ⅳ-2-9.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 225
표 Ⅳ-2-10.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226
표 Ⅳ-2-11. 사상의 자유 보장 ····· 228
표 Ⅳ-2-12. 종교의 자유 보장 ····· 228
표 Ⅳ-2-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230
표 Ⅳ-2-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232
표 Ⅳ-2-15. 개인의 정보 보호 ····· 235
표 Ⅳ-2-16.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237
표 Ⅳ-2-1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238
표 Ⅳ-2-18. 인터넷 이용 목적 ····· 239
표 Ⅳ-2-19.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240
표 Ⅳ-2-20. 스마트폰 과의존[1]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 240
표 Ⅳ-2-2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241
표 Ⅳ-2-22. 학생 독서량 ····· 242
표 Ⅳ-2-23.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242
표 Ⅳ-2-24.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 243
표 Ⅳ-2-25.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 244
표 Ⅳ-2-26.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245
표 Ⅳ-2-27. 디지털 사용 역량 ····· 246
표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50
표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52

표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 253
표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따돌림을 당함 ····· 255
표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 256
표 Ⅳ-3-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 258
표 Ⅳ-3-7. 사이버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 260
표 Ⅳ-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 따돌림을 당함 ····· 261
표 Ⅳ-3-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 263
표 Ⅳ-3-10.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264
표 Ⅳ-3-1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266
표 Ⅳ-3-1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268
표 Ⅳ-3-13.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 270
표 Ⅳ-3-14.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73
표 Ⅳ-3-15.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 ····· 274
표 Ⅳ-3-16.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 274
표 Ⅳ-3-17.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274
표 Ⅳ-3-1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 276
표 Ⅳ-3-1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76
표 Ⅳ-3-20.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77
표 Ⅳ-3-2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78
표 Ⅳ-3-22.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280
표 Ⅳ-3-23.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282
표 Ⅳ-3-24.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 283
표 Ⅳ-3-25.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85
표 Ⅳ-3-26.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87

표 Ⅳ-3-2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8년) ····· 288
표 Ⅳ-3-28.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289
표 Ⅳ-3-29.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290
표 Ⅳ-3-30.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 290
표 Ⅳ-3-31.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상황 ····· 291
표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2012년-2020년) ····· 298
표 Ⅳ-4-2.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15년-2018년) ····· 299
표 Ⅳ-4-3.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년-2018년) ····· 301
표 Ⅳ-4-4.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9년)1) ····· 302
표 Ⅳ-4-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9년) ····· 303
표 Ⅳ-4-6.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년-2019년) ····· 304
표 Ⅳ-4-7.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08년-2018년) ····· 306
표 Ⅳ-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9년-2019년) ····· 309
표 Ⅳ-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1~2019) ····· 310
표 Ⅳ-4-10.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315
표 Ⅳ-4-11.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 내용 ····· 317
표 Ⅳ-4-12.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318
표 Ⅳ-4-13.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 319
표 Ⅳ-4-14.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4년-2019년) ····· 321
표 Ⅳ-4-15.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4년-2019년) ····· 322
표 Ⅳ-4-1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4년-2019년) ····· 323
표 Ⅳ-4-1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325
표 Ⅳ-4-18.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2~2018) ····· 326
표 Ⅳ-4-19. 가출 여부 ····· 327
표 Ⅳ-4-20. 가출한 주된 이유 ····· 329
표 Ⅳ-4-2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331
표 Ⅳ-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19년) ····· 332
표 Ⅳ-4-23. 가출 후 이용한 기관 ····· 333
표 Ⅳ-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335
표 Ⅳ-4-25. 2019년 평가지표 비교(공통지표) ····· 337

표 Ⅳ-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 340
표 Ⅳ-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341
표 Ⅳ-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349
표 Ⅳ-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350
표 Ⅳ-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351
표 Ⅳ-5-4. 연도별 영아사망률 ····· 352
표 Ⅳ-5-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353
표 Ⅳ-5-6. 사고 사망률 ····· 354
표 Ⅳ-5-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355
표 Ⅳ-5-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 ····· 357
표 Ⅳ-5-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358
표 Ⅳ-5-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360
표 Ⅳ-5-11. 2018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 362
표 Ⅳ-5-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362
표 Ⅳ-5-13.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 363
표 Ⅳ-5-14.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364
표 Ⅳ-5-15.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20년 11월 기준) ····· 364
표 Ⅳ-5-16. …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20년 10월 기준) ····· 365
표 Ⅳ-5-17.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366
표 Ⅳ-5-18.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 367
표 Ⅳ-5-19. (지역별) Wee센터 및 Wee 클래스 설치 현황 ····· 368
표 Ⅳ-5-20.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 369
표 Ⅳ-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370
표 Ⅳ-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371
표 Ⅳ-5-23. 흡연율 추이 ····· 373
표 Ⅳ-5-24. 음주율 추이 ····· 374
표 Ⅳ-5-25. 평생 약물 경험률 ····· 375
표 Ⅳ-5-26.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376
표 Ⅳ-5-27.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376
표 Ⅳ-5-28.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378
표 Ⅳ-5-29.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380

표 Ⅳ-5-30. 수면 시간 ····· 382
표 Ⅳ-5-31. 수면 부족 여부 ····· 383
표 Ⅳ-5-32.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 386
표 Ⅳ-5-33.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 389
표 Ⅳ-5-34. 2016~2019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 391
표 Ⅳ-5-35.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393
표 Ⅳ-5-3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396
표 Ⅳ-5-37. 죽고 싶은 이유 ····· 398
표 Ⅳ-5-38.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 400
표 Ⅳ-5-39.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 402
표 Ⅳ-5-40.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 404
표 Ⅳ-5-41.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 405
표 Ⅳ-5-42. 행복한 정도 ····· 407
표 Ⅳ-5-43. 행복하지 않은 이유 ····· 409
표 Ⅳ-5-44. 삶의 만족도 ····· 412
표 Ⅳ-5-4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15
표 Ⅳ-5-4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416
표 Ⅳ-5-4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418
표 Ⅳ-5-48.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 419
표 Ⅳ-5-49. 고민거리 대화상대 ····· 422
표 Ⅳ-5-50. 국가별 아동빈곤율 ····· 424
표 Ⅳ-5-51. 아동빈곤율 ····· 427
표 Ⅳ-5-5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19세 미만) ····· 428
표 Ⅳ-5-53. 한부모가구 비율 ····· 429
표 Ⅳ-5-5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429
표 Ⅳ-5-55.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20년) ····· 431
표 Ⅳ-5-5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432
표 Ⅳ-5-57.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433
표 Ⅳ-5-58.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 435
표 Ⅳ-6-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443
표 Ⅳ-6-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9) ····· 444
표 Ⅳ-6-3. 학급당 학생 수(2011~2019) ····· 445
표 Ⅳ-6-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국제비교 ····· 446

표 Ⅳ-6-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447
표 Ⅳ-6-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448
표 Ⅳ-6-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19) ····· 449
표 Ⅳ-6-8. 학업중단 생각 경험 ····· 451
표 Ⅳ-6-9. 학업중단 생각 이유 ····· 453
표 Ⅳ-6-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455
표 Ⅳ-6-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457
표 Ⅳ-6-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 458
표 Ⅳ-6-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459
표 Ⅳ-6-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 461
표 Ⅳ-6-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 ····· 463
표 Ⅳ-6-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 464
표 Ⅳ-6-1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67
표 Ⅳ-6-18. 전국 시 · 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68
표 Ⅳ-6-1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 공공도서관 ····· 469
표 Ⅳ-6-2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여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470
표 Ⅳ-6-21.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 여부 ····· 472
표 Ⅳ-6-22. 문화 예술 공간이용(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473
표 Ⅳ-6-23.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 475
표 Ⅳ-6-24.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 477
표 Ⅳ-6-25.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478
표 Ⅳ-6-26. 평일 여가 시간 ····· 479
표 Ⅳ-6-27. 평일 공부 시간 ····· 481
표 Ⅳ-7-1.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 487
표 Ⅳ-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489
표 Ⅳ-7-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490
표 Ⅳ-7-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490
표 Ⅳ-7-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492
표 Ⅳ-7-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492
표 Ⅳ-7-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 493

표 Ⅳ-7-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494
표 Ⅳ-7-9.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494
표 Ⅳ-7-10.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495
표 Ⅳ-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 496
표 Ⅳ-7-12.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 497
표 Ⅳ-7-13.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경험 ····· 498
표 Ⅳ-7-14. 이주아동 구금 현황 ····· 499
표 Ⅳ-7-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 500
표 Ⅳ-7-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501
표 Ⅳ-7-17.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 503
표 Ⅳ-7-18.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 505
표 Ⅳ-7-19.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 506
표 Ⅳ-7-20.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 507
표 Ⅳ-7-21.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 ····· 508
표 Ⅳ-7-22.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 509
표 Ⅳ-7-23.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 (1일 평균 수용인원) ····· 510
표 Ⅳ-7-24.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 ···· 511
표 Ⅳ-7-25.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513
표 Ⅳ-7-26. 소년보호 항고 · 재항고 사건 수 ····· 514
표 Ⅳ-7-27.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515
표 Ⅳ-7-2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16
표 Ⅳ-7-2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17
표 Ⅳ-7-3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518
표 Ⅳ-7-3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519
표 Ⅳ-7-32.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520
표 Ⅳ-7-33.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523
표 Ⅳ-7-34. 청소년 실업률 추이 ····· 524
표 Ⅳ-7-3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526
표 Ⅳ-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528
표 Ⅳ-7-3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 ····· 529
표 Ⅳ-7-3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531

표 Ⅳ-7-3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532
표 Ⅳ-7-4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533
표 Ⅳ-7-4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534
표 Ⅳ-7-4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536
표 Ⅳ-7-4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537
표 Ⅳ-7-4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 ····· 538
표 Ⅳ-7-4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539
표 Ⅳ-7-46.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 540
표 Ⅳ-7-47.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 542
표 Ⅳ-7-48.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 545
표 Ⅳ-7-49.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546
표 Ⅳ-7-50.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 ····· 547
표 Ⅳ-7-51. 성폭력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 548
표 Ⅳ-7-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 549
표 Ⅳ-7-5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550
표 Ⅳ-7-54.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 ····· 551
표 Ⅳ-7-5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552
표 Ⅴ-2-1. 아동 · 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 579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예시) ····· 7
그림 Ⅰ-3-1. 연구의 체계도 ····· 13
그림 Ⅱ-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 18
그림 Ⅲ-3-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추진 체계도 ····· 92
그림 Ⅲ-3-2. 학생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 ····· 95
그림 Ⅲ-3-3.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조직 현황 ····· 104
그림 Ⅲ-3-4.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구제 절차 흐름 ····· 107
그림 Ⅲ-3-5. 교사의 체벌·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응답 4년 추이 ····· 111
그림 Ⅲ-3-6. 학생인권교육센터 사건처리 흐름도 ····· 118
그림 Ⅲ-3-7.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 ····· 134
그림 Ⅳ-0-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도구 보완과정 ····· 148
그림 Ⅳ-0-2. 표본추출방법 ····· 154
그림 Ⅳ-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연도별 추이) ····· 179
그림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연도별 추이) ····· 181
그림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추이) ····· 182
그림 Ⅳ-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 183
그림 Ⅳ-1-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 183
그림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 185
그림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 186
그림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 188

그림 Ⅳ-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연도별 추이) ····· 189
그림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비동의(연도별 추이) ····· 191
그림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 192
그림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 194
그림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195
그림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 197
그림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 (연도별 추이) ····· 198
그림 Ⅳ-1-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 198
그림 Ⅳ-1-17.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200
그림 Ⅳ-1-18. 인권의식과 태도_전체 ····· 200
그림 Ⅳ-1-19. 인권교육 경험(학교급별) ····· 202
그림 Ⅳ-1-20.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 204
그림 Ⅳ-1-21.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 206
그림 Ⅳ-1-22.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 208
그림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 (연도별 추이) ····· 214
그림 Ⅳ-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216
그림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218
그림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219
그림 Ⅳ-2-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224
그림 Ⅳ-2-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225
그림 Ⅳ-2-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 227
그림 Ⅳ-2-8.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229
그림 Ⅳ-2-9.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231
그림 Ⅳ-2-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 231
그림 Ⅳ-2-1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 234
그림 Ⅳ-2-12.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 236
그림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251
그림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253
그림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연도별 추이) ····· 254
그림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 256
그림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연도별 추이) ····· 257
그림 Ⅳ-3-6.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연도별 추이) ····· 259
그림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연도별 추이) ····· 261
그림 Ⅳ-3-8.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 262
그림 Ⅳ-3-9.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265
그림 Ⅳ-3-10.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연도별 추이) ····· 267
그림 Ⅳ-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69
그림 Ⅳ-1-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71
그림 Ⅳ-3-13.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72
그림 Ⅳ-3-14.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275
그림 Ⅳ-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77
그림 Ⅳ-3-16.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 279

그림 Ⅳ-3-17. 방임_1)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 281
그림 Ⅳ-3-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283
그림 Ⅳ-3-19.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284
그림 Ⅳ-3-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286
그림 Ⅳ-3-21.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287
그림 Ⅳ-3-2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18년 피해아동 상황 ····· 291
그림 Ⅳ-3-2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연도별 추이) ····· 292
그림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연도별 추이 ····· 297
그림 Ⅳ-4-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년-2019년) ····· 305
그림 Ⅳ-4-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현황(2004~2018) ····· 306
그림 Ⅳ-4-4.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308
그림 Ⅳ-4-5. 온종일돌봄체계 사업 안내 ····· 311
그림 Ⅳ-4-6. 온종일돌봄체계 수행체계 ····· 312
그림 Ⅳ-4-7.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314
그림 Ⅳ-4-8.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 316
그림 Ⅳ-4-9.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 (2008년~2020년) ····· 320
그림 Ⅳ-4-10.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추이(2014~2019) ····· 324
그림 Ⅳ-4-11.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328
그림 Ⅳ-4-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연도별 추이) ····· 330
그림 Ⅳ-4-13.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334
그림 Ⅳ-4-14.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 334
그림 Ⅳ-4-15.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 336
그림 Ⅳ-4-16.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342
그림 Ⅳ-4-17.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 343
그림 Ⅳ-5-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 359
그림 Ⅳ-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361

그림 Ⅳ-5-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378
그림 Ⅳ-5-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 379
그림 Ⅳ-5-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 381
그림 Ⅳ-5-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 382
그림 Ⅳ-5-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 384
그림 Ⅳ-5-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 384
그림 Ⅳ-5-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 387
그림 Ⅳ-5-10.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 388
그림 Ⅳ-5-11.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 391
그림 Ⅳ-5-12.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 394
그림 Ⅳ-5-1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단위: 비율) ····· 395
그림 Ⅳ-5-14.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 397
그림 Ⅳ-5-15.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 399
그림 Ⅳ-5-16.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401
그림 Ⅳ-5-17.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403
그림 Ⅳ-5-18.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405
그림 Ⅳ-5-19.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 408
그림 Ⅳ-5-20.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 410
그림 Ⅳ-5-21.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 411
그림 Ⅳ-5-22.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 413
그림 Ⅳ-5-23.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 414
그림 Ⅳ-5-24.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추이) ····· 416
그림 Ⅳ-5-25.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417
그림 Ⅳ-5-26.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추이) ····· 419
그림 Ⅳ-5-27. 고민거리 대화상대 ····· 421
그림 Ⅳ-5-28.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6년 기준) ····· 424
그림 Ⅳ-5-29.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 (2015년 기준) ····· 425
그림 Ⅳ-5-30.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간의 관계 ····· 426

그림 Ⅳ-5-31.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 435
그림 Ⅳ-6-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 452
그림 Ⅳ-6-2. 학업중단 생각 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 454
그림 Ⅳ-6-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456
그림 Ⅳ-6-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 457
그림 Ⅳ-6-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 460
그림 Ⅳ-6-6.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 465
그림 Ⅳ-6-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 469
그림 Ⅳ-6-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 471
그림 Ⅳ-6-9. 체육시설 이용 여부(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473
그림 Ⅳ-6-10. 문화 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 474
그림 Ⅳ-6-1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 476
그림 Ⅳ-6-12.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 480
그림 Ⅳ-6-13.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 482
그림 Ⅳ-7-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489
그림 Ⅳ-7-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 (복수응답) ····· 502
그림 Ⅳ-7-3.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 504
그림 Ⅳ-7-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522
그림 Ⅳ-7-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2013/2018) ····· 525
그림 Ⅳ-7-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526
그림 Ⅳ-7-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 527
그림 Ⅳ-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연도별 추이) ····· 528
그림 Ⅳ-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 530
그림 Ⅳ-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 531
그림 Ⅳ-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 533

그림 Ⅳ-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연도별 추이) ····· 534
그림 Ⅳ-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35
그림 Ⅳ-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36
그림 Ⅳ-7-1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연도별 추이) ····· 537
그림 Ⅳ-7-1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연도별 추이) ····· 53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4차년도 연구이다.[2)] 이 연구는 1기와 2기 연구와의 연속선 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명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 당사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진하게 된다.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1996년 1차 권고, 2003년 2차 권고, 2011년 3·4차 권고, 2019년 5·6차 권고 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 마련 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본원에서는 제1기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와 제2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2011~2016)를 거쳐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 제3기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영지 외, 2019: 5).

2019년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 학생 자치권 보장 수준이 40~50% 전후로 낮고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경험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9.2%), 학업중단 생각을 해본 경우는 31.1%, 그 이유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26.1%)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26.1%)가 가장 많았다. 43.4%의 아동·청소년은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며, 47.3%는 하루 3시간 이상 정규수업 외 공부를 하고 있었다. 24.5%의 아동·청소년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52.2%는 수면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면부족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학업이었다(가정학습 22.9%, 학원·과외 19.4%).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은 30.4%, 그 이유는 학업문제(38.6%)와 미래(진로) 불안(21.9%)이었으며,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또한 학업문제(41.7%)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8.6%에 불과했으며, 참여의 장애요인은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9).

이는 제5·6차 유엔 심의과정에서 당사자인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아동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던 열악한 인권현실이 동일하게 드러난 결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에 한국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러 차별요소에 따른 차별예방, 자살예방과 유해물질·환경 모니터링, 체벌을 포함하여 모든 폭력과 학대 근절과 회복대책, 성적 착취 및 학대 방지와 처벌 강화, 경쟁적 입시위주교육 개선

과 휴식과 놀이시간과 시설 보장, 소년사법 분야의 인권개선 등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외에도 모든 인권 영역의 아동·청소년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이행과제를 50여개의 문단에 담아냄으로써 25개 부처를 망라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검토와 이행노력을 촉구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33-113에 제시된 부처 개수 산정). 대한민국은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3].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진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담아야 하는 2024년 제7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구내용 및 방법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올해는 4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을 수행한다.

연도	주요 내용
1차년도 (2017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구 추진시스템 구축 - 협약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무부처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제5·6차 협약 국가보고서 작업 연계·지원(협약 작업집단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제출기한 2017.6.19. 제출 2017.12.27) - 제4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심의(9월) - 제3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제출(8월), 심의(11월) : 아동 -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	
2차년도 (2018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CRC 민간단체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아동보고서 등 제출 -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2) : 여성아동 이슈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추진 : 아동·청소년분야 -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 5년 주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
⇩	

3차년도 (2019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 :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추가보고서 작업 (협약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및 주무부처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추가 국가보고서(유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유엔 본심의 및 권고사항 발표(9월) –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 : 장애아동 이슈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종료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포용적 아동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아동복지법 11조의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생산 시작(통계청 승인통계)
4차년도 (2020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 클러스터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상시) · 2020 심층 모니터링 : 협약이행과제 중 1개 이슈 중점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 : 부처별 협약 및 5·6차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 수립 (주무부처 협업 : 부처협의 후 여부 결정)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견해 국내 확산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 제4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 전 질의목록' 유엔 채택 (2019. 7)
5차년도 (2021년)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 클러스터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상시) · 2021 심층 모니터링 : 협약이행과제 중 1개 이슈 중점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협약 이행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 제4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 2021~ –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제출(2020)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예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크게 유엔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정책 등의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현황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두 영역은 법·제도,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개선 노력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9: 16).

1) 연구내용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 변화 및 국제적 인권동향 파악, 인권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중요도의 지속적 검토 과정을 통해 지표체계를 보완하도록 한다. 지표항목의 간소화 및 체계화, 지표자료원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신규 자료원 발굴, 필요한 공공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표체계와 지표항목의 검토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표자료원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간에 새롭게 생산된 자료원 풀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행정통계 자료 중 가공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통계자료원 및 산식 명료화 등 제반 정비 작업을 병행하였다.

(2)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인권통계 생산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지표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협약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회의 및 활동 동향, 국제문서 생산 동향 등을 파악하여 인권이슈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지표체계 개선의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이는 2019년 제5·6차 유엔 권고사항인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1)" 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국의 인권통계 생산시스템 동향 파악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발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DGs 지표와 K-SDGs 지표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여 종을 검토하여 이 가운데 국가보고서에서 해당국의 아동·청소년 인권통계 구축 현황을 밝히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비교적 최근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유럽 인권 선진국과 아시아 주요국 중심으로 국가보고서와 추가보고서(유엔 쟁점목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내용 중 인권통계 관련 부분('일반이행조치' 중 'data collection' 부분)과 부록 통계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성과와 과제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이다. 2019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를 앞두고 협약 전체 영역 자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약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전체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2020년에는 협약 전체 클러스터 모니터링은 정책모니터링 성격으로 상시 진행하되 주요 인권이슈 한 가지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심층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2019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정부 심의회의에서 아동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었던 학생인권 이슈를 선정하고 전문가 회의와 교육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담·구제 시스템 현황과 과제"를 2020년의 심층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이 광주, 경기, 전주, 서울 등 4개 학생인권조례 지역교육청에 방문면접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NGO를 별도 면담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4개 지역 방문조사 후에는 전체 지역 담당자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한 전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역인권거버넌스의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0년의 이슈인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이후 인권모니터링 주제 선정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실태조사 및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지표 결과는 크게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및 타 통계자료원 활용 등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설문조사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년 생산되고 있다.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문항의 수정·보완사항을 검토하되 추이 비교를 위해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통계청 승인통계(제402001호) 계속성 유지). 설문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종 사례수는 총 8,623명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인권관련 영향요인과 인과관계 등을 탐색하는 데이터 심화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관심도 제고 및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데이터 검증 효과도 가능하다. 2020년에는 아동권리협약 심층 모니터링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지역의 지역인권거버넌스로 정하고 심화분석보고서의 주제를 학생인권조례로 일관되게 선정하여 우리사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조례의 관련 효과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일환으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77건을 검색·수집하여 인권논문의 동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본 데이터 점검의 기회도 갖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2편의 심화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1.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연구동향 분석)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안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과 인권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대상의 자문과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장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 모니터링과 4장 인권지표결과 생산(실태조사)을 통해 현재 인권 이슈와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체계 및 인권모니터링 관련 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제문서와 인권지표 관련 주요국의 국가보고서,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법·제도

및 정책현황 자료, 각종 행정통계 및 타 분야 통계 자료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연구전반의 방향과 자료 관련 자문,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조사도구 보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발전 및 지표생산 시스템 제도화 방안 등 자문, 협약 이행 심층 정책모니터링 대상 협약과제 영역 또는 주제 아이디어 발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개발 관련 자문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지표체계 및 자료원 검토(타당성 및 중요도)를 위한 서면 자문은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 모니터링(협약 이행노력 정도 5점 척도, 정책과제 수행 기간 3단계) 서면 자문은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중·고등학생 1~3학년 등 총 9,000명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종 조사대상은 8,623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틀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별 인권 실태이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집락표집(권역별, 학교, 학년, 성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개요 세부내용은 Ⅳ장 조사개요 해당 절 참고).

(4)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020 협약 심층 모니터링 관계자 간담회(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지역 학생인권상담구제 시스템 관계자),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전

문가 워크숍 및 청소년 워크숍,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세부내용은 Ⅲ장 모니터링 개요 참고).

3. 연구의 체계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인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정책 모니터링'과 '인권지표에 기반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과정과 주요 성과를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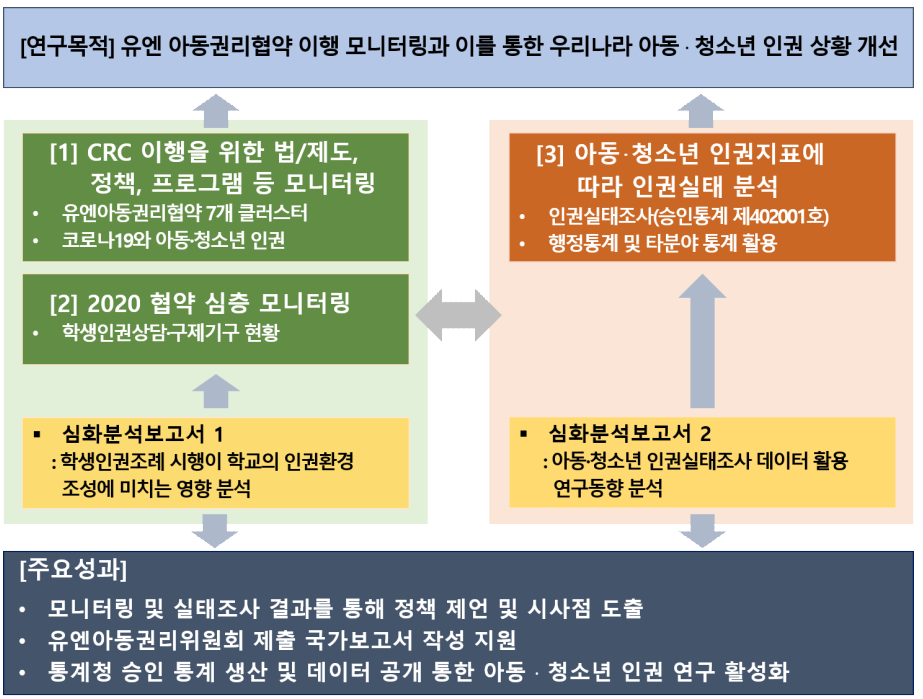


그림 Ⅰ-3-1. 연구의 체계도

제2장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동향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현황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체계의 개선

2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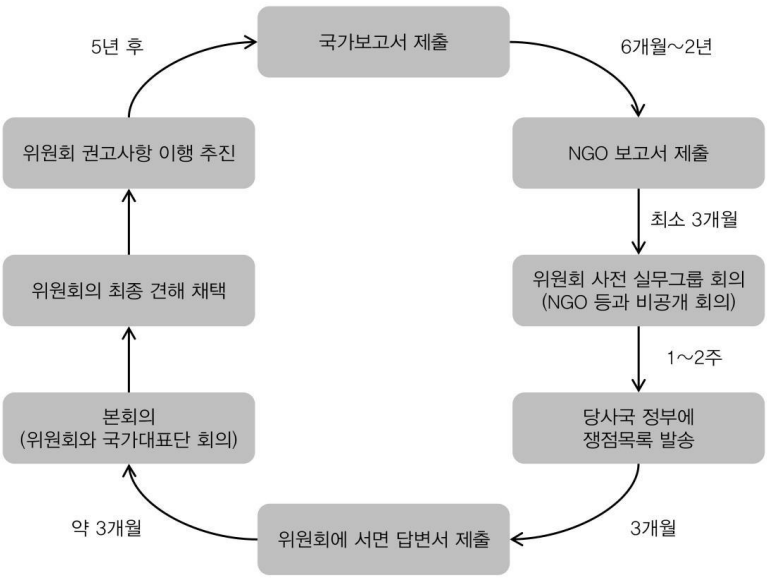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동향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국제적 모니터링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일반논평 문서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국제적 회의 주제와 이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표된 인권지표의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 논의에 부응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5년마다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하는 일은 국제적인 차원의 아동권리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을 냄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30).

여기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제공 자료를 통해 국제적 인권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 2장의 1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황세영 연구위원이, 2절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3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과 황세영 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 출처 : Theytaz Bergman, L., Fegan, R., Myers, L. (2014). p.4. 보완. 김영지 외, 2017: 31에서 재인용

그림 II-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 논평의 목적과 범위 및 구조, 국가별 이행조치, 이슈, 제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135개 국가,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정부는[5] 디지털 시대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이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틀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다자간 거버넌스의 사례로 인터넷감시재단과 We Protect Global Alliance가 있으며, 정부

5) 해당 내용 출처: UK Government (2019). Response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call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contributions in advance of the drafting a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개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고 신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온라인 피해 백서를 통해 기업들이 아동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용자의 온라인 안전에 책임을 다하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수록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고, "교육에서의 아동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 표준안을 개발하여 전국의 학교와 대학 등에 보급하였다.

다음으로 아일랜드 정부의 경우[6], 우선 아동에 대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형식의 컨설팅 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관련 정책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디지털 전략(2015-2020)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온라인 안전을 위한 실행계획(2018-2019)을 채택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렉티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7]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먼저 일반논평의 구조에서 "디지털 환경"의 개념이 결과와 영향 중심에서 확장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현황으로는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제시하며,

6) 해당 내용 출처: United Nations(UN). Questionnaire: Concept note of th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 Ireland's Response.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7) 해당 내용 출처: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2019). Comments on the concept note of th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법적,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유해정보차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의도된 활용 범위를 넘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여 2020년 8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초안을 제시하고 각국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다. 일반 논평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기회, 위험, 도전의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필요한 법적, 정책적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는데 있다(CRC, 2020: 3). 일반 논평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8], 먼저 일반 원칙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 및 발달권, 의견청취권의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아동 역량의 발달적 속성을 이해하여 보호와 자율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 보장, 아동권리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포함한 법적,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9]. 첫째, 공중보건을 위해 인권 규범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조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 자원의 분배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아동의 휴식과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위생 규칙을 포함한 야외 활동에 대한 지침 등이 대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8) 이하 내용 출처: CRC (2020). Draft General Comment No. 25: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C/GC/25&Lang=en (검색일: 2020년 12월 3일)

9) 해당 내용 출처: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2020.4). CRC COVID-19 Statement.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CRC/STA/9095&Lang=en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셋째,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넷째, 학교 급식이 유일한 영양식이었던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할 것. 다섯째, 의료 시스템과 자원 부족의 한계 속에서도 아동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유지할 것. 여섯째, 학대 아동, 장애 아동 등에 필수적인 보호 서비스를 유지할 것. 일곱째, 장애, 빈곤, 가출, 이주, 난민 아동 등 현 사태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조치를 실행할 것. 여덟째, 구금 아동을 가능한 석방하고, 가족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허용할 것. 아홉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 조치 위반을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거나 체포하지 말 것. 열째, 코로나 사태 및 감염 예방 정보를 다양한 언어와 아동 친화적인 형식으로 보급할 것.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수행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2014년 시민사회의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12월 유엔 총회가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 수행을 공식 요청하였고, 2016-2018년 독립전문가에 의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자유박탈아동의 실태와 규모, 근본 원인 등을 파악하고 관련 모범 사례와 아동의 견해를 파악하며, 구금조치에 의해 아동에 가해지는 낙인 효과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책적 권고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 2019년 10월에는 연구 결과가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로 전달되고, 11월 제네바에서 국제연구 전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자유박탈아동의 실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Kamarotos, 2020). 이 연구에는 92개 국가에서 참여하였고, 응답 내용에 대해 각국의 이해당사자의 검토를 거쳤다. 설문 항목은 1) 아동 구금과 관련된 법제, 정책, 실태, 2) 2008-2017년 기간 및 2018년 현재 연간 자유박탈아동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2018년에 하루라도 구금되어 있는 아동 수는 16만-25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UN General Assembly,

2019).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4개 NGO로 구성된 한국 실무그룹에서 국내 자유박탈아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의 자유박탈 유형과 관련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아동·청소년 경험에 대한 사례조사로 이루어졌다(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

그 밖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hild Rights Connect와 함께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 보고 참여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위원회 보고 절차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으며, 보고 절차 참여의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제시하여 아동의 접근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위원회 보고 과정과 이후 이행 조치에 대한 안내 내용도 담고 있다(Child Rights Connect, 2020).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일반논평이 2020년 제25호 초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25건이 공표되었다. 일반논평은 협약 조항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인권 이슈에 대해 풍부한 정보 기준과 지침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인권동향과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인권지표체계 개선과정에서 참고하고 있다. 일반논평 25건을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번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1호 (2001.4.17)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
제2호 (2002.11.15)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제3호 (2003.3.17)	HIV/AIDS와 아동의 권리(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제4호 (2003.7.21)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5호 (2003.11.27)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ts. 4, 42 and 44, para.6))

번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6호 (2005.9.1)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제7호 (2006.9.20)	초기 아동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2006년 개정본 : CRC/C/GC/7/Rev.1 (2006.9.20)
제8호 (2006.8.21)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arts 19; 28, para.2 ; and 37, inter alia))
제9호 (2007.2.27)	장애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제10호 (2007.4.25)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제11호 (2009.2.12)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Indigenous children and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제12호 (2009.7.20)	아동의 피청취권(의견표명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제13호 (2011.4.18)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제14호 (2013.5.29)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제15호 (2013.4.17)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art. 24))
제16호 (2013.4.17)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에 대한 국가 의무(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제17호 (2013.4.17)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제18호 (2014.11.4)	유해한 관습에 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18호) 공동 일반논평(Joint general recommendation/general comment No. 31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armful practices) * 2019년 개정본 : CEDAW/C/GC/31/REV.1 (2019.5.8)
제19호 (2016.7.20)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Public budgeting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rt. 4))
제20호 (2016.12.6)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General Comment No. 20(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제21호 (2017.6.21.)	거리 상황의 아동(General comment No. 21 (2017) on children in street situations)

번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22호 (2017.11.16.)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 일반원칙(Joint General Comment No. 3 of the CMW and No. 22 of the CRC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제23호 (2017.11.16.)	국제이주 맥락에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귀한국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국가의 책임(Joint General Comment No. 4 of the CMW and No. 23 of the CRC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제24호 (2019.9.18.)	아동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제25호 (2020.8.1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초안) (Draft General Comment No. 25 –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에서 2020년 11월 22일 인출 자료를 표로 구성함.

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현황

1)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SDGs의 지표들은 아동·청소년 연령층에 한정된 데이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 아동권리보고서에 대한 논평에 SDGs와 관련된 국가별 이슈를 언급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UNICEF는 아동 관련 SDGs 책임 기관으로서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S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표 Ⅱ-2-1〉은 아동권리 영역에 따라 SDGs

관련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집되고 있으며, SDGs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생존·발달 영역은 SDG 2와 3 지표와 관련성이 높으며 2018년에는 25%, 2019년에는 27%의 목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가용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비율은 2018년 35%에서 2019년 23%로 상당히 감소되어, 해당 영역에서의 지표 작업에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학습 영역은 SDG 4 지표와 관련성이 높은데, 2018년 5%, 2019년 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 부족 및 부재 비율이 75%로 매우 높다. 세 번째 보호 영역은 SDG 5 성평등, SDG 8 노동, SDG 16 평화 관련 지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2019년 목표 달성률은 3%에 불과하며, 데이터 부족 및 부재 비율이 2018년 80%에서 2019년 77%로 여전히 매우 높다. 네 번째 안전·환경 영역은 SDG 1, 3, 6, 7, 13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성이 있으며, 목표 달성률은 2018년 16%, 2019년 20%로 소폭 증가하였다. 데이터 부족 및 부재 비율은 2018년 58%에서 2019년 49%로 약간의 진전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영역은 주로 SDG 1 지표와 관련되며, 데이터 부족 및 부재 비율이 9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데이터 발굴 및 수집에 있어 최우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II-2-1. 아동권리 관련 SDG 지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권리 영역	관련 SDG 지표	현황 및 추이		
		목표달성 정도	2018년	2019년
생존·발달	• SDG 2. 발육부진, 소모성 질환, 비만 • SDG 3. 숙련인력입회하의 출산, 5세미만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5세미만 및 10-19세 아동의 HIV 감염, 필수의료서비스, MCV1, DTP3, 모성 사망비율, 말라리아 발생률, 아동 출산율	목표 달성	25%	27%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11%	14%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 필요	29%	36%
		데이터 부족 또는 부재	35%	23%
학습	• SDG 4. 중학생의 읽기, 수학 최저 성취수준, 5세미만 아동의 발달 수준, 초등 입학 1년 이전 조직적 학습 참여,	목표 달성	5%	7%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5%	5%

권리 영역	관련 SDG 지표	현황 및 추이		
		목표달성 정도	2018년	2019년
	위생시설을 갖춘 학교의 비율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 필요	15%	13%
		데이터 부족 또는 부재	75%	75%
보호	• SDG 5. 여아 상대 폭력, 아동 결혼, 여성 할례 • SDG 8. 아동 노동 • SDG 16. 살인, 갈등으로 인한 사망, 보호자 폭력, 18세미만 아동 대상 폭력, 출생 신고	목표 달성	4%	4%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2%	3%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 필요	14%	16%
		데이터 부족 또는 부재	80%	77%
안전·환경	• SDG 1. 식수, 위생 서비스 • SDG 3. 주거 및 주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 SDG 6. 안전한 식수, 안전한 위생 서비스, 손씻기 시설, 야외 배변 • SDG 7. 청정 연료 사용 • SDG 13.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목표 달성	16%	20%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12%	20%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 필요	14%	11%
		데이터 부족 또는 부재	58%	49%
형평성	• SDG 1. 극단적 빈곤, 국가 빈곤 하한선, 다층적 빈곤, 사회 보호 체계	목표 달성	3%	3%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0%	0%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화 필요	0%	0%
		데이터 부족 또는 부재	97%	97%

* 출처: UNICEF (2019).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Are we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for children? The situation in 2019. pp. 5-9.

* 주: 밑줄 표시는 방법론상의 문제로 실제 측정에서 제외된 것임.

SDGs 지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UNICEF의 자료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아동 실태와 관련된 진전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수립되었다(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a). K-SDGs는 SDGs와 같이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목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추가, 변형 또는 삭제되어 122개로 이루어졌다. 세부목표와 관련된 지표 수는 총 214개로, 이 가운데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지표의 발굴 및 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a: 16).

K-SDGs 지표 역시 SDGs 지표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 〈표 Ⅱ-2-2〉는 K-SDGs 지표 가운데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아동 권리 영역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먼저 생존·발달 영역에서는 두 개의 지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같다. 다음으로 학습 영역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고등교육,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교육 제공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유사지표를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GDP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을 제시하여 OECD 국가 간 공교육비 투입 현황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반면, K-SDGs 지표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서는 관련 정책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K-SDGs에서는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인원/경제활동인구수라는 명확한 산식을 제시하고 있다(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b). 또한 교육 불평등 해소 목표와 관련하여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고무적인 기회이며,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마찬가지로 취학율 및 학업중단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관별 배치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K-SDGs지표는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지표로 삼고 있어 통합교육의 지향점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

로 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두 지표체계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며, K-SDGs에서는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과 차별 금지 등의 정책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안전·환경 영역의 경우 공통적인 지표는 발견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 보장과 환경의 개선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영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지표는 두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인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K-SDGs 지표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이라는 포용성의 기치 아래 장애, 성평등, 이주민 이슈 등에서 정책적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K-SDGs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환경교육, 친환경적 도시환경 등의 내용은 향후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II-2-2. 아동 권리 관련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권리 영역	관련 K-SDGs 세부 목표	지표(단위)
생존·발달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신생아사망률(%)** -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학습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권리 영역	관련 K-SDGs 세부 목표	지표(단위)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취학률(%)** - **학업중단율(%)**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PIAAC) - 청소년·성인 문해율(%)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정책 이행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인원(명)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Wee클래스 설치비율(%)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권리 영역	관련 K-SDGs 세부 목표	지표(단위)
보호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5-2. 모든 여성과 소년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위원회 권고안 이행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안전·환경	11-2.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 보도면적 비율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권리 영역	관련 K-SDGs 세부 목표	지표(단위)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형평성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공학계 여학생 비율*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 1,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출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a).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pp.42-50.

* 주: * 표시는 신규 지표이며, 진한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유사한 지표임.

2)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축 현황

해외에서 국가별 아동·청소년인권지표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여 종을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고서에서 해당국의 아동·청소년인권통계구축 현황을 밝히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표 Ⅱ-2-3〉과 같다.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체계적인 지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4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종단연구 또는 주제별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스웨덴은 아동옴브즈만과 통계청이 함께 Max18이라는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현황 추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평등가치·정체성, 웰빙,

가족, 보호, 영향력·정보, 교육, 놀이·여가·문화·휴식 등 7개 영역 52개 지표로 구성되며, 해당 데이터는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주제별, 지역별 현황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벨기에는 국가아동권리지표를 구축하였고, 지표는 복지, 건강, 교육, 여가, 가족, 참여, 외국인 등 7개 영역,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 아동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 건강·안전, 물질적 웰빙, 가정·사회 환경, 취약 아동, 여가, 주관적 웰빙 등 7개 영역 6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별, 장애, 연령, 거주지별 통계 제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복지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Youth Monitor라는 청소년/청년 통계포털을 개발하였고, 지표는 인구, 복지서비스·청년기 이행, 정부보조계층, 학교, 노동, 생활양식, 범죄, 카리브 지역, 웰빙, 인터넷 사용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별도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주관적 웰빙 조사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차원의 주제별 현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Growing up in Australia」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5-35세 청소년·청년 대상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I-2-3. 국가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현황

국가 (연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현황
스웨덴 (2012)	• 국가아동권리지표 구축(MAX 18: Statistic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웹사이트: https://max18.barnombudsmannen.se/max18-statistik/ • 평등가치·정체성, 웰빙, 가족, 보호, 영향력·정보, 교육, 놀이·여가·문화·휴식 등 7개 영역 52개 지표로 구성
벨기에 (2017)	• 국가 아동권리 지표 구축: 복지, 건강, 교육, 여가, 가족, 참여, 외국인 등 7개 영역, 40개 지표로 구성
스페인	• 복지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아동 삶의 질 지표 관련 웹사이트 운영

국가 (연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현황
(2015)	(http://www.infanciaendatos.es/) • 교육, 건강·안전, 물질적 웰빙, 가정·사회 환경, 취약 아동, 여가, 주관적 웰빙 등 7개 영역 61개 지표로 구성 • 통계청과 함께 0-18세 아동 성별, 장애, 연령, 거주지별 통계정보 준비
네덜란드 (2018)	• 복지부와 통계청 공동으로 25세 이하 청소년/청년 데이터 포털 Youth Monitor 운영 (https://jeugdmonitor.cbs.nl/) • 인구, 복지서비스·청년기 이행, 정부보조계층, 학교, 노동, 생활양식, 범죄, 카리브 지역, 웰빙, 인터넷 사용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
영국 (2016)	• 국가통계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주관적 웰빙) •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주제별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 제시
호주 (2018)	• 사회서비스부, 국가가족연구소, 통계청 공동으로 종단연구 프로젝트 「Growing up in Australia」 수행 • 2004년 이후 영아, 유아 대상 종단 연구 실시 • 연간보고서 발행(2018년 주제: 건강, 수면, 성, 운전, 도박, 소비, 교과선택, 회복탄력성, 지역사회참여, 걱정거리 등)
싱가포르 (2017)	• 15-35세 대상 National Youth Survey 실시. National Youth Council에서 수행 •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과 발달, 청소년 웰빙과 열망 관련 문항 구성

* 연도는 해당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도임.

* 출처: 각 국가별 유엔아동권리 국가보고서.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스웨덴 아동권리지표 웹사이트. https://max18.barnombudsmannen.se/max18-statistik/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스페인 아동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 http://www.infanciaendatos.es/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Daraganova, G. & Joss, N. (Eds.) (2018) *Growing Up In Australia –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18*.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Sarah D'hondt et Catherine Péters (2016). Indicateurs nationaux des droits de l'Enfant. Make them count, Bruxelles, Commission nationale pour les droits de l'Enfant.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Netherland) (2019). Annual Report Youth Monitor 2019 Summary. Statistics Netherlands, The Hague/Heerlen/Bonaire.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10)]

본 연구는 제1기 및 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권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진행되는 연구로,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2기에 해당하는 2013년도에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한 틀을 기본틀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유엔 인권지표 연구 시사점 반영,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변화에 따른 대분류 영역 보완, 2017년 국제적인 SDGs 지표 논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지표항목과 통계자료원 발굴 및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25-2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 구성의 기반이 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를 제시하면 〈표 Ⅱ-3-1〉과 같다.

유엔 국가보고서 지침을 기반으로 한 〈표 Ⅱ-3-1〉의 내용에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발표된 일반논평 내용을 참고하여 지표 개선의 시사점을 얻고 있다. 2020년에는 일반논평 제24호(아동사법)과 제25호 초안(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이 발표되어 이를 검토하고 표에 추가하였다.

10) 본 보고서 34쪽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개발되어온 과정과 지표의 기본틀은 연속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본 연구가 동일하게 공유하는 내용이므로 2019년도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고(김영지 외, 2019: 36) 2020년도 추가 검토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다.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 42, 44(6)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일반논평 제20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 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초안(일반논평 제25호, 2020)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27(1-3),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33조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 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거리의 아동(일반논평 제21호, 2017) • 이주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22호, 제23호, 201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공동) • 아동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4호, 2019)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 원자료: 'UNCRC(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내용을 표로 구성하여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을 추가하고 있음. 2019년에는 일반논평 제21호, 제22호, 제23호를 추가함.
* 출처 : 김영지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pp. 37-40 표에 2020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2건을 추가함(제24호(아동사법), 제25호 초안(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정비

2020년도 인권지표체계 보완과정은 그동안 검토가 부족했던 지표 자료원의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지표영역 중에서는 특별보호조치를 중점으로 보완 검토하였다. 특별보호조치의 경우 주요 인권 이슈가 많음에도 가용 자료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지표항목을 생산하지 못해온 부분이 있다.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심의 에 따라 특별보호조치 분야의 인권이슈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족한 자료원의 경우 생산 필요성을 제안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지표 전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진행하였다.

표 II-3-2. 202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과정

회차	구분	내용	참석자
1	전문가 자문회의 (1차. 6월)	• 인권지표체계 구성 검토 및 자문 • 특별보호조치 세부지표개선 자문(성착취 및 경제적 착취 영역)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3인 • 연구진 4인
2	전문가 자문회의 (2차. 6월)	• 인권지표체계 구성 검토 및 자문 • 특별보호조치 세부지표개선 자문(소년사법 및 이주배경 영역)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4인 • 통계청 사회지표 전문가 1인 • 연구진 4인
3	연구진 회의 (수시)	• 119개 지표항목 자료원 검토 및 정비 • 지표결과 생산을 위한 자료원의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 및 자료원 발굴 작업	• 연구진 4인
3	전문가 자문회의 (10월)	• 인권지표체계 및 지표항목별 자료원 검토 집중작업을 통해 수정안 마련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1명 • 연구진 4인
4	전문가 의견조사 (10월)	• 수정안에 대해 아동·청소년 인권세부지표체계 항목 중요도 및 자료원 적절성 검토 • 점수표에 점수 부여 및 보완사항과 자료정보 관련 주관식 응답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18명

①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1영역은 인권 인프라 관련 지표와 인권의식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된 영역으로 양적 지표가 많지 않고 백서 형식으로 현황을 기술하는 부분이 많은 영역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대안을 크게 뛰어넘는 더 나은 가용 자료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료원의 타당성 점수와 지표항목의 중요도 점수 모두 4점 중반대로 높은 편이었다.

몇 가지 향후 지표 개선 준비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에 아동인권옴부즈퍼슨 현황 파악 제안이 있어 아동친화도시의 옴부즈퍼슨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의 경우 자료원 타당도가 4.40점으로 다른 자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였다. 이는 지표 기술 시에도 언급했듯이 아동·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된 수치가 아니어서 엄밀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태통계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가용 인권교육 통계로는 유일하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청과 지자체 교육도 파악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무부처가 행정적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를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영향평가가 안착될 시 권고 수용률/이행률로 지표를 생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 2-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는 세 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진다. 2-2-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지표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4.40~5.00의 높은 점수를 받아 중요도가 인정되었다.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소분류에서 2-1-3-1. 아동·청소년정

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는 중요도 4.00 타당도 4.25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자료의 경우 연도별로 거의 변화가 없고 지역별 격차를 의미있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 사유로 삭제하였다. 또한 아동총회 개최현황 자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아동 의견 청취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아동 총회 건의사항 및 정부 조치 현황을 추가하였다. 중분류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2-4. 사생활의 보호 지표의 경우 중요도가 4.25~4.80으로 높게 나타나 지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5. 정보접근권에서 2-5-1. 매체 접근율 가운데 2-5-1-1. 매체 이용률과 관련하여 2019년까지는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지표 항목으로 삼았으나,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매체 이용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학생 독서량 지표로 대체하였다. 학생 독서량은 비독서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의 지난 1년 간의 평균 독서량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항목의 경우 2019년에는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최근 1년 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지표가 이미 존재하고, 간행물보다 영상물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지표이므로 지표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를 결정하였다. 소분류 2-5-2. 미디어 리터러시의 경우 2019년 연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2-5-2-1. 매체 이용 교육 경험 지표의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성인용 콘텐츠, 온라인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예방 교육 경험 항목을 자료원으로 추가하였다. 2-5-2-2. 미디어 역량 지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디지털 사용 역량 항목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③ 폭력 및 학대

대분류 3.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2019년까지는 대분류 7. 특별보호조치의 세부 항목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을 3-1-2 소분류로 변경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성착취에 해당 하는 지표항목은 특별보호조치에 포함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지표항목은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3-2-1 학대 및 방임경험 정도에서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부분에 신고접수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와 피해아동 성별, 연령,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을 추가하였으며 사례접수 경로를 삭제하였다. 3-2-1-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에서 대상별 서비스 제공실적을 추가하였으며, 사례종결 중 분리보호 세부 조치사항별 결과,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는 삭제하였다. 이는 원자료의 변경 및 지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④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대분류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의 경우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의 경우 지표항목 중요도가 4.17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삭제하였다. 특히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의 경우 법정 수로 인해 조사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4-1-2-2.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응하여 초등돌봄교실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지표에 추가적으로 온종일돌봄체계를 다루었으며 2020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을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로서 긴급돌봄서비스(코로나19와 돌봄)를 살펴보았다.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항목의 자료원 타당성은 3.64, 지표항목 중요도는 3.75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축약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지표 제목을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수정하였으며 4-3-1-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를 삭제하고 그 중 평가결과를 4-3-1-1. 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본 절에 신설되는 아동보호체계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한 모니터링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동보호체계를 추가하였다.

⑤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대분류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 중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의 경우 자료원 타당성 5.00, 지표항목 중요도 4.56으로 더 다양한 교급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특수학교 이외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추이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5-2-2-1. 범죄 피해율은 지표항목 중요도가 4.78로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온 항목으로 지금까지는 전체 성별에 따른 범죄 피해율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찰 범죄백서를 이용하여 성별, 범죄 종류별 피해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은 5-3-1.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보다는 5-4-1. 신체적 건강에서 다뤄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5-3-1.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지표 항목들 번호가 하나씩 앞당겨 졌으며 5-3-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은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으로 제목이 바뀌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Wee센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에서는 2019년까지 적시하였던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진 의견을 통해 삭제하고 대신에 의료급여 아동청소년비율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을 추가하였다. 5-4-1. 건강에 대한 인식과 5-4-2 신체적 건강을 하나의 소분류로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 5-4-1. 신체적 건강 소분류에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실천률,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1-4. 영역에 비만율과 그 외 질환별 유병률로서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결핍장애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다음으로 대분류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2019년까지 포함되었던 학생 취학률과 학생 진학률 지표 대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표를 추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생 취학률과 진학률을 고려할 때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자료원으로는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자료를 포함하였다. 6-1-2. 학교 부적응률 소분류 가운데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는 해당 소분류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6-2-1-1.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으로 통합·조정하였다. 2019년의 경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로 명명되었던 것에서, 2020년에는 변경된 자료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로 수정하였다.

6-2-2.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표의 경우 SDGs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2019년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실제 지표 항목은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명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에는 6-2-2. 진로·직업교육으로 설정하고,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으로 수정하였다. 6-2-2. 진로·직업교육 지표의 경우 중요도가 4.00으로 다른 지표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학교교육의

목표와 정책적 방향 설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각 지표항목의 자료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진로교육 현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학교 진로활동 참여현황 및 만족도를 자료원으로 삼았고, 직업교육 현황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경험 비율과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 비율,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자료원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 자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분류 6-3. 여가·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6-3-2-1.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지표에 여가활동 실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자료 외에도, 통계청 사회조사의 평일과 주말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만족도,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자료를 추가하여 여가활동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⑦ 특별보호조치

대분류 7.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지표는 4.63~4.88점으로 높은 타당성을 보였다. 2019년의 경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로 명명되었으나 해당 지표의 실제 내용이 난민, 탈북,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임을 고려하여 지표명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로 변경하였다. 또한 통일부 자료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항목은 7-1-2 지표로 이동되

었다.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지표는 4.63~4.88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019년의 경우 해당 지표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태 및 참가율로 명명되었으나 차별경험 항목이 여기로 이동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지표명으로 변경되었다. 구금 현황 항목은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7-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는 4.38점의 타당성을 나타냈다. 2019년까지는 보호프로그램 건수, 심리정서 서비스 건수를 지표 항목으로 삼았으나, 해당 내용이 실제 이용 현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항목으로 대체하였다. 해당 항목은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7-2. 소년 사법에서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지표는 4.80~5.00점의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냈다. 2019년까지는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를 지표로 삼았다가 올해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항목으로 대체되었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 통계, 법무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은 2019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수'에서 대체된 것으로, 소년 수형자의 다양한 현황 자료를 포괄한다.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은 2019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비율에서 지표 내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포함된 지표의 타당성은 4.20~5.00점에 분포한다.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지표는 2019년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 수에서 지표명이 변경된 것이고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2019년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대체된 것이다.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은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발굴하여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7-2-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지표

는 2019년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지표에서 지표명이 변경된 것이다.

중분류 7-3. 경제적 착취 영역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한 가운데 7-3-1. 인권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지표에서는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지표는 2019년까지의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에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7-4. 성적 착취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지표를 3. 폭력 및 학대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은 2019년의 '처벌 강도'에서 지표명이 수정된 것이다. 또한 기존 지표가 처별 규정만을 보여준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실제 처벌률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자료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지표의 경우 2019년까지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서비스 지원 정도에서 지표명이 수정된 것이다.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 지표는 2019년까지 시설 입소인원으로 명명된 것에서 내용을 확대하여 수정한 것이다. 2019년에 포함되었던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연간 성교육 경험률 항목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며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삭제하였고, 새롭게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현황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지표의 경우 중분류 7-2. 소년 사법에서 이동한 것이다.

3)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020년도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한 제3기 4년차 연구로서,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CRC/C/58/Rev.3) (UNCRC, 2015)에 기반한 인권지표체계를 기본틀로 하여 지표체계를 보완해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통계에 활용되고 있어 지표체계 개선작업은 큰 폭의 항목 축소보다는 지표 간결화 차원에서 소폭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지 외, 2019: 63)

최종(〈표 Ⅱ-3-3〉 참조)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에 24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14개 지표항목으로 수정되어 일부 간소화되었으며, 일부 지표명과 항목의 경우 더욱 적절히 재분류되었다. 114개 지표항목들을 대분류와 소분류(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영역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이 11개 지표항목, 제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개, 제3영역 '폭력 및 학대' 10개, 제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1개, 제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28개, 제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3개, 제7영역 '특별보호조치' 25개에 이른다. 그 중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항목은 73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항목은 41개이다.

표 Ⅱ-3-3.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2-5-2-2. 미디어 역량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1-3. 체벌 경험률	3-1-3-1. 체벌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방임 정도*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 실천율*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4-2. 정신적 건강	5-4-2-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2-2. 우울증*
			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2-4. 삶의 만족도*
			5-4-2-5. 자아존중감*
			5-4-2-6. 고민거리대화상대*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6-2-2. 진로·직업교육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평균학습시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출처: 연구진 작성

*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2020년도 수정 혹은 추가된 내용임.

제3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및 2020 심층 모니터링

1.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개요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3. 2020 특별주제 모니터링: 학생인권 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3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및 2020 심층 모니터링[11)]

1.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개요

이 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성과와 과제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다. 협약 모니터링은 매년 수행했던 아동권리협약 7개 클러스터별 정책모니터링과 함께 2020년에 시행된 협약 심층 모니터링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심층 모니터링의 주제는 제5·6차 대한민국 정부 심의과정에서 아동보고서에 기반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학생청소년 인권(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45문단에서 "아동기를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우려함") 주제를 고려하였으며, 2019년 연구에서 10월 발표된 유엔 권고내용 중 우선과제 35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AHP)를 실시한 결과 1순위를 차지한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제를 고려하여 4개의 학생인권조례 지역의 '학생인권상담·구제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1) 3장의 1절과 2절의 1) 부분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2절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별 이행현황'과 '3) 코로나 19와 아동·청소년 인권'은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사무국장이 집필하였다. 3절은 하형주 인권조사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최지혜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고형석 팀장(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허창영 조사관(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이 집필하였다. 3절의 5) 정책 시사점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Ⅲ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매년 수행했던 협약 점검 작업으로, 전체 협약 클러스터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한국정부가 지난 1년간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으로 1)에서는 26명의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였고 2)에서는 협약이행 점검 전문가워크숍과 청소년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정리해낸 부분이다. 3절은 여러 협약 이슈 중에 1개의 심층 이슈로 학생인권 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차례의 현장 방문(서울, 광주, 전주, 경기)과 1차례의 전체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전체 협약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한 과정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과정

회차	구분	내용	참석자
1	전문가 자문회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 이행 관련 시민 사회 동향 파악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주제 선정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1명 • 연구진 4인
2	전문가 워크숍	• 제5·6차 유엔심의 협약 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점검 •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과제별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사항, 장애요인 및 향후 이행 과제 등 정책 과제 논의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6인 • 연구진 4인
3	청소년 워크숍	• 제5·6차 유엔심의 협약 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점검 • 협약 및 권고사항 이행과제별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사항, 장애요인 및 향후 이행 과제 등 정책 과제 논의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활동 청소년 4인 • 연구진 4인
4	전문가 의견조사 (서면조사)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과제수행 기간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26인

표 Ⅲ-1-2. 2020 심층 모니터링 :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모니터링 과정

회차	구분	내용	참석자
1	전문가 자문회의 (방문 면담)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주사·구제 시스템 현황 파악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1인 • 연구진 3인
2	전문가 자문회의 (방문 면담)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시스템 현황 파악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팀장 1인 • 연구진 4인
3	전문가 자문회의 (방문 면담)	• 전북지역 청소년 인권 사안 및 인권조례 관련 현황 파악	• 현장(실천) 전문가 3명 • 연구진 4인
4	전문가 자문회의	• 학생 인권상담·구제 시스템 현안 및 과제 관련 자문	•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1명 • 연구진 4인
5	전문가 자문회의 (방문 면담)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시스템 현황 파악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옹호관 3인 • 연구진 3인
6	전문가 자문회의 (방문 면담)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시스템 현황 파악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1인 • 연구진 4인
7	전문가 간담회	• 학생인권조례 설치 지역(서울, 경기, 전북, 광주) 현황 과제 공유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조사업무 현황 공유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조사업무 담당 조사관 1인 • 학생인권조례 설치 지역 교육청 업무 담당자 4인 • 연구진 4인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1) 협약이행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표 Ⅲ-2-1〉의 35개 이행과제에 대해 '협약이행 노력정도(5점 척도)'와 '과제수행기간(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협약이행 노력정도에 미흡을 선택한 경우, 우수를 선택한 경우 각각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에 중요과제로 추출한 35개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2-1. 2019 인권연구 전문가의견조사 정책과제(35개)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A. 일반이행조치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상소권 관련 협약 제40조제2항(b)(v)유보 철회,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등 제조약 비준, 사법판결에 협약조항 인용, 협약 반영한 관련법 제·개정 등 협약의 국내법 적용 강화
	2.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모니터링 강화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조직(2년 기한의 한시조직) 안정성과 협약 모니터링 역할 및 전문성 확보,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의 아동인권 기능과 전문성 강화 등
	3.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분야 공공지출 확대	아동예산의 정의 및 산출식을 정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아동예산 규모 파악 및 부처별 아동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 GDP대비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 확대
	4.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	아동·청소년 및 관련분야 성인 종사자 대상 아동 인권교육 제도화(학교교육과정, 교사 및 사법관계자 양성과정, 종사자 연수과정 등의 아동인권교육 포함, 인권교육지원법 마련 및 국가인권교육원 설치 등)
	5.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	유엔심의 주기에 따라 협약이행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연도별 이행상황 정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 부처별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법규 마련
B. 일반원칙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협약 제2조에 합치되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아동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확보)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3.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제도 마련 및 입법 조치,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 견해 존중 및 반영
	4. 아동·청소년 안전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석면,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가습기 살균제, 아동·청소년 시설 및 학교 안전,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기후변화와 아동건강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C. 시민권과 자유	**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국내외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2.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구축(학생인권옹호관 등)
	3.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직선거권 및 피선거권, 교육감선거 투표권, 조례주민발의, 주민자치위원등 정치적 참여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4.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표현의 자유, 사생활보호, 자치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사례 확산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사이버 공간의 인권침해 및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D. 폭력 및 학대	**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 정비**	민법 제915조를 비롯하여 가정, 학교, 기타 기관에서의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 폭력 전면 금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
	2. 폭력 가·피해자 대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강화, 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조치 정비
	3.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적 책무성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실효적인 현장조사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4. 학대 피해 (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 관련 쉼터·그룹홈, 전문기관 확대, 학대피해 장애 및 이주아동 위한 특화시설 마련
E.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베이비박스 영아를 포함한 아동 유기 예방과 미혼부모 지원 제도 개선
	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입양 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입양절차 개선을 통한 아동파양 예방, 파양에 따른 아동보호의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파양절차 시 아동 의견 청취권 보장 등
	3. 일반가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탈 시설화를 위한 (조부모, 친인척 위탁 외)일반가정 위탁보호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작업과 지원금 및 세제혜택 지원 등 확대
	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양육시설 및 쉼터에서의 보호 종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5. 대안양육체계 기능 다각화	소규모 대안양육체계 지원 및 기능 강화, 보호·양육·교육·치료 등 다양한 대안양육기관의 기능 다각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영역	정책과제	정책과제 상세 설명내용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 실태 파악, 정신의료기관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상담 접근성 제고 및 자살예방대책 시행 등
	2.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아동·청소년의 주거 빈곤을 포함한 빈곤실태 파악 및 대응책 (주거지원정책 등) 마련
	3. 장애아동·청소년 종사자 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종사자·예산 확대,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훈련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에 대응한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약물남용과 흡연·음주 예방 및 광고 규제 등도 포함
G.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1.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모든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따른 놀이 및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2.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아동·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체계 혁신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협약 제29조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설정)
	3.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초·중등교육 단계 아동·청소년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 등)
H. 특별보호 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이주아동(난민, 무국적 아동 포함)의 출생등록, 교육권 및 사회보장권, 이주아동 비구금원칙,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폭력피해 등 노동권 보장,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대책 등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원 강화,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분류되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청소년성보호법),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제도 개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 처우 개선	판결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의 자유박탈과 인권침해 개선(구금기간 최소화 및 위탁 규정 개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과 소년원 보호처분 아동 분리 수용 보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실질적 기능 모색 및 과밀수용문제 해소와 시설 개선

* 출처 : 김영지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pp.588-590.

표 Ⅲ-2-2. 2020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상황 모니터링(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권 영역	정책과제	진전노력 정도		과제수행 기간
		평균	순위	평균
A. 일반 이행 조치	A-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법체계 강화	1.7	5	2.3
	A-2.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모니터링 강화	2.6	1	1.9
	A-3.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아동분야 공공지출 확대	2.1	2	2.0
	A-4.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및 제도화	2.1	2	1.7
	A-5.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	2.1	2	1.4
B. 일반 원칙	B-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9	4	1.1
	B-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3.1	1	1.3
	B-3.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2.3	3	1.7
	B-4. 아동·청소년 안전 종합계획 수립	2.4	2	1.6
C. 시민권과 자유	C-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2.2	2	1.5
	C-2.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1.6	5	1.2
	C-3.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0	3	1.8
	C-4.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확산	2.6	1	1.4
	C-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1.8	4	1.6
D. 폭력 및 학대	D-1.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관련 법 정비	3.6	1	1.3
	D-2. 폭력 가·피해자 대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강화	2.6	3	1.7
	D-3.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공공성 강화	2.7	2	1.7
	D-4. 학대 피해 (장애·이주) 아동 보호체계 개선	1.8	4	1.8
E. 가정 환경과 대안양육	E-1. 영·유아·아동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2.2	3	1.2
	E-2. 입양사후관리 및 파양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절차 개선	2.0	4	1.8
	E-3. 일반가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4	2	2.0
	E-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3.4	1	1.6
	E-5. 대안양육체계 기능 다각화	2.0	4	2.2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F-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2.3	4	2.0
	F-2.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2.8	1	2.0
	F-3. 장애아동·청소년 종사자·예산 증대 및 통합교육 강화	2.8	1	2.0
	F-4.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증진 방안 마련	2.5	3	2.0
G.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G-1.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2.7	1	2.1
	G-2. 경쟁주의적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8	4	2.5
	G-3.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2.2	3	2.7
	G-4.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체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2.3	2	1.7
H. 특별 보호 조치	H-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2.0	4	1.7
	H-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 대책	2.6	2	1.8
	H-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0	1	1.8
	H-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 처우 개선	2.2	3	2.2

* 노력정도 : 1(매우 미흡)~5(매우 우수). 순위가 높을수록 노력정도가 컸음을 의미함.
* 과제수행 기간 : ① 단기(~2021년), ② 중기(~2024년), ③ 장기(2024~)

전문가 의견조사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진전노력 점수가 높을수록(순위가 높음) 지난 1년 동안 노력 정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과제수행기간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2024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해당 과제의 수행기간을 질문하였다. 진전노력 정도가 대부분 2점 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을 볼 수 있다(전체 평균 2.4점). 1순위로 기재된 것도 상대적 순위이며 진전노력 정도는 3점을 넘어서는 과제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제수행기간의 경우 단기과제로 모아진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시스템 제도화, 영유아기 아동 유기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주관식 의견이 의미가 있는 자료로, 협약 이행현황을 정리한 다음 부분에 청소년과 전문가 워크숍 결과와 함께 녹아들어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별 이행현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일반이행조치는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입법, 조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종합적인 자료수집, 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 적절한 정책·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을 내용으로, 모든 아동이 협약이 정하는 아동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우선 법 제정 관련하여, 위원회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7),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입법예고안은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보건복지부, 2020.10.7.). 구체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시술을 위해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새롭게 설치될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적절한 상담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방안은 부재하다. 더욱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아동학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자료[12]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우려했듯이 아동학대의 낮은 신고율, 반복되는 학대피해아동사망 사건과 높은 재학대율에서 알 수 있는 관련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임신중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연령을 불문하고 임신 14주 이전의 임신중지만 허용하며, 1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낙태죄가 적용된다.

2020년 8월에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8.27.).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단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을 대상화하며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열거하던 한계를 인식하며,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는 법·제도 체계 구축, 아동 및 원가정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등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추진전략은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지역격차 해소와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아동중심'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아동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법·행정절차에서 참여와 의견청취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한 누락 없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 처우로 기능하는 우범소년 제도 개선, 징계권(「민법」 제915조)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 등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촉구한 위원회의 권고가 폭넓게 반영되었다. 다만,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보육

12)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 결정서, 보호처분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서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아동과 관련된 부처별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며, 기본계획의 실효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확보방안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8).

기본계획 등 포괄적 정책의 이행은 정책조정이 핵심이다. 아동은 성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현존하기에, 분야별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부처는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아동을 둘러싼 제반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예컨대,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아동 사용제품의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청이,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제시된다. 그러나 정책의 전 범위를 아울러 중앙과 시·도 단위로 연계되는 일관된 아동정책 체계는 미비하며,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등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논의는 진전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9). 정책조정 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이 공백인 현재,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화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 이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s. 10-11).

일반이행원칙과 함께 일반원칙은 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주아동, 가정환경, 교육환경 등 개별적 사안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는 가시화된 진전을 찾아볼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인권보장

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 실시한 〈차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나타나, 대중의 인식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6.30.).

만 19세 미만 아동도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가 인정된 경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환경부, 2020.4.2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 확대 및 인과관계 추정 요건과 입증책임 완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는[13]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대책 전반에 아동의 특수성을 수용한 변화도 있었다. 아동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도 눈여겨볼 수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14]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대상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15] 지난 10년간 14세 이하 아동의 가장 높은 안전사고 사망 비율이 교통사고인 현실에서(여성가족부, 2019b), 아동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과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한국의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고의적 자해(자살)'이며(여성가족부, 2020.4.27.),[16]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중 '자해 및 자살 문제' 상담은 증가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1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코로나 19로 바뀐 일상'을 주제로 2020년

13) 법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4) 법제처,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5) 법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1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자해 및 자살 문제'로 인한 상담은 전년도(1,660건) 대비 3,29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1388 청소년 상담 원인(2020년 1~8월)도 '대인관계'와 '학업/진로' 관련 상담이 많았던 종전과 달리 '정신 건강(14.4%)' 비중이 가장 높았다(출처: 아시아경제, 2020.10.21.; 통계청 e-나라지표: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불안·걱정' 감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청소년 59.8%, 보호자 82.8%), 청소년은 '짜증(36.6%)'과 '화·분노(28.1%)'를, 보호자는 '우울(38.4%)'과 '짜증(31.3%)' 감정이 차례로 높게 나타난 결과도 있다.[18] 또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 코로나19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혹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19]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환자 65%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신체활동 감소와 게임 이용 시간 증가로 인한 수면시간 감소, 감염 공포와 불안 증가, 사회적 교류 및 외부 놀이 활동 제한, 가족 갈등과 학대 위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내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증상에 대한 조기 개입이 어려운 문제도 언급되었다(Kim Bung-Nyun, 2020).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지하기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한편,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기초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지만(「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

18)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감점으로 "불안/걱정, 두려운, 우울함, 짜증, 화/분노, 공포, 충격, 감사, 평온, 관심, 침착함, 따뜻한, 기타"를 보기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19)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보호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개방형 문항으로 질의하였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 진정시키기,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감소시키기, 화가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대한 상담', '심리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다 괜찮아질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돕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상담' 등"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과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재하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총회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항목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20.8.27.), 전반적으로 참여의 결과가 공적 의제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아동에게 '환류(還流)'되는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은 제3·4차 심의에 이어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된 권고이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1), 기본원칙에 대한 반영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은 '들어야 할' 사항인 반면, 아동의 의사는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견청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20년 6월에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 판결은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고 판시하여, 출생등록의 의미를 확인하며, '사랑이법'으로 알려진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결정). 다만, 위 판결도 가족관계등록법을 근거로 '국민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확인한 아쉬움이 있으며, 한국의 출생등록 체계는 여전히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을 포괄하지 못한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도입은 어떠한 진전사항도 찾아볼 수 없는데, 최근 유기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뉴스핌, 2020.10.22; 여성가족부, 2020.11.16.). 그러나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부모를 알고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도 불가피한 경우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익명출산제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3). 위기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 원가정 지원 원칙의 실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등 아동유기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어떠한 제반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도, 아동의 가족도 보호할 수 없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11.25.).

2019년 12월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정당법」제22조).[20] 그러나 위원회가 특정한 연령 기준 없이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도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공현, 2020.11), 여전히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 하향은 입법적 과제로 남아있다(「주민투표법」 제5조, 「국민투표법」 제7조).

선거연령은 하향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 앞서 학교가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2.6.) 선거교육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만 16세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정당의 당직자가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8.20.자 2020고합94

20)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판결). 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020년 2월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21]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제39조의3 제5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제39조의3 제6항)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의 당사자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동의 없이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제38조 제2항),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직접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실천하되,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예측 가능한 위험은 최대한 예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아동의 디지털매체 접근성이 급속히 확대된 오늘날, 아동은 물론 보호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강미정, 2020.11).

(3) 폭력 및 학대

2020년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공표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등),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보호조치 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현황을 정기적

2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으로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2020.9.28.).[22]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이나,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아동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23]과 기존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제28조의2)이 중복되는데, 일관된 자료수집 체계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정부의 개선의견이 최초로 표명된 이후, 2020년 5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규정 신설 권고'가 있었으며(법무부, 2020.5.8.), 2020년 10월에는 '현행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24] 그 밖에 국회에서 정부안과 같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되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징계권에 한계를 규정하는 방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결과에 비추어 '징계권 삭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

22) 법제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6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23)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아동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부 장관 간 공유규정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7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S0N1D1O2I5E1W0I3J6W1S5A9V3G2)

24)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 (출처: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9323/detailRP)

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기대된다.[25]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정책적 변화는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이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소년보호재판을 받던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임을 분명히 하였고(제2조 6의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제2조 제5호)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으며(제305조 제2항), 아동성착취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엄격하게 강화되었다(양형위원회, 2020.9.15.).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등 여전히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아동을 구분 짓는 낙인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강정은, 2020.11). 새롭게 도입되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입각한 적절한 상담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최근의 강화된 처벌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행위태양에 치우쳐 있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성착취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내 성학대·성폭력 관련 신고센터의 불충분한 인력과 처리 지연, 접근성 문제 등 스쿨미투 대책으로 마련된 후속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26]

25)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회의록(2020.11.26.), p.29-33.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551#none)
26) 제38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7.28.), p.23-24, 43-44.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E&outConn=Y#none)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취약성이 드러난 영역이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이 그 기능을 멈추며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정에 떠넘겨졌으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있는 양육자들은 사실상 아동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김정덕, 2020.11). 2019년 10월부터 긴급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되었으나,[27]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제22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22조의2제5항 신설)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28]

2020년 11월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9]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30]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 아동이 내국인과 동일한 보육료과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하였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만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김진, 2020.11), 난민인정 아동을 제외한 모든 이주아동을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고려

27)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28)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2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90호, 2020. 11. 12., 일부개정]
3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68호, 2020. 11. 12., 일부개정]

할 때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d).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시한 위원회의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2). 한국에서 아동의 시설보호는 일반적인 보호조치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9년 보호대상아동 4,407명 중 시설보호가 결정된 아동은 과반수가 넘는 2,739명(67.7%)이었다.[31]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약 30% 감소하였으나,[32] 같은 시기에 아동인구수는 약 21.1% 감소한 점,[33]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개소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7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이 급격히 늘어난 점,[34]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외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법무부 관할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여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수를 더불어 고려하면, 사실상 아동의 시설보호는 증가한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정부는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등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보건복지부, 2020.5.21.) 2021년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은 9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4백만 원(약 10%)이 감소하였으며,[35] 국가 단위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36] 아동보호체계는

31)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3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
3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출처: https://jumin.mois.go.kr/index.jsp#)
3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
3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상세재정통계DB -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및 추경포함)" (출처: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36) 가정위탁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상해보험료, 심리검사·치료 등이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는데, 양육보조금(12~2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15~50만 원), 자립정착금(대전 5,000~수원 1,000만 원), 대학등록금(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0~500만 원) 등의 지역별 격차가 큰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20.5.21.).

원가정 지원과 가정형 보호 촉진,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를 벗어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한 실질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관점의 전환이 요청된다(United Nations, 2020).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은 법원의 입양허가제만 도입되었을 뿐,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입양제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37] 입양기관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정 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데, 현행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입양기관이 담당하는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기준과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관리, 공적 결연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도 알 수 있다(강정은, 2020). 2019년 기준 전체 입양의 45%가 국외입양이며, 미혼모 자녀의 국외입양의 100%, 국내입양의 85.0%를 차지하는 등(보건복지부, 2020.5.11.) 원가정 양육 지원 원칙과 국내입양 우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입양특례법」 제3조).

한편,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은 제5·6차 심의를 통해 한국에 새롭게 제시된 권고사항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5).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46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결실 구축이 완료될 예정(다만, 원주교도소, 경주교도소, 평택지소, 소산지소, 논산지소 5개 시설은 대용시설에서 가족접견 실시)이며(법무부, 2020.9.14.), 2021년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를 대상으로 일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을 실시하는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을 운영하여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법무부, 2020.11.25.). 일부 교정시설은 '관급지급 유아용품 목록'이나 '유아용품 외부차입 또는 자비 구매목록'을 마련하거나 양육유아거실과

37) 보건복지부 (2020.11.15.). "복지뉴스·이슈 – 아동학대 작년 3만건 넘어…"학대 의심 땐 분리해야" (출처: 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93680)

유아놀이방 등을 운영하여(법무부, 2020b)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 보장적 조치도 조금씩 보완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생후 18개월까지, 수용자가 친모인 경우에만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부모의 체포 및 구속 단계부터 수용단계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을 조력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동안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긴급돌봄은 사실상 공백이었으며,[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기준 특수교사 배치기준(법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은 1,190개소 중 219개소(18%),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176개 중 97개소(55%)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2020.10.7).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장애영유아 돌봄 책임은 오로지 가정이 부담하는 실정으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은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예산을 고려해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단서 조항 때문에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보육, 교육 및 사회참여 등 모든 장애아동의 사회통합과 재사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은 현저히 부족하다.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접근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이나, 이주아동은 각종 정책에서 배제된다.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8) 국회, 2020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년 10월 7일). p. 59-61.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M&outConn=Y#none)

‘4대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0~14세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 정책과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아동은 일률적으로 배제하였다(김진, 2020.11).

한편, 디지털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청소년(만 10~19세)과 유아동(만 3~9세)인데, 2019년 기준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0.2%(고위험군 3.8%, 잠재적 위험군 26.4%)였고,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2.9%(고위험군 2.3%, 잠재적 위험군 20.6%)였다. 특히 과의존 위험군에 있는 유아동의 비율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기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물입군은 0.5%, 과몰입위험군은 2.4%로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며,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모두 PC보다 스마트폰의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아, 2020). 인터넷·스마트폰이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 중앙정부 간 정책조정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연계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청되는 시점이다(최진응, 2020).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20년 7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39]가 제정되며, 전국에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되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부서의 권한 축소 등 기존 조례안의 상당수 내용이 수정되며 ‘누더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겨레, 2020.6.23.).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실현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 단위의 일관된 규준의 필요성을 반증하나, 진전사항은 없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하라’

39)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0. 7. 10.]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 2020. 7. 10., 제정]

는 위원회의 권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5).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배포한 직후, 일각의 문제 제기[40]를 이유로 회수 조치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에 둔 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소수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20.8.7). 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2015년 이후 적절한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이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41]),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교육부, 2020.7.31), 특수교원 확충과 지원 강화, 학교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인적·재정적 자원은 현저히 부족하다(컬쳐타임즈, 2020.7.8).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령별 놀이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김경욱, 2020.11).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 각종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되며, 아동의 놀이·여가, 휴식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위축된 실정이다. 무엇보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권리는 과도한 학업 부담과 경쟁적 교육환경, 학교 서열화와 입시제도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공현, 2020.11).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학교는 학생의 안전이나 배움보다 시험과 성적에 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80.4%였으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40) 제38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8.25.), p. 46-47. (출처: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E&outConn=Y#none)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변화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김경욱, 2020.11).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방지, 학교생활규정과 생활지도 내 차별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및 학생인권 내용을 명시한 법률 제정 등 적절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교육의 목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이은선, 2020.11).

(7) 특별보호조치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United Nations, 2019). 법무부는 2020년 10월 진행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국제 심포지엄'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호 제한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2020b). 그러나 이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유로 14세 미만 아동만 대상으로 하여, 이주아동 구금 금지 권고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3(a)). 2019년 제5·6차 심의 당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하여 한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의 도입에 공감하고 있으며 2018년 말부터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행 추진 자문단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및 회의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42]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현재까지 관련된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4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출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YZcRJyCcxbxocXhKb5ARDZOHaLkMsBJ1wPb3ZejVw/edit?usp=sharing)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으나(국가인권위원회, 2020.5.7),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체계도 공백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는 국내에서 태어나 출입국기록이 없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김진, 2020.11).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는 현재, 적절한 예산 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 기대하기 어렵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3(f),(g)).

한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아동인권 침해 사안에 주목하며, '인터넷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및 '대중매체·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 침해도 인식하여, 보호조치 강화와 권리구제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8).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아동노동의 정의를 재해석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확장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사법 분야는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불구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b)),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는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교육부, 2020.1.15.), 우범소년 송치 건수[43]는 꾸준히 증가하던 중 2019년에 급격히 많아졌다(법원행정처, 2020).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전국 소년원의 수용률은

43) 〈연도별 우범소년 송치건수 (법원행정처, 2020)〉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건수	115	20	59	128	107	131	266	367	526	664	1,114

93.1%이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24.1%,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은 각각 122.9%, 125.0%의 수용률을 보여, 특히 수도권 소재 소년보호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법무부, 2020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4] 개정을 통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제15조의2), 근신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지만(제15조 제4항), 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독방 구금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들에게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15조 제5항) 독방 처우를 정당화하는 실정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j)). 또한, 야간 또는 공휴일을 이유로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건강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은 오히려 축소되었다(제20조 제4항), 특히 법에 저촉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처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관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이를 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은 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사항이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a)(d);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 81(a),(b)), 법무부는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헌법재판소 2012.7.26. 2011헌마232 결정)"라는 이유로, 모든 소년에 대한 무료 법률 조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법무부, 2020b).

4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일부개정]

(8) 요약 및 소결

2019년 10월, 한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권고사항이 채택된 이후 약 1년이 지나는 동안 분명 가시적인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약 15년 만에 다시금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처우하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성착취 개념이 법에 도입되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 상향, 디지털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규정의 강화 등 아동성착취 범죄의 책임을 성인 가해자에게 묻는 관점의 전환이 법 전반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 외에 대부분의 개선조치가 '보호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은 개별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을 핵심요소로 하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자유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인으로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다. 보편적 출생등록을 통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 연령과 소속에 따른 배제 없이 누구나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권리, 어린 연령의 아동도 가능한 한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권리 보장은 지금을 살아가는 아동의 인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에 앞서 보호출산제가 먼저 논의되고, 학교의 운영 주체에 학생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학업성적을 이유로 사회참여와 휴식 등 지금의 권리행사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는 왜곡된 교육현장, 이주아동과 장애아동, 학교밖·가정밖 아동 및 아동사법에 관계된 아동을 원칙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보편적 인권 실현을 핵심으로 정의의 개념을 확장하는 미래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다행히 2020년 새롭게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책조정 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의 입체적 삶을 고려하는 관점이 폭넓게 반영되었다. 출생통보제 도입, 우범소

년 제도 개선, 징계권 삭제, 일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및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여가 활동 지원, 스마트폰·인터넷,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건강관리 강화 등 협약 이행에 따른 공적 책무가 아동의 존재성을 차별 없이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생각건대, 최종견해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으로 현존하는 아동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극복하는 의지의 실천이다. 사회 전반에 아동의 삶이 더욱 확장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차년도 시행계획이 실천적 관점에서 수립·시행되기를 기대한다.

3)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인권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기존에 발표된 10개 조약기구의 각 성명에 더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UNCRC, 2020.4).

1.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건강, 사회, 교육, 경제, 휴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2. 아동이 그들의 휴식, 여가, 문화 또는 예술 활동에 있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3.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거나 학생-교사간 소통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4. 아동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5. 보건, 수도, 위생 및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유지할 것.
6. 제한된 생활을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및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명확히 할 것.
7. 감염병 대유행이 초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욱 커진 아동의 취약성을 보호할 것.
8. 모든 형태의 구금된 아동을 석방하고, 석방될 수 없는 아동에게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9.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지침, 지도 등을 위반한 아동의 체포나 구금을 금지하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아동은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

10.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아동 친화적이고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한 언어와 형태로 예방 방법을 보급할 것.
11.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위원회의 권고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아동의 권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는다. 성명은 특히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의 일정한 개입이 아동을 둘러싼 공적 환경(부모의 노동환경, 교육과 의료, 보건서비스와 같은 공공시스템 운영 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자이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당사국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며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개입 정도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를 말한다. 출생등록,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구금된 아동의 석방에 관한 내용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집단이자 아동 발달에 최적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가족적 환경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아동·청소년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천명한 헌법의 요청은 아동의 삶에 직접 실천되어야 하며(제37조 제2항),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동의 자유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이 코로나19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 건강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자율적인 결정과 주체적인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과정 전반에 사회 일원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모두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기본적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포괄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협약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아동권리 실현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참여와 견해존중의 각 항목이 누락 없이 실천되었는지 살펴보고, 계속되는 감염병 대유행의 시기에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비차별

'경제적 격차 심화'는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 중 하나이다.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양육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기능을 멈춘 시점에 사실상 아동을 가정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전 사회적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환경에 있는 양육자들은 유급병가나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랄라, 2020). 특히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 접근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원 정도에 따라 학습격차가 커질 우려가 지적된다(강대중, 2020).

이주아동은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차별에 노출되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긴급지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지자체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6.11). 이후,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소간의 개선이

있었으나,[45]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교육과 돌봄 공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히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박탈로 나타난다. 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장애학생의 가정을 개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 특수학교는 전국 182개교 중 28개교(15%)에 불과했다(한국일보, 2020.10.6). 장애아동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은 오로지 보호자의 역할로 남겨져,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통합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은 사실상 긴급돌봄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있다. 장애특성에 맞는 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이 마련되지 상황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46]

(2) 생명·생존 및 발달

굿네이버스가 만 4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및 보호자 6,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3.4%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6.8%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정도 전체 응답자의 36.1%에 해당했다. 3끼 모두 먹지 못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35.9%로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 확인된 50.1%의 비율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굿네이버스, 2020).

아동·청소년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이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될 우려도 커졌다. 가족 구성원 모두 외

45)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2293)
46) 국회, 2020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년 10월 7일). p. 59-61.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M&outConn=Y#none)

출 자제가 장기화되면서 부모와 아동 모두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가 줄고, 휴업과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부모의 스트레스도 더 커지며 가족간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학교와 돌봄 기관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진 사정도 있다(김선숙, 조소연, 이정애; 2020).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4월 교직원이 신고한 아동학대 건수는 1,283건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심화된 올해 같은 기간 신고된 건수는 220건으로 82.9%가 줄어들었다(윤혜미, 2020).

국가는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기간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약의 요청에 따라(UN, 1989),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위급한 상황에도 비구금형의,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이주민 수용시설, 국가보안시설, 기타 구금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전염병에 감염되고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UNICEF &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그러나 2020년 8월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24.1% 서울소년원은 122.9%, 안양소년원은 125.0%의 수용률을 보이는 등(법무부, 2020b) 수도권 소재 소년보호시설의 과밀화 위험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밀집된 환경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수단은 면회나 체험학습 중단 등 외부와의 교류 차단이었다. 다행히 전국 11개 소년수용시설(소년원 10개소, 소년분류심사원 1개소)에 폐쇄형 면회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면회를 재개하거나(법무부, 2020.2.14.), 화상면접을 확대하는 여타의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법무부, 2020.4.1.). 구금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는 수단이 아동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구금의 최소화 및 구금된 경우에도 아동이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권리, 시설 배치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받을 권리 보장, 그리고 인원조정과

최소한의 생활환경 구축 등 구금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3) 아동 최상의 이익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단계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던 때, 교육부는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2020.5.4). 이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권 국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연령의 아동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한 것과 대조된다. OECD는 "저학년 아동의 인지 발달 중요성을 우선시하며, 이들의 온라인 등 원격수업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였다(OECD, 2020). "교과과정은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 및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만 하며,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1), 교육부의 앞선 결정은 성적 위주 입시제도와 경쟁적 교육환경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4) 아동참여와 견해 존중

문을 닫았던 학교가 다양한 방역수칙을 준비하며 등교수업을 개시하던 때,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 등)하였다'고 밝혔을 뿐,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교육부, 2020.5.4.). 그러나 등교수업의 주체는 학생으로, 교육의 필요와 안전 보장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늦어진 개학, 갑작스레 시작된 원격수업, 이후 단계적 등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정

책이 학생의 생활에 초래한 혼란은 무엇인지, 정부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교육의 공백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형태의 교육환경이 새롭게 시도되고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하는 학생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아동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때의 아동은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학생참여와 의견청취 없는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결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모든 아동·청소년이다.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으로 소통하는 영유아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자신의 삶에 미치는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주체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대처방안을 알 권리가 있다(랄라, 2020).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이 그 정보를 내재화하는 것은,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아동참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5) 소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삶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급격히 달라진 환경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시각과 관점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아동과 아동집단의 연속적인 삶을 지원할 국가의 책무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행히 새롭게 시작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분절된 아동보호체계를 통합하고,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조력하며, 아동·청소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존재론적 지위가 실현되는 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3. 2020 특별주제 모니터링: 학생인권 상담·구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1) 일반 및 조직 현황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 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한계가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특징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점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37-38). 97,702명이 주민발의에 참여하였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26일 시행·공포되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47](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8조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옹호관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관점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개방형) 공무원으로 함으로써, 외부의 인권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분의 보장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81).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조례 42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를 받아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일을 수행한다.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획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신청이 접수되거나 혹은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인권침해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제도적·구조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교육감 등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83).

표 Ⅲ-3-1.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보장 및 독립성 보장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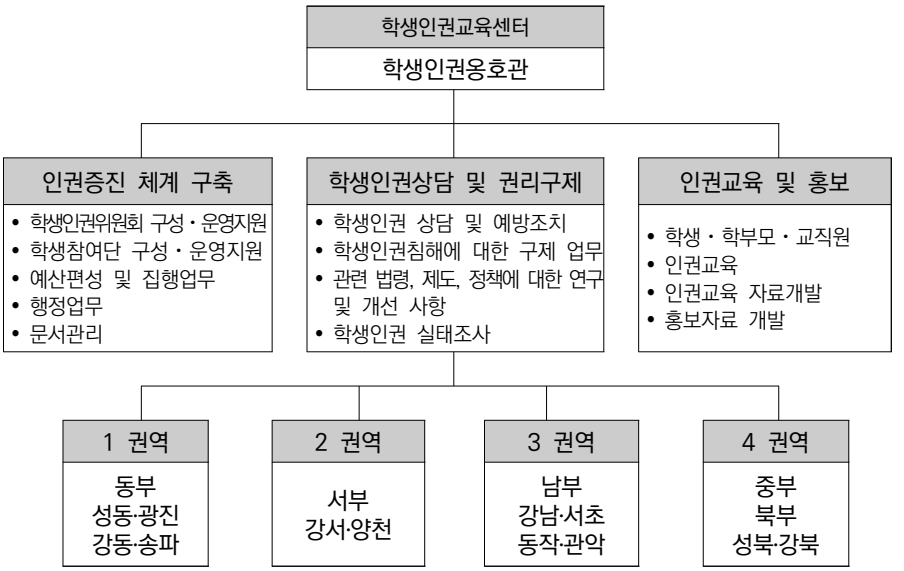
조례명	관련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1.4.〉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3조(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학생인권옹호관은 신분과 독립성은 조례 제38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조례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라는 별도의 조례를 두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증진,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의 3개 기능을 수행하며, 조사·구제의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2016년 3월 교육청 내 성인권정책전문관이 임명되고, 학생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전문관이 각각 임명되어 11명의 인력이 근무하다 현재(2020년 10월 기준)는 성인권정책전문관이 교육청 성평등팀으로 옮기는 등, 조직 개편을 거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연구, 인권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학생인권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인권조사관이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권조사관은 2016년 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권리구제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이 보장되었다. 현재는 인권조사관 중 1명이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형태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속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과 담당 업무는 [그림 Ⅲ-3-1]과 같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센터 안내 2020. 11. 기준
(https://studentrights.sen.go.kr/center/introduce.do 검색일: 2020년 11월 24일)

그림 Ⅲ-3-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추진 체계도

표 Ⅲ-3-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부 서	직 급	담당 업무	비 고
민주시민생활 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총괄	임기제4급
	사무관	학생인권옹호관 지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조정	행정5급
	장학사	학생인권교육 업무 총괄	교육전문직
	행정주사	행정업무 총괄 및 지원	행정6급
	노동인권전문관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총괄	임기제6급
	인권조사관(4)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총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1-4 권역)	임기제6-9급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 센터 안내 2020. 11. 기준
(https://studentrights.sen.go.kr/center/introduce.do 검색일: 2020년 11월 24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및 점검한다.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정책비전 아래 4개의 정책목표, 11개 정책방향, 23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학교인권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인권담당자가 지정됨(2018년)에 따라 인권담당자의 연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한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학교에 안내하여 자율적으로 개정을 유도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 50%를 반영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직 연수 및 인권교육, 학교 인권동아리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48]

표 Ⅲ-3-3.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현황(2018년 기준)

대상/기관	본청		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실시유무	횟수	실시유무	횟수	실시유무	횟수	실시유무
교원	유	1회	유	6과정	유	30회	유(98.4%)
학생	-	-	-	-	무	-	유(43.7%)
학부모	-	-	-	-	무	-	유(37.0%)
기타 (행정공무원)	유	1회	유	3과정	유	11회	교원에 포함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9.9). 학생인권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네트워크 워크숍. p.4.

48) 학생인권 교육자료는 센터 홈페이지 (https://studentrights.sen.go.kr) 및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학생인권, 성평등)에 탑재되어 있음.

최근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현황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현황은 98.4%, 교직원 대상은 43.7%, 학부모 대상이 37.0%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을 지정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자율운영제로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9: 10).

표 Ⅲ-3-4. 각급학교 학생인권 운영학교 현황

대상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근거	조례 제29조제6항	조례 제31조제3항	조례 제31조제4항
지침	학기당 2시간 이상	연 2시간 이상	간담회 등 연 1회 이상
운영학교 수	1316교	584교	495교
운영 비율	98.4%(전체 1337교)	43.7%	37.0%
운영 시수	4.77시간	2.3시간	-
운영형태	•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와 합산한 교육 시수임 • 노동인권, 성인권, 양성평등 등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 ※ 단순히 동영상 시청, 자료(가정통신문) 배부한 것은 교육에 포함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9.9). 학생인권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네트워크 워크숍. p.4.

(2) 인권상담·구제시스템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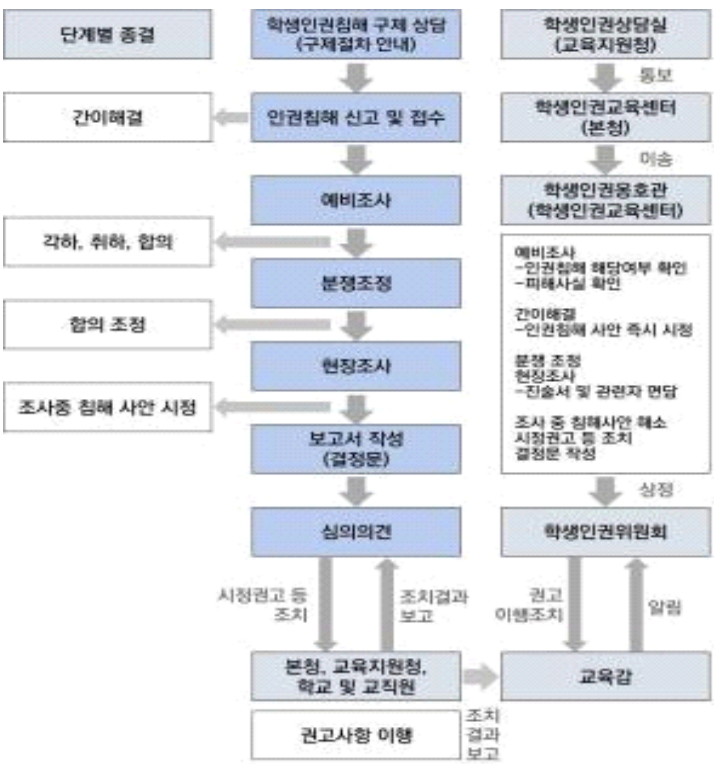
①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업무 및 권한

학생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은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3: 105).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은 독임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조례 제39조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은 분기별로 교육

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고,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에 대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 및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 구제 절차 및 방법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는 학생인권 상담 - 구제 신청 - 조사 - 분쟁조정 - 구제조치의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8.3). 학생이 시민이 될 때. p.107.

그림 Ⅲ-3-2. 학생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

"상담"이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학생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신청 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문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2019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상담은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11개청) 및 인권조사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 후 절차는 간이조치, 안내 후 종결, 구제신청 접수로 이루어지는데, 내담자의 특성상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구제신청의 접수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비공개로) 관계인에게 안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간이조치로 종결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는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및 이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피신청인, 학교의 장 등 관계인에게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 사건에 대한 질의, 사실 확인 또는 정보에 대한 요청, 현장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업무는 권역별 인권조사관이 진행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된 매뉴얼은 조례 48조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지침을 근거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조사관은 설득과 자발적 협조라는 원칙 하에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2019년 3개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권리구제 접수 건수는 473건으로 연간 150건 내외이다. 2018년 권리구제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스쿨미투' 사안이 감사 사안으로 조치되어 구제신청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2018년 이후 성폭력 사안은 별도로 성평등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Ⅲ-3-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접수 건수(2017~2019)

구분	연도별 건수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권리구제	223	86	164	473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0.9). 2020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 게시. p.3.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View.do (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학생인권 권리구제 유형은 체벌(71건), 언어폭력(64건), 징계절차(48건), 개성(45건), 사생활 (41건), 차별(22건), 개인정보(11건)순이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기타 유형(인격권 등 27건)에 대한 구제신청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성(두발, 용의복장 등)과 사생활(휴대전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체벌, 언어폭력, 개인정보에 대한 구제신청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Ⅲ-3-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권리구제 유형별 현황(2017~2019)

상담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5조	차별	9	7	6	22
6조	체벌	34	7	30	71
	언어폭력 등	21	9	34	64
	성폭력	0	0	2	2
	기타	7	3	17	27
7조	위험	0	0	0	0
8조	학습	4	2	4	10
9조	정규교과외	17	1	3	21
10조	휴식권	0	2	0	2
11조	문화권	0	0	0	0
12조	개성	29	11	5	45
13조	사생활	23	10	8	41
14조	개인정보보호	1	1	9	11
15조	개인정보열람	0	0	0	0
16조	양심·종교	3	4	2	9
17조	의사표현	2	0	0	2
18조	자치활동	3	2	2	7
19조	학칙제·개정	3	2	0	5

상담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조	정책결정	0	0	0	0
21조	학교복지	0	0	0	0
22조	교육환경	0	0	1	1
23조	급식	1	0	0	1
24조	건강	0	3	2	5
25조	징계절차	20	7	21	48
26조	권리수호	0	0	2	2
27조	상담조사청구	5	0	0	5
28조	소수자권리	0	0	0	0
기타		35	10	15	60
학교폭력		6	5	1	12
총 합계		223	86	164	473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0.9). 2020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 게시. p.3.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View.do (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③ 학생인권 판단 결정 구조 및 현황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치는 '기각', '학교조치', '권고'로 이루어진다. '기각'의 경우에는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결과 구제신청의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각된 사건이라도 향후 학생인권 예방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컨설팅 의견(문)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조치'의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학교의 장이 신청인 또는 피해학생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거나 사건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조치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학교조치로 종결하고 있다. 다만 학교조치(조사 중 종결)로 종결한 사안이라도 학생인권 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검토의견 또는 후속조치를 관계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권고'의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이다. 권고의

형식은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권고문' 형식과 '공문권고'(후속조치를 권고하는 형식)로 진행하고 있다. 권고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1) 사건이 중대하여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경우, 2) 사건의 결과가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의견표명의 내용이 학생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의 개선을 도모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4) 그 밖에 옹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이며, 결정례의 양식을 취하지만 형식에 변화를 주는 등 권고를 받은 관계인을 고려하여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문 권고는 별도의 권고문이 없이 공문에 권고의 취지를 담아 후속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본청 소속이고 관계인이 소속기관이라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후속조치에 더 염두를 두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 Ⅲ-3-7〉의 처리 현황 중 각하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해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조례47조제3항). 하지만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더라고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조례 48조 제1항). 민원답변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접수된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해당 법령에 따라 답변을 한 경우이다. 회신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다른 기관 또는 이첩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에 답변을 한 경우이다.

표 Ⅲ-3-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현황(2017~2019)

구분	처리								
	각하	종결 (조례 49조)						기타 (회신)	계
		권고	분쟁조정 (학교조치)	민원 답변	기각	취하 (보류)	중지		
2017년	26	16	51	82	16	22	0	10	223
2018년	19	13	17	10	12	11	0	4	86
2019년	13	27	35	15	25	44	0	5	164
누계	58	56	103	107	53	77	0	19	473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0.5). 2019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내부자료)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다음 〈표 Ⅲ-3-8〉은 지난 3년 간의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권고 및 이행 현황을 보여준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권고를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에 대한 이행률은 조사 중 이미 이행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교 및 교육감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의 조사가 협조를 통해 진행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조사 단계, 중재 단계, 학교방문 단계에서 관계인과 협의와 컨설팅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권고 단계에서는 해당부서 및 실무부서와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해 사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Ⅲ-3-8.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권고 및 이행 현황(2017~2019)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권고	권고문	15	13	17	45
	공문권고	1	0	10	11
	합 계	16	13	27	56
수 용		16	12	27	55
이행률		100%	92%	100%	98%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0.5). 2019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내부자료)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아래 〈표 Ⅲ-3-9〉는 조사 현황으로 예비조사와 현장조사에 대한 현황이다. 예비조사는 인권침해 사안이 학생인권조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로 착수 전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친다. 현장조사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되고 있다. 현장조사는 사전에 학교 질의와 피신청인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 후 관계인 진출청취,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등을 학교 방문을 통해 조사 및 협의하는 과정이다. 전수조사(설문조사), 참고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 인원, 면담 인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현장조사는 피해학생 소속 교에서 원칙적으로 진행되지만 참고인의 신분 보장, 진술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표 Ⅲ-3-9.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현황(2017~2019)

구분	연도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권리구제 접수 건	223	86	164	473
간이해결	-	-	-	
예비조사	201	75	131	407
분쟁조정(학교조치)	51	17	35	103
현장조사 건	54	41	97	192
결정문(권고문)작성	15	13	17	45
시정권고	16	13	27	56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0.5). 2019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내부자료)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례와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담신고→ 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의 '학생인권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성과 및 과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리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고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3).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은 학생의 인권 보호에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구제기구의 필요

성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언적 인권에서 실천적 인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1)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5), 2) 아동의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8), 3)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직접 진정하고,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 4) 조사구제 기능은 학생들의 민원을 처리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권문제를 학생들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구제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권리구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들이 지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위상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현재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내 하나의 팀에 위치하는 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는 이상 독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학생인권은 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이면서 동시에 교육청 내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이다. 즉,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 내 하나의 부서로서 기능을 가지면서, 교육청 전체의 인권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임무도 동시에 지닌다. 조례 39조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제42조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교육전문직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별도로 학생인권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위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3: 110-111).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1) 일반 및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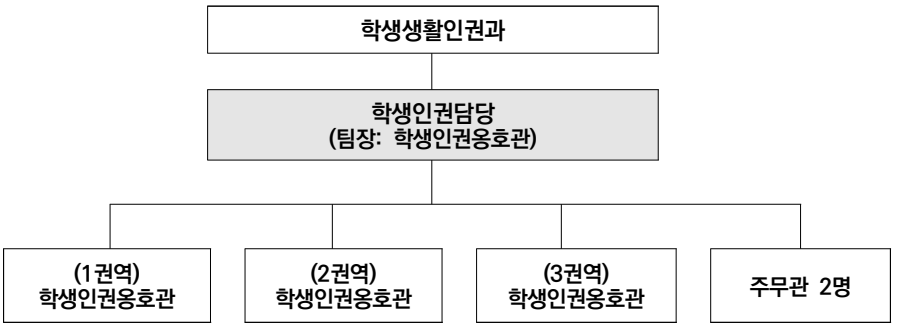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를 2010년 9월 17일에 제정하여, 2010년 10월 5일 공포된 이래로 학생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5월 2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49] 제39조의 근거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학생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자기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서미향, 이우창, 조성범, 이한섭, 이정연, 공현 외, 2020: 8)을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인권상담·구제기구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 기구는 초기에 권역별 사무소를 세 곳에 설치하여 각각 학생인권옹호관(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1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을 두어 상담·구제 직무 중심으로 운영하였고(인권교육 등 정책업무는 당시 본청 학생인권지원과 부서 담당), 2016년 9월 이후에는 본청의 과[50] 내 팀으로 통합하여 학생인권옹호관 4명(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1명,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3명), 주무관 2명(일반직공무원 6급 1명, 8급 1명)을 구성해 상담·구제 직무수행 및 인권교육 등 정책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조직된 학생지원센터(학생인권,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폭력 등 관련업무 담당)에서 지역의 학생인권 관련 상담과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50) 2016년 9월~2019년 2월: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3월~2020년 11월 현재: 학생생활인권과



출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main.do 조직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3-3.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조직 현황

표 Ⅲ-3-10.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담당팀 주요 업무

영역	업무내용	비고
학생인권 보호기반 조성	학생인권옹호관 상담·조사·구제	
	학생인권 관련 법률 자문	
	학생인권옹호·구제 월별 활동 보고	
	학생인권조례 및 옹호·구제 시스템 정비	
학생인권 존중문화 형성·확산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학교 내 인권교육 지원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 연수 운영	
	학생인권 강사단 구성·역량강화	학교 내 교원연수 지원
	학생인권 사례·콘텐츠 등을 통한 홍보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 운영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지침 안내	
학생인권 증진체계 실현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의견 수렴 기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학생인권 정책 심의 기구
	학생인권 증진 정책 연구 및 추진	
	3개년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운영	

* 주. 현행 업무 영역 및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표 Ⅲ-3-11〉은 지난 3년간의 학생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보여준다. 교육대상별로 학생인권교육 실시 비율은 교원, 학생, 보호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도움 여부는 교원 및 보호자와 학생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11. 학교의 교육대상별 학생인권교육 실시 현황

문항내용	연도	교육대상		
		학생	교원	보호자
학교에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	75.2	99.0	42.5
	2018	71.2	98.2	40.9
	2019	57.5[51]	96.9	45.9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신장(보호[52])에 도움이 된다	2017	75.3	-	85.4
	2018	74.2	-	89.5
	2019	78.9	94.4	93.5

출처: 이정연 외(2017).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외(2018). 2018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외(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2) 인권상담·구제시스템 운영현황

①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업무 및 권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39조 제1항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근거를 밝히고, 동조 제5항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1) 2019년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문항에서 '실시'를 '참여'로 변경하여 실시하였고, 참고로 교원은 학생대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 98.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52) 2019년 교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으로 진행하였고, 2017-2018년 교원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관련문항을 진행하지 않음.

표 Ⅲ-3-12.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권한 규정

관련 조항	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조례 제41조 제1항)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의 공표 - 기타 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나. 직무 수행을 위한 권한 (조례 제44조 내지 제45조)	-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교원) 대상 자료요청권, 질의권, 방문조사권 - 중대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 대상 통보권 - 시정권고 후 권고대상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권한 등
다. 학생인권조례 업무관련 기타 권한 (조례 제35조)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심의 등

출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② 학생인권 구제 절차 및 방법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구제는 2011년 5월 설치 이후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운영 및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총 8,273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이 중 조사는 1,405건이 접수돼 1,103건의 구제조치(권고, 간이해결[53])가 이루어졌다. 상담 및 구제신청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고 상담·조사·구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53) 간이해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제신청의 취지를 만족시키는 조정(調停)적 해결방법



출처: 남태훈, 이한섭(202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초·중등 수업 자료. 경기: 경기도교육청. p.16.

그림 Ⅲ-3-4.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구제 절차 흐름

표 Ⅲ-3-13.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2017-2019년)

연도	상담	조사접수	구제조치
2017년	706건	74건	67건
2018년	722건	42건	25건
2019년[54]	669건	40건	33건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9a). 내부자료: 학생인권 보호활동 보고(2019년 2월~2019년 12월).
경기도교육청 (2019b). 내부자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상담현황(2017년 1월~2019년 1월).

표 Ⅲ-3-14.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유형별 현황(2017-2019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차별	17	20	12
체벌	31	12	3
언어적 폭력	26	11	6
학교폭력(성폭력 제외)	80	90	82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41	38	17
학습에 관한 권리	6	9	23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2	0	0
개성실현(복장, 두발 등)	25	13	22
사생활의 비밀/자유(휴대전화, 개인정보)	35	37	60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2	7	10
자치활동, 참여권	24	22	18

54) 2019년 9월에서 10월 일부 기간동안 학생인권옹호관 전원 재채용에 따라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잠시 중단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부당징계(학교폭력 절차 포함)	141	184	162
기타	276	279	254
합계	706	722	669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9a). 내부자료: 학생인권 보호활동 보고(2019년 2월~2019년 12월).
경기도교육청 (2019b). 내부자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상담현황(2017년 1월~2019년 1월).

③ 학생인권 판단 결정 구조 및 현황

조사 사안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학생인권옹호관이 '독임제' 형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되 중대한 사안이나 결정문 형식의 권고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선 학생인권옹호관 4명이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을 겸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조사·구제 결과는 매월 내부결재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사례는 갈무리하여 학교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자료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표 Ⅲ-3-15.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주요 권고 사례

영역	사례 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만을 기준으로 정독실 이용 학생을 선발한 학교에 대해 이용 기준에 차별이 없도록 시정 권고
	위장전입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정의 가족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바보 같은 XX'라고 욕한 교사에게 엄중 경고 후 학교장에게 교사대상 인권연수 및 재발 방지 노력 권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회 반복하게 한 교사에게 학생(보호자) 대상 사과,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자녀의 따돌림 피해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담임교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의 학생관계 개선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되지 않음에 대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교육에 관한 권리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학습권 침해라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보호자에게만 묻는 것에 대해 학생 의견을 존중하도록 권고

영역	사례 요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수업내용을 CCTV로 촬영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 대상 주의조치 및 전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학교에서 수집된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기관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관련 정보주체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권고
복지에 관한 권리	여름에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현재의 냉방시설 한계 및 예산 문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선도위원회 개최 통지를 개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위원회 전날 구두로만 알린 것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개최를 연기하고 서면 통지할 것을 권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생인권옹호관 대상 구제신청 후 학교에서 구제신청 제기학생을 수소문한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해당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향후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것을 권고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비장애학생들이 발달장애학생을 괴롭히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의한 조치와 장애학생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지체장애학생이 현장학습에 가려면 보호자가 보조 인력으로 참여해야 하고 어려운 경우 현장학습을 가지 못한다는 학교의 안내에 대해 지역 복지기관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대체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연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김형욱, 김민태, 김태영, 허연실, 전지선, 조현정, 구선회 외(2013).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pp.20-86.

(3) 성과 및 과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만큼 학생인권옹호관 최초 설치 외에도 학생인권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의견수렴기구 운영(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의 날 운영(현재는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로 의미를 확장), 학교 내 인권교육 운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 연수 운영, 3개년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운영 등을 선도하였고, '교문지도 폐지'(2010년), '9시 등교'(2014년), '상벌점제 폐지'(2014년),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2017년) 등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① 경기도 내 전체 학교[55]의 학교생활인권규정[56]을 인권적 관점에서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 증보와 학교의 생활인권담당 교원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② 차기년도 기본계획,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실태조사도 꾸준히 실시(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주관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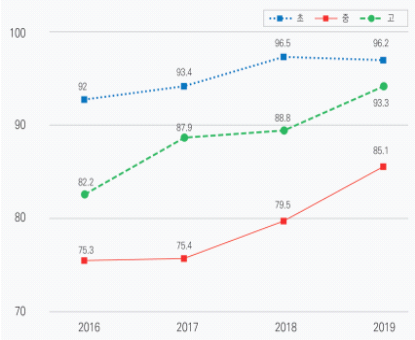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 기구는 초창기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점과 내부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점이 바탕이 되어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인권적 기준과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연수 업무는 상시 업무로 안착되어 학교의 주요 업무(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 방향을 이끌면서 본청-교육지원청(학생지원센터)-학교를 '인권'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심 정책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체벌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전체 평균 10% 미만으로 떨어짐),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비율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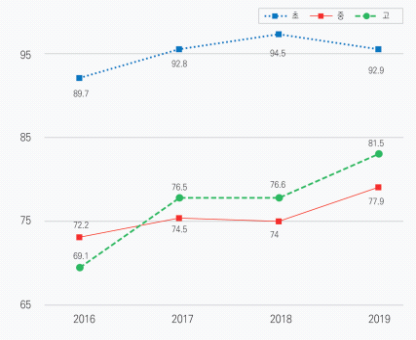
이외에도 지난 실태조사 결과 추이를 비교해보면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학생응답 비율도 2011년 자체 실태조사 결과 51.9% 이후 2016년 66.4%, 2017년 74.8%, 2018년 76.1%, 2019년 86.0%로 늘고 있고, 소지품 검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학생응답 비율도 2011년 자체 실태조사 결과 49.0% 이후 2016년 91.6%, 2017년 94.3%, 2018년 90.2%, 2019년 93.0%로 90%를 웃도는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1; 이정연 외, 2016, 2017, 2018, 2019).

5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5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기재하도록 규정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명명한 학교규칙 명칭



교사 체벌 미경험 학생응답 추이(%)



교사 언어폭력 미경험 학생응답 추이(%)

출처: 이정연 외(2016).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외(2017).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외(2018). 2018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외(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서미향 외(2020). 학생인권의 광장-인권, 학교와 마주 본 10년의 여정. p.28에서 재인용.

그림 Ⅲ-3-5. 교사의 체벌·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응답 4년 추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10년 동안 이처럼 주요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성찰하고 새롭게 고찰해야 할 다음의 과제들이 있다.

첫째, 학생인권옹호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은 계속되는 과제이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함(제39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과, 팀 내 팀원(일반임기제공무원 5급~6급)으로 구성돼 있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조). 구성원 서로가 연결되고 졸업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는 인권옴부즈퍼슨으로서 학생인권옹호관이 개별사안의 인권침해 여부와 책임 있는 자를 변별하고 사안 중심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향후에는 학교 안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관계망을 분석하면서 피해학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침해가

일어난 학교의 결핍을 충족하고 개인에서 모두로, 즉 학교 전반의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정자 및 촉진자로서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앞서 평가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정책 업무의 10년간 다져진 입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해당 업무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의 원칙과 동향을 학교마다 규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하여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을 개선하고, 경기도 전체 학교와 만날 수 있는 장(25개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 교원대상 연수 강의)에서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맺어진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자발적 사안 컨설팅 신청을 이끄는 계획을 통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사안에 대해 자문·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는 등 역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옹호 기구가 본청으로 통합된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 관련 상담·민원처리 업무가 본청과 분리돼 있는 과제가 있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

둘째, 왜 학생인권교육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대상 학생인권교육을 99.2%~100%(2018-2019년) 실시하고 있다고 제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18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답은 70%대에 머물렀고(교원은 98.2%~99.0%가 실시하였다고 응답), 2019년 '실시'를 '참여'로 문항을 바꾸자 학생들은 57.5%만이 참여하였다고 응답(교원은 98.5%가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57]

교원과 학생의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해당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방법적 측면(강당에서 하는 집합식, 강의식 교육 등)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이 아닌 장애인식개선교

57) 참고: 경기도교육청(2020a). 2020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기본 계획.

육이나 노동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하고,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인권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적 측면과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성찰해야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실효적 학생인권교육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로 학생인권교육을 포함해 학교안전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진로체험교육 등 28가지 교육활동을 각각 적게는 연 1시간에서 많게는 연 51시간이나 편성해야 하는 형편[58]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범교과 학습주제 교육을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하에 실질적으로는 감축해야 하는 사정은 학생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이 ① 학생들에게 왜 필요하고 ② 법령에 따른 여러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③ 어떻게 주어진 여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고 이에 대해 학교가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체벌금지와 두발자유를 넘어선 학생인권의 뉴-노멀을 탐구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부터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까지 23개의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에는 체벌금지, 두발자유, 강제야자폐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통신의 자유 등 일부 권리만이 중심이 되어 이슈화되고 논의되어 왔다. 코로나19 상황은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시대로 당면하게 된 것이 오히려 개개인의 학생 목소리를 더 감추는 안타까운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최근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2020년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일정과 원격수업 방식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올해의 이 위기는 여전히 학생 당사자의 목소

58) 참고: 경기도교육청(2020b). 내부자료: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교육활동 검토 요청.

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먼 현실을 자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학생인권옹호 기구는 권리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대두되는 학생인권의 뉴-노멀을 탐구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을 전망해야 한다.

표 Ⅲ-3-16. 2020년의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조례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2020년 총회 의견 중에서
“학생은 자유롭게 꿈 꿀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 상 배움은 곧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학생들이 진정한 십대를 보낼 시간도, 십대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도, 꿈을 찾아갈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알려주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면 좋겠다.
“하루 중 몇 시간은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보장 조례를 만들어 그 시간만큼은 학생들 마음껏 놀거나 게임하거나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학생은 부모님들의 시간표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놀고 싶지만 부모님이 짜놓은 시간표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맘껏 놀지도 못하고 잠도 제때 자지 못한다.

출처: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2020).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1) 일반 및 조직 현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59](이하 "조례"라 함) 는 2010년 6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이후 지역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 2013년 7월 제정되었다.

조례는 크게 총칙, 권리목록, 이행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칙은 조례를 만든 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권리목록에는 학습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기구로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문기구인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목록에 대해 보장하는 활동을 직접 집행하는 실행하면서 학생참여위원회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으로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례 제42조, 제46조[60]에 따라 2014년 8월 1일 설치되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인권에 대한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에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정책 및 교육업무,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 업무,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로 나눌 수 있다.

---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60) 조례 제42조(학생인권 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표 Ⅲ-3-17.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구성

업무 담당자		담 당 업 무	
구분	직급		
센터장	인권옹호관	○ 학생인권교육센터 총괄	
정책 교육팀	장학사 2명, 교사 1명	○ 인권 관련 정책 개발 ○ 인권실천계획 ○ 인권실태조사 ○ 인권교육 ○ 학생자치활동 ○ 학교생활규정	○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및 인권교육 연구 동아리 ○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 학생인권의 날 및 학생인권 토론회 ○ 홍보 및 센터 누리집 관리 ○ 노동인권교육
조사 구제팀	조사팀장 1명, 조사관 3명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권고 등의 조치 ○ 결정례 공포 및 안내 ○ 방문 상담, 방문 조사 ○ 인권모니터링 ○ 성 인권 상담 및 조사 ○ 회복적 인권교육	
행정 지원팀	주무관	○ 인권교육 관련 예산·결산 ○ 학생인권교육센터 행정, 복무, 인사 ○ 학생인권교육센터 시설관리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http://school.jbedu.kr/human/M010202/ (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 관련 정책 개발은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학교생활규정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인권교육업무는 사제동행인권동아리 운영,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운영,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28조에 근거하여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의날'(서로 존중하면 사이가 좋아져요! 사이 좋은 날 학생인권의날)로 지정하여 각종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학생차치활동 업무로는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학생회 예산 1% 확보 등을 하고 있으며, 조례 제41조에 근거하여 학생인권과 관련한 자문기구로 학생 50명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고, 학생인권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29조에 근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대면상담,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상담은 조례 제27조, 제49조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 접수는 조례 제27조, 제45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50조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접수하였을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료요구 및 질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28조에 따라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 기각, 인용(시정권고, 합의종결)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2) 인권상담·구제시스템 운영 현황

①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업무 및 권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예산, 인사 등은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권옹호관은 조례 제43조, 제45조[61]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총괄

61) 조례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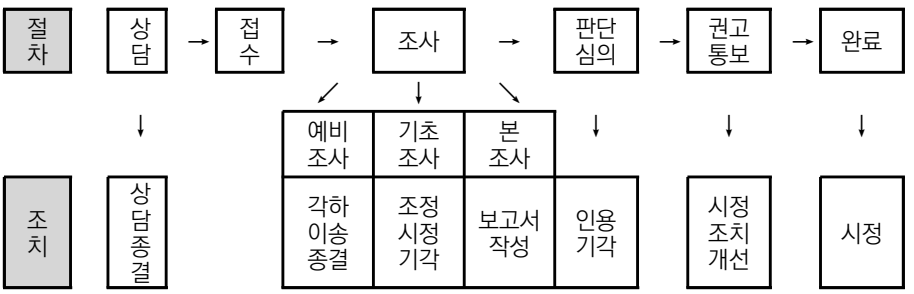
조례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하는 위치에 있으며, 상임 1인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요구,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위의 내용에 대한 공표, 학생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인권옹호관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인권옹호관의 업무 중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공표 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조사팀장 포함 4인의 조사관이 있다.

② 학생인권 구제 절차 및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 및 구제 절차 처리를 하고 있다.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2020b). 내부자료: 학생인권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그림 Ⅲ-3-6. 학생인권교육센터 사건처리 흐름도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은 해결될 수도 있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건으로 접수한다. 접수한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들은 사건 내용검토, 당사자 및 참고인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 조사를 통해 각하, 기각, 당사자 합의 등에 대해 검토를 한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인권침해의 중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예방책 마련 등을 권고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조사는 크게, 예방적 권리구제, 사후 권리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적 권리구제는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며, 사후 권리구제는 이미 발생한 학생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특정 부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문조사[62], 학생인권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63]는 예방적 권리구제에 해당된다. 학생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여 실시하는 구제신청조사, 중대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힘든 경우(예, 언론보도, 지역 내 소문 등)에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으로 실시하는 직권조사는 사후 권리구제에 해당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조사의 종류 및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조사의 종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따라 방문 조사, 직권 조사, 구제신청 조사, 실태 조사로 구분되며, 조사 결과 조치는 시정 권고, 구제 조치,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2) 학교 선도부 운영 방문조사(2016년), 기숙사 운영 방문조사(2017년), 학교복지시설(2018년), 여성 운동부 성관련 실태(2019년) 등.
63) 2020년 학생인권실태조사 등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Ⅲ-3-18.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의 종류 및 특성

구 분	방문조사	직권조사	구제신청조사	실태조사
근 거 (조례)	제45조 1항 4호	제45조 1항 2호	제27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33조, 제45조 1항 4호
조사주체	인권옹호관 또는 외부전문가 조사위임	인권옹호관	인권옹호관	인권옹호관 또는 외부수탁기관
조사방법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 또는 위탁
조사 전제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실태파악)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인권침해 관련 광범위한 조사
조사검토	심의위 의결	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접수	심의위 의결
결과 조치	정책과 관행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구제조치 등 권고	구제조치 등 권고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교육, 업무추진 자료
특 징	예방적 권리구제	사후 권리구제	사후 권리구제	예방적 권리구제
조사시 제약 사항	조사시 입회 허용 피조사기관 협조	사전통보 입회 불가	입회 불가	기관 방문시 관계직원 동반
의의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취약집단에 대한 적극적 업무 수행	학생의 구제신청권 보장	다양한 인권문제 및 인권실태 파악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2020b). 내부자료: 학생인권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③ 학생인권 판단 결정 구조 및 현황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등 조사업무는 내부 규정으로 1개 지침과 3종류 매뉴얼(2014.11.1. 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은 상담 및 조사관의 업무 원칙, 상담서 작성, 조사 절차, 종결 절차 등 조사 전반 실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조사 매뉴얼'은 직권조사 실시 요건, 실시요령, 종결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방문조사 매뉴얼'은 방문조사 실시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매뉴얼'은 상담 및 조사 업무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관련 조사의 처리 및 결정에 대해 인권옹호관과 심의위원의 결정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례에는 독임제와 합의제의 요소

가 혼재되어 있어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교육구성원 및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일부 각하 및 기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인권옹호관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리구제에 있어서 신속(신속성)하고 신중(공정성)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다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하, 기각, 인용 처리에 있어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인권옹호관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3-19〉와 같다.

표 Ⅲ-3-19. 학생인권교육센터 사건 처리방식 구분

처리구분	인권옹호관 결정	심의위원회 결정
각하	조사대상 아님, 명백히 거짓, 동일한 사안 신청, 신청인 취하	1년 이상 경과, 기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각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권침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불필요 경우
인용	민원처리로 종결하는 사안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사안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2020b). 내부자료: 학생인권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학생인권 사안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관들은 기초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에 따라 종결되기도 하며, 상담시 학교에 요구사항, 당사자 사과 등 상담자의 의견에 따라 종결되기도 한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초조사, 상담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구제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직권조사는 인권옹호관의 결정으로 실시하는 사건이므로 큰 변화는 없다. 2018년부터 성(性)과 관련한 사건을 특별히 분류하여 처리를 하고 있다.

학생인권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2014~2020년)은 아래와 같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판단하고 종결한 사건은 구제신청, 직권조사, 성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3-20. 상담 및 조사구제 현황(2014.11.1.~ 2020.10.30.)

구분	민원처리	상담	구제신청	직권조사	성사안	사건 누계
2014	-	29	13	2		15
2015	-	151	59	8		67(82)
2016	76	128	39	2		41(123)
2017	81	141	32	4		36(159)
2018	73	148	6	4	13	23(182)
2019	33	152	8	5	15	28(210)
2020	40	77	8	2	1	11(221)
계	303	826	165	27	29	

출처: 전라북도교육청(2020a). 내부자료: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현황.

구제신청, 직권조사, 성사안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 개선요구 빈도수가 발생한다. 빈도수는 고등학교 112건(5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고등학교가 특히 인권침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인권침해는 공·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데, 사립학교가 약간 더 많이 발생한다.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는 모두 공립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전라북도 중·고등학교는 공립 233교(63%) 사립 133교(37%)인 반면, 사건은 공립 80건(45%), 사립 95건(55%)이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은 여전하다. 학생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체벌, 욕설, 폭언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체벌 등 103건(46%), 욕설, 폭언 등 40건(18%)으로 전체 사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학생인권침해 문제는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21. 사건 영역별 현황(2014.11.1.~ 2020.10.30.)

구분	세부구분	건수	비율(%)
학교구분1 (초중고)	초등학교	46	20
	중학교	63	29
	고등학교	112	51
	합계	221	100
학교구분2 (국공사립)	국공립	126	57
	사립	95	43
	합계	221	100
행위구분 (건수 중복)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03	46
	인격권	40	1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6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2.2
	소지품검사 및 압수	5	2.2
	학습권 침해	5	2.2
	개성을 실현할 권리	4	2
	차별	6	3
	통신의 자유 제한	3	1.3
	종교의 자유 침해	3	1.3
	성폭력	28	13
	자치활동의 권리	3	1.3
	급식에 관한 권리	1	0.4
	기타	9	4.1
	합계	221	100

출처: 전라북도교육청(2020a). 내부자료: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현황.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은 개선을 요구하는 피해자 등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개선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면 취하를 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직권조사는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옹호관의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 인권침해의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실시하므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3-22. 조사구제 처리 현황(2015. 1. 1. ~ 2019. 12. 31.)

구분	구제신청	직권조사	구제신청		직권조사		누계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2015	59	8	4	55	8		67
2016	39	2	1	38	2		41
2017	32	4	0	6	4		36
2018	6	4	0	7	5		10
2019	8	5	0	7	5		13
	136	18	13	123	18		154

출처: 전라북도교육청(2020a). 내부자료: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현황.

학생인권침해로 판단(인용)하였던 사안을 살펴보면, 체벌(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4], 인격권[65], 사생활의 자유[66], 학습권[67], 자기결정권[68]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69], 통신의 자유[70], 성희롱[71], 자치활동의 권리[72], 기타[73] 등과 관련이 있다(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2020).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처리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결정문)를 교육감 등에게 권고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정문을 전달받은 교육감은 권고의

64) 부적절한 도구(식칼)를 사용하여 체벌, 일상적인 머리 툭툭치기, 꿀밤, 휴대전화 사용 등 이유로 지시봉, 손바닥, 컵으로 머리 폭행, 나무 막대기로 어깨 찌르고, 주먹 쥐고 손들고 있기, 운동장에 햇볕 아래 장시간 세워 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에게도 시킴, 전체 학생 책상위로 올라가 무릎 꿇게 함 등

65) 일상적인 욕설('새끼') 사용,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둠,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함, 욕설한 학생에게 양말을 물리고 사진 찍어 홈페이지에 게시, 흡연 여부 확인하려고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소변 채취 등

66) 교실에서 손을 드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가정환경조사,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상벌점 내역 공개, 핸드폰을 강제로 열어 살펴봄, 강제 소지품 검사(담배 압수, 화장품 압수, 도난 이유) 등

67)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육과정에 있는 진화론 가르치지 않음, 강제로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실시 등

68) 거짓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을 진학시킴(자기운명결정권), 수업 외 시간에도 앞문 사용 금지(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69)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놀지 못하게 하고, 공개적 반성 강요,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함,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아픈 학생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 후 보건실로 보냄 등

70) 일과 시간 학생들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교내 휴대전화 반입 및 소지 금지 등

71) 여학생의 상의 지퍼 내리고, 손으로 엉덩이 때리고, 볼을 깨물음(성추행 포함), 치마 길이 검사받도록 한 후 통과한 학생의 치마 벨트 안쪽 라벨에 서명함, 여학생들에게 '너는 내 딸이다'며 손,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짐 등

72) 담임교사가 학급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 학생회장 선거 등록서류에 3인의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함 등

73) 체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2차가해),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 박탈(휴식권), 생활복 등교시 적발된 학생 수만큼의 날짜 동안 반 학생 전체에게 학교내 생활복 착용 금지(연좌제 금지) 등

내용과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각급 부서에 처리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공표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에 익명 결정문을 게시(조례 제49조)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2020).

(3) 성과 및 과제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관행의 반복, 또는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존재했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이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인권상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을 전담하는 구제기구 및 정책적인 업무까지 수행하는 기구인 학생인권 전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 교육, 구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기구가 만들어 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인권기구를 통해 해소하는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확장하여 250여명 14개 지역교육청에 학생참여위원회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학교자치로 확장되기 위해 학교마다 학생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학생회실 리모델링 지원 학교당 1,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예산편성 시 학교운영경비 중 학생회예산 1%를 의무편성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각종 연수, 토론회, 자료제공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발생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폐쇄적·소극적인 해결의 학교 문화, 학생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편견,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편견 및 이해 부족, 인권감수성 부족 등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우호적인 해결책을 가로막는 요소들이다. 보다 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제도, 정책 등 결정시 학생 의견 반영, 학생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탈피하는 정책 추진, 학생 결정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 후 합리적 검토,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교사 인권교육 및 학생 교육 확대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1) 일반 및 조직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74](이하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된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센터는 조례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광주의 센터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학생인권 업무만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학생인권을 포함해 민주, 인권, 평화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었다. 조례 제38조 제2항에서는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①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②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③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④ 학생의회 지원 ⑤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센터에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인권교육 담당자를 포함해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원과 상담원을 두고 있다. 센터는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소속[75]이며, 다른 지역들이 과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센터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민주시민교육팀이 센터의 기능을 수행[76]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물론 광주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는 아니었다. 처음 설치되었을 때부터 독립적인 센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면서 과 체계 내의 팀으로 개편된 것이다.

센터장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9조에 근거해 민주시민교육팀장(장학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책, 교육, 상담,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표 Ⅲ-3-23. 학생인권 업무 담당자 직급별 인원 및 업무 분장

연번	직급	업무 분장
1	장학관	센터장 겸임, 업무 총괄
2	장학사	인권정책, 인권교육
3	주무관(일반임기제 6급)	학생인권 조사 구제
4	상담사(교육공무직)	학생인권 상담
5	상담사(교육공무직)	학생인권 상담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d). 내부자료.

75) 「광주학생인권조례」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를 둔다. 이 경우 교육청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센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76) 「광주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8조(설치)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에서 수행한다.

광주는 학생인권 옹호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팀장인 장학관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형태이고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전문조사원)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조사구제팀장을 두고 있었지만 팀으로 개편되면서 변경되었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에 옹호관과 관련한 별도의 근거조항이 있지는 않으며, 규칙 제9조 제3항에 "전문조사원은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며, 중립성 및 학생인권 보장의 전문성을 위해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구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77]

조례는 제정 이후 2020년 4월 1일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권리조항 일부를 보완하고, 조직개편 된 민주시민교육과 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Ⅲ-3-24. 광주학생인권조례 주요 개정 내용(2020. 4. 1.)

개정 조항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제명	제명 간소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
제2조(정의)	조례 적용 범위 확대	학생인권과 관련한 책무가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만 부여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까지로 확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조항 문구의 의미 불명확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명시, 학교 규정이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명시

77) 「광주학생인권조례」 제39조(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①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를 둔다.
② 구제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1명과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4명 이내를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본청의 학생인권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로 하며, 구제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구제 소위원회는 센터의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정, 시정, 조치 요구 및 권고 사항에 대해 검토·자문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권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한다.
⑤ 구제 소위원회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조항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제10조(학습할 권리)	현장실습 학생,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필요	현장실습 학생,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명시
제14조(표현의 자유)	18세 선거권 반영	학교 내 집회의 자유, 교내·외 모임과 참여 자유 명시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학생 대표 자격 제한 최소화 등 참여권 확대	성적, 징계, 교사의 추천 여부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자격 제한 금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 근거 조항 마련
제1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금지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금지 명시
제34조 (인권교육 지원)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인권교육 다양성 확보	인권교육에 노동인권, 스포츠인권, 성인지 교육 포함하도록 규정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c).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요 사항 안내 자료. pp.1-10.

센터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는 크게 인권교육과 학생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조례에 근거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학교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의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학교 민주인권친화도 자체 평가' 결과를 학교문화 혁신지수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학생자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학생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회 운영비를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대표에 대해 학교장의 임명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교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Ⅲ-3-25〉와 같다.

표 Ⅲ-3-25.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

영역	구분	세부 내용
인권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인접 교과(사회, 도덕 등) 연계 및 주제 통합 수업을 통한 학생 인권교육 권장 - 학생 대상: 학기당 2시간(연 4시간, 노동인권교육 1시간 이상 필수) 이상 - 교직원 대상: 학기당 2시간(연 4시간) 이상, 교원 원격 의무 연수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활용 권장 -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학부모 총회나 가정통신문 등 활용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칙 제·개정: 전체 학교(매년 개정 원칙), 권고사항 안내 및 자체 점검 실시 - 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안내: 민주인권교육센터 누리집 - 학생 인권조례 홍보 자료 개발: 전체 학교 안내 - 장애 당사자가 함께하는 장애인권교육 지원: 초·중 80학급 - 단위 학교 민주인권 친화도 자체 평가 및 관리: 실태 파악 및 차기 년도 사업 반영, 학교문화혁신 지수 반영
	교원 인권감수성 역량 강화	- 학생 인권선도교사 운영: 1팀 - 학교 인권연구회 지원: 4팀 -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지도교사 워크숍 실시: 2회 - 교원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실시: 2회 -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50교 -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직무 연수 실시: 1회 - 교장(감), 원장(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 연수 실시: 1회 - 민주인권평화교육 교원 해외 연수 실시: 1회
	인권교육 연구학술대회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포럼(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 공동 운영 - 인권교육 토론회 개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800학급 내외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개최: 1회 - 청소년 노동인권캠페인 운영: 10회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1회 - 일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운영: 1회 - 노동인권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1팀
	청소년 인권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인권 체험 프로그램 안내 지원: 광주인권사무소와 협력 - 청소년 인권골든벨 개최: 1회 - 청소년 인권평화캠프: 1회 - 청소년 모의인권 이사회 개최: 1회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체제 구축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연 4회, 필요 시 임시회 개최 -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운영: 필요시 개최 -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 인권 조사·구제팀 운영 -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오프라인(상담실) 상담 체제 구축 -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가해 교원·학교 대상 시정 조치

영역	구분	세부 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화' 운영 - 인권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인권정책연석회의, 청소년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학생 자치	학생 자치 강화	-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제시 보장 - 학생대표와 학교장 간 대화의 시간 정례화: 연 4회 이상 - 학생회 운영비 예산 편성: 2020년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의무 편성 -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등) 주1회 이상 실시 권장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생회 선거 운영: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당선증 교부 - 학교 급별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5개소(고등학교 의회 1개, 초중학교 의회 4개) -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운영: 1회 - 광주 청소년 독립페스티벌 운영 지원: 1회 -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19팀 - 학생주도 실천형 민주시민 프로젝트 운영: 60교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a). 2020 주요업무계획. pp.16-17, p.136.

(2) 인권상담·구제시스템 운영 현황

①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업무 및 권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부여되어 있는 학생인권 구제와 관련한 권한은 ①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 제출 요청권 ②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 질의권 ③ 현장방문조사권 ④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등 조치권 ⑤ 조치 내용에 대한 공표권 ⑥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78]

78) 「광주학생인권조례」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④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사건을 조사한 후에 직권으로 또는 구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 및 교직원에 대해 조정, 시정, 조치 요구 및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4항의 조치를 한 경우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그 요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 조사)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교직원과 학생 등 관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 등 관계자는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센터는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직권 또는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 및 교직원에 대해 조정, 시정, 조치 요구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요지를 공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센터의 자료 요구 및 질의, 현장 방문조사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 등 관계자는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센터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규칙 제14조(조사 및 조치) 제2항에서 "센터는 … 조사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①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구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② 학생인권 침해를 신속하게 중지시키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 ④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⑤ 기타 인권침해가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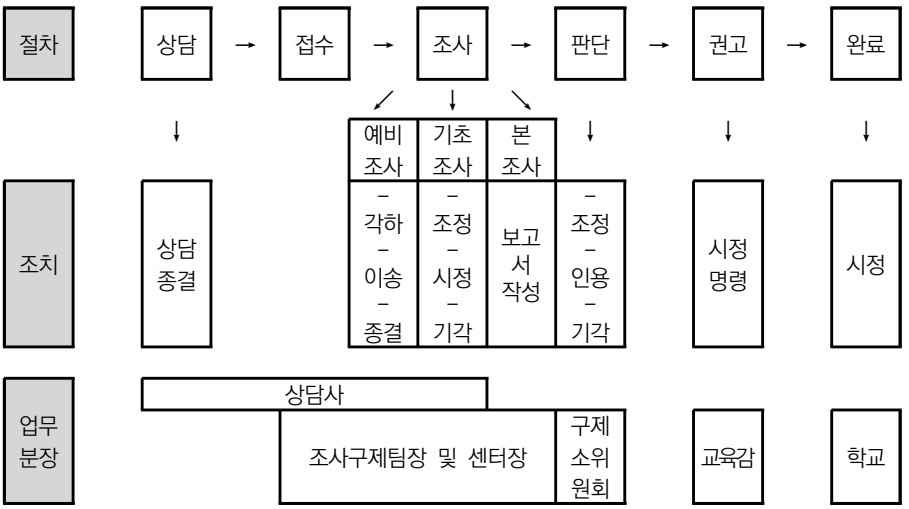
아울러, 규칙 제14조 제3항에서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 제14조 제4항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의 권고에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교육 ③ 신청인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과의 분리 등 필요한 조치 ④ 피신청인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필요한 조치 ⑤ 그 밖에 학생인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학생인권 구제 절차 및 방법[79]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례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학생인권 상담, 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구제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수행 지침」을 두어 상담 및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상담은 누구든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로,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구제 신청은 서식의 정함이 없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온라인과 전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제 신청 기한은 구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 이후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9) 해당 내용은 다음 자료를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임. 광주광역시교육청(2020e). 내부자료: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수행 지침.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e). 내부자료: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수행 지침.

그림 Ⅲ-3-7.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센터의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정, 시정, 조치 요구 및 권고 사항에 대해 검토·자문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권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한다.

센터는 ① 제3자가 한 구제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구제 신청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내용 중 다른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또한 ①

조사 결과 구제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조사 결과 구제 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의 자율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치 또는 권고하고, 교육청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권고는 피신청인 개인에게 하지 않으며, 피신청인 소속 기관장에게 한다.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센터에 조치 완료 또는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학생인권 판단 결정 구조 및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옹호관을 두고 있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지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조례 제39조에 따르면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학생인권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가 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책임은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합의제의 결정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안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임제와 합의제의 혼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보고해 검토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

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조치요청서'를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조치(시정, 재발방지,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분, 직무교육, 화해

절차 마련 등)를 하도록 권고하는 형태이다.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결정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해당 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당초 조례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 개정 시 이 부분은 삭제하였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요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정문을 공표하는 목적은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결정문을 공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문을 통해 학교에 요지를 전파하거나 사례집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은 다음 〈표 Ⅲ-3-26〉과 같다. 참고로 '시정' 조치에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 재발방지,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나 인권관련 직무교육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표 Ⅲ-3-26. 민주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구분	상담	상담 종결	구제 접수	처리 결과					중지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2017년	459	257	202	-	5	24	141	23	9
2018년	365	195	170	-	1	27	113	25	4
2019년	397	215	182	-	7	28	125	14	8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d). 내부자료.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체벌과 언어폭력, 복장과 두발(용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지연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자율학습과 방과후를 변칙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상담 건이 많았다. 부당지도는 벌금제 운영, 임의적 교육벌 부과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Ⅲ-3-27〉과 같다.

표 Ⅲ-3-27. 유형별 처리 현황(2020.1.1.~ 11.11. 현재)

유형별 처리 현황	구분			처 리 현 황					
	상담	상담 종결	구제 접수	처리 결과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진행
체벌	6	4	2			2			
언어폭력	18	6	12		1	3	6	1	1
자율 및 방과후	34	10	24	2		9	8	4	1
복장 및 두발	8	3	5	1		2	1		1
사생활 침해	1	1							
전자기기 사용	6	5	1			1			
부당 지도	17	8	9				6	2	1
자치활동, 참여권	1	4							
학내 표현 활동	3	4	3				1		2
종교의 자유	0								
교내외 행사참석	0								
강제노동	0	4							
사상, 양심의 자유	0								
부당한 징계	7	5	2				1	1	
차별	4		4			2	1	1	
학교폭력 관련	3	3							
성폭력	2	2							
기타	43	27	16	1		1	9	1	
소계	153	86	78	4	1	20	33	10	6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d). 내부자료.

학생인권 조사구제 절차를 거쳐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불수용하거나 미이행을 통보한 사례는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권고 수용률은 100%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부 기관이 불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더라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 조치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에는 불수용하거나 미이행할 경우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 인사권한 등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감사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또는 차별 관련 사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벌, 언어폭력, 학습선택권 침해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과 인권관련 직무교육 등이 공통으로 권고된다. 이들 사안을 제외하고 특이할만한 사안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3-28〉과 같다.

표 Ⅲ-3-28. 민주인권교육센터 주요 권고 사항

연번	신청 내용	판단	권고 내용
1	학생들의 중앙현관 또는 중앙계단 이동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이동의 자유 침해로 판단	전체 학교에 이동 제한 금지 권고
2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	아동 최선의 이익 및 복지권 침해로 판단	전체 학교에 화장실 입구 또는 내부에 화장지 비치 권고
3	수업 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학생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	학생에게 참여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학습할 권리, 쉴 권리 침해 및 강제노동 금지 위반 판단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 및 인권관련 직무교육 권고
4	수업 시간 화장실 사용 제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이용 원칙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학생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판단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 및 인권관련 직무교육 권고
5	소란 행위 반복을 이유로 중식 급식 시간에 귀가 조치	중식 급식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므로 귀가 조치는 학습권 침해 판단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 및 인권관련 직무교육 권고
6	학생의 게시물 무단 철거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다른 방법 없이 즉시 무단 철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게시판 사용에 관한 학생-학교 간 협약 체결로 조정
7	학생 선도부에 의한 학생지도 활동	학생 지도 권한 없는 선도부 운영은 부당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침해 판단	전체 학교에 학생 선도부 운영 폐지 권고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2020d). 내부자료.

(3) 성과 및 과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센터의 기능이 시행되고, 학생인권 구제업무가 수행되면서 일정하게 성과도 거두고 있다. 센터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이 교육청의 공식 업무 영역으로 안착했다는 점이다.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교육청 업무에 학생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례제정

과정부터 학생인권이 업무의 영역으로 진입하였고,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첫 번째 주요업무에 인권이 배치되었다. 학생인권은 이제 교육청의 일시적이거나 정무적 업무가 아닌 공식 업무로 이해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감이 교체된다고 해도 비중의 변화는 있더라도 공식 업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학생인권 침해 상황의 변화 역시 중요한 성과다. 학생인권 구제 기능이 공식적으로 작동한 2012년 이후 인권침해의 양상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다. 물론 여전히 인권침해 상황이 존재하지만, 변화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학교와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적법하고 적정한 학생 징계 절차의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지도의 관점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또한 통제와 단속 위주의 학생생활규칙이 학생인권 존중의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성격과 역할이 전환되었다. 민주인권동아리의 의무 운영, 학교운영비의 0.5% 이상 학생회 예산 배정 등 학생자치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넷째, 개별 사건 처리 후속 조치로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중앙현관 이동 제한 금지,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겉옷 규제 완화, 기숙사 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별 사건 구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정책 과제의 도출과 이행을 통해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적극적 정책 제안 부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놀 권리,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공간 재구성, 학교협동조합 등 미시적인 권리의 문제를 넘어 학생인권과 관련한 담론을 주도하고 교육청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증진과 관련한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교권과의 대립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학교 또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인권 존중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교권과의 대립구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넘어, 학생에 의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보장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해소까지는 보다 많은 이해와 토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로 확장 개편되었고, '민주인권교육센터' 업무를 '민주시민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독립된 센터로 있을 때 '조사구제팀'이 학생인권 구제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학생인권 구제 담당'으로 오히려 축소된 형태이다. 물론 기능과 역할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와 규칙에서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형태로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를 두어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조직의 전결 구조상 팀장이나 과장에 의한 사안 개입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옹호관 체제의 도입과 학생인권 구제에 대한 옹호관 전결 구조를 갖춰 체계상으로 독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래는 2020년 4월 개정 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되면서 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산되었다. 다만,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80]이 반영되어 있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5) 정책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1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4곳

8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b). 2021 주요업무 추진 계획(검토본).

의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로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는 조례에 의해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청 내 조직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의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 향상과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심화보고서[81]의 분석 결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교사의 폭력, 개인정보공개,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인권 침해적인 학교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학교 내 배려문화와 학생참여존중 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정책 전반에 학생인권 관점을 주류화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체벌금지나 두발자유를 넘어서 건강권, 놀이권 등 학생인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지역의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81) 박환보(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심화보고서 1: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4장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0. 조사개요 및 방법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4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82)]

0.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목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매년 조사되는 반복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추이를 분석하여 인권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로 생산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업로드하고 원 데이터(Microdata)는 익익년도에 연구원 청소년통계터아카이브센터 사이트에 탑재하여 인권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2장 〈표 Ⅱ-3-3〉)의 114개 지표항목 중 41개 지표항목 결과 생산에 활용된다.

82) 4장 1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2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0절 조사개요 1)~4)와 3절 폭력 및 학대 영역의 2) 아동학대 분야와 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및 5절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은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이민희 교수는 3절의 1) 폭력 분야와 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을, 김진호 교수는 7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집필하였다.
0절 조사개요의 5) 모집단 분석, 6) 표본설계, 7) 가중치와 모수추정 부분은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통합조사에 참여한 5개 과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특히 본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반복횡단조사를 통해 인권실태 추이를 보기 위한 것으로 표본설계 등 조사개요의 기본 사항을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 조사대상

(1) 모집단

본 조사에서 활용한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며 조사 시점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응답자 특성

2020년 조사에 참여한 8,623명의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Ⅳ-0-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자 청소년은 4,473명(51.9%), 여자 청소년 4,150명(48.1%)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 2,882명(33.4%), 중학생 2,747명(31.9%), 고등학생 2,994명(34.7%)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 3,331명(38.6%), 중소도시 4,147명(48.1%), 읍면지역 1,144명(13.3%)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7,690명(89.9%)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621명(7.3%), 조손가정가족 청소년 94명(1.1%), 기타 청소년 149명(1.7%)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 성적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699명(31.6%)이었으며 “중”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850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이 “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005명(2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4,824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100명(36.3%), “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24명(7.3%)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Ⅳ-0-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623**	**100.0**
성별	남학생	4,473	51.9
	여학생	4,150	48.1
학교급	초등학교	2,882	33.4
	중학교	2,747	31.9
	고등학교	2,994	34.7
고교유형	일반계고	2,415	80.6
	특성화계고	579	19.4
지역규모	대도시	3,331	38.6
	중소도시	4,147	48.1
	읍면지역	1,144	13.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690	89.9
	한부모가정	621	7.3
	조손가정	94	1.1
	기타	149	1.7
학업성적	상	2,699	31.6
	중	3,850	45.0
	하	2,005	23.4
경제적 수준	상	4,824	56.4
	중	3,100	36.3
	하	624	7.3

* 주: 일부 시스템 결측치가 있음. 지역규모(n=1), 가족유형(n=69), 학업성적(n=69), 경제적 수준(n=75)

3) 조사내용

(1) 조사도구 보완과정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설문지 확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지표체계 및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문항의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설문지 검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불필요 조사항목과 세분화가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해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서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설문조사 항목들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을 신청했으며,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논의를 통해 변경된 조사항목에 대해 통계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다. 변경된 설문항목과 연구과정을 대상으로 7월에 설문지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요청한 결과, 전반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 동의서 양식 등에 있어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상자의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도 역시 최소 이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007-HR-고유-012).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가 면제된 점과 면접원 방문조사가 어려워 우편으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과 조사대상자 동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이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문구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사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였다. 해당 사항들을 보완한 후, 2020년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 작성 과정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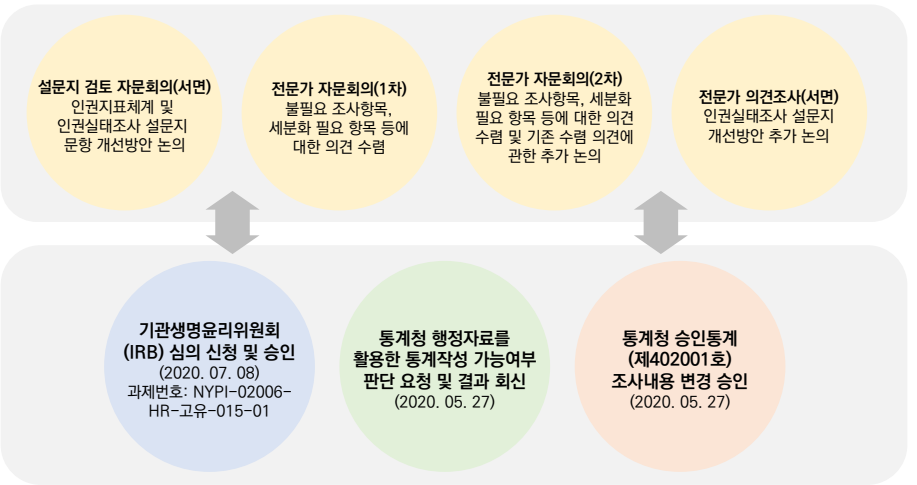


그림 Ⅳ-0-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도구 보완과정

(2) 조사항목 변경 상세 내역

① 신규 조사문항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충실성을 위해 조사문항의 간결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먼저,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만족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수업의 흥미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차별 가·피해 경험에서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적 배경,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에 따른 경험을 추가하였다.

표 Ⅳ-0-2.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신규 조사문항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학교생활 만족도 측정 항목 추가 (기존 학교 문화 측정 문항으로 2020년도 학교생활 만족도로 항목명 변경)	문22-3	문30-3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을 대표할 수 있는 수업의 흥미도 조사 문항 추가
차별 피해 경험 ('⑤경제적 배경, ⑥고향/지역, ⑦종교, ⑧가족유형, ⑨장애, ⑩인종' 추가)	문30 (5~10)	문38 (5~10)	2019년도에 삭제한 문항 재추가 : 응답률이 낮더라도 장기적인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차별 가해 경험 ('⑤경제적 배경, ⑥고향/지역, ⑦종교' 추가)	문31 (5~7)	문39 (5~7)	

② 조사문항 수정·보완

조사대상의 응답 편의와 정확한 의미전달을 통한 명확한 의견수집을 위해 일부

조사항목들을 조정, 삭제하였다. 먼저, 수정된 항목은 인권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명확한 의미전달을 통해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에 대한 설명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도움정도 문항에서 문항 내용의 명료화,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정도”를 “도움정도”로 수정하였다. 중·고등용 문항인 ‘사상·양심의 자유보장 정도’ 하위문항은 의미의 명료화를 위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가출이유 문항 응답지 중 “학교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문항을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로 명료화하였다. 삭제된 문항의 경우, 하루평균 학습시간에서 수업시간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를 묻는 개별문항의 보완에 따라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Ⅳ-0-3.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수정된 조사문항

구분	조사항목	교급별 조사지 문항번호		사유
		초등용	중·고등용	
수정항목	인권교육 경험 문항 내 ‘인권’ 설명문 내용 수정	문29	문37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인권’에 대한 설명 보완 수정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문항 내용 객관화 및 응답척도 수정	문29-2	문37-2	자문의견을 토대로 문항 명료화를 위해 문항 내용을 객관화 하였으며, 동의정도를 ‘도움정도’로 응답척도 수정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하위문항 내용 수정	-	문8(2)	의미 명료화를 위해 문장 보완
	가출이유 문항 응답지 내용 수정	문10-1 (3)	문16-1 (3)	문항 명료화를 위해 응답지 내용 수정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삭제항목	하루평균 학습시간 ‘수업시간’ 설명 삭제	문25	문33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 삭제	문23	문31	학교생활 만족도(기존 학교 문화 측정 문항, 문22, 문30) 문항이 학교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항 삭제

(3) 성인대상 인권 실태조사 비교문항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승인통계로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진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와 성인 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문항으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경험 등 4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차별경험과 인권활동(사회참여 활동) 참여경험 등도 해석에 유의하여 비교해볼 수 있어(김영지 외, 2019: 137) 조사결과 공유 일정을 협의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4)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내용은 〈표 Ⅳ-0-4〉와 같다.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7개 영역을 기본 틀로 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분석, 행정통계 및 관련 2차 자료들에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표 Ⅳ-0-4.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26(1~3)	34(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공간)	27(1~4)	35(1~4)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8(1~7)	36(1~7)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인권교육 경험	29	37
		인권교육 받은 기관	29-1	37-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29-2(1~3)	37-2(1~3)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0(1~10)	38(1~10)
		차별 가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1(1~10)	39(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1(1~2)	1(1~4)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2(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2(1)	4(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	5
		참여권 보장 수준	4	6
		참여 장애 이유	5	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8(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9, 9-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8(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0-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11(1~3)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4(2)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2)	4(3)
		학교에서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4(4)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부모, 교사)	6(2, 4)	12(2, 4)
		폭력피해 경험(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7(1~6)	13(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8(1~5)	14(1~5)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0, 20-1	28, 28-1
		체벌 경험률(부모, 교사)	6(1, 3)	12(1,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식시 방치, 결석 무관심)	9(1~5)	15(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0	16
		가출 이유	10-1	16-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16-2, 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1(1~2)	17(1~2)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18
		운동 실천율	13	19
		수면시간	14	20
		수면부족 여부	15	21
		수면부족 이유	15-1	21-1
		자살에 대한 생각	-	22
		자살 생각 이유	-	22-1
		우울감	16(1~3)	23(1~3)
		자아존중감	16(4~6)	23(4~6)
		행복도	17	24
		행복하지 않은 이유	17-1	24-1
		삶의 만족도	18	25
		고민거리 대화상대	19	2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1	29
		학업중단 생각 이유	21-1	29-1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2(1~4)	30(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시설 이용 경험	23	31
		여가·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3-1	31-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32
		하루평균 학습시간	25	33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27, 27-1(1~9)

4)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 다단계집락표집(층: 학교구분, 집락: 학교/학급)을 통해 지난 조사와 같은 규모인 9,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 출처 : 한국리서치(2020).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 주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동일한 표본추출 과정을 수행함.

그림 Ⅳ-0-2. 표본추출방법

이를 위하여 학교표집 후 공문 및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조사거절시 대체표본을 섭외하였다(원표본 비율은 73.0%로 2019년의 86.8%보다 하락)(한국리서치, 2020). 조사원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성격과 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면접원 교육을 연구진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45개 학교에서 8,623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Ⅳ-0-5. 2019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 · 중(1~3학년) · 고등학교(1~3학년) 학생
표집틀	2019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9,000여명 → 8,623명 최종 조사 완료(목표치의 95.8%)
추출학교수	전국 17개 시·도 345개교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0년 7월~10월
조사방법	학교 방문 집단 면접 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
실사기관	㈜한국리서치

5)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Ⅳ-0-6〉과 〈표 Ⅳ-0-7〉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063,25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57,865명(33.4%), 중학교 1,294,359명(31.9%), 고등학교 1,411,027명(34.7%)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는 〈표 Ⅳ-0-8〉~〈표 Ⅳ-0-11〉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대안, 상업, 수산, 실업, 체육,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체육, 예술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Ⅳ-0-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6,205	70,456	74,410	68,565	66,073	72,775	600	600	600	384	384	385
경기	121,141	126,078	131,649	119,544	112,503	120,985	1,274	1,272	1,275	629	629	629
인천	25,368	26,212	27,898	24,902	23,934	25,622	249	249	250	135	134	135
강원	12,055	12,379	13,437	12,186	12,314	13,201	337	335	349	160	161	162
충북	13,699	14,139	14,958	13,479	13,130	14,230	255	257	257	126	126	126
충남	19,377	19,962	20,914	18,885	17,962	19,148	407	408	406	186	186	185
대전	12,916	13,739	14,714	13,387	13,000	14,345	148	148	148	88	88	88
세종	4,472	4,564	4,366	4,057	3,561	3,584	48	48	48	24	24	24
경북	20,604	21,391	22,487	20,267	19,945	21,123	442	448	458	262	259	260
경남	30,500	31,938	33,486	29,600	28,468	30,566	497	494	500	263	261	260
부산	23,968	25,243	26,431	24,093	23,592	25,653	304	304	304	170	170	172
대구	19,658	20,748	22,310	20,279	20,352	21,908	229	229	229	125	125	123
울산	10,812	11,054	11,692	10,378	9,943	10,614	119	118	119	63	63	63
전북	15,450	16,153	17,278	15,818	15,852	16,978	399	406	411	207	208	209
전남	14,966	15,488	16,461	15,099	14,597	15,895	415	421	425	245	245	246
광주	14,068	14,588	15,878	14,243	13,734	15,091	155	155	155	90	90	90
제주	6,493	6,565	7,047	6,400	6,154	6,345	113	113	112	45	45	45
합계	431,752	450,697	475,416	431,182	415,114	448,063	5,991	6,005	6,046	3,202	3,198	3,202

표 Ⅳ-0-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8,773	46,560	53,623	10,950	11,177	11,999	16,239	15,342	16,409	1,900	1,908	1,809
경기	98,834	92,897	104,579	3,506	3,348	3,624	16,492	16,214	17,422	2,472	2,371	2,409
인천	17,706	16,640	18,948	1,904	1,685	1,749	5,776	5,497	6,215	787	772	722
강원	10,703	10,742	12,063	156	156	146	2,676	2,628	2,780	182	173	165
충북	8,463	8,372	9,771	1,353	1,280	1,459	4,119	4,137	4,401	242	243	213
충남	13,547	12,995	14,647	1,756	1,715	1,807	4,360	4,183	4,796	215	202	210
대전	9,293	8,693	9,880	2,402	2,286	2,545	2,682	2,741	3,136	425	416	396
세종	2,924	2,475	2,345	209	208	209	189	197	135	203	194	187
경북	15,343	14,886	17,244	2,259	2,265	2,491	5,497	5,100	5,578	222	211	176
경남	23,452	22,672	26,036	2,177	2,228	2,436	4,433	4,297	4,658	512	507	441
부산	16,238	15,761	18,305	2,668	2,631	3,096	6,958	6,411	7,302	962	932	868
대구	13,625	13,140	15,612	3,926	3,840	4,372	5,258	4,874	5,377	323	320	278
울산	7,993	7,300	8,953	620	583	699	2,121	2,309	2,637	233	217	201
전북	13,531	13,448	14,967	820	840	953	3,589	3,674	4,317	226	216	188
전남	10,168	10,095	11,607	1,689	1,681	1,846	4,831	4,853	5,391	213	209	172
광주	12,205	11,552	13,455	690	709	781	3,047	2,993	3,329	93	97	97
제주	4,674	4,283	4,912	-	-	-	1,759	1,767	1,922	139	131	120
합계	327,472	312,511	356,947	37,085	36,632	40,212	90,026	87,217	95,805	9,349	9,119	8,652

표 Ⅳ-0-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9	189	189	40	40	40	81	81	81	10	10	10
경기	367	366	36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80	8	8	8	31	31	31	6	6	6
강원	85	85	85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7	47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8	68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3	12	12	1	1	1	2	2	1	2	2	2
경북	113	113	113	12	12	12	56	56	56	3	3	3
경남	137	137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2	82	82	14	14	14	40	40	41	6	6	6
대구	52	52	52	16	16	16	22	22	22	3	3	3
울산	39	39	39	3	3	3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7	77	77	8	8	8	55	55	55	2	2	2
광주	47	47	47	3	3	3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6	1,543	1,542	154	154	154	590	590	590	65	65	65

표 Ⅳ-0-9.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3,877	36,298	38,318	32,328	34,158	36,092	35,736	34,567	37,895	32,829	31,506	34,880
경기	62,294	64,702	67,378	58,847	61,376	64,271	61,339	57,766	62,195	58,205	54,737	58,790
인천	13,056	13,333	14,284	12,312	12,879	13,614	12,925	12,350	13,209	11,977	11,584	12,413
강원	6,156	6,350	7,034	5,899	6,029	6,403	6,344	6,412	6,887	5,842	5,902	6,314
충북	7,076	7,335	7,750	6,623	6,804	7,208	6,900	6,836	7,475	6,579	6,294	6,755
충남	10,013	10,230	10,898	9,364	9,732	10,016	9,823	9,239	9,915	9,062	8,723	9,233
대전	6,632	7,067	7,554	6,284	6,672	7,160	6,919	6,785	7,431	6,468	6,215	6,914
세종	2,288	2,265	2,139	2,184	2,299	2,227	2,069	1,770	1,772	1,988	1,791	1,812
경북	10,749	11,164	11,640	9,855	10,227	10,847	10,674	10,435	11,228	9,593	9,510	9,895
경남	15,813	16,437	17,294	14,687	15,501	16,192	15,437	14,814	16,153	14,163	13,654	14,413
부산	12,412	12,943	13,615	11,556	12,300	12,816	12,421	12,245	13,257	11,672	11,347	12,396
대구	10,191	10,759	11,431	9,467	9,989	10,879	10,568	10,676	11,469	9,711	9,676	10,439
울산	5,648	5,745	6,018	5,164	5,309	5,674	5,404	5,251	5,627	4,974	4,692	4,987
전북	7,935	8,386	8,884	7,515	7,767	8,394	8,153	8,326	8,773	7,665	7,526	8,205
전남	7,615	8,042	8,464	7,351	7,446	7,997	7,751	7,513	8,337	7,348	7,084	7,558
광주	7,277	7,475	8,320	6,791	7,113	7,558	7,394	7,087	7,854	6,849	6,647	7,237
제주	3,358	3,373	3,615	3,135	3,192	3,432	3,342	3,258	3,336	3,058	2,896	3,009
합계	222,390	231,904	244,636	209,362	218,793	230,780	223,199	215,330	232,813	207,983	199,784	215,250

표 Ⅳ-0-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221	23,163	26,685	7,394	7,572	8,027	7,528	7,027	7,593	710	708	647
경기	51,176	48,435	54,438	1,794	1,695	1,783	8,854	8,829	9,459	805	791	761
인천	9,021	8,583	9,772	1,066	979	995	3,050	2,873	3,225	381	391	337
강원	5,305	5,346	6,028	86	84	79	1,660	1,743	1,834	92	88	83
충북	4,191	4,147	4,832	834	771	895	2,296	2,390	2,442	116	103	70
충남	6,785	6,605	7,265	1,075	1,031	1,065	2,568	2,559	2,854	86	84	64
대전	4,321	4,080	4,693	1,736	1,642	1,807	1,483	1,541	1,783	197	209	174
세종	1,439	1,212	1,117	108	104	106	109	128	116	102	92	91
경북	7,474	7,213	8,302	1,451	1,440	1,603	3,524	3,350	3,617	117	114	78
경남	11,389	10,951	12,566	1,677	1,717	1,930	2,867	2,833	3,086	245	237	180
부산	7,928	7,838	8,915	1,500	1,495	1,688	4,222	3,860	4,466	477	470	431
대구	6,747	6,741	7,844	1,946	1,950	2,197	3,291	3,074	3,378	172	167	132
울산	4,108	3,714	4,657	355	337	387	1,315	1,379	1,610	109	90	79
전북	6,426	6,547	7,120	698	721	825	2,276	2,397	2,677	94	84	56
전남	4,754	4,637	5,333	1,186	1,200	1,361	2,746	2,892	3,231	91	104	72
광주	6,114	5,761	6,645	467	480	526	1,752	1,681	1,858	72	84	73
제주	2,396	2,259	2,530	-	-	-	986	1,004	1,076	68	72	49
합계	163,795	157,232	178,742	23,373	23,218	25,274	50,527	49,560	54,305	3,934	3,888	3,377

표 Ⅳ-0-11.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552	23,397	26,938	3,556	3,605	3,972	8,711	8,315	8,816	1,190	1,200	1,162
경기	47,658	44,462	50,141	1,712	1,653	1,841	7,638	7,385	7,963	1,667	1,580	1,648
인천	8,685	8,057	9,176	838	706	754	2,726	2,624	2,990	406	381	385
강원	5,398	5,396	6,035	70	72	67	1,016	885	946	90	85	82
충북	4,272	4,225	4,939	519	509	564	1,823	1,747	1,959	126	140	143
충남	6,762	6,390	7,382	681	684	742	1,792	1,624	1,942	129	118	146
대전	4,972	4,613	5,187	666	644	738	1,199	1,200	1,353	228	207	222
세종	1,485	1,263	1,228	101	104	103	80	69	19	101	102	96
경북	7,869	7,673	8,942	808	825	888	1,973	1,750	1,961	105	97	98
경남	12,063	11,721	13,470	500	511	506	1,566	1,464	1,572	267	270	261
부산	8,310	7,923	9,390	1,168	1,136	1,408	2,736	2,551	2,836	485	462	437
대구	6,878	6,399	7,768	1,980	1,890	2,175	1,967	1,800	1,999	151	153	146
울산	3,885	3,586	4,296	265	246	312	806	930	1,027	124	127	122
전북	7,105	6,901	7,847	122	119	128	1,313	1,277	1,640	132	132	132
전남	5,414	5,458	6,274	503	481	485	2,085	1,961	2,160	122	105	100
광주	6,091	5,791	6,810	223	229	255	1,295	1,312	1,471	21	13	24
제주	2,278	2,024	2,382	-	-	-	773	763	846	71	59	71
합계	163,677	155,279	178,205	13,712	13,414	14,938	39,499	37,657	41,500	5,415	5,231	5,275

6)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3,008명, 중학교: 2,867명, 고등학교: 3,125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

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이다. 층화집락추출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9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Ⅳ-0-1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31,752	1,357,865 (33.4%)		3,008 (33.4%)		3,024 (33.5%)	
		5	450,697						
		6	475,416						
중학교	중학교	1	431,182	1,294,359 (31.9%)		2,867 (31.9%)		2,808 (31.1%)	
		2	415,114						
		3	448,063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27,472	996,930 (24.5%)	1,411,027 (34.7%)	2,208 (24.5%)	3,125 (34.7%)	2,100 (23.2%)	3,204 (35.5%)
		2	312,511						
		3	356,947						
	유형 2 (자율고)	1	37,085	113,929 (2.8%)		252 (2.8%)		390 (4.3%)	
		2	36,632						
		3	40,212						
	유형 3 (특성화고)	1	90,026	273,048 (6.7%)		605 (6.7%)		576 (6.4%)	
		2	87,217						
		3	95,805						
	유형 4 (특수목적고)	1	9,349	27,120 (0.7%)		60 (0.7%)		138 (1.5%)	
		2	9,119						
		3	8,652						
합계				4,063,251 (100.0%)		9,000 (100.0%)		9,036 (100.0%)	

표 Ⅳ-0-1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68	459	330	44	181	60
경기	839	782	656	62	84	
인천	176	165	118			
강원	84	84	74	40	94	
충북	95	90	59			
충남	133	124	91			
대전	92	90	62			
세종	30	25	17			
경북	143	136	105	67	193	
경남	212	196	160			
부산	168	162	111			
대구	139	139	94			
울산	74	69	54			
전북	108	108	93	38	53	
전남	104	101	71			
광주	99	95	82			
제주	45	42	31			
합계	3,008	2,867	2,208	252	605	60

* 총계: 9,000명

표 Ⅳ-0-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0.3	17.7	12.7	1.7	7.0	2.3
경기	36.5	30.1	25.2	2.4	3.2	
인천	7.7	6.3	4.5			
강원	3.6	3.2	2.9	1.5	3.6	
충북	4.1	3.5	2.3			
충남	5.8	4.8	3.5			
대전	4.0	3.5	2.4			
세종	1.3	1.0	0.7			
경북	6.2	5.2	4.0	2.6	7.4	
경남	9.2	7.6	6.1			
부산	7.3	6.2	4.3			
대구	6.0	5.3	3.6			
울산	3.2	2.6	2.1			
전북	4.7	4.1	3.6	1.5	2.0	
전남	4.5	3.9	2.7			
광주	4.3	3.7	3.2			
제주	1.9	1.6	1.2			
합계	130.8	110.3	84.9	9.7	23.3	2.3

* 총계: 361.2개

표 Ⅳ-0-1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6(12)	27(9)	21(7)	3(1)	3(1)	
인천	6(2)	6(2)	6(2)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6(2)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26(42)	108(36)	84(28)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3(121)개

표 Ⅳ-0-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04	468	300	78	144	138
경기	864	702	525	78	72	
인천	144	156	150			
강원	72	78	75	78	72	
충북	72	78	75			
충남	144	156	75			
대전	72	78	75			
세종	72	78	75			
경북	144	156	75	78	216	
경남	216	156	150			
부산	144	156	75			
대구	144	156	75			
울산	72	78	75			
전북	144	78	75	78	72	
전남	72	78	75			
광주	72	78	75			
제주	72	78	75			
합계	3,024	2,808	2,100	390	576	138

* 총계: 9,036명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Ⅳ-0-13〉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Ⅳ-0-14〉와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3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8명(학년당 약 13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25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3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Ⅳ-0-12〉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5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Ⅳ-0-15〉 및 〈표 Ⅳ-0-16〉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Ⅳ-0-15〉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 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7)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는 h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는 h층에서 i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 r_{hi}}$$

여기에서 r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과 $N_{h(2)}$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sum_{h=1}^{H}\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left(\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right) / w\l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ldots=\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I(Y_{hij}=c_k)=\begin{cases}1, \text{if } Y_{hij}=c_k\\ 0, \text{otherwise}\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overline{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 \right) / w\cdots$$

$$\overline{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ldots,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overline{Y}) = \sqrt{\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83]

1) 인권 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8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UN, 1989),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제·개정 및 시행 법률 중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20.4.7., 시행 2020.10.1.)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83) Ⅳ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표Ⅱ-3-11〉)'에 따라 지표항목별 결과를 제시하는 장이다. 지표체계의 대분류(보고서의 '절' 단위)-중분류('1')-소분류('(1)')-지표항목(① 체계로 지표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추이를 살펴보는 연속과제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출처 표기 시 연도별 누적이 많아질 경우는 일부 자료 성격에 따라 전년도 인권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연도 자료명을 대표로 제시하고, 2019년에 신규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교차분석표는 주요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0-R10-2)」에서 참고할 수 있다. 통계표에서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세 집단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을 한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계고'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의 용어이고,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체육계열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포괄하는 용어로, '특성화고' 보다 더 큰 개념의 구분이다(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79; 김영지 외, 2017: 71에서 보완 인용). 본 장은 동일한 지표체계에 따라 매년의 지표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사대상과 분석 관련 기준이 동일하므로 이전 년도 해당 사항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김영지 외, 2019: 156).

84)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 제·개정 자료는 2020년 10월 12일~10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검색하여 법령별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12월 내 발표된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추가하였다.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개정 2020.3.24., 시행 2020.10.1.)을 통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개정 2020.9.29., 시행 2020.10.1.)을 통해 시 · 도지사 등이 수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범위,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였다.

최근 12월 2일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분리제도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12.2.).

청소년 기본법 개정(개정 2020.5.19., 시행 2020.11.20.)을 통해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고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9.11.26., 시행 2020.5.27.)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였다.

2020년 6월 2일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성착취와 성학대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5월 19일 동법 개정안(시행 2020.11.20.)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교육·상담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중처벌, 형법에 따른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개정 2020.10.20., 시행 2021.1.21.)을 통해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배치와 관련하여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개정 2019.12.3., 시행 2019.12.3.)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2.25,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제7호에 열거된 생활규정 예시사항들(두발 · 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예시가 학교 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 · 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학교규칙을 정할 수 있다(교육부, 2019.8.29.)

학교보건법 개정(개정 2019.4.23., 시행 2019.10.24.)을 통해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 · 체육장, 교사 · 체육관 · 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 ·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고자 하였다.

학교보건법 개정(개정 2019.12.10., 시행 2020.6.11.)을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바,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 · 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등 지역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0월 이후 2020년 10월 말까지 검색 결과, 노동인권 관련하여 지자체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지역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등이 제정된 것은 전남 나주시를 비롯하여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총 22건이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20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등 12개 지역에서 제정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청양군을 비롯하여 24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김천시를 비롯하여 15건이 제정되었다. 그 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20년 3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7월 10일,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이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되는 중장기 정책계획으로 2020년 8월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이 발표되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비전 달성을 위해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8).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처는 아동권리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독립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행정부의 인권정책 주무부처

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아동 ·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므로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 업무의 아동 · 청소년 인권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리한 결과,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는 25개 부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33-113에 제시된 부처 개수 산정).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평가 ·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의 아동권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업무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20년 4월에 제6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14명을 위촉하여 1차례의 대면회의(안건 :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총회 조치사항, 코로나19 대응 등)와 1차례의 서면회의(안건 : '18, '19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등)가 개최되었다. 2020년 6월에 제4기 아동정책실무위원 민간위원 총 8명을 위촉하여 두 차례의 서면회의가 개최되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놀이혁신위원회'는 두 차례의 대면회의를 통해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a.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및 통계구축,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종합적 아동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아동권리본부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아동권리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보호본부는 대안양육 및 자립지원 업무, 아동학대예방본부에서는 아동학대 및 실종아동업무를 담당하며 아동정책평가센터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1년부터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2017년부터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권리교육, 학교 밖·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기초·심화·보수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108).

인권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진정사건 심의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 총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룬 220개 안건 중에 148건을 의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 323). 2019년에 13건의 권고·의견표명(권고 6건, 의견표명 7건)을 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95건의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각 29건, 65건, 1건)을 하였다. 29건의 권고에 대한 수용현황은 수용 10건, 일부수용 12건, 불수용 4건 등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7: 27-28).

2019년도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권고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2.14. 불수용), 중학교 배정 시 민감정보 요구(2.26. 수용),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3.14. 일부수용),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5.2. 검토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제도개선(6.26. 일부수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8.19. 검토 중) 등의 권고가 있었다. 의견표명으로는 경찰의 아동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2.26), 징계 학생에 대한 학급 임원 자격 박탈(5.27),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6.26),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초기 상담(6.26),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6.26), 아동에 대한 수사내용 언론공표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11.25),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12.26) 등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 331-336).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다양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정책분야 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 예산의 범위와 산출기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결과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아동 ·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으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아·초중등교육, 소년사법,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관련 일반회계 예산 항목 등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일부 사업예산만 포함되며 사업항목 구분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여 추이를 비교하기에는 일정정도 제한점이 있으나 현재 접근 가능한 공식 국가예산자료로는 최선의 산출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김영지 외, 2019: 163). 2019년도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예산비율은 3.5%로 2018년 3.4%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2019년 아동 · 청소년 1인당 국가예산 지출비용은 8,48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Ⅳ-1-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6~2020)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국가예산(A)		268,387,199,393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356,568,643,739
아동·청소년예산	유아·초중등교육	41,511,850,346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324,475,000
	소년사법	20,960,000	22,371,000	23,967,000	23,864,000	27,043,000
	아동복지	229,831,000	245,178,000	899,377,000	2,385,469,000	2,541,321,000
	보육	5,270,824,000	5,373,451,000	5,505,231,000	5,689,214,000	5,872,783,000
	(아동폭력예방)	13,650,000	11,773,000	12,251,000	99,909,000	122,217,000
	청소년	68,691,000	87,169,000	77,353,000		
	소계(B)	47,115,806,346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68,887,839,000
(B)/(A)*100(%)		17.6	19.2	20.0	20.3	20.3
아동청소년 인구(명)		8,736,051	8,480,447	8,176,335	7,964,880	7,745,484
1인당 지출비용(천원)		5,393	6,237	7,367	8,487	8,894
GDP(국내총생산)		1,641.8조원	1,730.4조원	1,782.3조원	1,919.9조원	-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예산비율(%)		2.9	3.1	3.4	3.5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예산.
* 아동 · 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전체 국가예산(A)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예산 일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2020. 09. 07 인출. 아동 · 청소년 인구는 2020년 8월 기준 수치로, 2020년 최종 아동 · 청소년 인구수는 2021년에 업데이트됨.)
* 2019년 예산 및 아동 · 청소년 인구는 최종 공지된 예산과 인구수(2019. 12 기준)로 업데이트하여 재산출되었음.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9년 8월 21일 인출. 2019년도 GDP는 2020년에 발표됨.
*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 · 청소년 예산(총계)/GDP×100
* 최근 년도 예산자료에 제시된 기준으로 이전년도 예산수치를 수정함.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지표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른다' 30.1%, '이름만 들어봤다' 48.6%,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1.2%로 나타나 협약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Ⅳ-1-2〉).

표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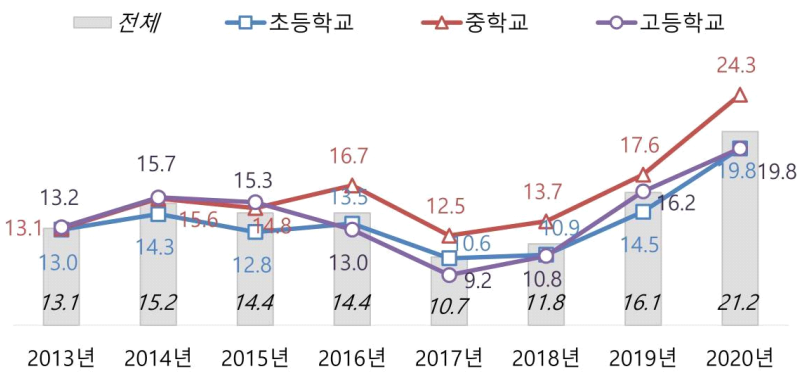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0.1	48.6	21.2	100.0(8,563)	
성별	남학생	32.9	46.8	20.3	100.0(4,430)	33.824***
	여학생	27.2	50.6	22.2	100.0(4,133)	
학교급	초등학교	38.2	42.0	19.8	100.0(2,854)	156.677***
	중학교	24.3	51.4	24.3	100.0(2,729)	
	고등학교	27.7	52.5	19.8	100.0(2,981)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고교유형	일반계고	26.9	52.4	20.7	100.0(2,402)	8.225*
	특성화계고	31.1	52.9	16.0	100.0(579)	
지역규모	대도시	27.8	48.8	23.4	100.0(3,324)	41.726***
	중소도시	30.6	48.4	21.0	100.0(4,104)	
	읍면지역	35.5	48.9	15.6	100.0(1,135)	

*p 〈 .05, ***p 〈 .001.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2.2%)이 남학생(20.3%)보다, 대도시일수록(대도시 23.4%, 중소도시 21.0%, 읍면지역 15.6%)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4.3%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19.8%로 나타났다.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최저점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가장 높은 응답률(21.2%)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대비 인지도가 5.1%p 증가하였다.

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른다' 47.5%, '이름만 들어봤다' 44.6%,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7.9%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8.0%, 남 7.8%)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11.7%, 중 7.3%, 초 4.5%), 중소도시(8.6%), 읍면지역(7.6%), 대도시(7.1%) 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Ⅳ-1-3〉).

표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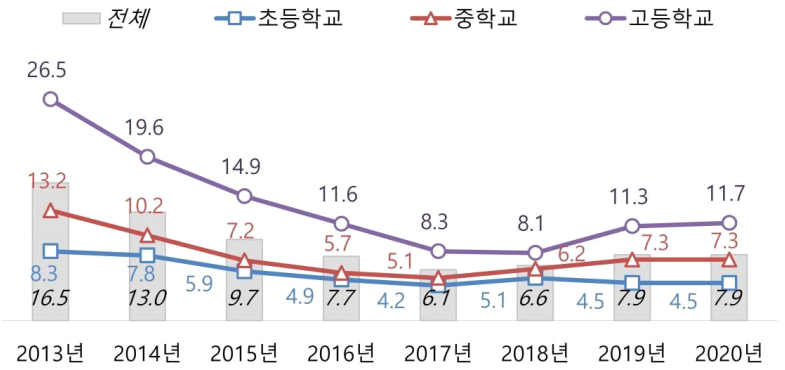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47.5	44.6	7.9	100.0(8,557)	
성별	남학생	49.7	42.5	7.8	100.0(4,424)	17.976***
	여학생	45.2	46.8	8.0	100.0(4,133)	
학교급	초등학교	58.8	36.8	4.5	100.0(2,848)	281.439***
	중학교	45.2	47.5	7.3	100.0(2,728)	
	고등학교	39.0	49.4	11.7	100.0(2,981)	
고교유형	일반계고	37.4	50.2	12.3	100.0(2,402)	14.052***
	특성화계고	45.2	46.0	8.8	100.0(579)	
지역규모	대도시	50.4	42.5	7.1	100.0(3,323)	26.185***
	중소도시	44.7	46.7	8.6	100.0(4,101)	
	읍면지역	49.5	42.9	7.6	100.0(1,134)	

***p 〈 .001.

학생인권조례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초반의 사회분위기에 따라 2013년에 16.5%의 인지도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6~7%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85] 2017년을 기점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5)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경기도교육청(2010년), 광주광역시교육청(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2012년), 전라북도교육청(2013년) 등 4개 지역에서 최근 충청남도교육청(2020년)이 추가되었다.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률은, '모른다' 21.0%, '이름만 들어봤다' 54.3%,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24.7%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진정·구제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인 경우(여 27.1%, 남 22.5%),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7.9%), 고등학생(26.1%), 초등학생(20.2%)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27.6%, 중소도시 23.1%, 읍면지역 22.0%)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표 Ⅳ-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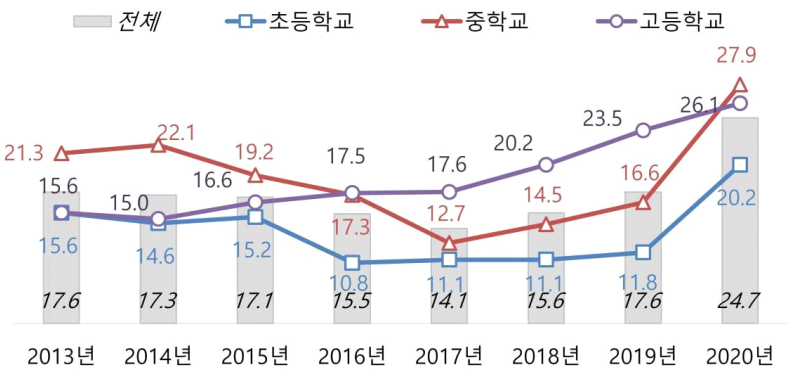
표 Ⅳ-1-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1.0	54.3	24.7	100.0(8,557)	
성별	남학생	23.9	53.6	22.5	100.0(4,424)	55.303***
	여학생	17.9	55.1	27.1	100.0(4,133)	
학교급	초등학교	25.3	54.5	20.2	100.0(2,849)	75.418***
	중학교	18.8	53.3	27.9	100.0(2,729)	
	고등학교	18.8	55.1	26.1	100.0(2,979)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고교유형	일반계고	17.3	55.5	27.2	100.0(2,402)	22.873***
	특성화계고	25.3	53.4	21.2	100.0(577)	
지역규모	대도시	19.9	52.6	27.6	100.0(3,322)	24.671***
	중소도시	21.6	55.2	23.1	100.0(4,101)	
	읍면지역	21.8	56.2	22.0	100.0(1,134)	

***p 〈 .001.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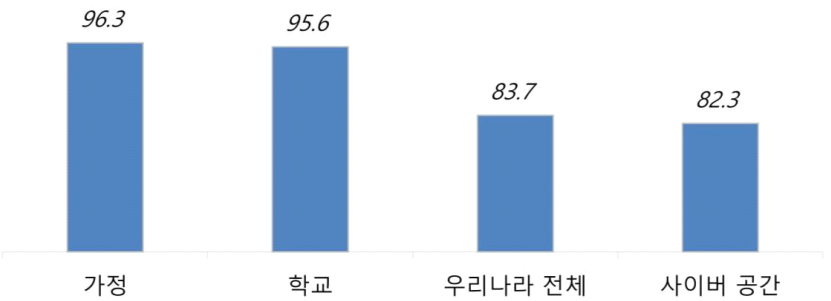
그림 Ⅳ-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2018년 사이 낮아진 인지도가 2019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7년까지 낮아지다가 2018년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202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 응답률을 추월한 것을 볼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아동 ·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지표항목은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등 아동 ·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

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은 가정(96.3%), 학교(95.6%), 우리나라 전체(83.7%), 사이버 공간(82.3%)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1-4]).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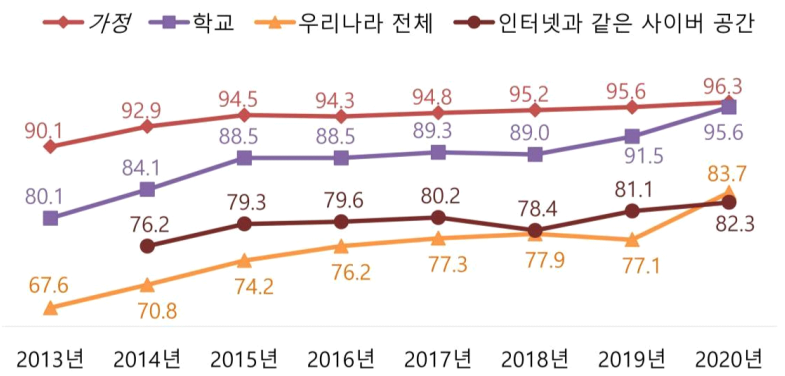


그림 Ⅳ-1-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인권존중 정도 변화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 우리나라 전체 순으로 인권존중도가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존중도 응답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의 인권존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020년 응답률 변화를 보면, 학교에서의 인권존중도가 2014년 84.1%에서 2020년 95.6%로 11.5%p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 존중도는 2014년 70.8%에서 2020년 83.7%로 12.9%p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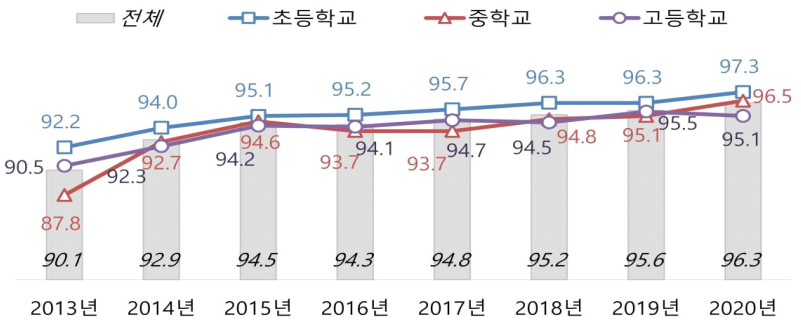
각 생활영역별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해 96.3%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40.0%, 매우 존중 56.3%)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7.3%, 중 96.5%, 고 95.1%), 양부모가정(96.8%), 한부모가정(91.5%), 조손가정(91.1%) 순으로, 학업 성적(상 97.5%, 중 97.0%, 하 93.4%)과 경제적 수준(상 97.9%, 중 95.9%, 하 85.8%)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Ⅳ-1-5〉).

표 Ⅳ-1-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2(0.59)	0.7	3.0	40.0	56.3	100.0(8,566)	
성별	남학생	3.52(0.59)	0.7	2.6	40.1	56.5	100.0(4,432)	5.466
	여학생	3.51(0.60)	0.7	3.5	39.9	56.0	100.0(4,134)	
학교급	초등학교	3.58(0.56)	0.5	2.3	35.7	61.6	100.0(2,859)	65.870***
	중학교	3.51(0.58)	0.6	2.9	41.4	55.1	100.0(2,729)	
	고등학교	3.46(0.62)	1.1	3.9	42.9	52.2	100.0(2,9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4(0.57)	0.5	2.7	39.4	57.4	100.0(7,661)	131.992***
	한부모가정	3.35(0.69)	2.0	6.5	46.1	45.4	100.0(619)	
	조손가정	3.41(0.70)	1.7	7.2	39.9	51.2	100.0(94)	
	기타	3.34(0.81)	5.6	4.1	41.2	49.1	100.0(145)	
학업 성적	상	3.63(0.55)	0.5	2.0	31.1	66.4	100.0(2,692)	267.187***
	중	3.52(0.57)	0.4	2.6	41.3	55.7	100.0(3,833)	
	하	3.36(0.65)	1.3	5.4	49.4	44.0	100.0(1,995)	
경제적 수준	상	3.62(0.54)	0.4	1.7	33.8	64.1	100.0(4,804)	457.149***
	중	3.43(0.60)	0.7	3.3	47.7	48.2	100.0(3,086)	
	하	3.20(0.73)	2.3	11.9	49.2	36.6	100.0(623)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생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중학생보다 미세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중학생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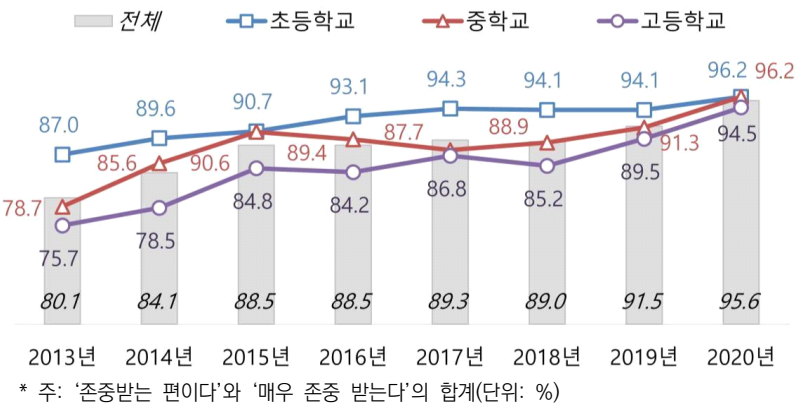
표 Ⅳ-1-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3(0.58)	0.8	3.6	57.4	38.2	100.0(8,564)	
성별	남학생	3.32(0.61)	1.1	4.2	56.3	38.4	100.0(4,433)	22.370***
	여학생	3.34(0.56)	0.5	2.9	58.7	37.9	100.0(4,131)	
학교급	초등학교	3.38(0.57)	0.4	3.4	54.0	42.2	100.0(2,857)	55.607***
	중학교	3.34(0.56)	0.5	3.3	58.4	37.8	100.0(2,729)	
	고등학교	3.28(0.60)	1.4	4.0	59.8	34.7	100.0(2,978)	
고교 유형	일반계고	3.29(0.61)	1.4	4.0	58.7	35.9	100.0(2,399)	7.689
	특성화계고	3.23(0.59)	1.4	4.0	64.7	29.9	100.0(579)	
지역 규모	대도시	3.37(0.58)	0.7	3.0	54.5	41.8	100.0(3,321)	38.762***
	중소도시	3.31(0.59)	0.9	3.7	58.7	36.6	100.0(4,109)	
	읍면지역	3.27(0.58)	0.7	4.6	61.4	33.3	100.0(1,134)	
학업 성적	상	3.45(0.56)	0.5	2.0	49.5	48.0	100.0(2,691)	260.459***
	중	3.32(0.56)	0.5	3.4	59.5	36.7	100.0(3,832)	
	하	3.18(0.61)	1.8	6.0	64.3	27.9	100.0(1,995)	
경제적 수준	상	3.40(0.57)	0.5	2.9	52.9	43.7	100.0(4,803)	238.544***
	중	3.27(0.56)	0.6	3.7	63.4	32.3	100.0(3,085)	
	하	3.11(0.68)	3.6	8.0	62.7	25.7	100.0(623)	

***p 〈 .001.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는, 95.6%가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57.4%, 매우 존중 38.2%)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학생인 경우(여 96.6%, 남 94.7%),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6.2%, 중 96.2%, 고 94.5%), 대도시일수록(대도시 96.3%, 중소도시 95.3%, 읍면지역 94.7%), 학업성적(상 97.5%, 중 96.2%, 하 92.2%)과 경제적 수준(상 96.6%, 중 95.7%, 하 88.4%)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6〉).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유지되고 있다.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고등학생이 2018년에 85.2%였으나, 2020년에는 94.5%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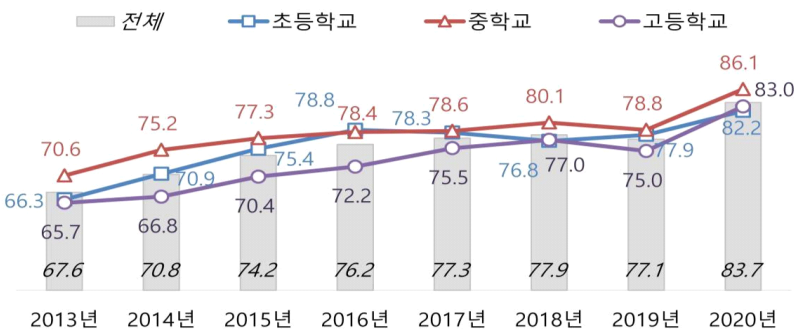
표 Ⅳ-1-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5(0.70)	3.1	13.2	59.8	23.9	100.0(8,545)	
성별	남학생	3.06(0.73)	3.8	13.0	57.0	26.2	100.0(4,427)	46.028***
	여학생	3.03(0.66)	2.4	13.3	62.8	21.5	100.0(4,118)	
학교급	초등학교	3.04(0.75)	4.3	13.5	55.7	26.5	100.0(2,841)	54.022***
	중학교	3.07(0.65)	2.1	11.8	63.3	22.8	100.0(2,728)	
	고등학교	3.03(0.69)	2.9	14.1	60.5	22.5	100.0(2,976)	
지역 규모	대도시	3.06(0.73)	3.3	13.4	56.9	26.5	100.0(3,317)	30.623***
	중소도시	3.04(0.69)	3.1	12.6	61.3	23.0	100.0(4,095)	
	읍면지역	3.00(0.67)	2.5	14.6	62.9	20.0	100.0(1,13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6(0.69)	2.8	12.7	60.1	24.4	100.0(7,643)	55.077***
	한부모가정	2.91(0.73)	4.6	17.8	59.3	18.3	100.0(617)	
	조손가정	3.06(0.77)	3.7	15.4	51.6	29.3	100.0(94)	
	기타	2.89(0.87)	10.4	12.8	54.4	22.3	100.0(144)	
학업 성적	상	3.14(0.69)	2.3	11.3	56.9	29.6	100.0(2,684)	101.912***
	중	3.04(0.69)	3.1	12.9	61.2	22.8	100.0(3,824)	
	하	2.94(0.71)	4.1	16.2	61.1	18.6	100.0(1,992)	
경제적 수준	상	3.11(0.70)	2.7	11.7	57.3	28.4	100.0(4,795)	204.002***
	중	3.00(0.67)	3.0	13.4	64.1	19.5	100.0(3,076)	
	하	2.75(0.75)	6.9	23.1	58.2	11.8	100.0(622)	

***p 〈 .001.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83.7%(존중받는 편 59.8%, 매우 존중 23.9%)로 나타났다. 여학생(여 84.3%, 남 83.2%)인 경우, 중학생(86.1%)이 고등학생(83.0%)과 초등학생(82.2%)보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84.3%), 대도시(83.4%), 읍면지역(82.9%) 순으로, 양부모가정(84.5%), 조손가정(80.9%), 한부모가정(77.6%) 순으로, 학업성적(상 86.5%, 중 84.0%, 하 79.7%)과 경제적 수준(상 85.7%, 중 83.6%, 하 70.0%)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7〉).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에 비교적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경향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생 응답률이 계속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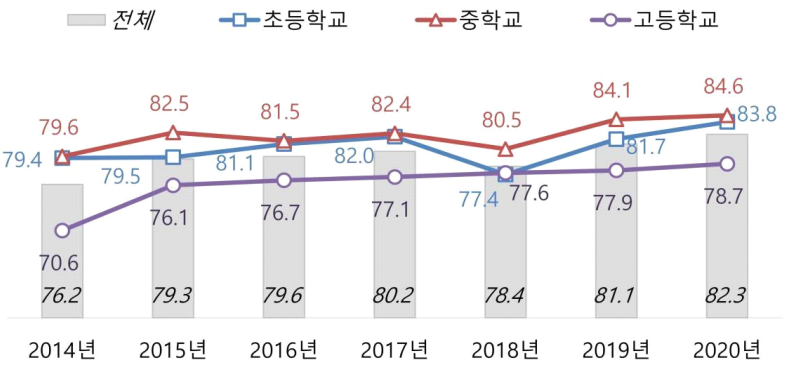
표 Ⅳ-1-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2(0.75)	4.8	12.9	58.1	24.2	100.0(8,526)	
성별	남학생	3.00(0.79)	5.9	13.9	54.8	25.3	100.0(4,415)	50.489***
	여학생	3.04(0.70)	3.7	11.8	61.6	23.0	100.0(4,110)	
학교급	초등학교	3.07(0.79)	5.9	10.3	54.6	29.2	100.0(2,822)	120.859***
	중학교	3.05(0.69)	3.2	12.2	61.5	23.1	100.0(2,727)	
	고등학교	2.94(0.76)	5.4	16.0	58.2	20.5	100.0(2,976)	
지역 규모	대도시	3.05(0.76)	4.6	12.4	55.8	27.2	100.0(3,314)	33.763***
	중소도시	3.00(0.75)	4.9	13.2	58.8	23.2	100.0(4,087)	
	읍면지역	2.95(0.73)	5.3	13.2	62.3	19.2	100.0(1,124)	
학업 성적	상	3.10(0.77)	4.9	10.5	54.6	30.0	100.0(2,673)	91.743***
	중	3.01(0.73)	4.4	13.5	59.4	22.8	100.0(3,814)	
	하	2.93(0.75)	5.4	15.1	60.2	19.3	100.0(1,994)	
경제적 수준	상	3.08(0.76)	4.6	11.6	54.8	28.9	100.0(4,780)	171.573***
	중	2.96(0.71)	4.4	13.6	63.1	18.9	100.0(3,073)	
	하	2.78(0.79)	8.5	19.1	58.0	14.4	100.0(620)	

***p < .001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지 알아본 결과, 82.3%가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 58.1%, 매우 존중 24.2%)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여 84.6%, 남 80.1%)인 경우, 중학생(84.6%), 초등학생(83.8%), 고등학생(78.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3.0%, 중소도시 82.0%, 읍면지역 81.5%), 학업성적(상 84.6%, 중 82.2%, 하 79.5%)과 경제적 수준(상 83.7%, 중 82.0%, 하 72.4%)이 높을수록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8〉).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76.2%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9년 81.1%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높고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청소년 참여조직의 의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4개 문항과 경제적 배경, 성별, 민족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3개 문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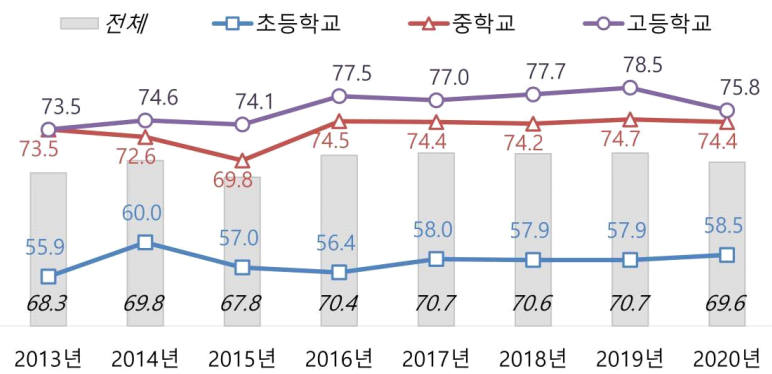
표 Ⅳ-1-9.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8(0.83)	26.7	42.9	26.4	4.0	100.0(8,561)	
성별	남학생	2.15(0.85)	24.9	40.0	30.0	5.1	100.0(4,432)	98.957***
	여학생	2.00(0.79)	28.6	46.0	22.5	2.9	100.0(4,129)	
학교급	초등학교	2.28(0.88)	20.8	37.7	33.9	7.6	100.0(2,857)	323.398***
	중학교	2.00(0.77)	27.8	46.6	23.5	2.1	100.0(2,728)	
	고등학교	1.95(0.79)	31.3	44.5	21.8	2.3	100.0(2,977)	
고교 유형	일반계고	1.92(0.78)	32.4	45.2	20.4	2.0	100.0(2,399)	22.983***
	특성화계고	2.08(0.83)	27.0	41.7	27.6	3.8	100.0(578)	
지역 규모	대도시	2.05(0.84)	28.8	41.8	25.3	4.1	100.0(3,318)	13.372*
	중소도시	2.09(0.82)	25.7	43.4	27.0	3.9	100.0(4,109)	
	읍면지역	2.11(0.82)	24.4	44.1	27.4	4.1	100.0(1,135)	
경제적 수준	상	2.11(0.85)	26.1	41.7	27.1	5.2	100.0(4,802)	57.386***
	중	2.05(0.80)	26.6	44.7	25.9	2.8	100.0(3,083)	
	하	1.92(0.78)	33.3	43.1	22.1	1.5	100.0(624)	

*p 〈 .05, ***p 〈 .00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69.6%가 ‘그렇지 않다(전혀 26.7%, 그렇지 않은 편 42.9%)’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 정도가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여 74.6%, 남 64.9%)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75.8%, 중 74.4%, 초 58.5%), 대도시일수록(대도시 70.6%, 중소도시 69.1%, 읍면지역 68.5%),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76.4%, 중 71.3%, 상 67.8%) 청소년은 주체적 결정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다(〈표 Ⅳ-1-9〉).



* 주: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로 그래프 제시(단위: %)

그림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비동의(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60~70% 수준에서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 응답률도 미세하게 내려갔다. 전체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Ⅳ-1-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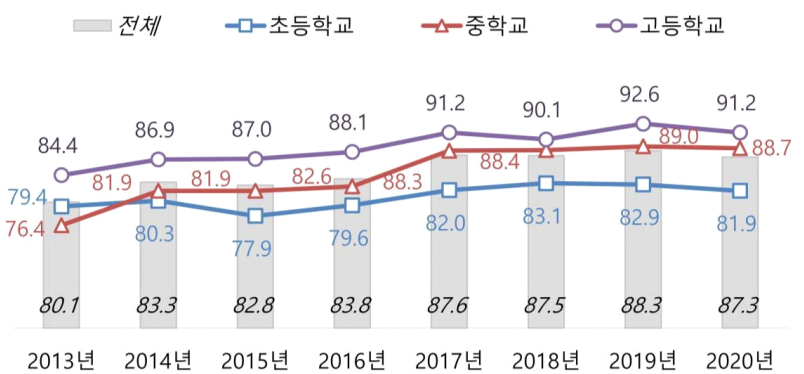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6(0.72)	3.2	9.5	55.7	31.6	100.0(8,550)	
성별	남학생	3.06(0.76)	4.8	11.5	56.9	26.7	100.0(4,425)	182.884***
	여학생	3.26(0.66)	1.5	7.3	54.4	36.7	100.0(4,125)	
학교급	초등학교	3.07(0.78)	4.4	13.7	51.9	30.0	100.0(2,848)	140.393***
	중학교	3.16(0.68)	2.3	9.1	58.6	30.1	100.0(2,725)	
	고등학교	3.23(0.68)	2.9	5.9	56.8	34.4	100.0(2,977)	
고교 유형	일반계고	3.26(0.67)	2.5	5.2	55.8	36.5	100.0(2,399)	34.836***
	특성화계고	3.08(0.72)	4.6	8.7	61.0	25.8	100.0(57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지역 규모	대도시	3.20(0.72)	2.8	9.3	53.0	34.9	100.0(3,313)	32.647***
	중소도시	3.13(0.72)	3.4	9.9	57.1	29.6	100.0(4,104)	
	읍면지역	3.13(0.71)	3.7	8.5	59.0	28.9	100.0(1,133)	
경제적 수준	상	3.17(0.73)	3.4	9.7	53.6	33.4	100.0(4,795)	23.438***
	중	3.15(0.69)	2.8	9.0	58.9	29.3	100.0(3,080)	
	하	3.15(0.71)	3.5	8.6	57.5	30.4	100.0(624)	

***p 〈 .00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7.3%가 그렇다(그런편 55.7%, 매우 31.6%)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여 91.1%, 남 83.6%)인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1.2%, 중 88.7%, 초 81.9%),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87.9%, 중소도시 86.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중간층인 경우(88.2%)가 하(87.9%)와 상인 경우(87.0%)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Ⅳ-1-10〉).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폭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2013년 대비 중학생의 응답률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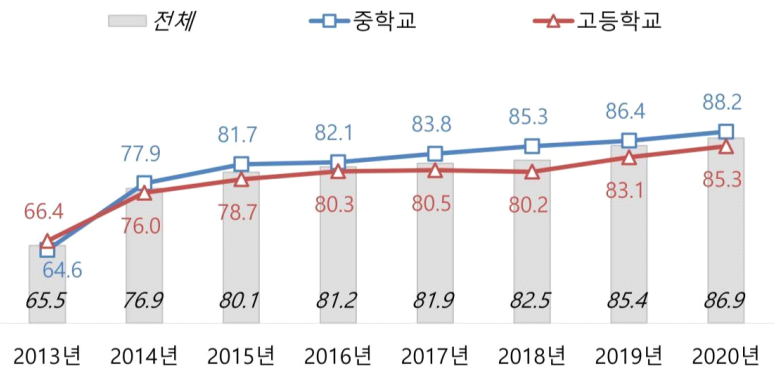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0(0.69)	3.3	9.7	60.9	26.0	100.0(8,536)	
성별	남학생	3.04(0.72)	4.4	10.9	61.0	23.7	100.0(4,419)	65.531***
	여학생	3.16(0.66)	2.2	8.4	60.9	28.6	100.0(4,117)	
학교급	초등학교	3.15(0.70)	3.0	9.5	57.3	30.2	100.0(2,839)	50.398***
	중학교	3.10(0.66)	2.8	9.0	64.1	24.1	100.0(2,723)	
	고등학교	3.05(0.71)	4.1	10.6	61.5	23.8	100.0(2,974)	
고교 유형	일반계고	3.07(0.71)	3.8	10.5	60.9	24.9	100.0(2,396)	9.163*
	특성화계고	2.98(0.72)	5.3	10.9	64.1	19.6	100.0(578)	
지역 규모	대도시	3.13(0.70)	3.1	9.7	58.0	29.2	100.0(3,304)	32.747***
	중소도시	3.07(0.69)	3.7	9.7	62.3	24.3	100.0(4,098)	
	읍면지역	3.08(0.66)	2.8	9.9	64.3	23.0	100.0(1,13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1(0.68)	2.9	9.4	61.4	26.3	100.0(7,635)	74.695***
	한부모가정	2.98(0.77)	5.5	13.8	57.8	22.9	100.0(618)	
	조손가정	2.96(0.89)	11.3	7.6	54.9	26.3	100.0(93)	
	기타	3.01(0.90)	10.7	7.5	52.3	29.5	100.0(144)	
학업 성적	상	3.21(0.71)	3.2	7.4	55.0	34.4	100.0(2,684)	179.953***
	중	3.08(0.66)	2.7	10.2	63.1	24.0	100.0(3,815)	
	하	2.98(0.70)	4.6	11.7	64.8	18.9	100.0(1,990)	
경제적 수준	상	3.14(0.70)	3.3	8.6	59.0	29.1	100.0(4,784)	77.509***
	중	3.06(0.66)	2.8	10.4	64.4	22.4	100.0(3,076)	
	하	2.96(0.76)	5.7	13.6	59.4	21.3	100.0(623)	

*p 〈 .05, ***p 〈 .001.

학생회 등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률은 86.9%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여 89.5%, 남 84.7%)인 경우, 중학생(88.2%), 초등학생(87.5%), 고등학생(85.3%)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8.1%, 중 86.8%, 하 80.7%)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11〉).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생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학생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한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도부터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을 추가하여 차년도부터 추이 그래프에 포함가능하다.

표 Ⅳ-1-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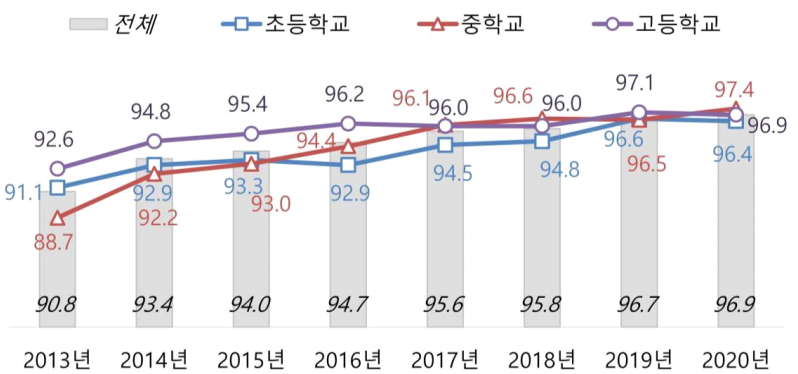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7(0.59)	1.0	2.1	36.3	60.6	100.0(8,538)	
성별	남학생	3.49(0.63)	1.5	2.6	40.7	55.2	100.0(4,419)	135.268***
	여학생	3.64(0.53)	0.4	1.6	31.5	66.5	100.0(4,119)	
학교급	초등학교	3.61(0.59)	0.8	2.8	30.7	65.7	100.0(2,846)	74.396***
	중학교	3.56(0.57)	0.7	1.9	38.4	59.0	100.0(2,723)	
	고등학교	3.53(0.61)	1.4	1.7	39.6	57.3	100.0(2,96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고교 유형	일반계고	3.55(0.59)	1.2	1.5	38.5	58.8	100.0(2,390)	14.722**
	특성화계고	3.44(0.66)	2.3	2.4	44.3	51.1	100.0(579)	
지역 규모	대도시	3.61(0.57)	0.8	1.9	32.3	64.9	100.0(3,311)	47.671***
	중소도시	3.54(0.60)	1.0	2.4	38.0	58.6	100.0(4,093)	
	읍면지역	3.51(0.61)	1.3	2.0	41.3	55.5	100.0(1,134)	
경제적 수준	상	3.60(0.57)	0.8	1.8	33.8	63.6	100.0(4,791)	54.317***
	중	3.52(0.60)	0.9	2.7	39.8	56.6	100.0(3,077)	
	하	3.53(0.65)	2.3	1.8	36.8	59.2	100.0(622)	

**p < .01, ***p < .001.

표현의 자유 필요성에 대해 96.9%의 응답자가 모든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8.0%, 남 95.9%)인 경우, 중학교(97.4%), 고등학교(96.9%), 초등학교(96.4%)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7.4%, 중 96.4%, 하 96.0%) 모든 사람이 의견표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12〉).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응답률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오다가 2020년에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별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이주배경 여부 등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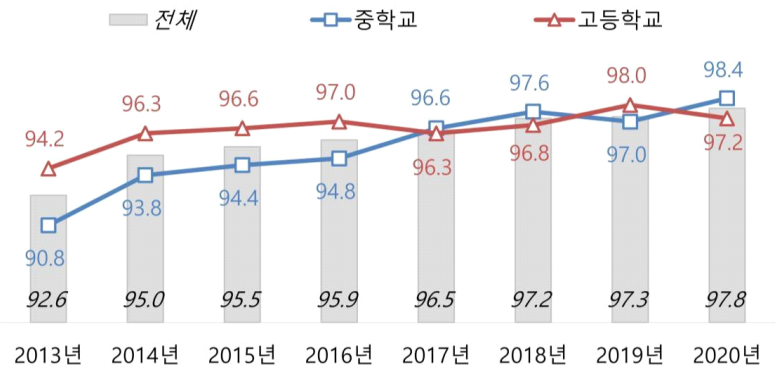
표 Ⅳ-1-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73(0.53)	1.0	1.1	21.5	76.3	100.0(8,547)	
성별	남학생	3.66(0.60)	1.7	1.7	25.1	71.5	100.0(4,423)	145.583***
	여학생	3.80(0.43)	0.3	0.5	17.8	81.4	100.0(4,124)	
학교급	초등학교	3.80(0.50)	1.1	0.9	15.2	82.8	100.0(2,848)	119.298***
	중학교	3.72(0.50)	0.5	1.1	24.2	74.2	100.0(2,723)	
	고등학교	3.68(0.57)	1.4	1.4	25.2	72.0	100.0(2,9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5(0.50)	0.7	1.0	21.4	77.0	100.0(7,646)	137.562***
	한부모가정	3.65(0.65)	2.5	2.6	22.5	72.5	100.0(617)	
	조손가정	3.57(0.84)	7.3	0.6	19.7	72.4	100.0(93)	
	기타	3.50(0.87)	7.3	3.1	21.9	67.8	100.0(145)	
경제적 수준	상	3.76(0.52)	1.0	1.1	18.8	79.0	100.0(4,795)	53.256***
	중	3.70(0.53)	0.8	1.2	25.4	72.6	100.0(3,077)	
	하	3.71(0.58)	1.8	1.0	21.9	75.3	100.0(621)	

***p 〈 .001.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97.8%의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다(그런 편 21.5%, 매우 그렇다 76.3%).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99.2%, 남 96.6%)인 경우, 양부모가정(98.4%), 한부모가정(95.0%), 조손가정(92.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은 중(98.0%), 상(97.8%), 하(97.2%) 순으로 가정형편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Ⅳ-1-13〉).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생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97.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중학생 응답률이 소폭 상승하여 고등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Ⅳ-1-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70(0.56)	1.1	1.8	22.9	74.2	100.0(8,543)	
성별	남학생	3.62(0.62)	1.7	2.6	27.2	68.4	100.0(4,425)	187.917***
	여학생	3.79(0.46)	0.4	0.9	18.2	80.5	100.0(4,118)	
학교급	초등학교	3.77(0.51)	0.9	1.6	16.9	80.6	100.0(2,844)	118.385***
	중학교	3.71(0.52)	0.6	1.4	24.8	73.2	100.0(2,723)	
	고등학교	3.63(0.61)	1.6	2.4	26.8	69.1	100.0(2,975)	
지역 규모	대도시	3.73(0.54)	1.0	1.8	20.0	77.2	100.0(3,311)	36.072***
	중소도시	3.69(0.56)	1.1	1.6	24.0	73.3	100.0(4,098)	
	읍면지역	3.65(0.58)	1.0	2.5	27.3	69.2	100.0(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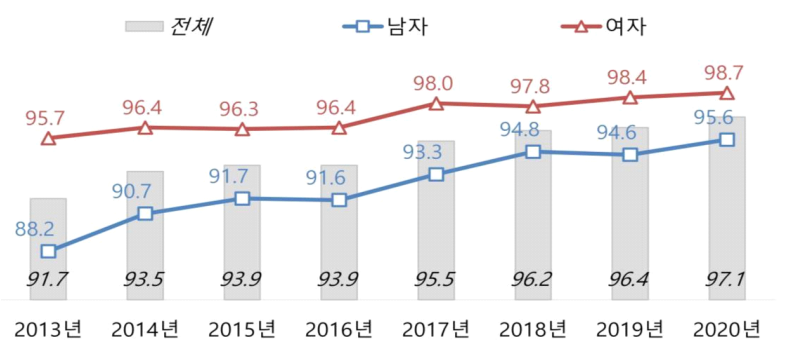
***p 〈 .001.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7.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22.9%, 매우 그렇다 74.2%)'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여 98.7%, 남 95.6%)인 경우, 중학생(98.0%), 초등학생(97.5%), 고등학생(95.9%) 순으로, 지역규모는 중소도시(97.3%), 대도시(97.2%), 읍면지역(96.5%) 순으로 양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4>).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학교급별 양성평등의식의 연도별 추이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90.4%에서 2020년 98.0%로 증가). 전년도 대비 모든 교급 응답률이 소폭 상승하였다. 성별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2013년 95.7%에서 2020년 98.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2013년 88.2%에서 2020년 95.6%까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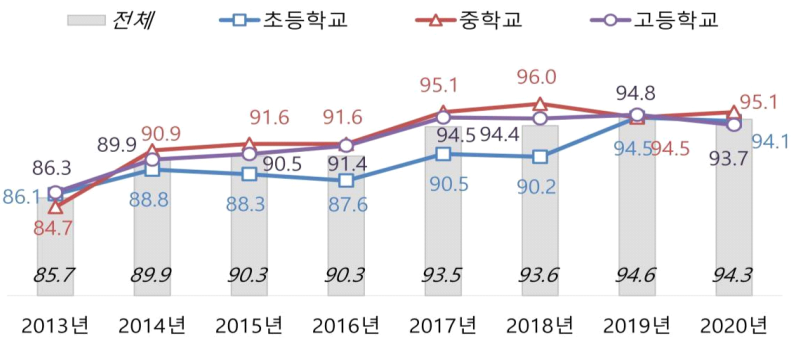
표 Ⅳ-1-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4(0.65)	1.6	4.1	33.1	61.2	100.0(8,547)	
성별	남학생	3.48(0.70)	2.4	4.7	35.6	57.2	100.0(4,425)	85.865***
	여학생	3.60(0.59)	0.7	3.5	30.4	65.4	100.0(4,121)	
학교급	초등학교	3.61(0.64)	1.3	4.6	26.0	68.1	100.0(2,847)	127.195***
	중학교	3.54(0.62)	1.0	3.9	35.3	59.8	100.0(2,724)	
	고등학교	3.47(0.69)	2.4	3.9	37.9	55.8	100.0(2,976)	
지역 규모	대도시	3.55(0.66)	1.7	4.4	31.1	62.8	100.0(3,312)	27.335***
	중소도시	3.54(0.65)	1.7	3.7	33.2	61.4	100.0(4,101)	
	읍면지역	3.49(0.64)	1.0	4.6	38.6	55.7	100.0(1,134)	

***p 〈 .001.

국내거주 외국인도 우리와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4.3%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 33.1%, 매우 그렇다 61.2%)'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여 95.8%, 남 92.8%)인 경우, 중학교(95.1%), 초등학교(94.1%), 고등학교(93.7%) 순으로, 지역규모는 중소도시(94.6%), 읍면지역(94.3%), 대도시(93.9%) 순으로 이주배경 외국인의 교육권 보장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1-15〉).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7.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미세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도 대비 2020년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였고, 중학생 응답은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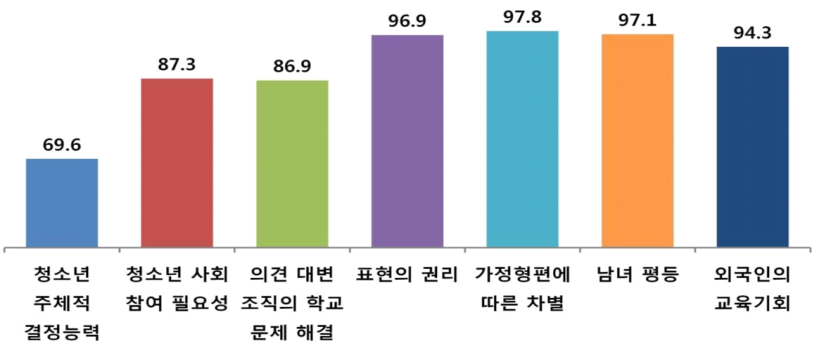


그림 Ⅳ-1-18. 인권의식과 태도_전체

지금까지 살펴본 인권의식과 태도 7개 문항의 '그렇다'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표현의 자유와 비차별 인식은 90% 중반을 넘어서는 높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고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해서도 80% 후반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 관련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추진 실적으로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와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의거하여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가지고 있다(www.law.go.kr 검색).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현황자료에는 다양한 교육대상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과 직접 관련되는 인권교육 통계를 엄밀히 분리해 내기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유일한 인권교육 통계라 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9: 19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4,948회 392,098명에게 실시하였다. 학교분야 인권교육과정으로 초·중등교원 대상 인권교육, 학교관리자(교장·교감)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유치원 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 220-225).

표 Ⅳ-1-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7년	3,910	221,171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2018년	4,160	299,936	427	19,957	484	8,542	1,133	165,248	2,116	106,189
2019년	4,948	392,098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5).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22.
* 주: 2017년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2018년에는 '인권특강'으로 분류됨.

② 인권교육 경험

2019년부터는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을 횟수가 아닌 경험 여부로만 응답하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조사 결과 46.5%의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3.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17>).

표 Ⅳ-1-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6.5	53.5	100.0(8,412)	
성별	남학생	42.3	57.7	100.0(4,340)	65.511***
	여학생	51.1	48.9	100.0(4,072)	
학교급	초등학교	55.2	44.8	100.0(2,723)	163.527***
	중학교	47.0	53.0	100.0(2,719)	
	고등학교	38.2	61.8	100.0(2,969)	
고교유형	일반계고	39.6	60.4	100.0(2,395)	9.768**
	특성화계고	32.6	67.4	100.0(575)	
지역규모	대도시	47.8	52.2	100.0(3,285)	12.727**
	중소도시	46.9	53.1	100.0(4,013)	
	읍면지역	41.7	58.3	100.0(1,114)	
경제적 수준	상	49.4	50.6	100.0(4,711)	34.178***
	중	43.2	56.8	100.0(3,038)	
	하	41.9	58.1	100.0(612)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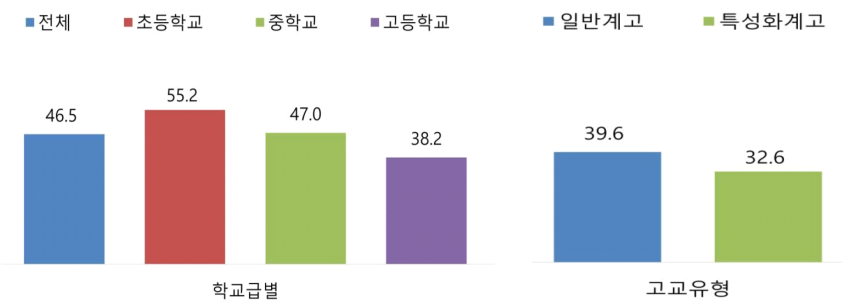


그림 Ⅳ-1-19. 인권교육 경험(학교급별)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여 51.1%, 남 42.3%)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5.2%, 중 47.0%, 고 38.2%), 대도시일수록(대도시 47.8%, 중소도시 46.9%, 읍면지역 41.7%),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49.4%, 중 43.2%, 하 41.9%)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학교 교과수업 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4.9	34.5	11.4	2.7	100.0(3,877)
성별	남학생	72.4	35.7	12.0	3.1	100.0(1,808)
	여학생	77.0	33.4	10.9	2.3	100.0(2,069)
학교급	초등학교	85.3	23.7	11.1	4.5	100.0(1,486)
	중학교	80.4	29.6	11.7	2.0	100.0(1,270)
	고등학교	54.8	54.3	11.3	1.1	100.0(1,121)
고교 유형	일반계고	53.4	56.8	10.5	0.7	100.0(936)
	특성화계고	61.8	41.4	15.7	3.0	100.0(185)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 도덕 등) 74.9%,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4.5%,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사회단체 등) 11.4% 순으로 학교 교과수업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교과수업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85.3%), 중학생(80.4%), 고등학생(54.8%)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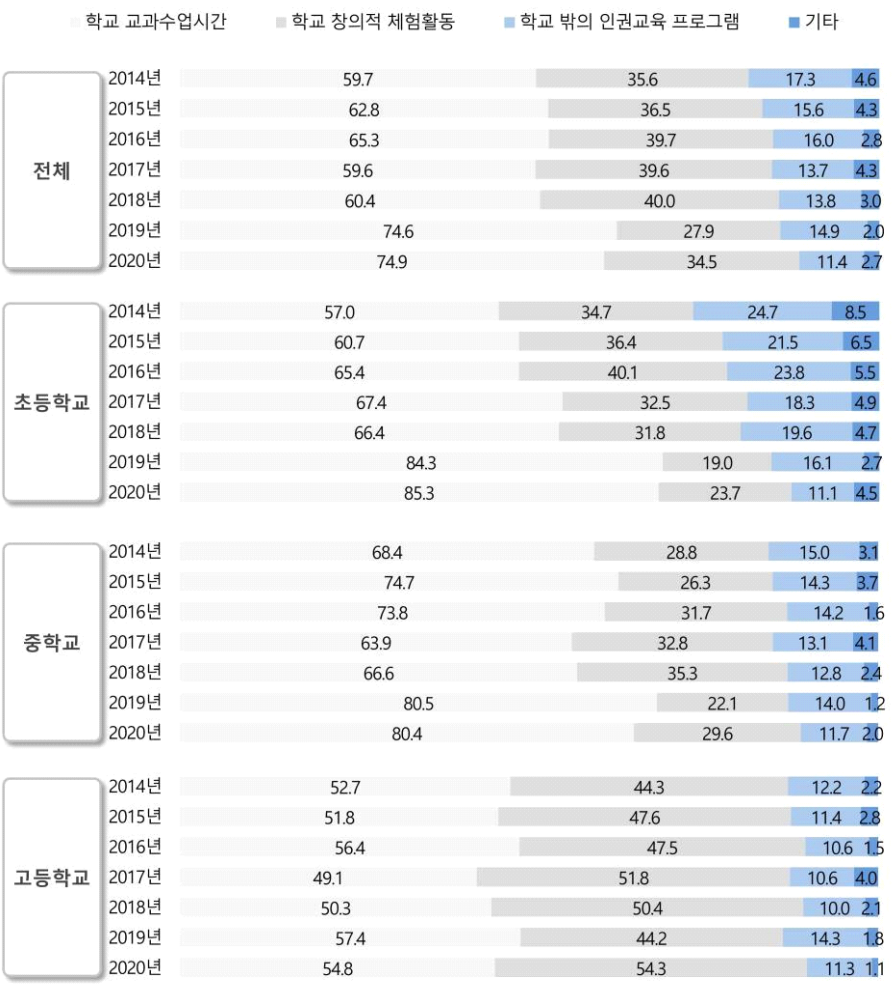


그림 Ⅳ-1-20.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를 보면 2019년부터 학교 교과수업시간 경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018년 60.4% → 2019년 74.6% → 2020년 74.9%).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을 이용한 인권교육이 80%

를 넘어서고 있고(초등학생 85.3%, 중학생 80.4%), 고등학교는 2014년 이래로 학교 교과수업시간과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인권교육이 5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인권교육의 효과는 2018년까지는 포괄적인 도움정도를 한 개의 문항으로 물었던 것에서, 2019년부터는 인권교육의 3가지 목표별(알고 이해하기, 생각과 태도 변화, 실천행동)로 각각의 도움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표 Ⅳ-1-19.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21(0.61)	1.8	5.3	63.4	29.6	100.0(3,869)	-
	초등학교	3.33(0.57)	0.6	3.3	58.5	37.5	100.0(1,484)	106.411***
	중학교	3.17(0.61)	2.0	5.7	66.0	26.3	100.0(1,268)	
	고등학교	3.09(0.64)	3.0	7.6	66.8	22.7	100.0(1,117)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27(0.65)	1.9	5.2	56.7	36.2	100.0(3,866)	-
	초등학교	3.46(0.56)	0.5	1.8	48.7	49.0	100.0(1,483)	227.602***
	중학교	3.19(0.66)	2.3	6.8	59.9	30.9	100.0(1,267)	
	고등학교	3.10(0.67)	3.3	8.1	63.6	25.1	100.0(1,116)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17(0.70)	2.8	8.7	56.9	31.5	100.0(3,864)	-
	초등학교	3.35(0.65)	1.5	5.3	50.0	43.2	100.0(1,479)	180.874***
	중학교	3.11(0.69)	3.0	9.8	60.6	26.5	100.0(1,267)	
	고등학교	3.01(0.72)	4.3	12.1	61.8	21.8	100.0(1,117)	

***$p < .001$.

인권교육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93.0%가 도움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94.2%)이 남학생(91.5%)보다, 교급이 낮을수록(초 96.0%, 중 92.3%, 고 89.5%) 도움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9%였으며, 여학생(93.8%)이 남학생(91.8%)보다, 교급이 낮을수록(초 97.7%, 중 90.8%, 고 88.7%) 도움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8.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88.7%)이 남학생(88.1%)보다, 교급이 낮을수록(초 93.2%, 중 87.1%, 고 83.6%)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은 성,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유형에 대해 최근 1년간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을 알아보았다. 2019년도에 설문지 간소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응답률이 낮았던 가정형편, 지역, 종교에 따른 차별 문항 3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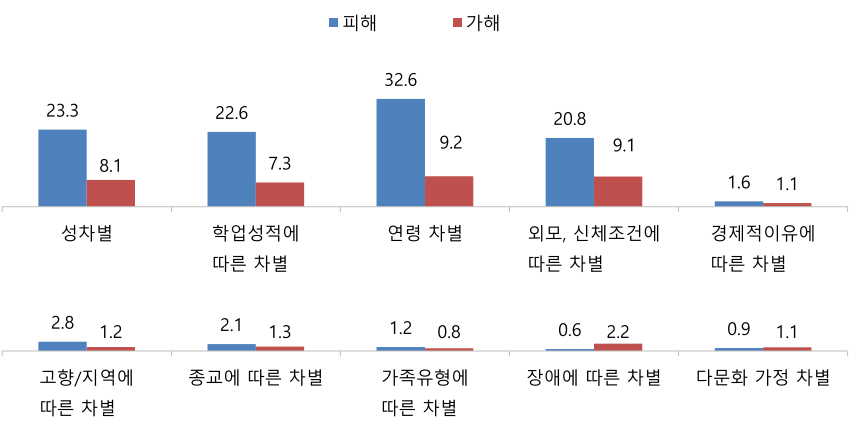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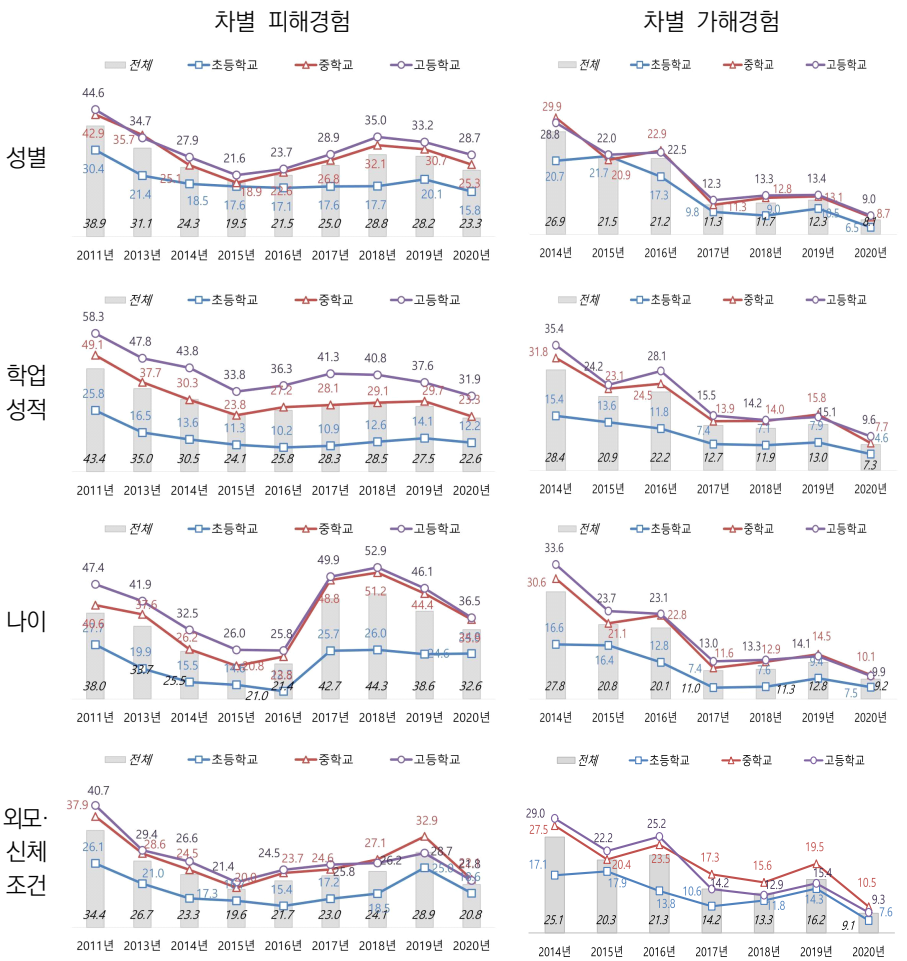


그림 Ⅳ-1-21.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을 보면 나이(32.6%), 성차별(23.3%), 학업성적(22.6%), 외모 · 신체조건(20.8%) 등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나이(9.2%), 외모 · 신체조건(9.1%), 성별(8.1%), 학업성적(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 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 모두 '나이'에 따른 차별 경험이 1순위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그림 Ⅳ-1-21]), 차별받은 경험에 비해 차별한 경험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이그래프를 통해 네 가지(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주요 차별 경험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Ⅳ-1-22]). 차별받은 경험은 2011년 30~40% 수준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27~28% 내외로 모두 줄어들었는데, 2015년에 최저점까지 내려간 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는 외모차별을 제외하고 모두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성차별, 학업성적 차별, 연령차별은 소폭 감소한 반면,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만 24.1%에서 28.9%로 증가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은 2014년에 20% 중후반 수치였으나 2019년에는 모두 12~16% 내외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2017년 전후에 최저치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한 경험률이 소폭 상승하였다(김영지 외, 2019: 201). 이상 2019년도 차별 경험 추이 경향에 이어 2020년에는 모든 차별 영역에서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이 하락하였다. 이는 인권교육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행위 감소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등교와 비대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차별 행위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22.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의 준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항목은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반원칙은 모든 협약조항을 이행하는 데 기본 철학이 되는 사항으로,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도록 한다(김영지 외, 2019: 202).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3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직접 실시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 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9.3.12.). 2018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이어 2019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 연구(이양희, 정병수, 김미성, 김상원, 김희진, 이승미 외, 2019)를 수행하여 세부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에서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차 시범운영 및 지표보완 과정으로 자체평가 1건(아동정책영향평가)과 2건의 전문평가(아동 디지털성범죄,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 온라인교육, 자체평가 시스템 개발, 아동정책영향평가 공모전 및 디지털 포럼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를 확대하고 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0b. 내부자료).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이 아동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영향평가를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4일 기준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는 47개이며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01개이다.[86]

아동정책영향평가 담당 조직인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성됨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안착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인프라 구축(법·제도, 인권기구·조직, 예산), 인권에 대한 인식(인권관련 인지도, 인권 존중정도, 인권의식과 태도), 인권교육(현황, 경험), 차별 경험률(차별피해, 차별가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아동영향평가) 등 총 11개의 지표항목에 대해 실태를 알아보았다.

한 해 동안 제·개정된 법률로 아동학대 예방과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의 법 개정,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노동인권, 참여, 아동학대 예방, 인권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9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은 3.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8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0년 12월 4일 검색.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21.2%, 7.9%, 24.7%로 전년도 대비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생활 영역별 인권존중도는 가정(96.3%), 학교(95.6%), 우리나라 전체(83.7%), 사이버 공간(82.3%) 순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인권존중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과 태도 문항으로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69.6%),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87.3%), 학생자치조직의 의의(86.9%), 표현의 자유 보장(96.9%) 등에 높은 인식을 보였고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차별상황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금지(97.8%), 양성평등의식(97.1%),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4.3%) 보장 등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연도별 추이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7개 문항 중 사회참여 필요성과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 문항만이 2020년도 수치가 미세하게 줄어들었다(각각 1.0%p, 0.3%p).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은 46.5%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수업시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 정도(알고 이해하기, 생각과 태도 변화, 실천행동)는 각각 93.0%, 92.9%, 88.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32.6%), 성차별(23.3%), 학업성적(22.6%), 외모·신체조건(20.8%) 등으로 인한 차별 순이었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나이(9.2%), 외모・신체조건(9.1%), 성별(8.1%), 학업성적(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받은 경험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2019년에는 외모 차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2014년부터 2017년경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에 4개 차별행동 모두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모든 차별 영역에서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이 하락하였다. 이는 인권교육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행위 감소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등교와 비대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차별 행위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에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구축(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추이와 유사하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또한 10명 중 2~3명은 나이에 따른 차별, 성차별, 외모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률도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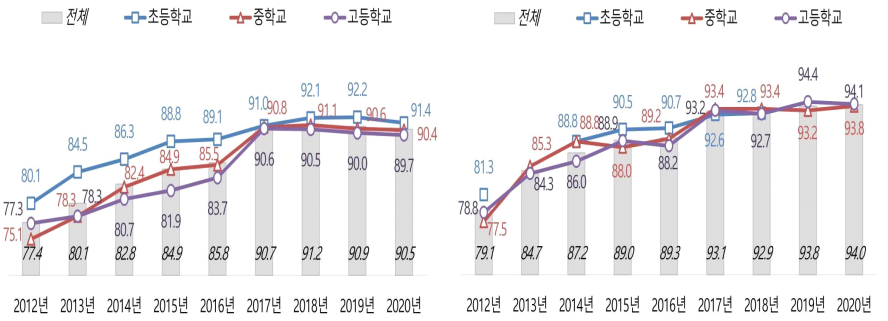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중분류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참여권과 관련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의 자유와 참여 정도를 알아본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시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의견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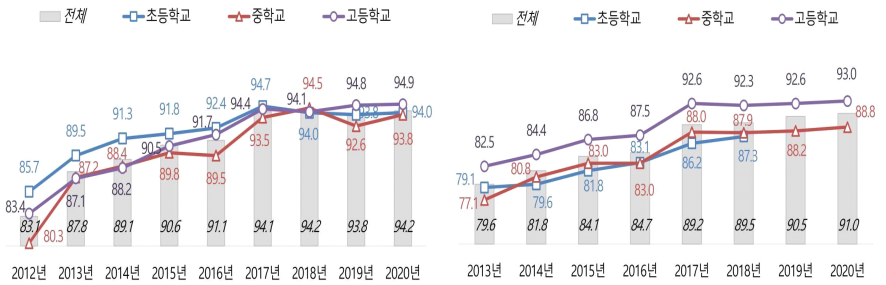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3(0.69)	1.5	8.1	46.1	44.4	100.0(8,575)	-
	초등학교	3.32(0.67)	1.4	7.2	49.2	42.2	100.0(2,863)	32.449***
	중학교	3.33(0.68)	1.2	8.4	47.0	43.4	100.0(2,731)	
	고등학교	3.35(0.71)	1.8	8.6	42.3	47.4	100.0(2,980)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8(0.64)	0.9	5.1	39.5	54.5	100.0(5,710)	-
	중학교	3.45(0.63)	0.8	5.5	42.1	51.7	100.0(2,730)	18.916***
	고등학교	3.50(0.64)	1.0	4.8	37.0	57.1	100.0(2,980)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52(0.64)	1.0	4.8	35.7	58.5	100.0(8,534)	-
	초등학교	3.53(0.64)	1.1	4.9	33.6	60.4	100.0(2,828)	28.327***
	중학교	3.48(0.64)	0.9	5.3	39.1	54.7	100.0(2,727)	
	고등학교	3.54(0.62)	0.9	4.1	34.6	60.3	100.0(2,979)	
4) 공부시간·방법 결정	전체	3.39(0.69)	1.4	7.6	41.6	49.4	100.0(5,700)	-
	중학교	3.32(0.71)	1.5	9.7	43.7	45.1	100.0(2,726)	55.000***
	고등학교	3.45(0.66)	1.3	5.7	39.6	53.4	100.0(2,974)	

***p 〈 .001.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주: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Ⅳ-2-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먼저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준다는 응답률은 90.5%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1.4%, 중 90.4%, 고 89.7%) 응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준다는 응답률은 94.0%였고, 고등학생(94.1%)이 중학생(93.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자녀가 원하는 진로(직업)을 존중한다는 응답률은 94.2%로 나타났고 고등학생(94.9%)이 초등학생(94.0%)과 중학생(9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률은 91.0%였

으며, 고등학생(93.0%)이 중학생(8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영역에서 의견존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집안 중대사 2012년 77.4% → 2020년 90.5%, 상급학교 진학 2012년 79.1% → 2020년 94.0%, 진로 2012년 83.1% → 2020년 94.2%, 학업 2013년 79.6% → 2020년 91.0%). 2020년에는 집안 중대사에 대한 의견존중도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미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Ⅳ-2-1]).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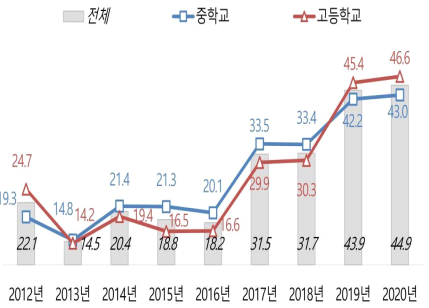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권 보장 정도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기준이 있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교사는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등에 대한 응답률을 조사하였다.

표 Ⅳ-2-2.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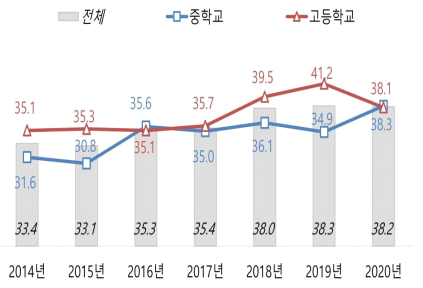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교사·교장의 간섭 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6.7	44.9	48.4	100.0(5,701)	-
	중학교	6.2	43.0	50.8	100.0(2,725)	12.740**
	고등학교	7.2	46.6	46.2	100.0(2,976)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 (*부정적 질문)	전체	38.2	25.6	36.2	100.0(5,699)	-
	중학교	38.3	25.4	36.3	100.0(2,723)	0.097
	고등학교	38.1	25.8	36.2	100.0(2,976)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전체	3.2	46.7	50.0	100.0(5,692)	-
	중학교	3.2	47.5	49.3	100.0(2,717)	1.197
	고등학교	3.3	46.1	50.7	100.0(2,975)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3.8	54.6	41.6	100.0(5,693)	-
	중학교	2.5	59.1	38.4	100.0(2,721)	54.569***
	고등학교	4.9	50.5	44.6	100.0(2,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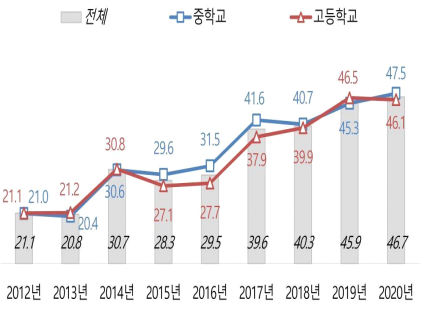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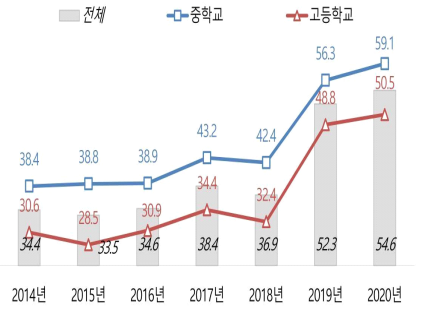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 주: 1), 3), 4)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 주: 2)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 없음을 나타냄.

그림 Ⅳ-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고등학생(43.0%)의 응답률이 중학생(46.6%)보다 높았다. 학생회 임원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제한이 '없다'는 응답률은 38.2%였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에 대한 응답률은 46.7%로 나타났다.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응답률은 54.6%로 나타났고 중학생(59.1%)의 응답률이 고등학생(50.5%)보다 높았다(〈표 Ⅳ-2-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의 연도별 추이([그림 Ⅳ-2-2])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항목에서 긍정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치권 2012년 22.1% → 2020년 44.9%, 임원 성적제한 없음 2014년 33.4% → 2020년 38.2%, 예산·장소·시간 보장 2012년 21.1% → 2020년 46.7%, 학생회 의견반영도 2014년 34.4% → 2020년 54.6%). 2020년도의 경우 임원 성적 항목 외에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년도 대비 긍정 응답률이 약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불가' 4.6%, '참여가능하나 발언권 없음' 5.2%, '참여가능하고 발언권 있음' 27.4%, '잘 모르겠다' 62.8%로 나타났다(〈표 Ⅳ-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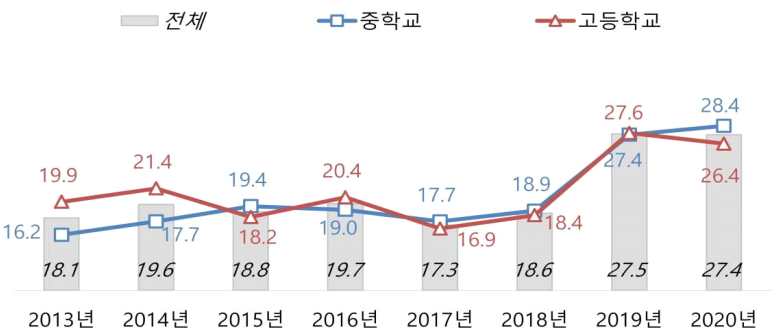
표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4.6	5.2	27.4	62.8	100.0(5,412)	-
성별	남학생	5.3	5.6	24.8	64.3	100.0(2,775)	22.909***
	여학생	3.8	4.9	30.0	61.3	100.0(2,637)	
학교급	중학교	4.4	5.6	28.4	61.5	100.0(2,591)	5.008
	고등학교	4.7	4.9	26.4	64.0	100.0(2,820)	

***p 〈 .001.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여 30.0%, 남 24.8%),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2-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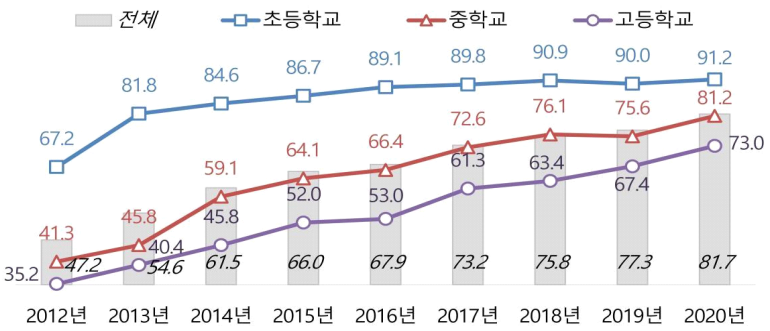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견을 반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반영한다'는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고 18.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4〉).

표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9(0.72)	4.0	14.3	60.0	21.7	100.0(8,554)	-
성별	남학생	2.99(0.73)	4.5	13.7	60.2	21.6	100.0(4,427)	8.148*
	여학생	3.00(0.71)	3.5	15.0	59.7	21.7	100.0(4,126)	
학교급	초등학교	3.26(0.66)	1.8	6.9	54.8	36.4	100.0(2,846)	736.889***
	중학교	2.93(0.67)	3.4	15.4	65.6	15.6	100.0(2,721)	
	고등학교	2.79(0.75)	6.7	20.4	59.8	13.2	100.0(2,986)	

*p 〈 .05,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47.2%에서 2020년 81.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초등학교의 의견 반영도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의 의견 반영도가 가장 낮은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전체 응답률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응답률이 각각 5.6%p씩 증가하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참여기구 현황과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 총 239개가 구성·운영되어 98.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7%p 증가한 수치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305개소에서 총 5,0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111).

표 Ⅳ-2-5.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2019)

(단위 : 개,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청소년참여위원회	194 (79.8)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10-111. 재구성.
*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지자체 수*100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이다(여성가족부, 2019b: 112). 2019년에는 450여 명이 참여하여 5개 영역 28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표 Ⅳ-2-6.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연도	의제	수용률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0%)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113.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bbs/storage/view.do (검색일: 2020년 11월 26일)

한편 아동 정책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 10-17세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아동 총회가 개최되어 왔다(김영지 외, 2019). 2019년 5월 정부는 아동 참여권의 실현을 위해 아동총회 결과를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2020년 7월 제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아동총회에서 건의된 아동안전, 진로교육 등 4개 영역 13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중 8개를 수용, 4개는 신중 검토, 1개는 불수용을 결정하였다(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2020.7.17).

표 Ⅳ-2-7. 아동 총회 건의사항 및 정부 조치 현황

영역	건의 내용 및 검토 의견	관련 부처
안전	○ 세림이법(13세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보호자 동승 의무 등 부과)을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통학 차량에 적용	경찰청
	➡ (신중검토) 세림이법은 저연령 아동을 위한 최소의무(규제) 사항, 동승보호자 인건비 · 차량구조변경 비용 소요 등을 고려	
	○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 (수용) `20.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의무화, 한정된 자원 고려하여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 설치 추진	
	○ 누구나 112에 학대 신고 가능한 것을 홍보	
	➡ (수용) 대국민 인식개선, 관심제고, 신고독려 등 온 ·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실시 중	
	○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불량식품 신고 방법 등 교육	식약처
	➡ (수용) 학교주변 업소 등 대상 캠페인 지속 실시, 학교 대상으로 교육 실시예정	
	○ 스쿨존, 그린푸드존 등 아동 관련 여러 보호구역 통합	교육부
	➡ (신중검토) 고유의 관리목적에 따라 설정범위, 관리주체, 적용대상 등이 결정됨에 물리적 통합은 신중검토 필요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진로 교육	○ 체험 및 교육을 통한 교내의 단계별 진로탐색 활동 강화	교육부
	➡ (수용)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 / 진로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반영 중	
	○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과 진로 체험시설 설치	
	➡ (신중검토) 설립 · 운영 주체는 교육감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 교육부-시 · 도 교육청간 정기 협의회 개최 등 설립 유도	
	○ 학교 · 교육기관의 진로 교육자료 최신화 및 홍보	
	➡ (수용) 진로교육자료를 상시 업데이트 중이며 미래직업 · 해외 新직업 소개, 전문가 인터뷰 등 최신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 중	
참여	○ 학교폭력 관련 제도 제정시 아동 참여 의무화(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아동 위원 참여 등)	교육부
	➡ (신중검토) 아동 위원 위촉시 위원회 전문성 약화, 참여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다만, 실태조사, 학생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적극 수렴 · 반영 중	
	○ 학교 급식메뉴 선정시 학생 의견 적극 반영	
	➡ (수용)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에 따라 식단 편성,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 및 시 ·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평가시 관련 내용 점검	
	○ 아동 관련 재판시 아동 의견 제시 창구 개설(홈페이지 개설 등)	법무부
	➡ (불수용) 재판은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 '의견제시 홈페이지 개설'은 재판에 여론 압박을 가할 우려	
	○ 교육과정에 아동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개설	교육부
	➡ (수용) 온라인 교육소통 홈페이지(온교육) 운영 중, 활성화 위한 지속 홍보 추진	
이주 배경	○ 이주배경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하는 문화이해 · 교류캠프 개최·지원	여가부

영역	건의 내용 및 검토 의견	관련 부처
	➡ (수용) 이주배경-일반아동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운영 중('12~) * '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 / 상황종료시 지속 운영 및 확대 검토	

* 출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2020.7.17.). 보도자료: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pp.3-4.

② 아동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여러 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구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알고 있으나 참여하지는 않음'과 '알고 있고 참여경험 있음'의 합산값)은 11.9%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8.6%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기구 활동의 실제 경험 비율은 1.6%로 매우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표 Ⅳ-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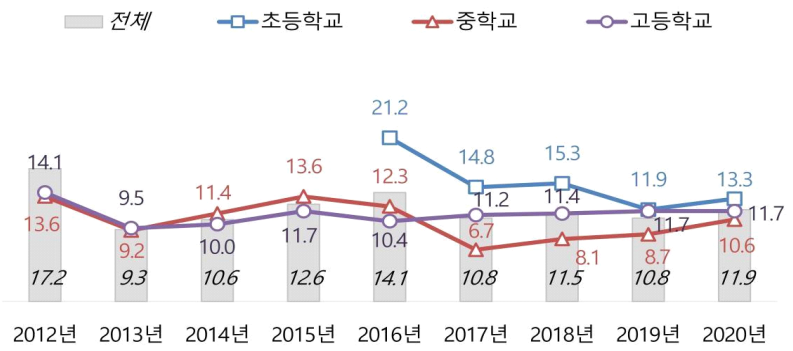
표 Ⅳ-2-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48.6	39.6	10.3	1.6	11.9	100.0(8,488)	-
성별	남학생	52.6	36.5	9.7	1.3	11.0	100.0(4,384)	62.520***
	여학생	44.2	42.9	10.9	2.0	12.9	100.0(4,104)	
학교급	초등학교	44.6	42.1	12.2	1.1	13.3	100.0(2,808)	69.474***
	중학교	49.1	40.3	9.5	1.1	10.6	100.0(2,720)	
	고등학교	51.8	36.5	9.1	2.6	11.7	100.0(2,960)	

***p 〈 .001.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여학생(여 12.9%, 남 11.0%)인 경우, 초등학생(13.3%), 고등학생(11.7%), 중학생(10.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52.6%)과 고등학생(51.8%)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Ⅳ-2-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2012년 17.2%에서 2020년에는 11.9%로 나타나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부터 초등학생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초등학생의 인지도는 2016년에 2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권 보장 수준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71.0%가 '그렇다'(그런 편 51.4%, 매우 그렇다 19.6%)고 응답하였으며 29.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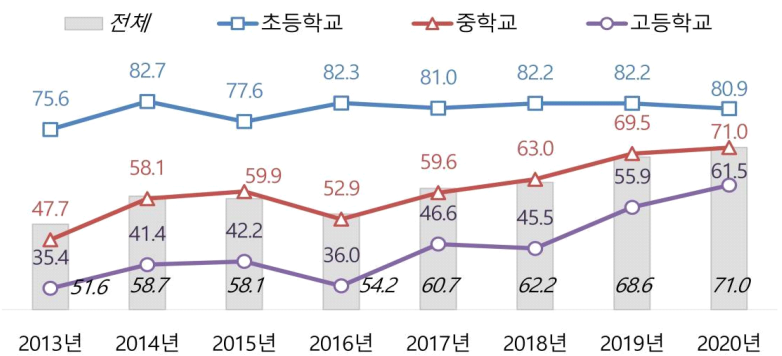
표 Ⅳ-2-9.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5(0.79)	5.2	23.8	51.4	19.6	100.0(8,560)	-
성별	남학생	2.85(0.80)	6.2	22.0	52.9	18.9	100.0(4,434)	36.798***
	여학생	2.86(0.78)	4.1	25.8	49.7	20.4	100.0(4,126)	
학교급	초등학교	3.02(0.73)	3.1	16.0	56.5	24.4	100.0(2,850)	287.112***
	중학교	2.86(0.78)	4.9	24.0	51.2	19.8	100.0(2,728)	
	고등학교	2.69(0.81)	7.3	31.2	46.6	14.9	100.0(2,982)	

***p 〈 .00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높았으며(남 71.8%, 여 70.1%),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률이 높고 학교급 간 차이도 10%p 내외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초 80.9%, 중 71.0%, 고 61.5%).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아동 ·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 51.6%에서 2020년에는 7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학교급 간 차이가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27.2%)', '참여활동 정보 부족(25.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부모님 반대(1.8%)', '학교의 규제(1.2%)' 순의 응답을 보였다(〈표 Ⅳ-2-10〉).

표 Ⅳ-2-10.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27.2	25.1	1.8	1.2	33.1	11.6	100.0(8,499)	-
성별	남학생	31.0	24.0	2.4	1.6	30.6	10.5	100.0(4,401)	109.527***
	여학생	23.1	26.3	1.2	0.8	35.8	12.8	100.0(4,098)	
학교급	초등학교	28.9	25.3	2.9	0.8	26.5	15.6	100.0(2,815)	198.448***
	중학교	27.2	22.6	1.3	0.7	38.8	9.5	100.0(2,719)	
	고등학교	25.5	27.3	1.3	2.1	34.2	9.6	100.0(2,964)	

***p 〈 .001.

청소년참여 장애요인에 대해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사회의 편견(35.8%)'을, 남학생은 '시간부족(31.0%)'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34.2%)과 중학생(38.8%)은 '사회의 편견'을, 초등학생은 '시간부족(28.9%)'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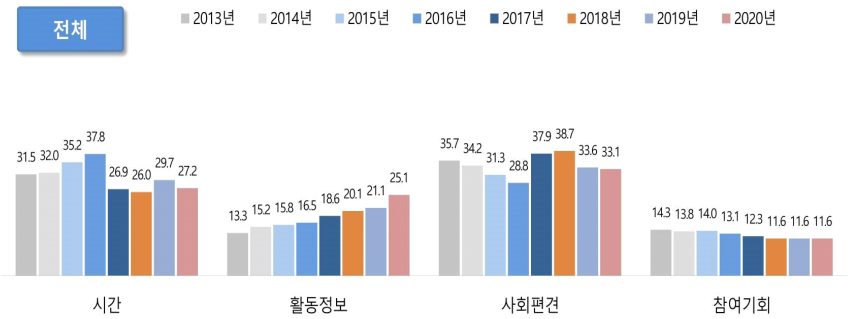


그림 Ⅳ-2-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사회의 편견' 응답률이 37.9%로 1순위로 나타난 이후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 2016년에 37.8%로 가장 높았던 '시간부족' 요인은 2017년부터는 26.9%로 감소하여 2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3순위는 '참여활동 정보부족'으로, 2013년 13.3%에서 2020년에는 25.1%로 응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 2, 3순위 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은 2013년 14.3%에서 2020년에는 11.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9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11〉). 배경변인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이 91.6%, 중학생은 91.4%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2-11. 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2(0.67)	1.4	7.1	49.1	42.4	100.0(5,683)	-
성별	남학생	3.32(0.67)	1.5	7.2	49.2	42.1	100.0(2,958)	0.594
	여학생	3.33(0.66)	1.3	6.9	49.0	42.8	100.0(2,725)	
학교급	중학교	3.31(0.65)	1.0	7.6	51.1	40.3	100.0(2,714)	17.881***
	고등학교	3.34(0.68)	1.8	6.6	47.3	44.3	100.0(2,969)	

***p 〈 .001.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7.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84.8%로 중학생 79.1%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Ⅳ-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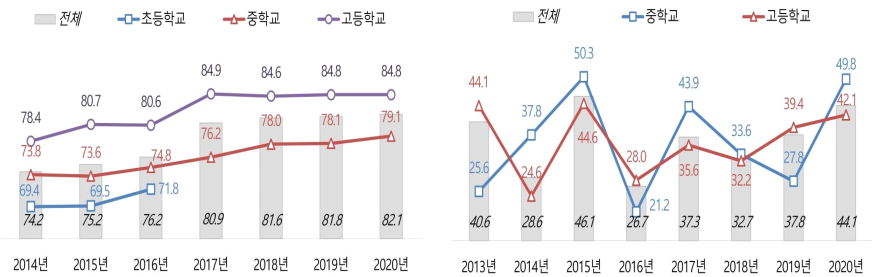
표 Ⅳ-2-12. 종교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3(0.87)	5.5	12.4	35.6	46.5	100.0(5,704)	-
	중학교	3.14(0.91)	7.1	13.7	37.3	41.8	100.0(2,728)	81.725***
	고등학교	3.31(0.83)	4.1	11.1	34.1	50.7	100.0(2,976)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32(1.04)	27.4	28.4	28.6	15.5	100.0(483)	-
	중학교	2.42(1.07)	26.6	23.6	31.3	18.5	100.0(171)	3.896
	고등학교	2.29(1.02)	27.7	30.2	27.7	14.4	100.0(463)	

* 주: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p 〈 .001.

전체 응답자 가운데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1.7%)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55.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종교재단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초분석 보고서 표 Ⅲ-2-20).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Ⅳ-2-8.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2014년 74.2%에서 2020년 8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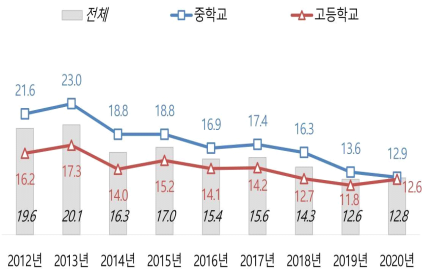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의 활동경험 정도를 알아본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는 12.8%로 매우 낮은 반면, 없다는 응답은 87.2%로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은 6.5%였으며, 93.5%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참여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2-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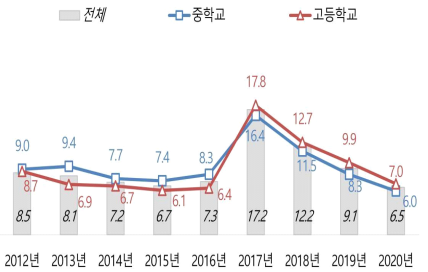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전체	1.57(0.78)	58.4	28.8	10.1	2.7	100.0(5,610)	-
	중학교	1.58(0.78)	57.7	29.3	10.2	2.7	100.0(2,682)	1.187
	고등학교	1.56(0.78)	59.1	28.2	10.0	2.6	100.0(2,928)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2(0.63)	64.7	28.8	5.9	0.6	100.0(5,579)	-
	중학교	1.42(0.62)	64.7	29.3	5.6	0.4	100.0(2,665)	5.776
	고등학교	1.43(0.65)	64.6	28.4	6.1	0.9	100.0(2,914)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활동은 2012년 19.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12.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는 2017년에 17.2%로 크게 높아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저 수치를 나타냈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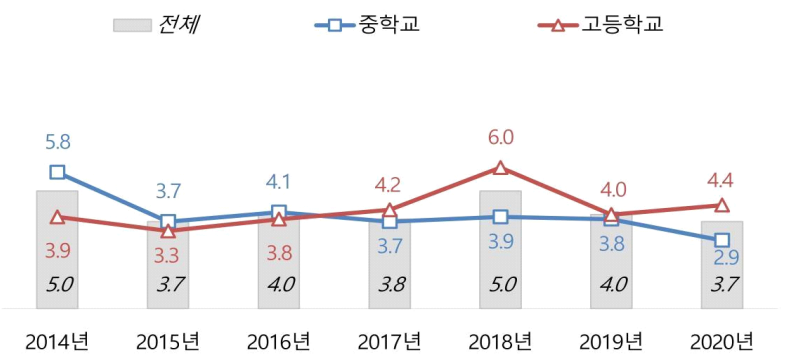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9.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을 해 본 응답자 대상으로 피해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고 및 훈계' 0.9%,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1.1%,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3%, '기타' 1.4% 등으로 사회문제 참여활동에 대한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분석보고서 표 Ⅲ-2-23).



*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2-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률의 추이를 보면 2014년 5.0%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 길이, 염색 또는 화장)검사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35.7%)의 경험률이 남학생(2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경험률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보다(25.9%) 고등학생(29.5%)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2-14>).

표 Ⅳ-2-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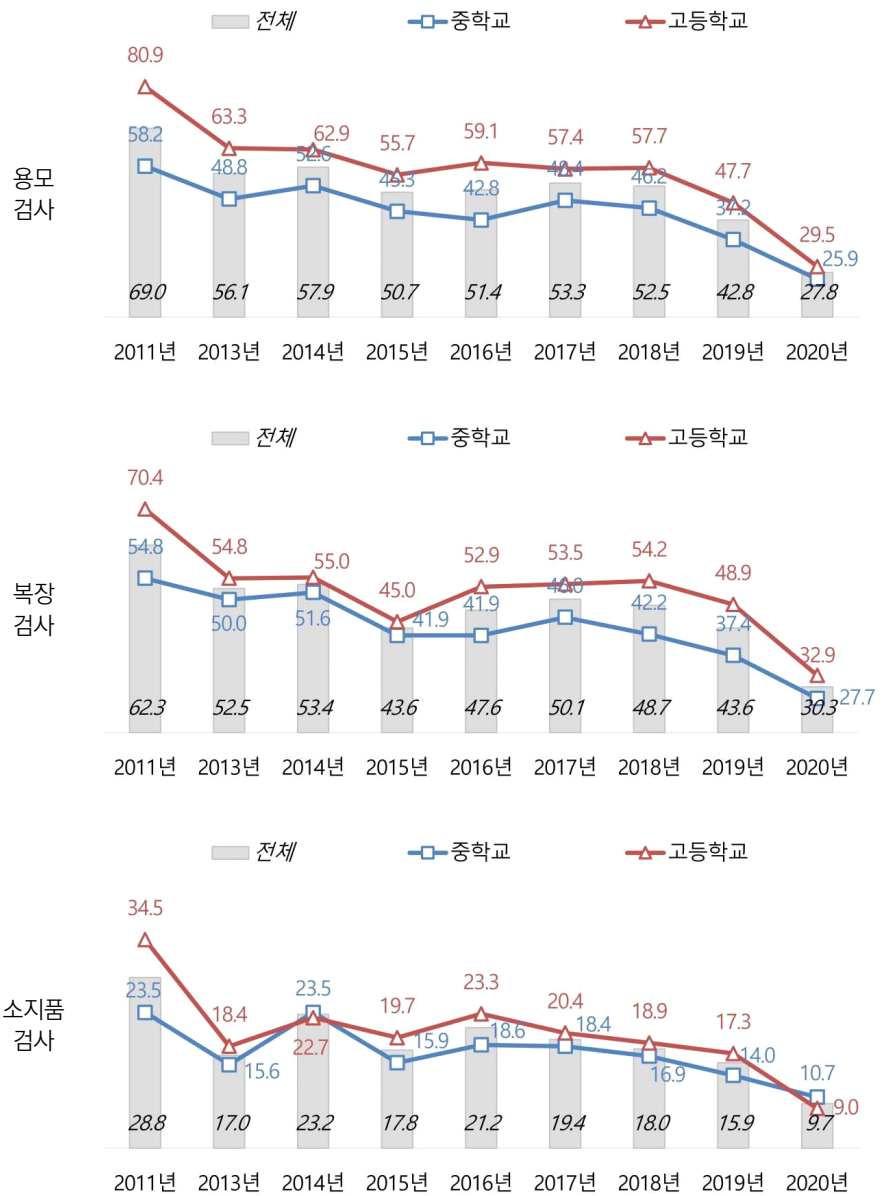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72.3	13.7	5.2	4.0	4.9	27.8	100.0(6,290)	-
	중학교	74.1	13.0	3.8	4.3	4.8	25.9	100.0(2,739)	76.152***
	고등학교	70.6	14.4	6.4	3.7	5.0	29.5	100.0(2,989)	
2) 복장 검사	전체	69.6	13.4	5.6	4.8	6.5	30.3	100.0(5,724)	-
	중학교	72.3	14.0	4.0	4.2	5.5	27.7	100.0(2,739)	43.653***
	고등학교	67.1	13.0	7.1	5.3	7.5	32.9	100.0(2,985)	
3) 소지품 검사	전체	90.2	7.2	1.2	0.7	0.6	9.7	100.0(5,726)	-
	중학교	89.4	9.0	0.8	0.3	0.6	10.7	100.0(2,739)	43.654***
	고등학교	91.0	5.6	1.6	1.1	0.7	9.0	100.0(2,987)	

***p < .001.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검사를 받은 경험은 30.3%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여 38.1%, 남 23.3%)인 경우, 고등학생(32.9%)이 중학생(27.7%)보다 복장검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9.7%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남 11.5%, 여 7.8%)인 경우, 중학생(10.6%)이 고등학생(9.0%)보다 소지품 검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먼저 용모검사는 2011년 69.0%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2020년에는 27.8%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복장검사는 2011년 62.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30.3%까지 하락하였다. 소지품 검사는 2011년 28.8%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9.7%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2-11.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 정도

'사생활의 보호'의 두 번째 중분류인 학생 정보 보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생님이 교육비 미납자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는 7.3%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9.7%로 여학생 4.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9.5%로 중학생 5.0%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Ⅳ-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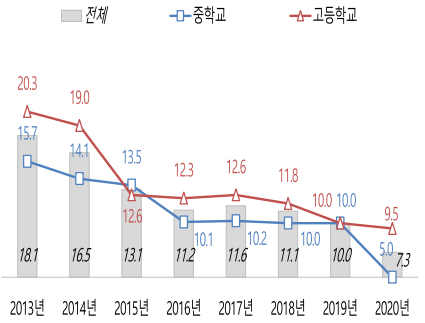
표 Ⅳ-2-15. 개인의 정보 보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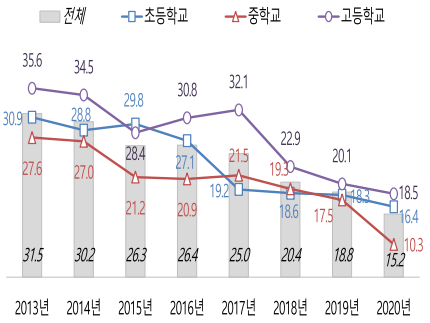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교육비 미납	전체	1.38(0.68)	71.0	21.6	5.4	1.9	100.0(5,699)	-
	중학교	1.34(0.61)	72.7	22.3	3.9	1.1	100.0(2,711)	42.083***
	고등학교	1.42(0.73)	69.6	21.0	6.9	2.6	100.0(2,988)	
2) 징계 사항	전체	1.73(0.79)	45.6	39.2	12.1	3.1	100.0(8,451)	-
	초등학교	1.78(0.80)	42.0	41.7	13.1	3.3	100.0(2,772)	106.374***
	중학교	1.61(0.71)	50.8	38.9	8.8	1.5	100.0(2,698)	
	고등학교	1.79(0.84)	44.2	37.2	14.3	4.2	100.0(2,981)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65(0.78)	51.6	34.9	10.8	2.7	100.0(5,676)	-
	중학교	1.50(0.70)	60.0	31.1	7.5	1.4	100.0(2,698)	177.615***
	고등학교	1.78(0.83)	43.9	38.3	13.9	3.9	100.0(2,978)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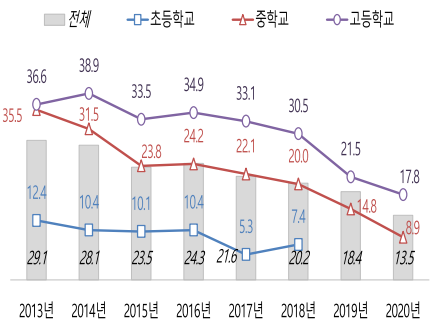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15.2%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응답률이 18.5%로 여학생 11.7%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8.5%, 초등학교 16.4%, 중학교 10.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시험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13.5%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16.1%로 여학생 10.9%보다 높았고, 고등학생이 17.8%로 중학생 8.9%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1) 교육비 미납



2) 징계사항



3) 개인 시험성적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그림 Ⅳ-2-12.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정보공개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교육비 미납정보 공개 비율은 2013년 18.1%에서 2020년에는 7.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징계사항공개 비율은 2013년 31.5%에서 2020년 15.2%로 절반 가량으로 감소하였고, 개인 시험성적 공개 비율은 2013년 29.1%에서 2020년 13.5%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3.5%), 지상파 TV(92.6%),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4%), 지상파 제외 TV(91.0%), 웹툰(76.3%), SNS(74.3%)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의 이용률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인터넷 신문, 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 SNS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중학생 96.6%, 고등학생 95.9%), 초등학생(83.6%)보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Ⅳ-2-16>).

표 Ⅳ-2-16.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6	94.9	86.9	26.3	54.4	63.3	55.2	81.5	26.0	92.5	91.7	78.9	34.3
		2018	92.6	91.0	20.3	56.3	63.6	51.7	76.3	19.8	93.5	92.4	74.3	24.6
학교급	초등학교	2016	95.9	81.5	27.0	77.5	69.7	34.1	69.6	22.7	92.2	82.7	56.1	22.9
		2018	92.8	85.6	20.3	78.7	71.3	31.4	59.8	18.9	91.4	83.6	44.5	17.1
	중학교	2016	95.5	88.9	23.1	53.9	61.6	55.4	86.6	26.4	94.4	96.2	88.0	32.1
		2018	93.1	93.0	19.3	54.3	61.3	51.5	81.3	19.3	95.2	96.6	86.2	22.5
	고등학교	2016	93.7	89.2	28.6	37.5	60.1	70.7	86.0	28.2	91.2	94.4	88.0	44.8
		2018	92.0	93.6	21.1	40.1	59.3	67.9	85.5	20.9	93.8	95.9	88.2	32.2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44.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2016년도 '인터넷 잡지 및 전자서적'을 2018년도는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이루어져 2020년 조사결과는 2021년에 업데이트 예정임.

10대의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을 살펴보면, 2019년에 96.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은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9세의 주 평균 이용시간이 9.3시간으로 증가폭이 컸다(〈표 Ⅳ-2-17〉).

표 Ⅳ-2-1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시간)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2015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	-	22.8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2016). 2015-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2019년도 10대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여가활동(99.5%), 커뮤니케이션(98.6%), 자료 및 정보 획득(96.0%), 교육·학습(83.5%), 홈페이지 등 운영(69.9%) 순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2016년에는 커뮤니케이션

이 1순위, 여가활동이 2순위였으나 2017년부터는 여가활동이 1순위로 나타난 이후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학습 목적의 경우 2015년 58.7%에서 2019년 83.5%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2-18〉).

표 Ⅳ-2-18.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5	3-9세	34.0	95.6	17.9	4.9	25.9	0.4	-
	10대	95.7	96.7	85.3	48.5	58.7	6.5	-
	20대	100.0	97.4	99.6	70.3	50.6	33.8	-
2016	3-9세	35.3	95.0	16.9	5.7	33.9	-	-
	10대	95.1	94.5	88.4	51.5	72.4	7.9	-
	20대	99.9	98.5	99.8	74.7	60.4	42.2	-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2016). 2015-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2019년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1.7시간으로, 그 간의 증가세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9〉).

표 Ⅳ-2-19.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6	3-9세	18.7	38.1	23.7	16.1	2.6	0.7	0.2	3.4
	10대	2.0	8.8	18.9	41.8	19.8	7.5	1.1	9.6
	20대	0.2	2.6	10.6	41.4	27.9	14.6	2.8	12.7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2019	3-9세	15.6	17.4	26.1	29.1	8.7	2.6	0.5	5.8
	10대	3.8	6.2	12.8	35.8	25.3	13.9	2.3	11.7
	20대	2.2	3.1	6.7	32.8	30.0	19.8	5.4	14.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2019년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30.2%로 전년도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하는 10~19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 1순위는 영화 TV 동영상(97.5%), 2순위는 메신저(97.3%)로 나타났고, 관심사(취미) 검색 비율이 91.0%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Ⅳ-2-20〉).

표 Ⅳ-2-20. 스마트폰 과의존[1]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단위 : %)

	과의존 위험군[2]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주이용 콘텐츠(과의존위험군) 메신저	게임	학업 업무용 검색	음악	SNS	영화 TV 동영상	관심사 (취미) 검색[3]
2018	29.3	3.6	25.7	94.6	95.8	90.6	94.1	82.4	95.7	77.2
2019	30.2	3.8	26.4	97.3	93.1	93.9	88.5	79.7	97.5	91.0
초등학생	24.4	2.8	21.6	79.5	92.8	75.1	71.6	45.1	96.9	67.3
중 학 생	34.7	4.6	30.1	98.4	95.4	95.2	88.9	82.6	98.0	93.8
고등학생	29.4	4.2	25.2	99.2	90.4	97.5	93.8	88.5	97.3	94.4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p.36.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구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주: 1)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19세 청소년 중 과의존 위험군 분율
3) 2018년 뉴스보기. 2019년 관심사(취미) 검색으로 변경
4) 복수응답 결과

일반 공공도서관은 2012년 745개에서 2019년 997개로 늘어났으며 어린이도서관은 2012년 83개에서 2019년 99개로 늘어났다(〈표 Ⅳ-2-21〉).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관당 인구수는 45,723명으로, 주요 선진국(미국 34,301명, 영국 15,465명, 독일 11,151명, 일본 38,902명)에 비해 아직 높은 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87]

표 Ⅳ-2-2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단위 : 개관)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2019년까지는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지표로 삼았으나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매체 이용률 지표로서 학생 독서량 지표로 대체하였다. 학생 독서량은 비독서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의 지난 1년 간의 평균 독서량을 의미하며, 2019년부터는 오디오북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9년 종이책 기준 초등학생의 독서량은 연간 69.8권, 중학생은 20.1권, 고등학생은 8.8권으로, 학교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종이책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독서량이 약간 증가하였고, 전자책의 경우는 초등학생만

87)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공공도서관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9 (검색일: 2020년 9월 21일)

증가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약간 감소하였다.

표 Ⅳ-2-22. 학생 독서량

(단위 : 권)

종류 / 구분 \ 연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2011	2013	2015	2017	2019	2011	2013	2015	2017	2019	2019
초등학교 4-6학년	45.0	65.1	70.8	67.1	69.8	3.6	8.6	8.1	8.7	9.1	7.8
중학교	14.4	22.0	19.4	18.5	20.1	5.3	7.8	5.8	5.4	4.5	0.4
고등학교	15.4	9.8	8.9	8.8	8.8	2.5	5.2	4.0	3.7	3.2	0.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pp.76-80.

* 주: 1)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2) 오디오북 조사는 2019년 신규 추가

② 유해매체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2018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전체 39.4%이고 남자 48.7%, 여자 29.4%로 나타났다(〈표 Ⅳ-2-23〉). 이는 2016년 대비 2.1%p 감소한 수치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증가하였다.

표 Ⅳ-2-23.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년	-	-	-	7.5	41.7	65.7
2016년	41.5	51.7	30.5	18.6 (5~6학년 16.1)	42.4	58.0
2018년	39.4	48.7	29.4	19.6 (5~6학년 17.7)	41.6	53.3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 주: 1)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은 5~6학년을, 2016년은 4~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2) 2016년과 2018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표 Ⅳ-2-24.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단위 : %)

구분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전체		13.8	12.9	27.6	28.2	19.1	17.7	10.0	10.5	18.1	16.5	10.4	6.6	11.2	11.0
성별	남자	16.3	15.2	37.4	37.5	21.6	20.8	12.4	12.9	19.8	18.7	15.2	9.4	15.1	14.0
	여자	11.1	10.4	17.0	18.2	16.3	14.2	7.3	8.0	16.2	14.1	5.0	3.6	6.9	7.9
학교급	초등학교	10.0	9.5	10.3	10.6	13.1	13.8	9.8	10.3	7.1	6.2	3.2	2.6	10.4	11.2
	중학교	12.7	12.6	30.4	31.0	19.4	20.2	10.5	11.5	19.8	18.7	6.6	5.8	11.0	11.5
	고등학교	17.7	15.7	38.2	39.8	23.2	18.7	9.6	9.8	24.9	22.8	19.0	10.4	11.8	10.5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2016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이었으나, 2018년도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3) 2016년도 '성인용 영상물'의 용어를, 2018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28.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17.7%, SNS 16.5%, TV방송 12.9%, 스마트폰앱 11.0%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이용률이 0.6%p,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이용률이 0.5%p 증가하였고, 나머지 이용 경로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Ⅳ-2-24〉).

(2) 미디어 리터러시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2019년에 신규 지표로 설정되었던 매체이용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관련 자료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성인용 콘텐츠, 온라인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예방 교육 경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각각 51.3%, 36.5%, 71.0%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용 콘텐츠와 온라인 도박 예방 교육의 경우 남학생의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교육 영역별로 학교급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5〉).

표 Ⅳ-2-25.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전체		60.8	51.3	34.5	36.5	72.0	71.0
성별	남자	66.2	55.2	39.0	40.4	72.1	69.9
	여자	54.9	47.0	29.7	32.3	71.8	72.2
학교급	초등학교	51.6	49.4	31.2	31.8	75.5	75.4
	중학교	67.6	59.2	35.6	38.2	74.6	73.6
	고등학교	61.7	46.1	36.1	38.8	66.9	65.4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2016년도 '성인용 영상물 피해예방 교육'을, 2018년도는 구체적 예시를 넣은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다음으로 각 교육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교육은 67.7%,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은 73.0%, 인터넷/스마트 이용교육은 65.9%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많았다.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학교급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표 Ⅳ-2-26〉).

표 Ⅳ-2-26.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매체 종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1) 성인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전체		16.3	14.1	20.3	18.3	44.8	48.3	18.6	19.4
	성별	남자	19.5	17.8	19.5	17.6	42.2	45.5	18.7	19.0
		여자	12.0	9.3	21.4	19.0	48.3	51.8	18.3	19.8
	학교급	초등학교	2.0	1.8	5.7	5.2	46.2	48.9	46.1	44.2
		중학교	13.9	13.1	21.5	20.4	50.9	54.0	13.7	12.5
		고등학교	27.5	25.5	28.4	27.0	38.2	41.9	6.0	5.6
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전체		14.5	12.8	13.2	14.2	44.8	47.5	27.5	25.5
	성별	남자	17.9	16.1	11.8	13.5	41.7	44.2	28.6	26.2
		여자	9.7	8.3	15.2	15.1	49.2	52.0	25.8	24.6
	학교급	초등학교	2.0	1.8	3.7	3.8	40.9	42.2	53.4	52.3
		중학교	11.8	11.5	13.7	13.3	49.4	53.4	25.2	21.8
		고등학교	25.1	21.0	18.9	21.6	43.3	46.2	12.7	11.2
3)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전체		14.8	13.7	19.0	20.4	47.2	47.4	19.0	18.5
	성별	남자	17.7	16.2	16.7	18.7	45.5	45.1	20.2	20.0
		여자	11.7	11.1	21.5	22.2	49.2	49.7	17.6	17.0
	학교급	초등학교	2.9	2.6	7.4	7.7	50.3	51.6	39.4	38.1
		중학교	13.5	13.5	19.0	22.6	52.6	50.3	14.9	13.6
		고등학교	26.2	23.9	28.7	30.0	39.4	40.7	5.7	5.4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6.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2016년도 '성인용 영상물 피해예방 교육', 2018년도는 구체적 예시를 넣은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영화, 게임, 동영상, 잡지, 사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② 미디어 역량

다음으로 미디어 역량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디지털 사용 역량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디지털 사용 역량은 정보 수집, 정보 신뢰, 이슈 참여, 콘텐츠 제작, 개인정보 이해, 학업관련 활용 등의 능력과 관련된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2019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정보 수집, 정보 신뢰, 이슈 참여, 개인정보 관련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콘텐츠 제작, 학업 관련 활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7〉).

표 Ⅳ-2-27. 디지털 사용 역량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급	초등학교	41.4	58.6	57.8	42.2	67.8	32.2	85.3	14.7	70.0	30.0	72.4	27.6
	중학교	15.2	84.8	27.8	72.2	36.3	63.7	65.6	34.4	46.7	53.3	51.8	48.2
	고등학교	10.2	89.8	21.9	78.1	29.5	70.5	56.4	43.6	40.7	59.3	45.3	54.7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6.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0개 지표(소분류), 16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는 진로·직업(94.2%), 상급학교 결정(94.0%), 공부시간·방법 결정(91.0%), 집안의 중대사 결정(90.5%)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학생회 의견존중·반영도 54.6%, 예산·장소·시간 보장 46.7%, 학생회의 자치권 44.9%,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8.2% 등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27.4%,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81.7%로 나타났고 모두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9년 기준 239개가 구성·운영되어 98.4%의 운영비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정책분야에서도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13개 사항에 대해 8개가 수용, 4개 신중 검토, 1개 불수용이 결정되었다. 아동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1.9%로 여전히 10% 내외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0%로, 최근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7.2%)', '참여활동 정보 부족(25.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등의 응답을 보였다.

사상의 자유는 91.5%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82.1%로 나타났고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44.1%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8%이고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6.5%로 최근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27.8%), 복장(30.3%), 소지품(9.7%) 검사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7.3%), 징계사항(15.2%), 시험성적(13.5%) 공개도 감소폭이 컸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6시간이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0.2시간, 0.3시간 감소하였다.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0.2%로 전년도에 비해 0.9%p 늘어났고,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이다.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률은 39.4%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일반 공공도서관은 997개소, 어린이도서관은 99개소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필요가 있다. 학생 독서량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성인용 콘텐츠, 온라인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으로, 2018년 기준 각각 51.3%, 36.5%, 71.0%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도움 정도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미디어 역량 지표는 정보 수집, 정보 신뢰, 이슈 참여, 콘텐츠 제작, 개인정보 이해, 학업관련 활용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조사 기준 학교급이 높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적 권리 영역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생활 보호 영역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과 교육비 미납, 징계사항, 개인시험성적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차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의 영향이 아닌지 내년 추이와 비교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에서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와 제28조 2항에서 아동이 체벌이나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분류 지표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이 피해자로서 경험한 폭력의 빈도를 물어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청소년폭력은 가정에서 학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 및 선후배에 의해 가해지는데,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또래나 선후배에 의해서 가해지는 유형의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지표의 세부지표는 ‘폭력피해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① 폭력피해 경험

이 지표는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설문을 통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피해경험과 구타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경험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가. 정서적 폭력 경험률

정서적 폭력에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되는데, 주로 가정, 학교, 사이버 상에서 부모, 학교교사,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 가해가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피해 청소년에게는 심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우울감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피해자를 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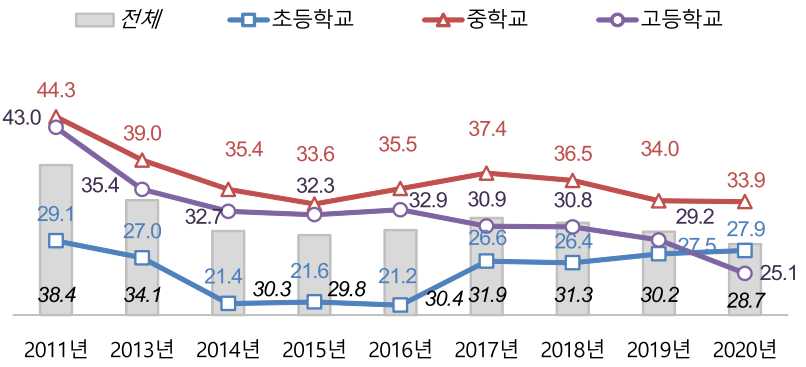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1.2	14.7	5.8	4.5	3.7	100.0(8,586)	-
성별	남학생	71.3	14.1	6.4	4.2	4.0	100.0(4,453)	10.430*
	여학생	71.0	15.4	5.2	4.9	3.5	100.0(4,133)	
학교급	초등학교	72.1	15.2	5.2	3.9	3.6	100.0(2,861)	62.540***
	중학교	66.1	16.9	6.8	5.5	4.7	100.0(2,737)	
	고등학교	74.9	12.3	5.5	4.2	3.1	100.0(2,987)	
경제적 수준	상	73.3	14.5	4.9	4.1	3.1	100.0(4,805)	94.261***
	중	70.5	14.8	6.5	4.4	3.8	100.0(3,086)	
	하	58.1	16.6	9.8	8.0	7.5	100.0(623)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020년 조사에서는 전체 8,586명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경험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71.2%에 해당되어서 10명 중 7명 정도에 해당되었다. 나머지 학생 중에는 일 년에 1~2회(14.7%), 2~3개월에 1~2회(5.8%), 한 달에 1~2회(4.5%), 1주일에 1~2회(3.7%)의 피해경험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그다지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급에서는 초(27.9%), 중(33.9%), 고(25.1%)로 피해경험의 차이를 보여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에서 중학생이 가장 많이 부모나 보호자와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른 피해경험의 차이도 주목할 만한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26.6%), 중(29.5%), 하(41.9%) 순으로 나타나 경제가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폭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Ⅳ-3-1에는 응답한 학생들이 2011년~2020년까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11년 이후 가정에서의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고등학생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6년과 2015년에 가장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표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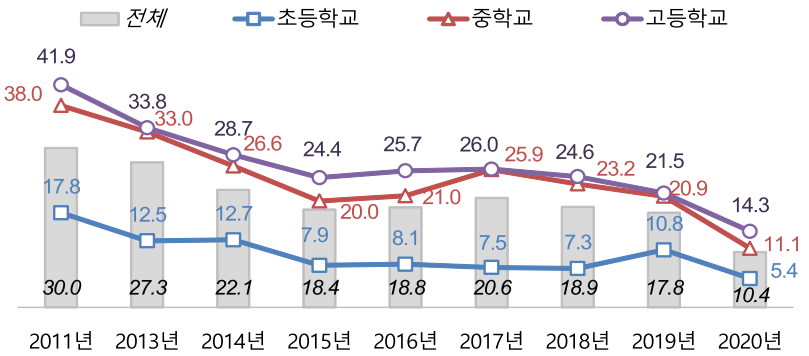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9.7	6.6	1.8	1.0	1.0	100.0(8,565)	-
성별	남학생	87.7	7.0	2.2	1.5	1.5	100.0(4,439)	69.499***
	여학생	91.8	6.1	1.3	0.5	0.3	100.0(4,125)	
학교급	초등학교	94.6	3.5	0.8	0.6	0.5	100.0(2,850)	149.515***
	중학교	88.9	7.8	1.8	0.9	0.6	100.0(2,732)	
	고등학교	85.6	8.3	2.7	1.6	1.7	100.0(2,982)	
경제적 수준	상	90.4	6.6	1.4	0.8	0.9	100.0(4,798)	53.039***
	중	90.2	5.8	2.0	1.1	1.0	100.0(3,073)	
	하	82.5	10.8	3.2	2.5	1.0	100.0(622)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Ⅵ-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0.4%로 10명 중 1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12.2%)이 여학생(8.2%)보다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5.4%), 중(11.1%), 고(14.3%) 순으로 고등학생의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17.5%)이 역시 욕설과 같은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3-2]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20년)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의 추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감소 추이가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2019년에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정서적 폭력이 다소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다시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2.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표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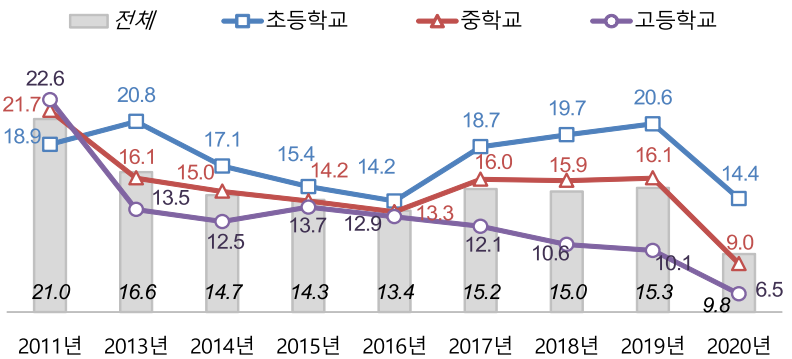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0.1	6.3	1.6	0.9	1.0	100.0(8,603)	-
성별	남학생	87.8	7.5	2.0	1.2	1.6	100.0(4,461)	61.520***
	여학생	92.5	5.1	1.2	0.7	0.5	100.0(4,142)	
학교급	초등학교	85.6	9.3	2.4	1.4	1.3	100.0(2,868)	117.691***
	중학교	91.0	6.2	1.0	0.8	1.0	100.0(2,743)	
	고등학교	93.6	3.7	1.3	0.6	0.9	100.0(2,992)	
고교 유형	일반계고	94.4	3.5	1.1	0.4	0.6	100.0(2,412)	21.117***
	특성화계고	90.3	4.4	2.1	1.1	2.1	100.0(579)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Ⅳ-3-3〉에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학생 중 9.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10명 중 1명 가까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12.3%)이 여학생(7.5%)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우와는 반대로 초(14.4%), 중(9.0%), 고(6.5%) 순으로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연도별 추이)

[그림 Ⅳ-3-3]은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학생들의 피해가 연도별로 잘 나타나 있다. 2011년에 비해서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이러한 정서적 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근 10년 간 가장 최근인 2020년 조사에서 정서적 폭력의 수치가 모든 학교급(고등학교 6.5%, 중학교 9.0%, 초등학교 14.4%)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22.6%, 중학교 21.7%, 초등학교 18.9%였던 것에 비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많이 줄어서 이들의 인권이 점차 잘 보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따돌림을 당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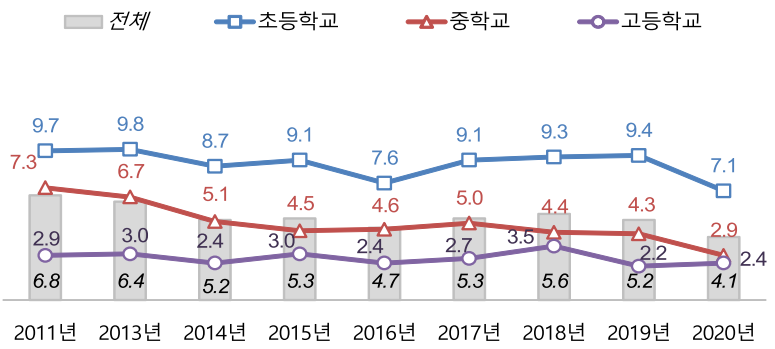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9	2.6	0.7	0.4	0.4	100.0(8,602)	-
성별	남학생	95.8	2.4	0.9	0.5	0.4	100.0(4,460)	8.474
	여학생	95.9	2.9	0.5	0.3	0.4	100.0(4,142)	
학교급	초등학교	92.8	4.7	0.9	0.8	0.7	100.0(2,866)	117.966***
	중학교	97.1	2.1	0.4	0.2	0.2	100.0(2,743)	
	고등학교	97.6	1.2	0.8	0.2	0.2	100.0(2,992)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최근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폭력의 형태가 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리적,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따돌림이다. 〈표 Ⅳ-3-4〉에는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었다. 따돌림의 경험을 한 학생은 전체 8,602명의 학생 중 4.1%에 해당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 7.1%, 중학생 2.9%, 고등학생 2.4%로 나타나 저학년으로 갈수록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율의 빈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초등학교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Ⅳ-3-4]는 응답학생들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피해의 경험에 대하 연도별 추이(2011년~2020년)를 잘 보여주고 있다. 9년 동안의 추이 변화는 약간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에 비해 이러한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피해경험에서도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피해 빈도를 보이고 있어 거의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에서 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나. 신체적 폭력 경험률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정서적 폭력과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염려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인 신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피해 정도가 심각해 중상이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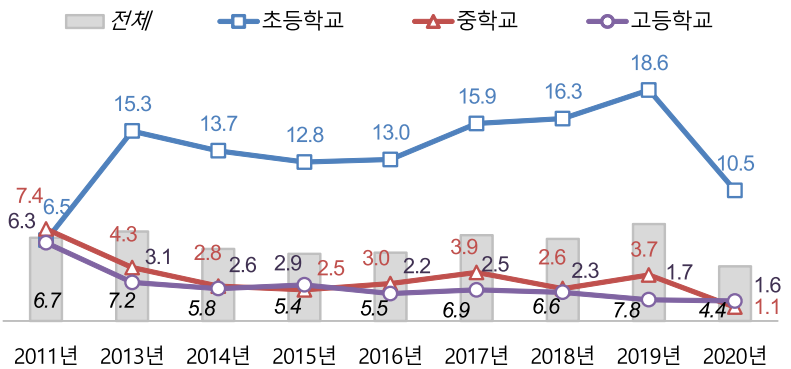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6	2.9	0.8	0.2	0.5	100.0(8,603)	-
성별	남학생	93.2	4.3	1.4	0.3	0.9	100.0(4,460)	126.670***
	여학생	98.1	1.5	0.2	0.1	0.2	100.0(4,142)	
학교급	초등학교	89.4	7.4	1.6	0.3	1.2	100.0(2,867)	401.421***
	중학교	98.9	0.8	0.0	0.1	0.2	100.0(2,743)	
	고등학교	98.4	0.5	0.7	0.1	0.3	100.0(2,992)	
고교 유형	일반계고	98.9	0.3	0.6	0.0	0.2	100.0(2,412)	28.247***
	특성화계고	96.4	1.3	1.3	0.6	0.4	100.0(579)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Ⅳ-3-5〉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의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8,603명의 응답학생 중 4.4%의 학생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6.9%)이 여학생(2.0%)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유형의 폭력에서도 나타난 결과와 같이 초등학생(10.5%)이 중학생(1.1%), 고등학생(1.6%)이 압도적으로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에서는 특성화계고(3.6%) 학생이 일반계고(1.1%)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연도별 추이)

[그림 Ⅳ-3-5]에서는 응답학생이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폭행과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9년 간 추이가 조사되었다. 위의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근 10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2011년 이후 초등학생에서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중학생과 고등학생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2011년 2012년 사이에 2.5배가 증가되었다가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16년(13.0%)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2019

년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나더니 다행히도 2020년 올 해 10.5%로, 가장 낮았던 2011년(6.5%)에 가장 근접한 피해 경험 수치를 보이고 있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의 현황을 보면 정부가 강력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최근에 들어와 전체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요인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공격성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이버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까지 보장되고, 쉽게 폭력이 유포되거나 가해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 예방 관계자들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Ⅳ-3-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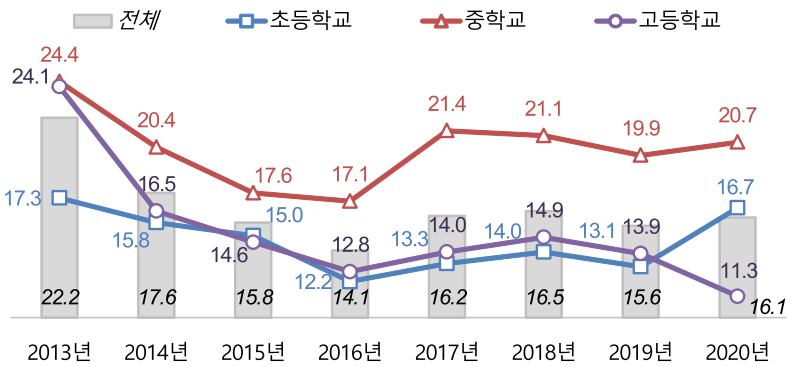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3.9	9.1	2.8	1.6	2.6	100.0(8,605)	-
성별	남학생	82.6	8.6	3.1	1.7	3.9	100.0(4,461)	72.912***
	여학생	85.3	9.6	2.4	1.6	1.1	100.0(4,144)	
학교급	초등학교	83.4	10.0	2.9	1.5	2.3	100.0(2,871)	106.889***
	중학교	79.2	11.3	3.2	2.5	3.7	100.0(2,743)	
	고등학교	88.7	6.1	2.3	1.1	1.8	100.0(2,991)	
경제적 수준	상	84.1	9.1	2.7	1.6	2.6	100.0(4,815)	20.373**
	중	84.6	8.6	2.7	1.8	2.2	100.0(3,093)	
	하	78.6	11.7	4.2	1.4	4.1	100.0(624)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Ⅳ-3-6〉은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에 의하여 정서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응답은 전체의 16.1%로 나타났다. 여학생(14.7%)보

다 남학생(17.3%)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급에서는 중학생(20.7%)의 피해가 초등학생(16.7%)이나 고등학생(1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6.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연도별 추이)

[그림 Ⅳ-3-6]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 경험에 대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8년 간 추이가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사의 시점인 2013년보다는 피해 경험이 낮아졌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 경험은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만 피해 경험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의 피해 경험이 15.6%에서 2020년에는 16.7%로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정서적 폭력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인터넷 기반 기기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표 Ⅳ-3-7. 사이버공간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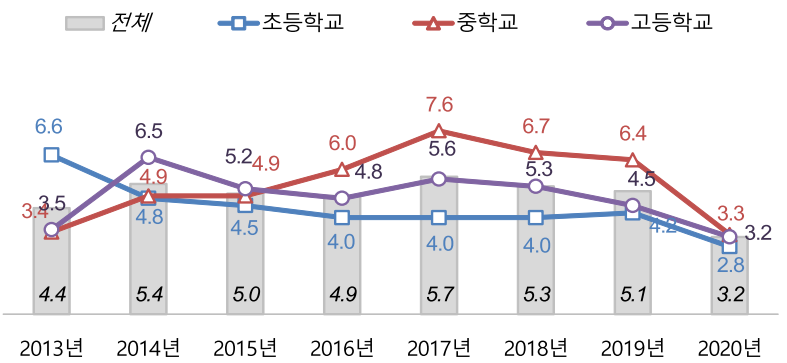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8	2.3	0.5	0.2	0.2	100.0(8,602)	-
성별	남학생	97.0	1.9	0.7	0.2	0.2	100.0(4,459)	13.581**
	여학생	96.7	2.6	0.3	0.2	0.2	100.0(4,143)	
학교급	초등학교	97.2	2.3	0.1	0.1	0.3	100.0(2,868)	35.385***
	중학교	96.6	2.5	0.3	0.3	0.2	100.0(2,743)	
	고등학교	96.8	1.9	1.0	0.2	0.1	100.0(2,991)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Ⅳ-3-7〉은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하여 조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8,602명 중에서 3.2%가 이러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피해는 각각 3.0%와 3.3%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교급에서도 초등학생이 2.8%로 가장 피해가 적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3-7]에서는 이러한 피해 경험의 연도별(2013년~2020년)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는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빈도가 6.6%로 가장 높았는데 2020년 현재에는 2.8%로 가장 낮아진 것이 고무적이다.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시작 연도와 현재의 시점의 피해 경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와서 과거보다 사이버 상에서의 정서적 폭력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7.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연도별 추이)

〈표 Ⅳ-3-8〉은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의 폭력을 당하는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8,603명 중 1.8%가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1.4%)보다는 남학생(2.1%)의 피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도 피해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초등학생 2.4%, 중학생 1.4%, 고등학생 1.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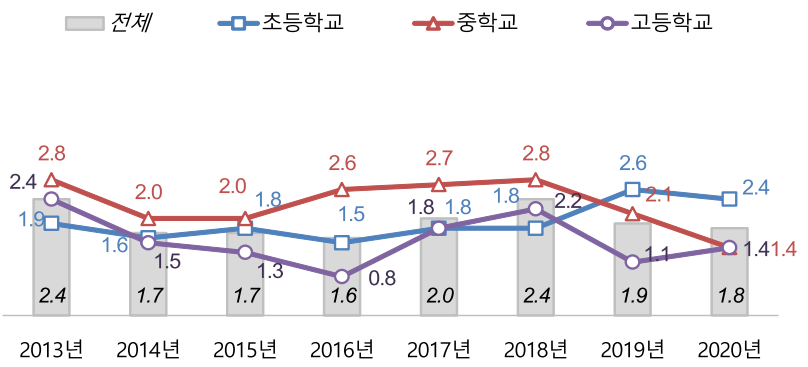
표 Ⅳ-3-8.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 따돌림을 당함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2	1.0	0.4	0.2	0.2	100.0(8,603)	-
성별	남학생	97.9	1.1	0.6	0.2	0.2	100.0(4,460)	12.010*
	여학생	98.6	1.0	0.1	0.1	0.2	100.0(4,143)	
학교급	초등학교	97.6	1.5	0.4	0.2	0.3	100.0(2,869)	27.055***
	중학교	98.6	1.0	0.1	0.1	0.2	100.0(2,743)	
	고등학교	98.5	0.6	0.6	0.1	0.1	100.0(2,991)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8.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함(연도별 추이)

[그림 Ⅳ-3-8]은 응답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 따돌림을 당한 피해의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3년~2020년)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인 2013년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가 감소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1.9%에서 2020년 2.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계를 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의 2개의 중분류 지표 중 하나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2019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소분류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소분류 지표는 그동안 대분류 지표 '특별보호조치'에 소속된 지표였으나, 2020년부터 대분류 지표 '폭력 및 학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최근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기반 스마트기기들이 거침없는 기술적 발전을 계속하는 동안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들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성과 관련된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인권 차원의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결과 파악된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전체 성폭력 피해자 25,270명 중에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7.5%(4,411명), 초등학생 연령인 7~13세 미만은 6.7%(1,685명), 7세 미만은 1.3%(328명) 등으로 0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25.5%인 6,424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희롱 등이다(여성가족부, 2020.8.: 3).

범죄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총 29,244명 중에 13세 이상은 27,966명, 13세 미만은 1,278명으로 13세 미만이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도 4.2%에서 조금 늘어난 수치이다(법무연수원, 2020.5: 191).

표 Ⅳ-3-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4	27,111(100)	1,205(4.4)	25,906(95.6)
2015	27,708(100)	1,268(4.6)	26,440(95.4)
2016	27,056(100)	1,229(4.5)	25,827(95.5)
2017	30,099(100)	1,261(4.2)	28,838(95.8)
2018	29,244(100)	1,278(4.4)	27,966(95.6)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191.

*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2010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표 Ⅳ-3-10〉은 성적인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8,389명 중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9%에 해당되었다. 남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이 2.8%인 반면, 여학생은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적 피해 경험을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5.1%, 중학교에서는 1.3%, 고등학교에서는 2.3%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성적 피해 경험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 성적 성숙의 정도가 점차 일찍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 연령대일수록 다른 사람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유형에서도 특성화계에서 3.9%, 일반계고에서 1.9%의 성적 피해 경험 비율이 나타나 입시 경쟁에서 부담이 적은 특성화계고에서 성폭력이 더 많다는 것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Ⅳ-3-10.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9	97.1	100.0(8,389)	-
성별	남학생	2.8	97.2	100.0(4,334)	0.420
	여학생	3.0	97.0	100.0(4,056)	
학교급	초등학교	5.1	94.9	100.0(2,691)	78.041***
	중학교	1.3	98.7	100.0(2,721)	
	고등학교	2.3	97.7	100.0(2,978)	
고교 유형	일반계고	1.9	98.1	100.0(2,403)	8.024**
	특성화계고	3.9	96.1	100.0(574)	

**p < .01, ***p < .001.

[그림 Ⅳ-3-9]에서는 성적인 피해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20년)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조사의 시작연도인 2011년보다 성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 최고점인 4.1%의 성폭력 피해 경험의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후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에는 2.3%로 낮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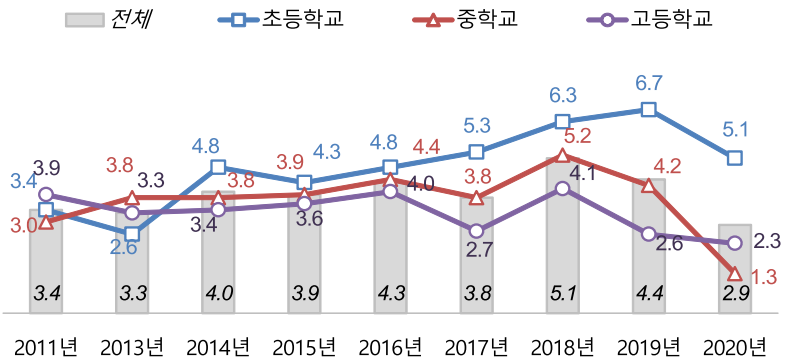


그림 Ⅳ-3-9.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표 Ⅳ-3-11〉은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7%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32.7%)이 남학생(24.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40.2%)과 고등학생(40.9%)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20.0%)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후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일반계고(45.7%)에서가 특성화계고(30.2%)에서보다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준 사람은 부모님(보호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33.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가 21.7%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선생님의 도움이 5.2%, 형제 · 자매가 2.6%, 경찰이 1.9%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전문상담사(상담전화 등)로 부터의 도움이 1.0%로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Ⅳ-3-1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사(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28.7	21.7	1.0	33.4	2.6	5.2	1.0	1.9	4.5	100.0(237)
성별	남학생	24.6	21.8	1.0	39.3	4.6	4.4	0.9	1.6	1.8	100.0(118)
	여학생	32.7	21.6	1.1	27.7	0.6	5.9	1.1	2.2	7.0	100.0(119)
학교급	초등학교	20.0	14.5	1.8	49.5	3.7	4.4	0.9	2.2	3.1	100.0(137)
	중학교	40.2	30.3	0.0	15.9	0.0	10.2	0.0	0.0	3.5	100.0(34)
	고등학교	40.9	32.2	0.0	9.3	1.7	4.0	1.6	2.4	7.9	100.0(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45.7	28.4	0.0	8.9	2.5	2.0	2.3	3.5	6.7	100.0(46)
	특성화계고	30.2	40.7	0.0	10.0	0.0	8.6	0.0	0.0	10.6	100.0(20)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선배'가 '선 · 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그림 Ⅳ-3-10]에서는 청소년이 성적이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경험에 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4년 간 추이가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추이는 도움을 받은 경험이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친구, 교사, 경찰, 형제 · 자매, 선후배로부터의 도움도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이의 경향은 학교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로부터의 도움이 최근 증가(32.2%)하고,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도움은 감소(9.3%)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 피해에 대한 부모의 도움에서 독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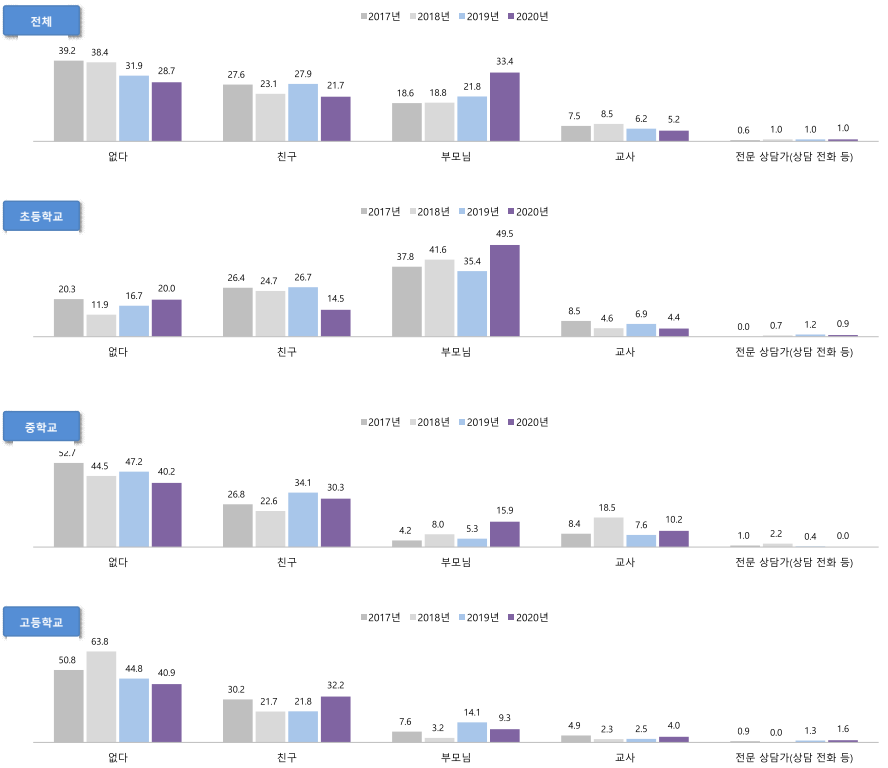


그림 Ⅳ-3-10.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3) 체벌 경험률

대분류 지표 '폭력과 학대'의 소분류 지표인 '체벌 경험률'은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과실에 대하여 벌책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당사국이 된 이후 유엔의 아동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벌에 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근절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의 손이 구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서의 체벌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기합이나 훈육과 같은 간접 체벌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① 체벌 경험률

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

〈표 Ⅳ-3-12〉는 2020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 경험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8,590명의 학생 중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2.9%에 해당되었다. 여학생(21.1%)보다 남학생(24.6%)이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당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32.3%로 10명 중 3명이 넘게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은 23.4%, 고등학생은 13.3%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27.4%)이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1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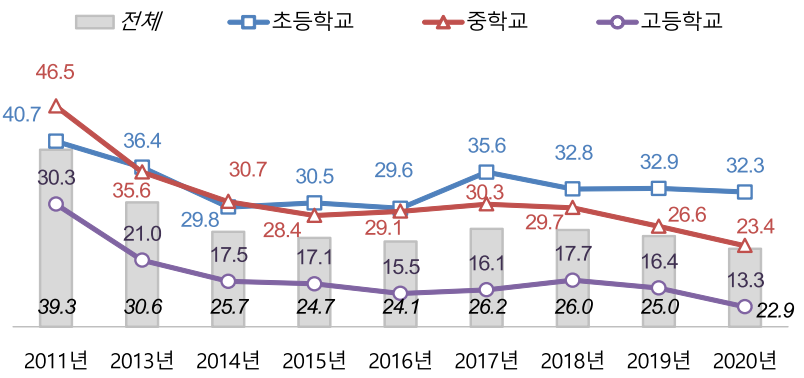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7.1	15.7	4.1	2.3	0.8	100.0(8,590)	-
성별	남학생	75.4	16.6	4.2	2.8	1.0	100.0(4,452)	20.915***
	여학생	78.9	14.8	3.9	1.8	0.6	100.0(4,138)	
학교급	초등학교	67.7	21.8	6.0	3.3	1.2	100.0(2,862)	301.472***
	중학교	76.6	16.8	3.5	2.3	0.8	100.0(2,738)	
	고등학교	86.6	8.9	2.7	1.3	0.4	100.0(2,989)	
경제적 수준	상	76.9	16.0	3.9	2.5	0.7	100.0(4,806)	17.287*
	중	78.3	14.9	4.1	2.0	0.6	100.0(3,087)	
	하	72.6	18.0	5.4	2.3	1.7	100.0(624)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11]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부터의 체벌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20년)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체벌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시작 지점인 2011년에는 초등학생(40.7%), 중학생(46.5%), 고등학생(30.3%)의 가정에서의 체벌 피해 경험이 상당히 높았으나, 2020년 현재 이러한 체벌의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은 32.3%, 중학생은 23.4%, 고등학생은 13.3%로 현저히 낮아져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시기인 중학생에 대한 체벌 피해 비율이 근 10년 동안 절반으로 낮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가정에서의 체벌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항상 주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에서 초등학생의 폭력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을 조사결과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1.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 경험

〈표 Ⅳ-3-13〉에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로 피해를 경험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0%에 해당되었다. 피해 경험은 남학생(5.9%)이 여학생(1.8%)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피해 경험은 학교급에서는 급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고등학교가 4.7%, 중학교가 4.1%, 초등학교가 3.1%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교유형별에 따른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은 일반계고 학생(4.2%)이 특성화계고 학생(6.4%)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13.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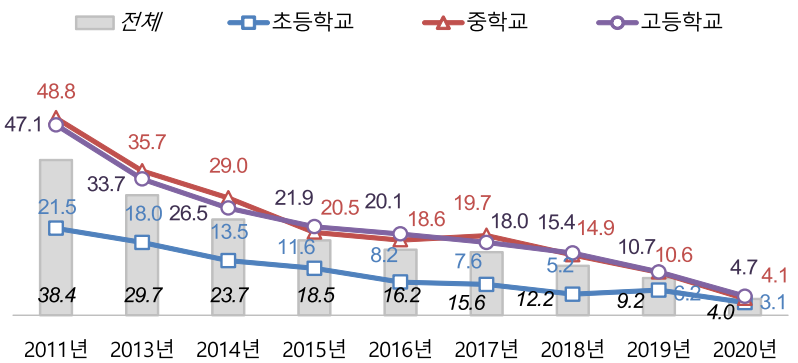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0	2.4	0.8	0.5	0.3	100.0(8,560)	-
성별	남학생	94.1	3.3	1.2	0.9	0.5	100.0(4,433)	101.147***
	여학생	98.1	1.4	0.3	0.1	0.0	100.0(4,127)	
학교급	초등학교	96.9	2.1	0.5	0.3	0.2	100.0(2,842)	24.579**
	중학교	96.0	2.8	0.5	0.5	0.3	100.0(2,734)	
	고등학교	95.3	2.3	1.3	0.7	0.4	100.0(2,984)	
고교 유형	일반계고	95.7	2.3	1.0	0.5	0.4	100.0(2,408)	11.771*
	특성화계고	93.6	2.3	2.4	1.4	0.3	100.0(576)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3-12]는 응답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에 대한 연도별 추이(2011년~2020년)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인 2011년에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이 심각해 초등학생의 경우 21.5%,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48.8%와 47.1%로 거의 두 명중 한 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 최근인 2020년에 와서는 초등학교 3.1%, 중학교 4.1%, 고등학교 4.7%로 대폭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률로 금지됨으로써 지금의 고무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에도 체벌이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최근 간접 체벌이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간접 체벌 금지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더욱 개선되어 모든 종류의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2.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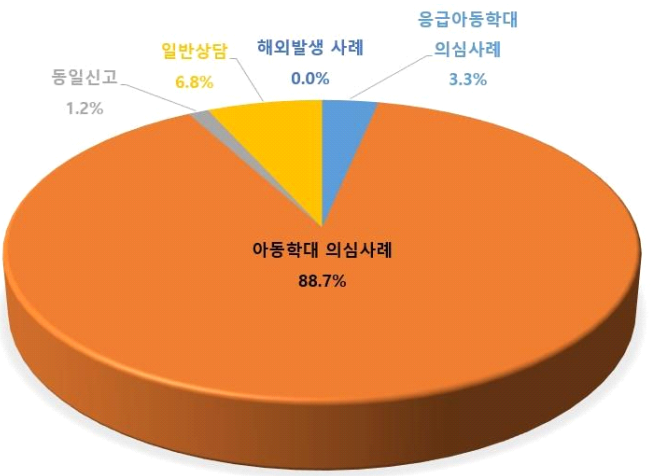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학대 신고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로 구분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가 접수된 당시 응급을 요하는 학대 상황으로 의심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이며, 전체 36,417건의 아동학대 신고건 중 3.3%(1,187건)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11, 73). 전체 신고접수 건수 중 88.8.%(32,34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접수 후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11, 74).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1. 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Ⅳ-3-13.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동일신고사례는 최초 신고 및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 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 되는 사례이며 전체 사례의 1.2%(420건)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11, 74). 일반상담사례는 신고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를 말하며 전체 신고 사례의 6.8%(2,464건)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11, 74).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국내 국적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이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된 사례이며 2018년에는 1건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1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55).

표 Ⅳ-3-14.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187 (3.3)	32,345 (88.8)	33,532 (92.1)	420 (1.2)	2,464 (6.8)	1 (0.0)	36,417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1.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사례 36,417건 중 동일신고와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를 제외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33,532건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단 근거들을 통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아동학대사례는 총 73.4%(24,604건)이며 혐의는 없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학대 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조기지원사례는 7.1%(2,392건)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19.0%(6,368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례가 0.5%(168건)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4,604건이며 학대피해아동은 총 20,018명이었는데 이에 대한 성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 아동의 경우 48.5%(9,707명)가 학대피해를 당했으며 사례수로는 48.2%(11,867건)에 해당하였다. 여자아동은 51.5%(10,311명)가 학대피해를 당했으며 사례수로는 51.8%(12,737건)로 나타나 남자 아동에 비해 여자 아동의 피해사례 및 피해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5.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24,604 (73.4)	2,392 (7.1)	6,368 (19.0)	168 (0.5)	33,53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6.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혐의가 없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학대예방을 위한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3) 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표 Ⅳ-3-16.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	11,867(48.2)	12,737(51.8)	24,604(100.0)
명수	9,707(48.5)	10,311(51.5)	20,01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9.

표 Ⅳ-3-17.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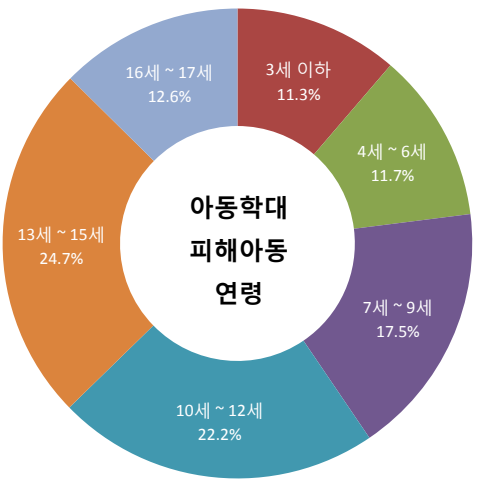
(단위 : 건(%))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3세 이하	2,790(11.3)	2,070(10.3)
4세 ~ 6세	2,870(11.7)	2,230(11.1)
7세 ~ 9세	4,309(17.5)	3,479(17.4)
10세 ~ 12세	5,450(22.2)	4,466(22.3)
13세 ~ 15세	6,072(24.7)	5,090(25.4)
16세 ~ 17세	3,113(12.6)	2,683(13.4)
계	24,604(100.0)	20,01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9~20의 내용을 재구성함.

전체 24,604건/20,018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3세~15세 아동이 24.7%(6,072건)/25.4%(5,090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세~12세 아동이 22.2%(5,450건)/22.3%(4,466명)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세~9세 아동의 비율이 17.5%(4,309건)/17.4%(3,479명), 16세~17세 아동 12.6%(3,113건)/13.4%(2,683명), 4세~6세 아동 11.7%(2,870건/11.1%(2,230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3세 이하 아동 11.3%(2,790건)/10.3%(2,07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9~20의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Ⅳ-3-14.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각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027건이었던 사례는 2015년에 16.8% 증가한 11,71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59.6% 증가하여 18,700건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는 22,367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0.0% 증가하여 24,6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단위 : 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27 (47.5)	11,715 (16.8)	18,700 (59.6)	22,367 (19.6)	24,604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6.

표 Ⅳ-3-1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18,084	777	58	18,919	376	192	352	194	1,114	24,604 (100.0)
%	73.5	3.2	0.2	76.9	1.5	0.8	1.4	0.8	4.5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부모 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기타[1)]	
명	270	1,007	2,060	176	313	27	33	9	11	3,906	360	305	
%	1.1	4.1	8.4	0.7	1.3	0.1	0.1	0.0	0.0	15.8	1.5	1.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23-24.

* 주: 이웃, 낯선사람,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강사, 파악 불가 등이 포함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피해아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는 크게 부모(76.9%), 친인척(4.5%), 대리양육자(15.8%), 타인(1.5%), 기타(1.2%)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모의 경우 친부모가 73.5%, 계부모 3.2%, 양부모 0.2%로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친인척 중에서는 친조부모 1.5%, 외조부모 0.8%, 친인척 1.4%, 형제자매 0.8%로 친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가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에서는 초·중·고의 교원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또는 보육원 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4.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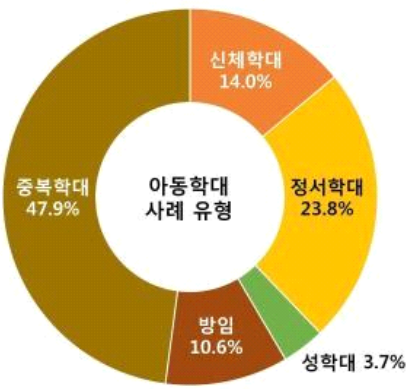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학대는 중복학대로 전체 사례의 47.9%의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23.8%, 신체학대 14.0%, 방임 10.6%, 성학대 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20.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학대유형 단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계
건수	3,436	5,862	910	2,604	11,792	24,604
%	14.0	23.8	3.7	10.6	47.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26.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19~20의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Ⅳ-3-1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이러한 학대 유형을 각 연도에 따른 증감율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중복학대의 경우 2013년 43.0%에서 2014년 48.0%, 2015년 45.6%, 2017년 48.6%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에는 47.9%의 비중을 보였으며 최근 6년간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13년 16.2%, 2015년 17.5%, 2017년 21.1%로 증가하다 2018년

23.8%로 증가하였다. 신체학대는 2013년 11.1%에서 2015년 16.1%, 2017년 14.7%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14.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 26.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방임의 경우, 이후 2015년 17.2%, 2017년 12.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6%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성학대는 2013년 3.6%에서 2015년 3.7%, 2018년 3.7%로 최근 6년 간 유사한 비중으로 발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2,922(43.0)	6,796(100.0)
2014년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4,814(48.0)	10,027(100.0)
2015년	1,884(16.1)	2,046(17.5)	428(3.7)	2,010(17.2)	5,347(45.6)	11,715(100.0)
2016년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18,573(100.0)
2017년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2,367(100.0)
2018년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4,604(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8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1-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26.에서 발췌, 표 재구성.

전체적으로 유형별 비율은 유지 또는 소폭의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건수로 살펴봤을 때 모든 유형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학대의 경우 2013년 2,922건에서 2018년 11,792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정서학대는 1,101건에서 5,86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신체학대는 753건에서 3,436건으로, 방임은 1,778건에서 2,604건으로, 성학대는 242건에서 910건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즉, 모든 유형의 학대가 해를 더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조명될 필요성이 있다.

③ 방임 정도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방임의 수준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 및 침구사용, 결식 시 방치, 질병과 결석에 대한 무관심 정도를 통해 조사하였고,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전체 방임 경험여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Ⅳ-3-16]).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이 없는 집에 홀로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묻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러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6.2%,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6%,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항목은 1.1%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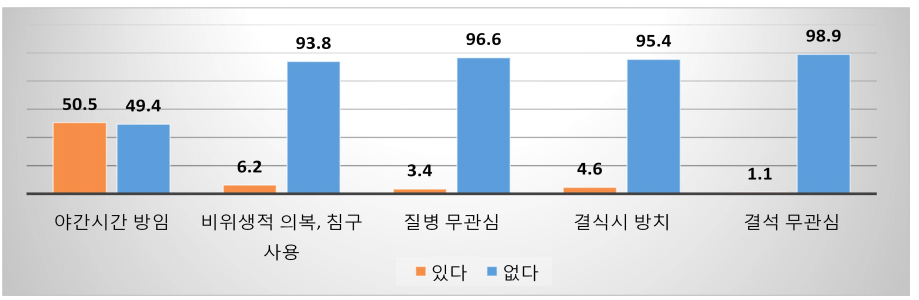


그림 Ⅳ-3-16.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위 결과를 각 항목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3-22〉), 먼저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이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일 년에 1~2회 정도가 31.9%, 2~3개월에 1~2회 정도가 8.8%, 한 달에 1~2회 정도가 5.9%, 1주일에 1~2회 이상이 3.9%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배경변인에 따라 비교하면,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52.6%, 중학교 45.4%, 고등학교 50.1%로 중학생의 야간방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 50.0%, 조손가정 49.5%, 한부모가정 40.9%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야간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집단 50.8%, "중"집단 48.9%, "하"집단 40.6%로 "하"집단의 야간시간 방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3-22.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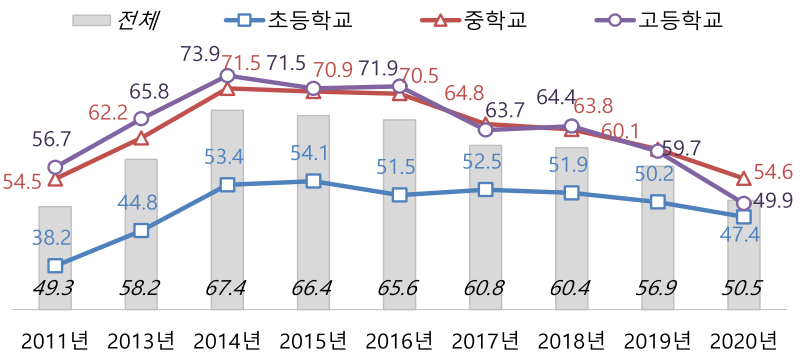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9.4	31.9	8.8	5.9	3.9	100.0(8,601)	
성별	남학생	49.2	31.9	8.8	6.4	3.8	100.0(4,459)	4.705
	여학생	49.7	31.9	8.9	5.3	4.1	100.0(4,142)	
학교급	초등학교	52.6	29.7	7.5	5.7	4.5	100.0(2,869)	42.482***
	중학교	45.4	34.6	9.8	6.5	3.7	100.0(2,740)	
	고등학교	50.1	31.5	9.2	5.6	3.6	100.0(2,9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0.0	32.5	8.5	5.7	3.2	100.0(7,675)	155.542***
	한부모가정	40.9	27.3	11.4	8.7	11.6	100.0(620)	
	조손가정	49.5	27.9	16.7	3.2	2.8	100.0(94)	
	기타	54.0	23.9	6.7	6.4	9.0	100.0(146)	
경제적 수준	상	50.8	31.7	8.5	5.4	3.5	100.0(4,810)	63.858***
	중	48.9	32.8	8.5	6.0	3.8	100.0(3,094)	
	하	40.6	29.7	12.5	9.6	7.6	100.0(624)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야간시간의 방임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Ⅳ-3-17]). 전체적인 경험률은 2011년 49.3%에서 2014~2016년 60%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50.5%의 경험률을 보였다. 교급별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49.3%의 경험률은 2015년

54.1%를 기점으로 낮아져서 2020년 47.4%의 완만한 곡선을 보였다. 한편 중,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50% 중반대의 경험률은 2014년 70% 중반 수준까지 상승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 50% 초중반 대의 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9년 59.7%에서 약 10%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코로나19의 심각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7. 방임_1)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러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93.8%로 나타났다(〈표 Ⅳ-3-23〉). 그 뒤로 일 년에 1~2회 정도 4.0%, 2~3개월에 1~2회 정도 1.1%,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이상 0.6%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양부모가정이 94.0%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정 91.5%, 조손가정 89.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 94.6%, "중"집단 93.4%, "하"집단 90.2%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경험률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Ⅳ-3-23.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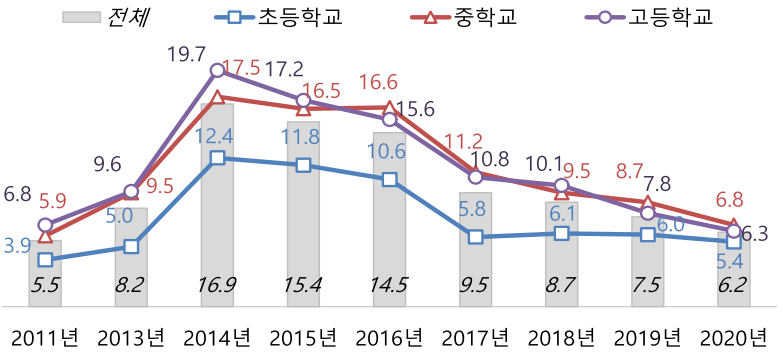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3.8	4.0	1.1	0.5	0.6	100.0(8,589)	
성별	남학생	93.3	4.3	1.3	0.5	0.5	100.0(4,451)	7.097
	여학생	94.4	3.5	0.9	0.6	0.6	100.0(4,138)	
학교급	초등학교	94.6	3.7	0.7	0.3	0.7	100.0(2,861)	14.549
	중학교	93.1	4.4	1.3	0.6	0.5	100.0(2,738)	
	고등학교	93.7	3.8	1.4	0.6	0.5	100.0(2,9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0	3.9	1.0	0.5	0.6	100.0(7,666)	54.445***
	한부모가정	91.5	4.7	1.9	1.0	1.0	100.0(619)	
	조손가정	89.9	2.0	8.0	0.0	0.0	100.0(94)	
	기타	94.1	2.9	2.3	0.7	0.0	100.0(144)	
경제적 수준	상	94.6	3.3	1.0	0.4	0.6	100.0(4,802)	25.926**
	중	93.4	4.4	1.2	0.5	0.5	100.0(3,092)	
	하	90.2	5.9	1.7	1.4	0.8	100.0(622)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청결한 옷과 이부자리로부터의 방임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Ⅳ-3-18]). 전체적인 경험률은 2011년 5.5%에서 2014년 16.9%까지 높아졌던 유경험률은 차츰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6.2%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3.9%에서 2020년 5.4%, 중학생 5.9%에서 6.8%, 고등학생 6.8%에서 6.3%로의 증감이 확인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표 Ⅳ-3-24.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6	2.4	0.6	0.2	0.2	100.0(8,588)	
성별	남학생	96.8	2.1	0.7	0.3	0.1	100.0(4,449)	7.691
	여학생	96.3	2.7	0.4	0.2	0.3	100.0(4,138)	
학교급	초등학교	97.5	2.0	0.2	0.1	0.2	100.0(2,860)	31.097***
	중학교	96.8	2.2	0.5	0.4	0.2	100.0(2,737)	
	고등학교	95.5	3.0	1.0	0.3	0.2	100.0(2,9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9	2.2	0.5	0.2	0.1	100.0(7,664)	82.680***
	한부모가정	93.3	4.4	1.0	0.3	1.0	100.0(619)	
	조손가정	92.7	0.9	5.8	0.6	0.0	100.0(94)	
	기타	96.0	3.3	0.7	0.0	0.0	100.0(144)	
경제적 수준	상	97.5	1.7	0.4	0.1	0.2	100.0(4,804)	80.170***
	중	96.2	2.8	0.6	0.3	0.1	100.0(3,089)	
	하	91.0	6.2	1.4	0.6	0.9	100.0(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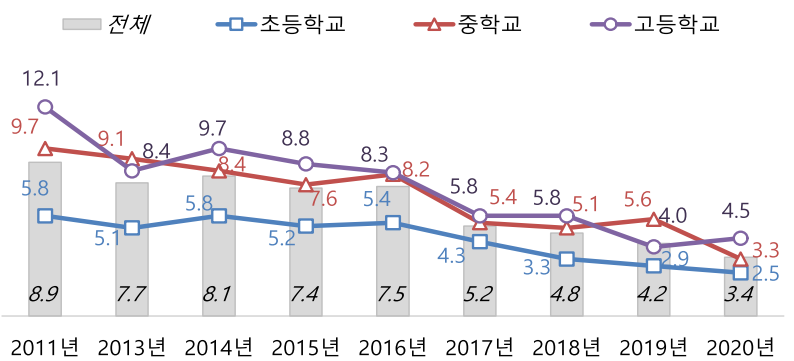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시 방치되었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3-24〉). 대상자의 96.6%가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고, 2.4%는 일 년에 1~2회 정도, 0.6%는 2~3개월에 1~2회 정도, 0.2%는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질병 발생 상황 시 방치되는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성별을 제외한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초등학생이 97.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96.8%, 고등학생 95.5%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이 96.9%로 가장 높았고 조손가정이 92.7%라 가장 낮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집단 97.5%, "중"집단 96.2%, "하"집단 91.0%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 발생 시 방치된 경험률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Ⅳ-3-19]), 2011년 8.9%에서 2020년 3.4%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감소폭은 고등학생이 12.1%에서 4.5%로 가장 컸으며 초등학생이 5.8%에서 2.5%로 가장 작았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19.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식사를 못 했더라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5.4%가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 년에 1~2회 정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 2~3개월에 1~2회 정도 경험한 경우가 1.0%, 한 달에 1~2회 정도가 0.5%, 1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결식으로 인한 방임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학교급에서 초등학생이 96.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94.7%로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 응답자의 95.7%가 경험이 없었으나 조손가정의 경우 91.3%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인 집단의 96.4%가, "하"집단의 91.0%가 결식과 관련된 방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Ⅳ-3-25.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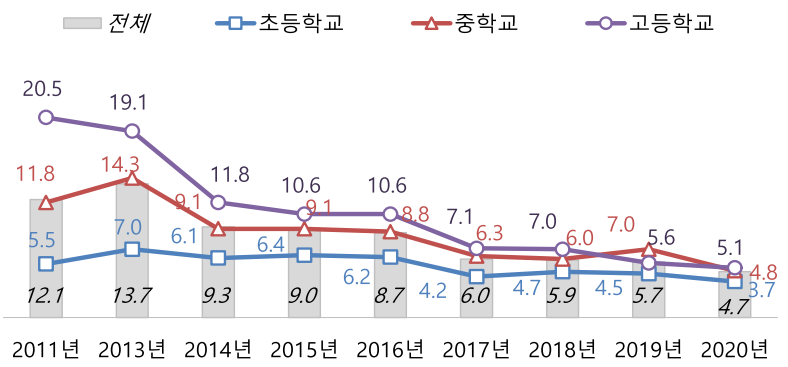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4	2.6	1.0	0.5	0.6	100.0(8,586)	
성별	남학생	95.5	2.3	1.1	0.6	0.4	100.0(4,450)	7.471
	여학생	95.2	2.8	0.8	0.5	0.7	100.0(4,135)	
학교급	초등학교	96.3	2.4	0.7	0.3	0.3	100.0(2,858)	19.429*
	중학교	95.1	2.7	0.8	0.6	0.7	100.0(2,738)	
	고등학교	94.7	2.5	1.3	0.6	0.7	100.0(2,9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7	2.5	0.8	0.4	0.5	100.0(7,662)	61.931***
	한부모가정	92.4	3.3	1.6	1.5	1.3	100.0(619)	
	조손가정	91.3	1.4	5.8	1.5	0.0	100.0(94)	
	기타	94.6	0.7	2.7	1.9	0.0	100.0(145)	
경제적 수준	상	96.4	2.1	0.8	0.3	0.4	100.0(4,805)	49.577***
	중	94.7	2.9	1.1	0.7	0.6	100.0(3,087)	
	하	91.0	4.4	1.7	1.1	1.7	100.0(621)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결식에 따른 방임경험 여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방임 경험률은 감소하였는데, 2020년의 경험률이 3.7%~5.1% 범위로 수렴된 반면, 2011년에는 학교급별로 경험률의 차이가 비교적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12.1%였던 경험률이 2020년 3.7%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은 2011년 11.8%였지만 2020년 4.8%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20.5%였던 경험률은 2020년 5.1%로 크게 감소하였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학교에 안 갔을 때 부모님(보호자)이 신경을 썼는지를 통해 결석에 대한 방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98.9%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조사된 다른 상황에 대한 방임에 비해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일 년에 1~2회 정도는 0.4%, 2~3개월에 1~2회 정도는 0.3%, 한 달에 1~2회정도와 1주일에 1~2회 이상인 경우는 각각 0.2%로 응답되었다. 본 결과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98.6%)보다 여학생(99.2%)의 경험률이 더 낮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의 경험률이 99.5%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가정의 99.1%가 방임을 경험이 없었지만 조손가정에서는

92.7%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 “상”집단은 99.1%, “하” 집단은 98.0%로 각각 집단별 경험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석에 따른 방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2.0%에서 2020년 1.1%의 낮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학교급 중 고등학생의 감소 추이가 2011년 3.9%에서 2020년 1.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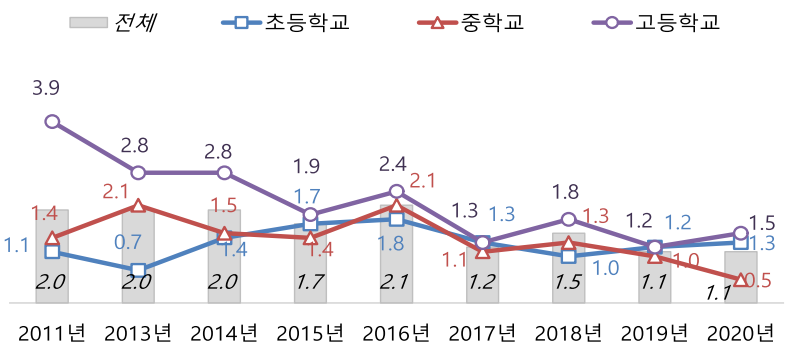
표 Ⅳ-3-26.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9	0.4	0.3	0.2	0.2	100.0(8,586)	
성별	남학생	98.6	0.5	0.4	0.2	0.3	100.0(4,449)	10.264*
	여학생	99.2	0.4	0.2	0.1	0.1	100.0(4,137)	
학교급	초등학교	98.7	0.5	0.1	0.2	0.5	100.0(2,858)	43.085***
	중학교	99.5	0.2	0.1	0.1	0.1	100.0(2,738)	
	고등학교	98.5	0.6	0.7	0.1	0.1	100.0(2,99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1	0.4	0.1	0.2	0.2	100.0(7,664)	169.891***
	한부모가정	97.4	1.0	1.1	0.0	0.6	100.0(619)	
	조손가정	92.7	0.9	6.4	0.0	0.0	100.0(94)	
	기타	96.6	1.1	0.7	0.0	1.5	100.0(144)	
경제적 수준	상	99.1	0.4	0.1	0.1	0.2	100.0(4,804)	18.553*
	중	98.8	0.5	0.5	0.1	0.2	100.0(3,089)	
	하	98.0	0.6	0.8	0.4	0.2	100.0(622)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3-21.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국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42개소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 44개소, 2015년 56개소에서 2018년에는 전국 6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발생건수를 함께 비교하면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기관 평균 담당 사례건수는 123.9건이었다가 2010년 128.6건 소폭 증가하였고 2014년 196.6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 그리고 2016년 316.9건, 2018년 396.8건으로 매우 높은 평균 사례건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대 발생 사례 수와 기관 및 직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할 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아동학대사례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기관수와 규모의 증대를 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증가하는 평균 담당 사례수로부터 기관 직원의 과다업무와 처우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확대가 요구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Ⅳ-3-2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8년)

구분	아동학대사례	아동보호 전문 기관수	
	건수(건)	기관수(개소)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건)
2006	5,202	42	123.9
2007	5,581	43	129.8
2008	5,578	43	129.7
2009	5,685	44	129.2
2010	5,657	44	128.6
2011	6,058	44	137.7
2012	6,403	46	139.2
2013	6,796	50	135.9

구분	아동학대사례	아동보호 전문 기관수	
	건수(건)	기관수(개소)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건)
2014	10,027	51	196.6
2015	11,715	56	209.2
2016	18,700	59	316.9
2017	22,367	60	372.8
2018	24,604	62	396.8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51.

표 Ⅳ-3-28.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5년	8	3	2	4	1	1	1	-	11	4	3	3	3	3	4	3	2	54
2016년	8	4	3	3	2	1	1	-	12	4	3	3	3	3	4	3	2	57
2017년	9	4	3	3	2	1	2	-	12	4	3	3	3	3	4	3	2	61
2018년	9	4	3	3	2	1	2	1	12	4	3	3	3	3	4	3	2	6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10.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7-18.

②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가족강화,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40). 제공된 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461,8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에게는 206,419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37,127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건수의 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434,331건에서 2016년 1,028,942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 805,43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9.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서비스 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피해아동	311,599	335,424	492,415	640,378	501,465	461,891
학대행위자	63,863	73,817	131,836	193,633	196,458	206,419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142,535	194,931	186,923	137,127
계	434,331	488,401	766,786	1,028,942	884,846	805,437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8). 2013~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3년 현황 보고서 p.109, 2014년 현황보고서 p.165, 2015년 현황보고서 p.157, 2016년 현황보고서 p.157, 2017년의 현황보고서에서는 p.161. 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2018년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는 p.40.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앞서 조사된 학대아동 관련 서비스 제공 실적을 서비스 유형 및 대상자별로 비교해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6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심리치료(11.4%), 가족기능강화(7.3%), 사건처리지원(6.9%) 등의 순으로 제공되었다. 학대 행위자 역시 상담 서비스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리치료 9.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7.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가족도 상담 서비스가 77.3%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그 뒤로 가족기능강화는 8.9%, 심리치료 지원은 7.7% 제공되었다.

표 Ⅳ-3-30.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상담	295,312	63.9	143,896	69.7	105,996	77.3
의료지원	6,937	1.5	1,864	0.9	757	0.6
심리치료지원	52,661	11.4	18,859	9.1	10,594	7.7
가족기능강화	33,932	7.3	8,519	4.1	12,188	8.9
학습 및 보호지원	18,353	4.0	1,930	0.9	1,043	0.8
사건처리지원	31,977	6.9	10,961	5.3	1,982	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429	0.1	15,538	7.5	359	0.3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5	0.0	6	0.0	4	0.0
기타	22,285	4.8	4,846	2.3	4,204	3.1
계	461,891	100.0	206,419	100.0	137,1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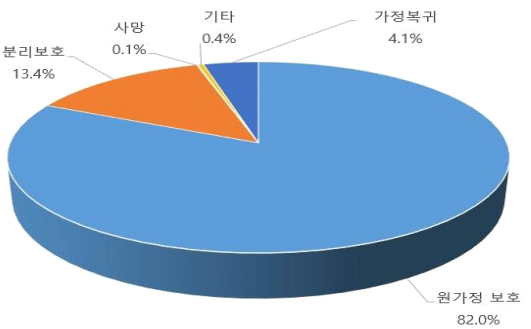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p.41.에서 발췌

표 Ⅳ-3-31.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상황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기타[1)]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1년도 현황 보고서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 p.110. 2013년 현황보고서 p.108, 2014년 현황보고서 p.144, 2015년 현황보고서 p.139, 2016년 현황보고서 p.138, 2017 현황보고서 p.145,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8~29. 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주: 1)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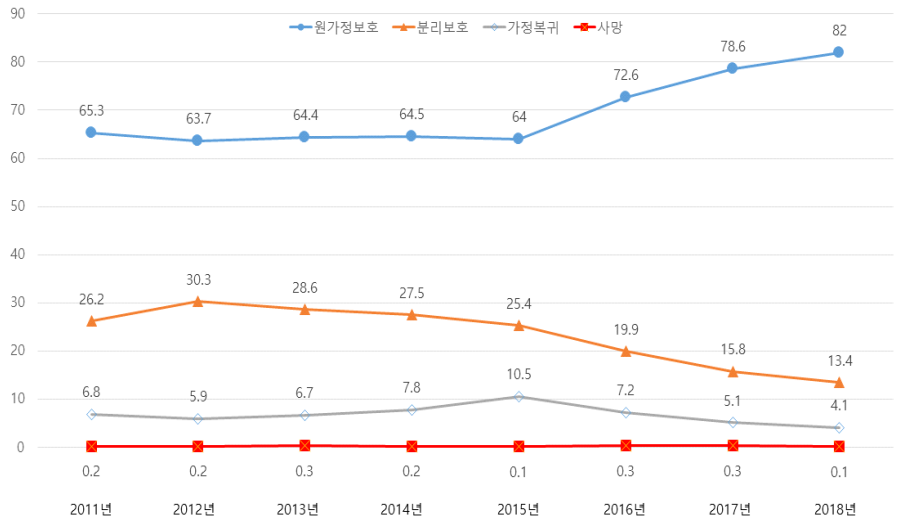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8-29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그림 Ⅳ-3-2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18년 피해아동 상황

학대 피해 아동의 최종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 전체 24,604건 중 원가정 보호가 8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분리보호 13.4%, 가정복귀 4.1%, 기타 0.4%, 사망 0.1%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의 경우 전체 사례 중 0.1%

를 차지하지만 실제 사망 아동의 수를 보면 32명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욱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년도 현황 보고서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 p.110. 2013년 현황보고서 p.108, 2014년 현황보고서 p.144, 2015년 현황보고서 p.139, 2016년 현황보고서 p.138, 2017 현황보고서 p.145,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8~29. 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주: 본 그림은 표 Ⅳ-3-31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3-2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연도별 추이)

최종 조치결과를 각 연도에 따라 비교해보면 원가정 보호의 경우 2011년 65.3%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2018년에는 82.0%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분리보호는 2011년 26.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2012년 30.3%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18년에는 13.4%의 비중을 나타냈다. 가정복귀의 경우 2011년 6.8%에서 2015년 1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여 2018년 4.1%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0.1%~0.3%의 수치를 보였던 사망의 경우 비율은 낮지만 한 해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58명까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원가정 보호의 비중은 증가하고 분리보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아동에게 원가정 보호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학교, 선후배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 중학생이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33.9%)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발달심리학적으로 중학생이 부모나 보호자와 갈등 관계에 놓여있을 수 있는 시기 때문이라 유추될 수 있다. 주목할 사항은 가정에서의 초등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 학생 중 4.4%에 해당되었는데 다른 유형의 폭력에서와 같이 초등학생에서 10명 중 1명 정도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 10년간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결과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욕설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16.1%, 따돌림이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은 심한 우려 정도의 결과는 아니지만 코로나19와 심화되는 정보 사회를 맞아 예의 주시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1.9%에서 2020년 2.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결과 파악된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전체 성폭력 피해자 25,270명 중에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7.5%(4,411명), 초등학생 연령인 7~13세 미만은 6.7%(1,685

명), 7세 미만은 1.3%(328명) 등으로 0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25.5%인 6,424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청소년 중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0명 중 약 3명에 해당되어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더 문제인데 다행히 2020년에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락의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성적 피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조기 성교육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초등학생이 32.2%로, 10명 중 3명이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에서의 폭력 증가 현상은 자녀에 대한 가정의 체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이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초등학생 21.5%,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48.8%와 47.1%였던 비중이 최근 2020년에 와서 초등학교 3.1%, 중학교 4.1%, 고등학교 4.7%로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법적 개선의 실효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폭력 및 학대' 대분류의 두 번째 중분류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각 지표에 따른 실태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들을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학대 사례 신고 건수는 전체 36,417건으로 확인되었으

며, 그 중 가장 많은 92.1%(33,532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신고 36,417건에 대한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사례가 73.4%(24,604건)로 판정되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24,604건에 대한 피해아동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아 대상이 48.2%(11,867건/9,707명), 여아 대상 학대가 51.8%(12,737건/10,311명)로 나타나 남아에 비해 여아에 대한 학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13세~15세가 24.7%(6,072건/5,09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세~12세가 22.2%(5,450건/4,466명), 7세~9세가 17.5%(4,309건/3,479명)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4년 10,027건에서 2016년 18,700건, 2018년 24,6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6.9%(18,919명)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친부모의 비율은 7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의 유형사례는 중복학대가 47.9%(11,79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3.8%(5,862건), 신체학대 14.0%(3,436건), 방임 10.6%(2,604건), 성학대 3.7%(910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정서학대의 경우 매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 경험률은 야간시간의 방임 경험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비위생적 의복 및 침구 사용은 6.2%, 질병 발생 시 무관심 3.4%, 결식 방치 4.7%, 결석 무관심 1.1% 등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방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중학생 가장 높음)과 가족유형(한부모가정 가장 높음), 경제적 수준(경제적 수준 "하"집단 가장 높음)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야간시간 방임의 경우 평년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심각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에 해당하는 지표 분석 결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는 2018년 기준 24,604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

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관 평균 담당 보호사례 건수를 계산한 결과 기관당 396.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6년 123.9건, 2012년 13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학대 사례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가가 시급히 필요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82.0%로 가장 많았으며, 분리보호 13.4%, 가정복귀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사례는 0.1%로 2017년 0.3%에서 미세하게 감소한 수치지만, 32명의 사망사례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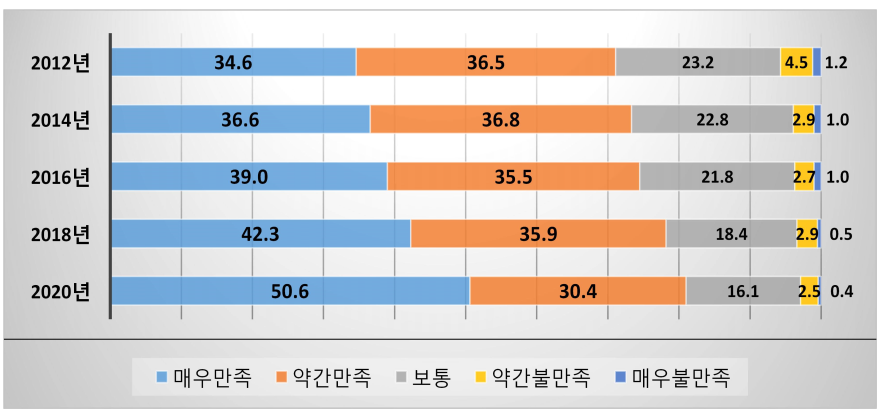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아동·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승인통계인 사회조사(제101018호) 중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참고하였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그림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연도별 추이

먼저 2020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5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약간 만족은 30.4%로 나타나 81.0%의 아동·청소년

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불만족 응답도 3% 가까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그림 Ⅳ-4-1]), 2012년부터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간만족을 합친 경우에도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만족의 경우 2018년에 비해 8.3%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Ⅳ-4-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2012년-2020년)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2012년	34.6	36.5	23.2	4.5	1.2	100.0
2014년	36.6	36.8	22.8	2.9	1.0	100.0
2016년	39.0	35.5	21.8	2.7	1.0	100.0
2018년	42.3	35.9	18.4	2.9	0.5	100.0
2020년	50.6	30.4	16.1	2.5	0.4	100.0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인구 및 경제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부재한 현대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가정 못지않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지며 그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보육시설의 설치현황 및 이용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양적 수준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 현황

연도별,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시설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육연령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42,517개소였으나 이후 2017년 40,238개소, 2019년 37,371개소로, 매해 감소하여 2015년에 비하여 2019년에는 약 5천여 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표 Ⅳ-4-2〉의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재원아동 수는 2015년 1,452,813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7년 1,450,243명, 2019년 1,365,085명으로 2015년에 비해 약 9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가 보육시설 수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표 Ⅳ-4-2.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5년-2018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 개소)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명)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7c).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d). 2018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9b). 2019 보육통계. pp.2-3.

각 설립주체에 따라 본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국·공립 보육시설은 증가하였고(2,629개소 → 4,324개소), 직장 어린이집 역시 785개소에서 1,153개소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14,626개소에서 12,568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가정 보육시설은 22,074개소에서 17,117개소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에 따른 보육시설의 증감은 보육시설 재원아동수의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개소수에 있어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경우 2015년 165,743명에서 2019년에는 232,123명으로 약 6만 5천여 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 역시 2015년 44,765명에서 2019년에는 66,023명으로 2만2천여 명 증가하였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재원아동 수는 7만 명에서 8만 명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재원 대상 아동 수가 2015년에 비해 약 1만여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의 증가했다는 사실은 자녀를 위탁하는 보호자의 선호도 또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률

전체 및 각 운영주체별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15년 81.1%였던 이용률은 2019년 80.9%로 큰 폭의 증감율은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 87.9%에서 2019년 86.1%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대비 2019년 정원 수와 현원 수의 증감폭을 감안했을 때 현원 수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정원 수가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현원 수에 비해 정원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외 다른 운영주체별 이용률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15년 73.5%에서 70.0%로, 법인어린이집은 77.4%에서 74.5%, 가정어린이집은 86.1%에서 85.9%, 부모협동어린이집은 84.0%에서 77.8%로 이용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 역시 2015년 75.6%에서 77.3%로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3.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5년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년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년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년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년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c).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c).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9b). 2019 보육통계. p.17.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의 부재로 연결된다. 이는 방과 후 돌봄의 공백 안에 놓여진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시킨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방과후 아동·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지자체)를 살펴보았으며, 각 사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가. 방과후학교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정규수업 이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의 2019년도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들의 참여율은 48.4%로 조사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58.7%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참여율이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참여율이 27.4%로 가장 낮았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참여율은 2010년 55.6%에서 2013년 60.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가 2019년 48.4%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010년 45.0%에서 2014년 60.9%까지 높아졌다 2019년 58.7%의 참여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보다 높은 참여율인 50%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초, 중, 고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가장 높은 79.0%의 참여율에서 점차 낮아져 2019년 47.7%의 참여율을 나타내 세 학교급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4.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9년)[1)]

(단위 : %, 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참여율[2)]	비용[3)]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0	45.0	1.3	50.0	0.7	79.0	2.3	55.6	1.4
2011	50.4	1.6	48.3	0.6	74.7	2.2	56.6	1.5
2012	52.6	1.5	49.4	0.4	73.0	1.8	57.6	1.3
2013	58.2	2.0	50.5	0.4	72.3	2.0	60.2	1.5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2016	58.9	2.1	35.0	0.3	68.3	1.8	55.8	1.6
2017	60.4	2.2	37.2	0.3	59.8	1.3	54.6	2.2
2018	59.3	2.1	32.1	0.3	52.6	1.1	51.0	1.4
2019	58.7	2.2	27.4	0.2	47.7	1.0	48.4	1.4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0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2018.0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19.0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20.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26.
통계청 KOSIS (2010~2019)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방과후학교의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교과프로그램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에는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논술 등의 관련 프로그램이 속한다. 2019년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은 43.8%, 특기적성프로그램은 56.2%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되었다. 이를 초·중·고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77.5%)이 교과(22.5%)보다 많았으며 중학교는 교과(46.0%)와 특기적성(54.0%)의 차이가 초, 고등학교에 비해 가장 작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84.5%)의 비중이 특기적성(15.5%) 보다 매우 높았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특기적성 비중은 줄고 교과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의 내용까지 대학입시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4-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9년)

		교과		특기적성		계
		수(개)	비율(%)	수(개)	비율(%)	수(개)
2010		338,891	68.5	156,074	31.5	494,965
2011		355,158	66.9	175,492	33.1	530,650
2012		367,025	60.9	235,605	39.1	602,630
2013		323,888	56.8	246,433	43.2	570,321
2014		294,396	54.7	243,712	45.3	538,108
2015		255,079	53.6	220,611	46.4	475,690
2016		238,916	52.7	214,475	47.3	453,391
2017		210,488	50.0	210,487	50.0	420,975
2018		167,907	46.1	196,192	53.9	364,099
2019	계	147,416	43.8	188,971	56.2	336,387
	초	43,468	22.5	150,083	77.5	193,551
	중	20,105	46.0	23,560	54.0	43,665
	고	83,843	84.5	15,328	15.5	99,171

* 출처: 교육부(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9b).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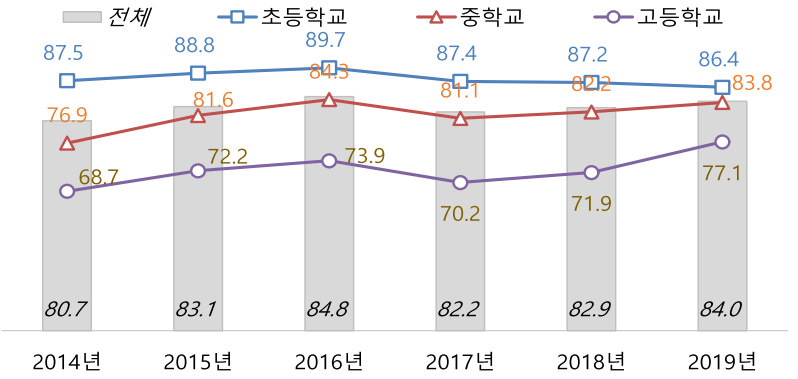
표 Ⅳ-4-6.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년-2019년)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4	87.5	76.9	68.7	80.7
2015	88.8	81.6	72.2	83.1
2016	89.7	84.3	73.9	84.8
2017	87.4	81.1	70.2	82.2
2018	87.2	82.2	71.9	82.9
2019	86.4	83.8	77.1	84.0

* 출처: 교육부(2019b).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방과후 학교를 이용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이용자의 경우 86.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중학교 83.8점, 고등학교 77.1점 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각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초, 중, 고 전체 만족도는 2014년 80.7점에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9년 84.0점의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87.5점에서 2016년 89.7점의 수준까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가 2019년 86.4점의 만족도를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 2014년 76.9점이었던 만족도는 2016년 84.3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 83.8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고등학생은 2014년 68.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는데, 점차 소폭의 증가와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77.1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연도를 더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영현황에서 보았듯이 방과후학교의 과정이 특기적성에서 교과 위주로 증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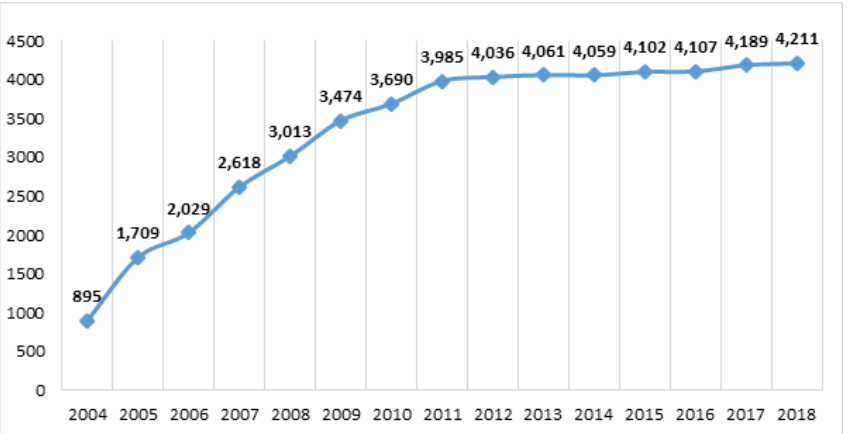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9b).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그림 Ⅳ-4-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년-2019년)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아동·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학령기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 청소년 모두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 2004년에는 895개소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4,211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기준, 경기지역이 789개소(18.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454개소(10.8%), 전남 378개소(9.0%), 광주 308개소(7.3%), 전북 285개소(6.8%), 경북 271개소(6.4%), 경남 263개소(6.2%), 부산 212개소(5.0%), 대구 200개소(4.8%), 충북 184개소(4.4%), 인천 178개소(4.2개소), 강원 172개소(4.1%), 대전 144개소(3.4%), 제주 66개소(1.6%). 울산 56개소(1.3%), 세종 13개소(0.3%)순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9j: 6).



* 출처: 보건복지부(2019j).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7.

그림 Ⅳ-4-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현황(2004~2018)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탈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 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87,291명이었던 이용아동의 수는 2018년 109,610명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조사결과를 통해 이용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1,798명, 초등학교 저학년 43,438명, 초등학교 고학년 44,063명, 중학생 16,321명, 고등학생 3,902명, 탈학교 청소년 8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80%가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표 Ⅳ-4-7.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8년-2018년)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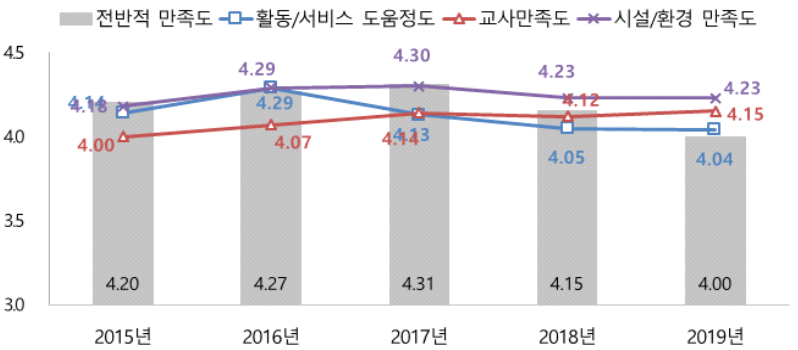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명)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주]
				저학년	고학년				
2008	3,013	87,291	4,585	35,972	33,163	11,380	1,862	133	196
2009	3,474	97,926	4,838	39,053	38,032	13,600	2,072	331	-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명)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주)
				저학년	고학년				
2010	3,690	100,233	4,376	37,865	40,233	15,075	2,346	338	-
2011	3,985	104,982	4,578	37,407	42,324	17,374	3,014	285	-
2012	4,036	108,357	4,028	38,030	42,396	20,017	3,663	223	-
2013	4,061	109,066	3,714	39,293	41,025	20,817	4,006	211	-
2014	4,059	108,936	3,533	40,425	40,662	20,121	4,035	160	-
2015	4,102	109,661	3,133	42,267	40,113	19,566	4,418	164	-
2016	4,107	106,668	1,872	41,750	40,390	18,156	4,377	123	-
2017	4,189	108,578	1,111	41,970	42,736	17,563	4,185	117	896
2018	4,211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

* 출처: 보건복지부(2017e).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 iii, p.viii.
보건복지부(2019j).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5, pp.44-45

* 주: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구분된다. 보호프로그램은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등을 제공하며 전국 98%의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센터의 96% 이상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j: 27). 문화프로그램은 동아리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97% 이상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동상담과 같은 정서지원은 99% 이상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j: 27).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

* 출처: 김희진, 임희진, 하형석, 정윤미(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p.206, pp.270-277.

그림 Ⅳ-4-4.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도움정도와 교사 및 시설·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00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4.1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각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활동 및 서비스 도움정도는 4.04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4.15점으로 2018년 4.12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23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19).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과 같이 방과 후 방치되기 쉬운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197).

표 Ⅳ-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9년-2019년)

구분	개소	인원(명)	연인원(명)
2009	178	7,560	2,177,280
2010	161	6,672	1,754,736
2011	200	8,200	2,148,400
2012	200	8,060	2,095,600
2013	200	8,200	2,205,800
2014	200	8,091	1,962,492
2015	244	9,490	2,325,050
2016	250	9,745	2,368,035
2017	250	9,773	2,345,520
2018	260	10,265	-
2019	280	10,985	-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p.273.
여성가족부(2016b). 2016 청소년백서. pp.151-15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7-169.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p.195-196.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98-19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9년 178개소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0여 개소 이상이 증가하여 28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용인원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7,560명이 이용하였지만 10년 뒤인 2019년에는 10,98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만족도는 85.9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10년간의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82.4점인데 2011년 84.1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8년부터 82점대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도자 만족도의 경우 86.4점으로 표에 제시된 10년간의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교과목강사 만족도는 2011년 83.3점에서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 2019년에는 85.6점으로 조사되었다. 주중체험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88.0점으로 전체 만족도를 포함한 다른 하위지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결과들에서도 동일하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7.2점으로 주중체험강사 만족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설만족도는 2011년 82.3점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에 가장 상승폭이 높은 지표이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유일하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감소한 영역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토대로 추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1~2019)

연도 / 만족도 영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만족도	83.5	83.8	83.9	84.2	84.4	85.1	82.5	84.2	85.9
프로그램 만족도	84.1	84.4	84.3	84.4	84.4	85.3	84.0	82.5	82.4
지도자 만족도	83.9	84.0	85.5	85.2	85.6	86.3	84.0	83.8	86.4
교과목강사 만족도	83.3	82.8	85.0	85.2	85.6	86.8	83.1	83.2	85.6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86.7	87.6	88.2	88.0	88.4	89.9	86.9	85.8	88.0
시설환경 만족도	82.3	83.6	85.1	84.2	85.2	87.6	84.3	85.4	87.2
급식 만족도	81.1	80.0	74.9	77.8	76.8	74.4	74.7	-	-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2015), 양계민(2016), 서정아, 연보라(2017), 양계민(2018)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사업성과 및 효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 주: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2018년부터 급식 만족도 조사하지 않았음.

라. 온종일돌봄체계(학교돌봄 + 마을돌봄)

온종일돌봄체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체계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 돌봄의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항에 근거하여 구축된 체계이다(보건복지부, 2019a).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초등돌봄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신설된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이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작용하는 운영형태를 가진다(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에서 발췌).

온종일돌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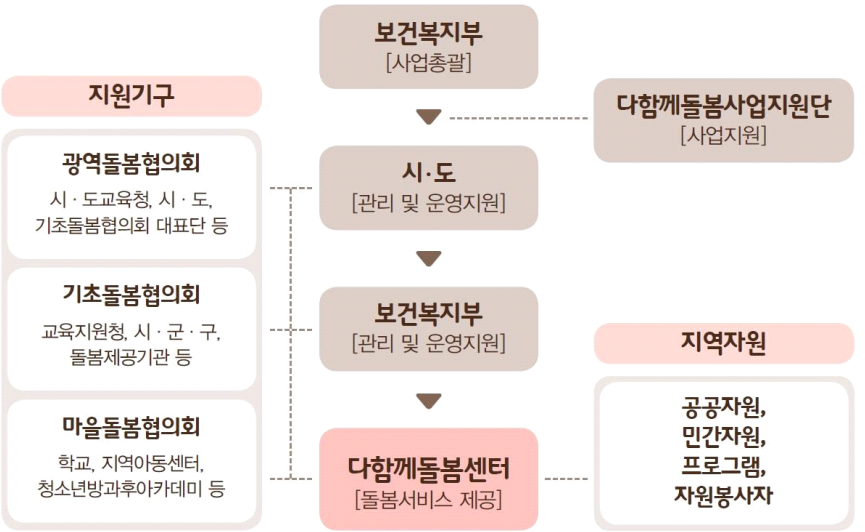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dadol.or.kr/biz/biz_intro). 2020.11.20. 인출

그림 Ⅳ-4-5. 온종일돌봄체계 사업 안내

온종일돌봄체계 중 기존부터 운영되던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외에 새로 신설된 다함께돌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부 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주도적 아동돌봄 공동체로서 지역 내 돌봄 수요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 7월 행안부와 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정책이 발표되면서 그 해 12월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가 설치·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1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 발족하여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9a).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은 지역 내 방과후 돌봄 체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운영되고 상시 및 일시 돌봄, 프로

그램 운영, 등·하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a). 다함께돌봄사업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p.11.

그림 Ⅳ-4-6. 온종일돌봄체계 수행체계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컨설팅, 현장지도와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자원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등 총괄을 담당하고 사업지원단은 평가 및 컨설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홍보 및 연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9a). 각 시·도에서는 시·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점검 및 국고보조금 집행, 돌봄서비스 광역 간 연계·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과 시·도 협의회 간 서비스 연계·조정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9a).

마. 긴급돌봄서비스(코로나19와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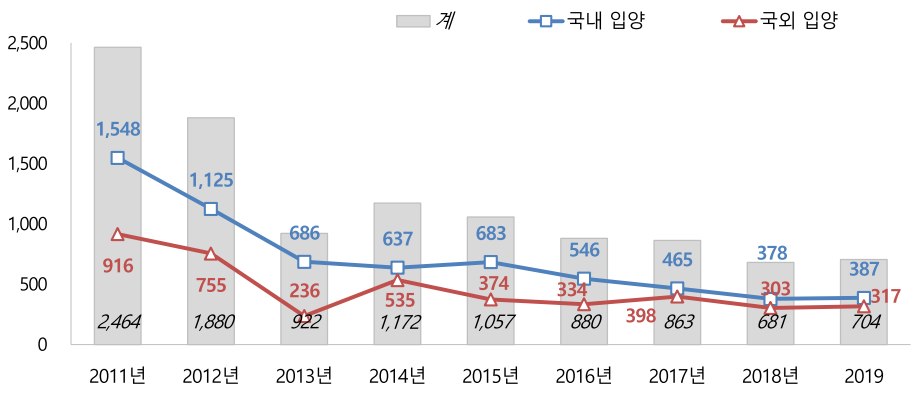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태의 심각화와 더불어 학교 및 돌봄 관련 기관들의 개학연기 및 휴원 등으로 인해 생기는 긴급한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협력·시행하는 긴급서비스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학연기 및 등교일 조정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17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20.02.28.).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기관 휴원 시 종사자의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를 통해 긴급 보육 및 돌봄을 19시 30분까지 제공한다(교육부 외, 2020). 고용노동부는 돌봄 대상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휴가기간 연장, 돌봄비용 지원, 유연근무조치 시행 기업에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였다(교육부 외, 2020).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경우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긴급돌봄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함이 최우선이고, 여건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내 입양이 우선시 되며 해외입양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시도해야 한다(이은정, 2014). 아동이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더라도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본 절에서는 현재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의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 (2011-2019)(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D3_460. 2020.11.27. 발췌 및 재구성)

그림 Ⅳ-4-7.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그림 Ⅳ-4-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입양 아동의 수는 2011년 2,464명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1,172명, 2019년 704명으로 조사되어 최근 9년간 입양 아동의 수가 1/3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입양은 2011년 1,548명에서 2019년 387명으로 감소했으며 해외입양은 2011년 916명에서 2019년 70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입양 사례에서 국내와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내입양은 62.8%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해외입양은 37.2%에서 45.0%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내용 중 일부인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 입양 우선추진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입양 아동의 수가 더 이상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입양이 필요한 아동에게

매우 취약한 환경을 제공한다.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재차 거론했듯이 서둘러 헤이그 협약의 비준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4-10.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국내	국외
계	248,728	80,864 (32.5)	167,864 (67.5)
2011년 이전	238,105	74,409 (31.3)	163,696 (68.7)
2011년	2,464	1,548 (62.8)	916 (37.2)
2012년	1,880	1,125 (59.8)	755 (40.2)
2013년	922	686 (74.4)	236 (25.6)
2014년	1,172	637 (54.4)	535 (45.6)
2015년	1,057	683 (64.6)	374 (35.4)
2016년	880	546 (62.0)	334 (38.0)
2017년	863	465 (53.9)	398 (46.1)
2018년	681	378 (55.5)	303 (44.4)
2019년	704	387 (55.0)	317 (45.0)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 (2011-2019)(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D3_460. 2020.11.27. 발췌 및 재구성)

② 입양 사후관리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관리까지도 입양특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5조를 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은 국내 및 국제 입양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입양이 성립된 이후 1년 동안 양자와 양친 간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해 보고하고 적응을 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20).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입양가족과의 적응을 도모하는 동시에 입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파양 또는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입양관련 사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4개 부처에서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10년 복지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사업 대상을

국외입양인에서 국내입양인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2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54

그림 Ⅳ-4-8.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입양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가정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사항, 아동관련 사항, 양부모관련 사항, 아동사진, 조사자의견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관련 사항에서는 기본적인 신체사항, 언어 및 정서 발달, 형제 및 또래관계 등을 기록한다. 양부모와 관련되어서는 아동과의 관계, 심리·정서적 상태, 가족관계 외에 기타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최소 1회는 양부모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조사자 의견에는 가정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조사자의 전문의견, 기타 필요한 도움 등에 대해 기록한다.

표 Ⅳ-4-11.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 내용

영역	내용
기초사항	○ 입양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 양부모이름, 입양확정일, 실제위탁일, 최초가정방문일, 주소, 연락처, 양육방법 ○ 조사방법 및 면담장소 ○ 면담대상자, 아동과의 관계
아동 관련사항	○ 신체발달 : 기본적인 신체적 사항(키, 몸무게, 예방접종사항, 개월별 근육발달, 특히 입양 당시 병력 또는 장애가 있었던 경우 관련 사항(현재상태, 치료과정) ○ 인지·정서발달 : 언어능력, 사회적 발달, 기타 특이사항, 양부모 가정 적응상태 ○ 형제관계 : 입양아동의 형제관계 ○ 또래관계 :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양부모 관련사항	○ 양부모는 2회의 가정방문 중 최소 1회는 양부·모 모두 참여 ○ 아동과의 관계 : 아동과의 관계 상태, 아동에 대한 감정, 기타 특이사항 ○ 심리·정서 상태 : 입양 전후 양부모의 심리·정서적 변화, 양육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 (예 : 입양 전후 심리적 변화, 만족도 등) ○ 가족과의 관계 :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 친척들의 반응 ○ 기타 변화사항 : 기타 양부모 신변의 변화사항(재정사항, 직업, 이사, 이민, 해외파견 등) ○ 양육환경 : 적합한 양육환경 및 청결 여부, 주변 입양가족 네트워크 참여 여부 등
아동사진	○ 아동사진 필수 부착(2장 이상), 그 외 필요한 사진 부착 가능함
조사자 의견	○ 양부모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확인 ○ 가정방문조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조사자의 전문가적 의견 ○ 입양아동이나 양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 (필요자원,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배치 안내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p.36-37 내용 발췌 및 요약.

국내 입양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조사 이외에 입양아동과 가정의 상호적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 치료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유리드믹스, 자조모임,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사례관리,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 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Ⅳ-4-12〉와 같다.

표 Ⅳ-4-12. 국내 입양 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명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입양부모교육	•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 • 부모 참여형 교육 • 라이프 및 셀프 코칭 • 집단교육 및 상담
입양아동 치료 지원	• 심리치료 검사 • 집단상담 • 심리·신체발달 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 집단 예술치료 • 미술·놀이치료 • 연기, 노래 등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 공연
유리드믹스	• 음악을 통한 영아의 사물인지와 오감발달 •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류, 애착관계 극대화
자조모임	• 입양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 •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 멘토, 멘티 형성으로 현실적인 지지관계 형성 •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 등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 입양 삼자간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 후 가족과 아동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적응 상태 파악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사례관리	• 문제를 가진 국내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해 사례관리 실시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서비스	• 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업무 • 입양배경 정보 상담 등 사후상담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 입양 후 친생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37.

그 외에도 국내·외 입양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대상별로 나눌 수 있는데, 국외 현지에서 입양인과 가족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국어 교육,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등이 있으며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해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어생활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기타 행사지원 등이 있다. 또한 국내에 입양된 아동과 가정을 위해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연장아 등 특수욕

구 입양가족 지원,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기타 행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나열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4-13〉과 같다.

표 Ⅳ-4-13.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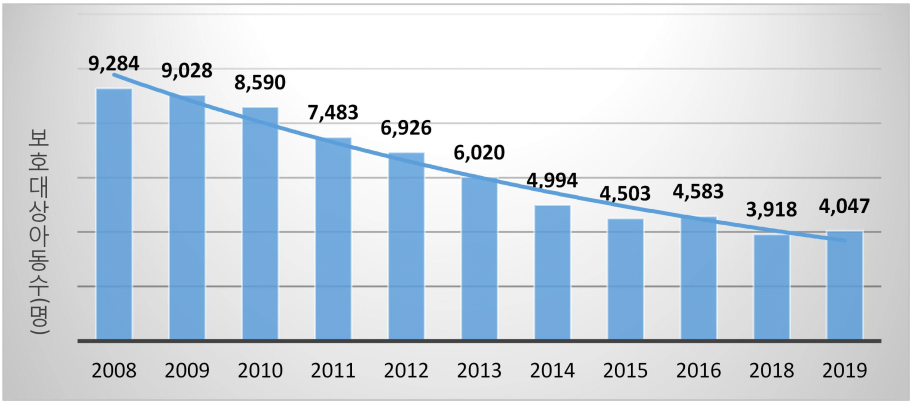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모국 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어 연수	한국어 습득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모국 생활 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 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모국 체류를 희망하는 입양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욕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등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등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56.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2019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

그림 Ⅳ-4-9.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08년~2020년)

최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4-9]와 같다. 2008년 9,284명이었던 보호대상아동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5년 절반 수준인 4,503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 3,918명으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 4,047명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표 Ⅳ-4-14.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4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빈곤·실직·학대[1]	2,965	2,866	3,139	2,778	2,726	2,865
	59.4	63.6	68.5	67.3	69.6	70.8
비행·가출[2]	508	360	314	227	231	473
	10.2	8.0	6.9	5.5	5.9	11.7
미혼부모·혼외자	1,226	930	855	847	623	464
	24.5	20.7	18.7	20.5	15.9	11.5
유기	282	321	264	261	320	237
	5.6	7.1	5.8	6.3	8.2	5.9
미아	13	26	11	12	18	8
	0.3	0.6	0.2	0.3	0.5	0.2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2019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유형은 빈곤·실직·학대, 비행·가출, 미혼부모·혼외자, 유기, 미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19년 총 4,0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2,865명(70.8%)이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이유였다. 빈곤·실직·학대 유형은 부모 사망 및 질병, 이혼을 포함하는 사례로서 최근 6년간 제시된 자료를 보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59.4%였던 빈곤·실직·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비행·가출 473명(11.7%), 미혼부모·혼외자 464명(11.5%)이 유사한 발생 비중을 보였는데, 비행·가출의 경우 2014년 10.2%에서 2017년 5.5%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모·혼외자 발생사례는 2014년 24.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201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237명, 5.9%)와 미아(8명, 0.2%)는 최근 6년 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표 Ⅳ-4-14〉).

표 Ⅳ-4-15.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4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시설보호[1]	2,900	2,682	2,887	2,421	2,449	2,739
	(58.1)	(59.6)	(63.0)	(58.7)	(62.5)	(67.7)
가정위탁	1,688	1,582	1,022	994	937	1,003
	(33.8)	(35.1)	(22.3)	(24.1)	(23.9)	(24.8)
입양[2]	393	239	243	285	174	104
	(7.9)	(5.3)	(5.3)	(6.9)	(4.4)	(2.6)
소년소녀가정	13	0	6	2	1	5
	(0.3)	(0.0)	(0.1)	(0.0)	(0.0)	(0.1)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2019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표 Ⅳ-4-15〉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유형에 따른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유형별은 시설보호(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으로 나뉜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보호대상아동 4,047명 중 가장 많은 2,739명(67.7%)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1,003명(24.8%)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위탁은 2014년 33.8%였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양의 경우 전체 사례의 2.6%인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입양의 비중이 감소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양특례법에서도 명시했듯이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는 증가하고 입양과 가정위탁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조치의 한 방편으로 원가정 복귀나 대리양육을 우선 조치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아동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거나 보호가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명시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대안양육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의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19년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 아동복지지설에서 보호하는 아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4-16.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4년-2019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278	281	281	280	279	281
현재 입소아동[2)]	14,630	14,001	13,689	12,789	12,193	11,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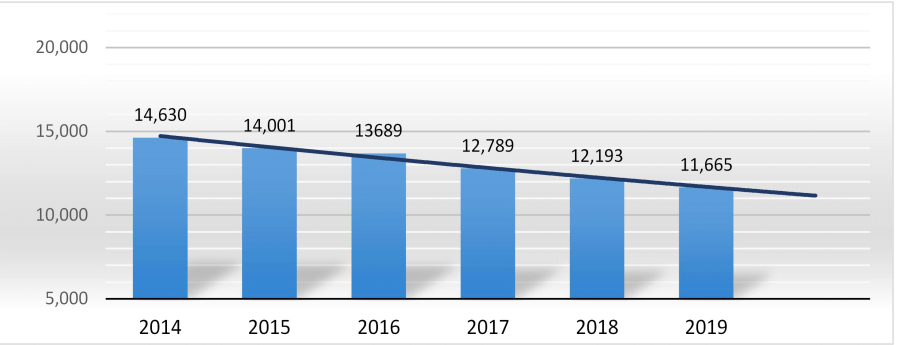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원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아동복지지설 수는 281개로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 말 보호아동은 11,665명으로 전년 대비 528명 감소하였다(〈표 Ⅳ-4-16〉).

전반적으로 시설 수는 2014년에 비해 뚜렷한 증감은 없지만 보호아동의 수는 14,630명에서 11,66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인구 감소와 함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환경에서의 대안적 양육 조치를 권장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조치 되는 아동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원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그림 Ⅳ-4-10.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추이(2014~2019)

나.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란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하고 이를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성인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인 위탁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11,141명으로 전년 대비 842명 감소했으며 그 중 대리양육 위탁아동이 7,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아동 2,801명, 일반 위탁아동 91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Ⅳ-4-17〉).

전반적인 가정위탁 아동의 추세는 2013년 14,596명에서 2016년 12,896명, 2018년 11,141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은 2013년 9,776명에서 2018년 7,426명으로,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은 3,843명에서 2,801명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일반위탁은

977명에서 914명으로 감소하였다. 각 년도 전체 가정위탁 아동의 유형별 구성비에서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7.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4,596	14,385	13,728	12,896	11,983	11,141
대리양육 위탁아동	9,776	9,550	9,127	8,578	7,950	7,426
	67.0%	66.4%	66.5%	66.5%	66.3%	66.7%
친인척 위탁아동	3,843	3,816	3,556	3,348	3,100	2,801
	26.3%	26.5%	25.9%	26.0%	25.9%	25.1%
일반 위탁아동	977	1,019	1,045	970	933	914
	6.7%	7.1%	7.6%	7.5%	7.8%	8.2%

* 출처: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 기준).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 기준).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가정위탁 현황(2019.12.31. 기준).

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여건 안에서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19d: 113). 과거 집단 보호에서 벗어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지설로 지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9d: 113). 공동생활가정은 남녀분리형과 남녀혼합형으로 구분되며 보호인원은 5~7인 규모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9d: 113).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자립능력 향상, 원가족 관계 회복, 학교와의 관계 형성, 지역 내 자원 활용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d).

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5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남자아동 1,547명, 여자아동 1,325명으로 총 2,872명이

다. 시설의 수는 2013년 480개, 2016년 510개, 2018년 558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아동의 수는 2013년 2,481명에서 2018년 2,872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보호환경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의 증가는 더욱 확대운영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4-18.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2~2018)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 수		480	476	480	510	533	558
이용 인원	계	2,481	2,588	2,636	2,758	2,811	2,872
	남	1,309	1,351	1,364	1,444	1,477	1,547
	여	1,172	1,237	1,272	1,314	1,334	1,325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7. p.215.
보건복지부(2018c).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p.1.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배경요인들 중 학교급을 제외한 성별,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3.3%)의 경우 여학생(2.5%)에 비해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가족유형에서 양부모가정(2.6%)보다 한부모(5.6%) 및 조손가정(5.6%), 기타(9.3%) 가정의 응답자가 가출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상”(2.5%)과 “중”(2.2%)인 집단보다 “하”(4.6%)인 집단의 가출 경험이 더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도 “하”(6.4%)집단이 “상”(2.7%)과 “중”(2.4%)집단에 비해 가출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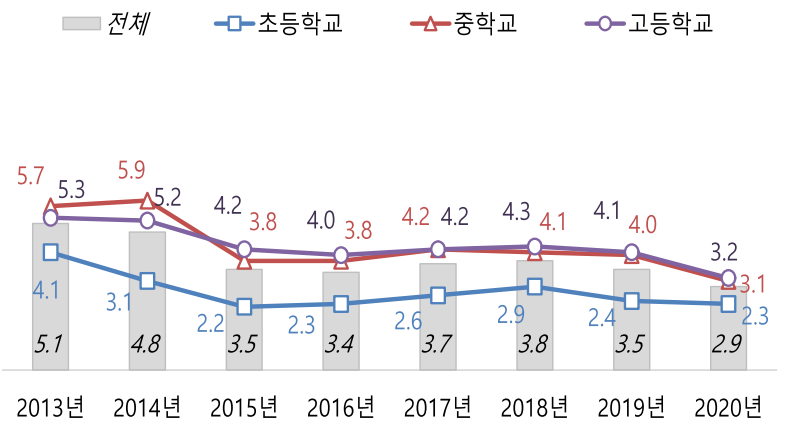
표 Ⅳ-4-19.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2.9	97.1	100.0(8,243)	
성별	남학생	3.3	96.7	100.0(4,237)	4.133*
	여학생	2.5	97.5	100.0(4,006)	
학교급	초등학교	2.3	97.7	100.0(2,588)	5.403
	중학교	3.1	96.9	100.0(2,694)	
	고등학교	3.2	96.8	100.0(2,9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	97.4	100.0(7,378)	38.200***
	한부모가정	5.4	94.6	100.0(588)	
	조손가정	5.6	94.4	100.0(86)	
	기타	9.3	90.7	100.0(131)	
학업 성적	상	2.5	97.5	100.0(2,574)	27.199***
	중	2.2	97.8	100.0(3,669)	
	하	4.6	95.4	100.0(1,942)	
경제적 수준	상	2.7	97.3	100.0(4,583)	30.410***
	중	2.4	97.6	100.0(2,992)	
	하	6.4	93.6	100.0(602)	

*p 〈.05, ***p 〈 .001.

가출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3년 가출 경험률 5.1%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2.9%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4-11.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전체 응답자 중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4-20〉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61.0%의 응답자가 가출 이유를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은 20.8%가 학업부담 및 성적문제와 같은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가 8.0%, 기타 5.9%,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2.3%, 학교문제 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과의 문제가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학업으로부터 느끼는 부담 역시 가출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출은 단순 개인 일탈, 비행의 문제가 아니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Ⅳ-4-20.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20.8	61.0	2.0	2.3	8.0	5.9	100.0(230)	
성별	남학생	20.0	58.7	2.4	2.9	8.2	7.8	100.0(133)	3.144
	여학생	21.8	64.2	1.3	1.5	7.9	3.3	100.0(96)	
학교급	초등학교	28.5	57.0	4.7	1.9	0.0	7.9	100.0(54)	16.787
	중학교	24.1	62.5	0.7	1.5	7.3	3.9	100.0(83)	
	고등학교	13.3	62.0	1.5	3.3	13.3	6.5	100.0(9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6	58.4	2.5	3.0	7.6	6.9	100.0(180)	17.270
	한부모가정	8.7	76.8	0.0	0.0	14.6	0.0	100.0(32)	
	조손가정	42.9	33.0	0.0	0.0	0.0	24.1	100.0(5)	
	기타	21.3	78.7	0.0	0.0	0.0	0.0	100.0(11)	
학업 성적	상	21.7	60.4	2.5	6.9	5.9	2.5	100.0(63)	14.524
	중	20.3	64.4	0.0	1.3	6.1	7.9	100.0(77)	
	하	19.4	58.9	3.4	0.0	11.5	6.8	100.0(87)	
경제적 수준	상	25.7	60.0	1.9	2.0	4.7	5.7	100.0(117)	19.993*
	중	13.2	55.7	3.3	2.1	17.4	8.4	100.0(70)	
	하	15.4	76.0	0.0	4.1	2.0	2.6	100.0(39)	

*p 〈 .05.

앞서 나타난 가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60.0%, 학업문제가 25.7%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중”이라고 인식한 집단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55.7%, 학업문제가 13.2%였던 반면,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이 17.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경제적 수준이 “하”라고 인식한 집단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76.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출 사유에 대하여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기타 값 제외)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로 인해 가출했던 응답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12.4%였던 학업문제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0.8%를 나타냈다. 교급별로 초등학생 응답자 집단에서 학업문제로 가출한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2016년 17.3%에서 2019년 13.2%로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28.5%로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부모님과의 문제는 계속해서 60% 전후의 수준을 보였다. 그 외에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출한 이유가 연도에 따라 감소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2016년도 12.8%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8.0%로 학업문제 다음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이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2016년 17.7%에서 2020년 13.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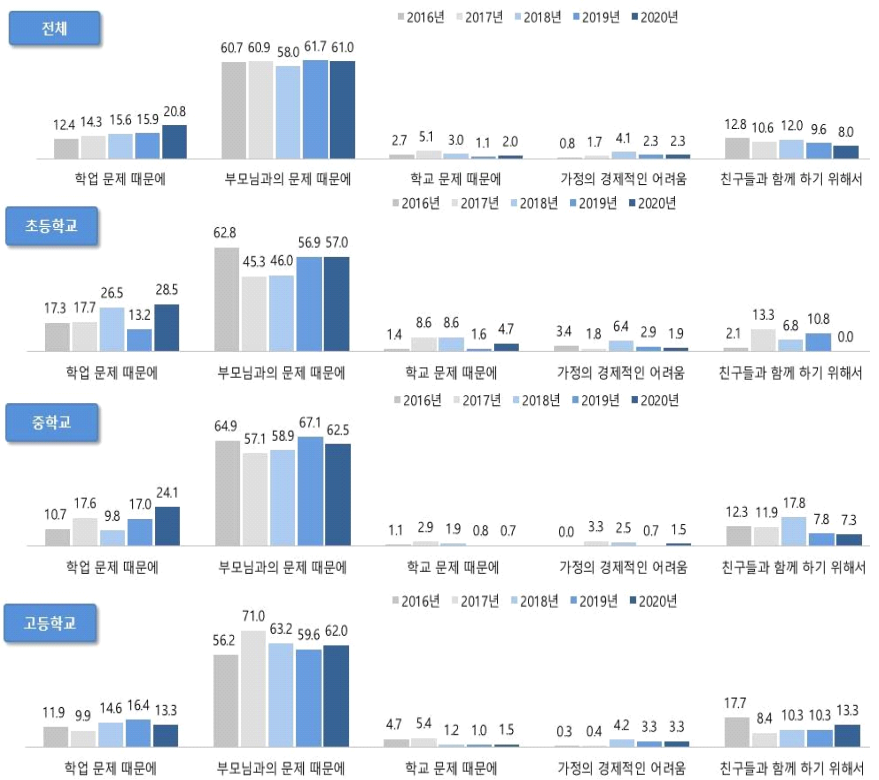


그림 Ⅳ-4-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연도별 추이)

②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보호기관인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 최초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189). 이후 입소기간 목적에 따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으며,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189~190). 그 외에도 가출예방 및 조기발견과 개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9년도에는 전국 지자체에 의해 134개의 가출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190, 표 Ⅳ-4-21).

표 Ⅳ-4-2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1개소)	단기쉼터(63소)	중장기쉼터(40개소)
기 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기 능	• 가출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청소년 쉼터와 연결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191.

가출청소년쉼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시쉼터는 2019년 기준 31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및 거리배회, 노숙 청소년들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최

장 7일) 하면서 중·단기 쉼터 연계,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먹거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 및 설치유형은 차량을 통한 이동형 쉼터와 청소년 유동지역에 고정형으로 설치 운영된다.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의식주와 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요 도심 63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40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최대 4년) 기간 동안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Ⅳ-4-21〉).

표 Ⅳ-4-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19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쉼터 수(개소)				예산(백만원)	입소 청소년 수(명)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10	10	49	24	83	5,874	9,350
2011	10	48	25	83	6,262	11,657
2012	13	49	30	92	7,287	11,764
2013	21	50	32	103	8,137	15,242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300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내용과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90-182의 내용, 여성가족부(2019c).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p. 54.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연도별 청소년 쉼터 운영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설치, 운영된 쉼터는 총 134개소(일시:31/단기:63/중장기:40)로 2010년 83개소에 비해 51개소가 증설되었다. 예산은 18,970백만 원으로 2010년 5,874백만 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쉼터 설치 및 운영의 증가와 예산의 증가는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입소청소년 수는 2010년 9,350명에서 2019년 32,300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4-23〉). 전체적으로 가출을 경험한 전체 대상자의 91.5%는 이용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3. 가출 후 이용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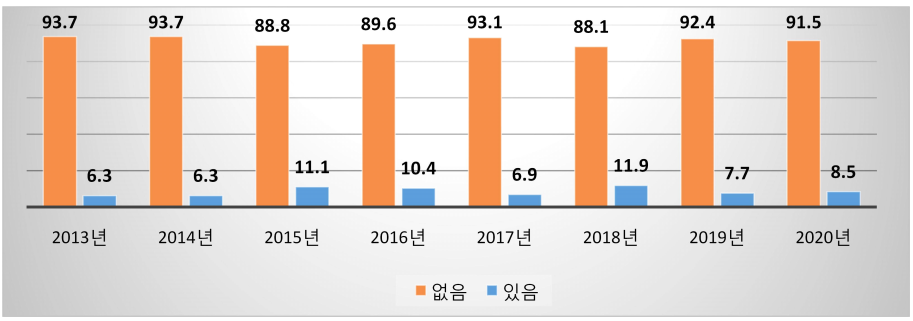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91.5	3.3	2.3	1.4	1.5	-	100.0(171)	
성별	남학생	89.5	2.1	4.2	2.5	1.7	-	100.0(94)	6.010
	여학생	94.0	4.6	0.0	0.0	1.3	-	100.0(77)	
학교급	중학교	94.1	2.7	1.6	1.6	0.0	-	100.0(81)	2.980
	고등학교	89.2	3.8	2.9	1.2	2.9	-	100.0(90)	
고교 유형	일반계고	95.3	0.0	1.6	1.6	1.5	-	100.0(66)	13.905**
	특성화계고	72.6	14.2	6.6	0.0	6.6	-	100.0(24)	
지역 규모	대도시	89.7	3.0	3.7	1.4	2.2	-	100.0(72)	2.349
	중소도시	92.3	3.0	1.7	1.6	1.3	-	100.0(78)	
	읍면지역	95.0	5.0	0.0	0.0	0.0	-	100.0(21)	

**p 〈 .01.

기관을 이용해본 대상자들이 이용한 기관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쉼터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기관이 2.3%, 청소년전화 1388이 1.5%, 청소년 수련관(센터)이 1.4% 순이었다. 배경변인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고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 응답자는 95.3%가 이용해 본 적이 없으며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특성화계고 응답자는 72.6%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나머지 27.4% 중 14.2%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상담기관과 상담전화를 각각 6.6%의 비율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고교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가출한 기간, 가출 후 이용

가능한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촉 등의 차이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 주: '기관이용 경험 있음'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친 비율(단위:%)

그림 Ⅳ-4-13.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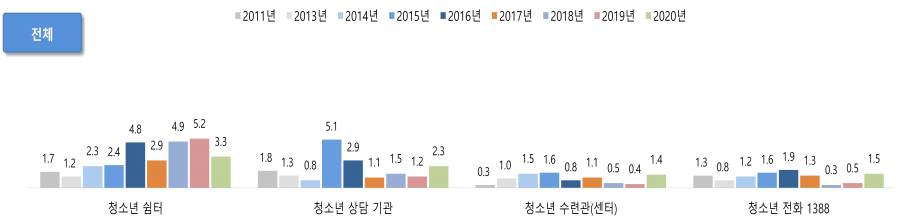


그림 Ⅳ-4-14.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가출을 경험한 응답자의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9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한 기관의 경우 청소년쉼터가 가장 많은데 2016년 4.8%, 2018년 4.9%, 2020년 3.3%로 큰 폭의 증감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91.5%에 달하는 것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양한 이유로 준비 없이 가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출 이후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 시 이용 가능한 기관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가출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원하는 환경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가출 이후 본인이 이용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4-24〉). 전체 평균 만족도는 2.49점(*SD*=.81)로 분석되었다. 문항별로 보면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9.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9%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지역규모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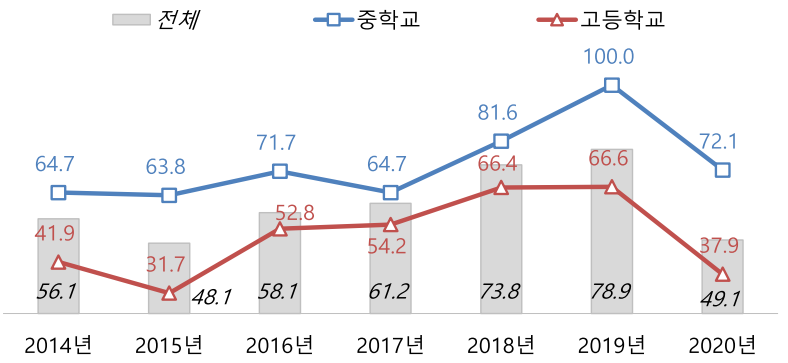
표 Ⅳ-4-24.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49(0.81)	9.1	41.8	40.3	8.8	100.0(14)	
성별	남학생	2.62(0.88)	10.6	29.4	47.1	12.9	100.0(10)	2.173
	여학생	2.20(0.59)	5.9	68.6	25.5	0.0	100.0(5)	
학교급	중학교	2.99(0.83)	0.0	27.9	45.2	26.9	100.0(5)	3.628
	고등학교	2.24(0.71)	13.5	48.6	37.9	0.0	100.0(10)	
고교 유형	일반계고	1.91(1.05)	42.1	24.3	33.5	0.0	100.0(3)	3.360
	특성화계고	2.40(0.53)	0.0	60.0	40.0	0.0	100.0(7)	
지역 규모	대도시	2.50(0.78)	14.1	21.5	64.4	0.0	100.0(7)	9.339
	중소도시	2.38(0.95)	4.5	74.2	0.0	21.3	100.0(6)	
	읍면지역	3.00(0.00)	0.0	0.0	100.0	0.0	100.0(1)	

기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연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 만족도는 56.1%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2015년에는 48.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여 78.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올해 2020년에는 49.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쉼터

이용이 제한되거나, 그간 제공해오던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단축 또는 운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4-15.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도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기관의 운영 전반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평가 경과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2019년 평가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평가가

완료되어 2020년 3월 결과가 공표되었다. 본 장에서는 2019년 시설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를 살펴보고 그 평가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영역은 크게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아동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여섯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등과 같은 공통영역 이외에 시설 구조, 위생상태, 치료실 및 상담실 구비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다.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법인의 자부담, 사업비, 회계의 투명성,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등을 내용으로 하며 C. 인적자원관리영역은 직원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대상별, 서비스 제공 과정 별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및 멘토링 실적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E. 아동의 권리영역은 비밀보장, 학대예방을 포함하여 건강검진, 학교생활, 체벌금지 지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F. 지역사회 관계는 외부자원개발과 후원금,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지표는 6개 영역 59개 지표로 구성된다.

표 Ⅳ-4-25. 2019년 평가지표 비교(공통지표)

영역	2019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 대책
	A5. 시설구조(거실)
	A6. 식품보관 위생상태
	A7.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B. 재정 및 조직운영 (15점)	B1. (전체공통)법인의 자부담(전입금)
	B2. (전체공통)사업비
	B3. (전체공통)후원금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전체공통)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영역	2019년도 평가지표
	B6.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 인적자원관리 (15점)	C1. (전체공통)직원충원율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4. (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7. (전체공통)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C8. (전체공통)직원교육
	C9. (전체공통)직원복지
	C10.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D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2. 초기적응 프로그램
	D3. 프로그램 기획 회의
	D4.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
	D5.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D6.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
	D7. 퇴소지원 프로그램
	D8.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9. 아동 상담
	D10. 가족·연고자 상담
	D11. 사례관리
	D12.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3.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4.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5. 치료 프로그램
	D16. 식당 및 식사관리
	D17.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D18.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D19.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D20. 영유아 장난감
	D21.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D22. 멘토-멘티 결연 실적
E. 아동의 권리 (15점)	E1. (전체공통)비밀보장
	E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E3. (이용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4.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E5. 서비스 정보제공
	E6. 서비스과정에 아동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E7.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9. 체벌 금지

영역	2019년도 평가지표
F. 지역사회 관계 (10점)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F3. (전체공통)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F4. 지역사회 연계
	F5.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지표 수	59개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pp.13-15.

A~F까지 평가지표의 각 영역별 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4-26〉). 2019년 기준으로 A. 시설 및 환경 영역 10점, B. 재정 및 조직운영 15점, C. 인적자원관리 15점,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E. 아동의 권리 15점, F. 지역사회 관계 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도별 평가지표 배점의 변화를 보면, 인적자원관리영역은 2016년까지 20점을 유지하다 2019년 15점으로 배점이 수정되었으며 배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경우 2013년까지 35점을 유지하다 2016년 40점으로 높아졌지만 2019년에 다시 35점으로 회귀하였다. 아동의 권리 부분은 2016년까지 10점을 유지하다 2019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9년 15점으로 배점이 확대되었다. 지역사회관계의 경우 2016년 5점으로 낮아졌다 2019년 다시 10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 결과 전체 평점을 기준으로 A~F등급으로 구분되는데,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은 7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F등급은 60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표 Ⅳ-4-2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2010	2013년	2016년	2019년
A. 시설 및 환경	10	10	10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5	15	15
C. 인적자원 관리	20	20	20	1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35	40	35
E. 아동의 권리	10	10	10	15
F. 지역사회 관계	10	10	5	10
총계	100	100	100	100
평가등급	A: 90점 이상 / B: 80~90점 미만 / C: 70~80점 미만 / D: 60~70점 미만 / F: 60점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7,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5의 내용을 발췌, 정리.

2020년 발표된 2019년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4-27〉). 2019년에 총 285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점은 88.8점으로 2016년 대비 0.8점, 2013년 대비 1.2점 하락한 점수이다. 세부적으로, 시설·환경 영역의 점수는 92.2점으로 전체평점과 같이 2013년 평가 이후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재정·조직운영 영역은 81.2점으로 2010년, 2013년 88.2점, 2016년 86.7점 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83.7점으로 이전 평가들에서 85점대를 유지해오다 83점대로 하락하였다. 가장 배점이 높은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은 93.0점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으며 제시된 2010년 이후의 평가들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아동권리 영역은 90.1점으로 과거 평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관계는 87.6점으로 2013년,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이다. 285개 기관의 평가결과를 집계해보면, A평가를 받은 기관이 193개소(67.7%), B평가 기관 61개소(21.4%), C평가 기관 15개소(5.3%), D평가 기관 5개소(1.8%), F평가 기관 11개소(3.9%)로 나타났다.

표 Ⅳ-4-27.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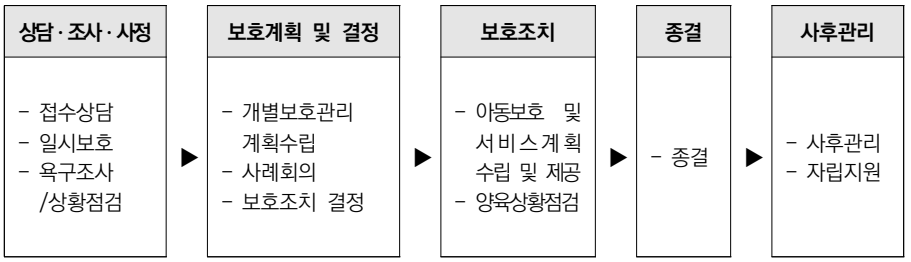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2019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2019 세부결과		A : 193개소 / B : 61개소 / C : 15개소 / D : 5개소 / F : 11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지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나. 아동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하지만 그간의 아동보호체계는 인력부족 및 전문성 제고의 문제들로 인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김미숙, 김시아, 정익중, 2020).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7년 아동보호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 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공공인력활용 방안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그 결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과제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2019년에 발표되고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부터 원가정 복귀 등을 통한 보호종료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 281명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90명이 2020년 10월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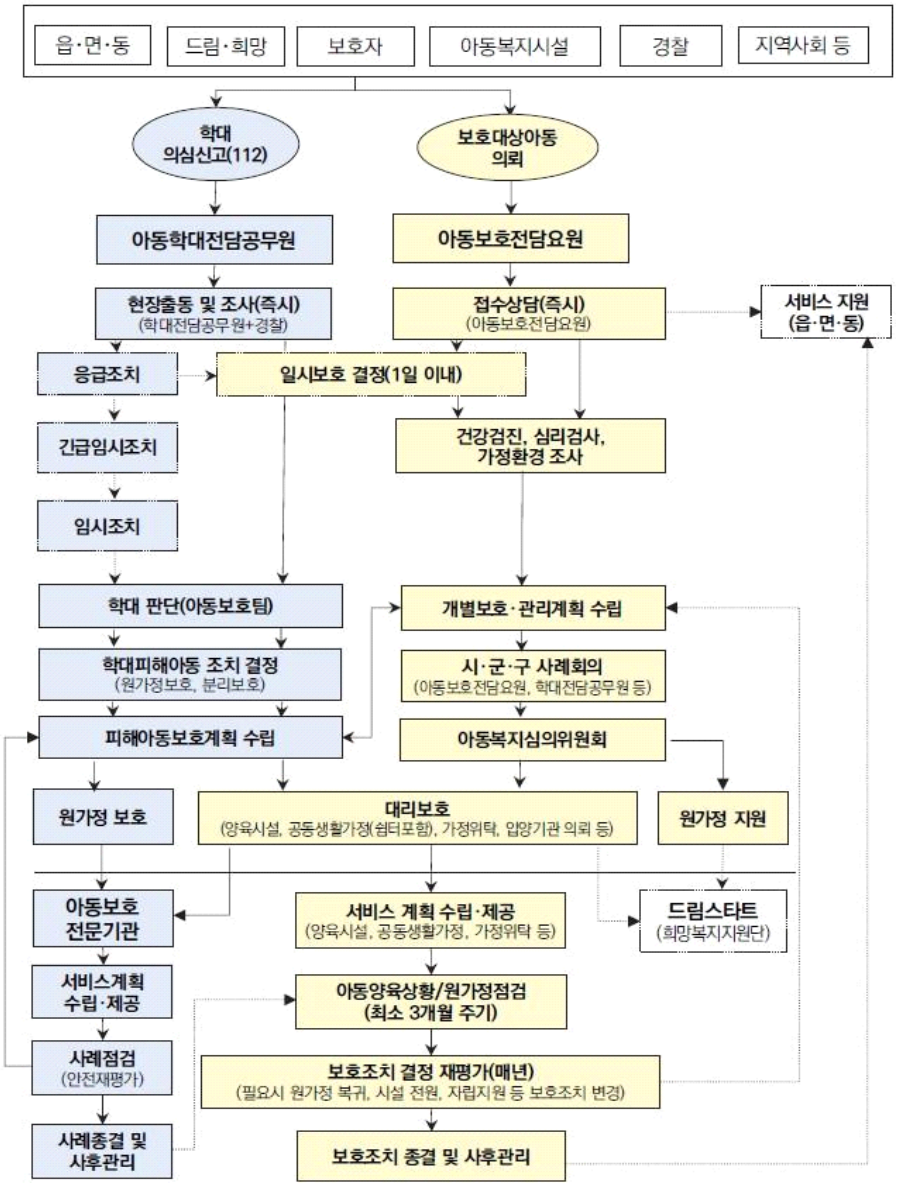
시군구에 배치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개편된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수요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로 구성되며(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5.

그림 Ⅳ-4-16.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서비스 절차는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본 과정에서의 인력 운영은 다음과 같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7.

그림 Ⅳ-4-17.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지자체, 드림스타트,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경찰, 지역사회 등을 통해 사례가 신고 되면 학대의심사례와 요보호아동 사례로 나뉘어 절차가 진행된다. 학대의심 신고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2020.10.신설)에게 전달되고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과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긴급을 요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학대여부, 아동과 학대행위자별 필요조치 등을 검토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2020.10.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 회의를 통해 통합적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이후 아동을 보호를 담당하는 시설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며 이후 아동양육상황과 원가정 점검을 진행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사례관리 중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사례종결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구에 공유하는 절차를 밟는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빈곤,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의뢰된 비학대 사례의 경우는 긴급분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해 심층적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원가정 분리 보호가 필요할 경우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이후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 서비스 계획을 세워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된다. 그 외에도 미아, 보호자 입양의뢰 등으로 접수된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례에 개입하게 된다.

4) 소결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에서는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 위주로 그 실태를 확인하였다. 보육시설의 경우, 2015년 42,517개소에서 2019년 37,371개소로 약 5,000여 개소가 감소되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봤을 때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아동의 수 역시 2015년 1,452,813명에서 2019년 1,365,085명으로 약 9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추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2019년 어린이집 전체 이용률은 80.9%로 전년(81.7%) 대비 약 1% 미만의 감소를 보였다. 설립주체별로 확인한 결과 국·공립 이용률이 8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85.9%, 민간어린이집 7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의 경우 초등학교 58.7%, 중학교 27.4%, 고등학교 47.7%로 전체 48.4%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중학교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교과 43.8%, 특기적성 56.2%의 비중이었으며 2010년 교과 68.5%, 특기적성 31.5%에 비해 균형 있는 비중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기적성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84.0점였으며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86.4점, 중학교 83.8점, 고등학교 77.1점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2018년 기준 109,610명이며 2008년 87,291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00점으로 2018년도(4.15점)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였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9년 기준 28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0,985명이 이용하였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전체 만족도는 85.9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10년간의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목별로 프로그램 만족도는 82.4점, 지도자 만족도 86.4점, 교과목강사 만족도 85.6점, 주중체험강사에 대한 만족도 88.0점, 시설 만족도는 87.2점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먼저 입양률

에 대한 지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전체 704명이 입양되는데 이는 2018년 681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입양은 387명(55.0%), 국외입양 317명(45.0%)이며 국내외 입양 모두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여전히 국외입양이 40% 이상의 높은 비중 보이고 있어 국내입양 우선추진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통해 국내입양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의 요구된다.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아동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2018년 3,918명에서 2019년 4,047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발생유형에 따라 빈곤·실직·학대, 비행·가출, 미혼부모·혼외자, 유기, 미아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빈곤·실직·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이 2,865명(70.8%)로 가장 많았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유형은 시설보호(67.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24.8%로, 시설보호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중 아동복지시설의 보호현황을 보면, 시설 수는 2014년 278개소에서 2019년 281개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입소아동의 수는 2014년 14,630명에서 2019년 11,66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 위탁이 25.1%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말 기준 55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보호아동의 수는 총 2,872명(남자아동 1,547명, 여자아동 1,32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가출과 관련하여 직접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출 경험 여부의 경우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2.9%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양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조손가정에서, 학업 및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출의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업문제가 2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인 청소년쉼터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34개소(일시:31개소, 단기:63개소, 중장기:40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었다. 청소년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가출 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1.5%가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관홍보 및 기관 이용 만족도, 접근성 등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대변하듯 이용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2.49점으로 "만족한다" 49.1%, "만족하지 않는다" 50.8%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쉼터 이용의 제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축 또는 중단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에서는 아동복지지설의 2019년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총 285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점은 88.8점으로 2016년 평가 대비 0.8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시설·환경 영역 92.2점, 재정·조직운영 영역 81.2점, 인적자원관리 영역 83.7점, 가장 배점이 높은 프로그램·서비스 영역 93.0점, 아동권리 영역은 90.1점, 지역사회 관계 87.6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A등급 193개소(67.7%), B등급 61개소(21.4%), C등급 15개소(5.3%), D등급 5개소(1.8%), F등급 11개소(3.9%)로 나타났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을 위해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교육부, 2019a). 2019년 특수학교의 수는 177개교로 2015년 대비 10개교, 2018년 대비 2개교가 증가하였다(〈표 Ⅳ-5-1〉). 특수학급 수는 11,105개로 2015년 대비 1,237개, 2018년 대비 429개가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전체 92,958명으로 2015년 대비 4,891명, 2018년 대비 2,1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 수 역시 2015년 대비 2,344명, 2018년 대비 734명이 증가하였다. 각 교급별 학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장애영아 532명, 유치원 5,989명, 초등학교 41,091명, 중학교 18,462명, 고등학교 21,502명, 전공과 5,38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영아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뺀 나머지는 2018년 대비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와 교원 수를 비롯하여 특수학교 및 학급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5-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교수	특수 학급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5	167	9,868	742	4,744	33,591	21,108	23,422	4,460	88,067	18,339
2016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2017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2018(A)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2019(B)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B-A	2	429	-50	359	3,060	-326	-1,082	217	2,178	734

* 출처: 교육부(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19년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은 92,958명인데, 이들의 배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5-2〉). 먼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수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8.4%(26,459명)이며 나머지 71.6%(66,499명)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배치학생 중 50,812명은 특수학급에, 15,687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는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1,964명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92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통합교육의 형태가 분리교육에 비해 3배 정도 많지만, 통합교육 안에서도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통합교육의 비중은 특수학급에 비해 낮은 편이며 그 증가율도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여건이 마련되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5-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2016	25,961(29.5)	46,645	15,344	61,989(70.5)	87,950(100.0)
2017	26,199(29.3)	47,564	15,590	63,154(70.7)	89,353(100.0)
2018	26,337(29.0)	48,848	15,595	64,443(71.0)	90,780(100.0)
2019	26,459(28.4)	50,812	15,687	66,499(71.6)	92,958(100.0)

* 출처: 교육부(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 청소년의 진학률과 취업률 추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졸업생 7,734명 중 대학 및 전공과 진학 36.8%, 취업 23.9%, 무직 40.4%로 무직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학교종류별로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2,546명 중 진학률 53.1%, 취업률 5.7%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은 3,989명 가운데 39.9%가 진학, 19.8%가 취업을 하였으며, 일반학급 졸업자 1,199명 중 53.2%가 진학, 7.7%가 취업을 하였다. 즉, 진학률은 일반학급이 가장 높았고 취업률은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전체 졸업자는 7,811명으로 그 중 47.0%가 진학을, 12.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특수학교는 2,454명 중 53.8%가 진학하였고 4.0%가 취업하였으며 특수학급은 4,101명 가운데 40.6%가 진학, 20.1%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급에서는 1,256명 중 54.1%가 진학을 하였고 6.8%가 취업을 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8년 졸업생의 경우 진학률은 일반학급이 가장 높았고 취업률은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7,727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중 49.3%가 진학하였고 11.0%가 취업하였다. 학교별로 특수학교의 경우 2,447명 가운데 진학자는 55.7%, 취업자는 2.6%였으며 특수학급 졸업자 3,952

명 중에서는 43.2%가 진학하였고, 18.2%가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학급의 경우 1,328명의 졸업생 가운데 55.8%가 진학을 하였으며 5.2%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졸업생 중 진학률은 일반학급이, 취업률은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대학 및 전공과로의 진학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청소년들이었으며, 취업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은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청소년들의 경우 분리교육 보다는 통합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장애청소년과 사회통합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Ⅳ-5-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무직률(명)
2017	특수학교	2,546	53.1 (1,353)	5.7 (145)	41.2 (1,048)
	특수학급	3,989	39.9 (1,591)	19.8 (790)	40.3 (1,608)
	일반학급	1,199	53.2 (683)	7.7 (92)	39.1 (469)
	계	7,734	36.8 (3,595)	23.9 (1,847)	40.4 (3,125)
2018	특수학교	2,454	53.8 (1,321)	4.0 (97)	42.2 (1,036)
	특수학급	4,101	40.6 (1,667)	20.1 (824)	39.3 (1,610)
	일반학급	1,256	54.1 (680)	6.8 (85)	39.1 (491)
	계	7,811	47.0 (3,668)	12.9 (1,006)	40.2 (3,137)
2019	특수학교	2,447	55.7 (1,364)	2.6 (64)	41.6 (1,019)
	특수학급	3,952	43.2 (1,707)	18.2 (718)	38.6 (1,527)
	일반학급	1,328	55.8 (741)	5.2 (69)	39.0 (518)
	계	7,727	49.3 (3,812)	11.0 (851)	39.7 (3064)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교육부(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교육부(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누어 산정한 영유아 사망률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표 Ⅳ-5-4〉). 2018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을 합한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6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천 명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 영아 사망률의 경우 천 명당 최소 2.7‰에서 최대 3.0‰사이의 수치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남아는 2.9~3.2‰, 여아는 2.5~2.9‰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5-4.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8	1.6	1.7	1.8	1.6	1.7	1.7	1.4	1.5	1.7	1.4	1.6	1.7	1.3	1.5	1.8	1.4	1.6
신생아 후기사망률	1.3	1.2	1.3	1.4	1.2	1.3	1.2	1.1	1.2	1.3	1.1	1.2	1.4	1.1	1.3	1.3	1.1	1.2
영아 사망률	3.1	2.9	3.0	3.2	2.8	3.0	2.9	2.5	2.7	3.1	2.6	2.8	3.1	2.5	2.8	3.2	2.5	2.8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에서 2020년 10월 15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2019년 조사된 연령대별 사망률을 살펴보면(〈표 Ⅳ-5-5〉), (십만 명당)사망률은 0세가 인구 10만 명당 268.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세~9세까지 14.5명, 7.7%명으로 낮아지다 다시 10세~14세에 8.0명, 15세~19세 22.4명, 20세~24세 33.6명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중, 후반부터 가족보다는 학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면서 질병 이외에 발생하는 사고 등 특별한 요인들의 영향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사망률의 최근 7년 간 추이를 보면 2013년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Ⅳ-5-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1,305	294.6	1,305	310.2	1,190	281.9	1,154	282.1	1,000	270.5	931	280.7	822	268.3
1-4세	342	18.3	289	15.4	287	15.4	278	15.2	261	14.7	220	13.0	233	14.5
5-9세	253	10.8	204	8.8	207	8.9	205	8.7	210	8.9	177	7.6	178	7.7
10-14세	272	9.5	239	8.7	220	8.6	193	8.0	197	8.4	221	9.5	184	8.0
15-19세	812	23.6	870	25.9	685	20.9	718	22.5	626	20.6	620	21.6	610	22.4
20-24세	1,217	36.3	1,131	32.9	1,155	32.9	1,131	32.0	1,087	31.1	1,144	33.3	1,126	33.6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2019년도에 조사된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표 Ⅳ-5-6〉), 20~24세가 인구 십만 명당 2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0세가 16.6명, 15~19세가 14.4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0세의 사고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연령대 중 10~14세

만 미미한 감소가 발견되었다. 최근 7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5-6.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세	13.8	12.4	14.0	15.2	14.9	12.7	16.6
1~4세	5.9	4.3	4.6	4.1	4.7	4.0	4.7
5~9세	4.4	3.7	3.1	2.7	3.3	2.4	2.9
10~14세	4.0	3.1	3.9	3.0	3.1	3.7	3.4
15~19세	15.3	17.9	13.2	14.5	13.1	13.9	14.4
20~24세	25.1	22.7	21.9	21.6	20.5	22.6	23.6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

2019년 사고 사망의 외인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과 타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7〉). 0세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인이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0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영유아돌연사 증후군 또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1~4세는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9세 연령대에서는 운수사고와 타살이 각각 0.9명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조사되었는데 타살의 경우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을 예상해볼 수 있다. 10~14세, 15~19세, 20~24세 연령대서는 모두 자살이 2.1명, 8.5명, 17.8명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9세와 20~24세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7년간의 통계와 비교해서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0대 자살사고의 증가추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 민간 등 다차원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5-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3	0세	0.5	1.1	0.2	0.2	-	-	3.4
	1~4세	2.1	1.0	0.9	0.3	0.1	-	0.9
	5~9세	2.1	0.2	0.6	0.3	-	-	0.8
	10~14세	1.1	0.3	0.4	0.1	0.0	1.3	0.5
	15~19세	5.1	0.4	0.9	0.1	0.0	7.9	0.3
	20~24세	7.0	0.5	0.7	0.1	0.1	14.5	0.6
2014	0세	1.7	1.4	1.0	-	-	-	1.4
	1~4세	1.2	0.9	0.3	0.1	0.1	-	1.0
	5~9세	1.3	0.3	0.6	0.1	0.0	0.1	0.9
	10~14세	0.8	0.0	0.5	0.1	-	1.1	0.4
	15~19세	8.0	0.3	0.7	0.3	-	7.2	0.5
	20~24세	5.5	0.5	0.6	0.3	0.1	13.6	0.7
2015	0세	0.5	0.7	-	-	-	-	5.0
	1~4세	1.9	0.6	0.5	0.1	-	-	0.8
	5~9세	1.5	0.2	0.3	0.3	-	-	0.6
	10~14세	1.2	0.3	0.4	0.1	-	1.2	0.4
	15~19세	5.0	0.2	0.4	0.2	0.0	6.5	0.4
	20~24세	5.6	0.6	0.6	0.2	0.1	13.2	0.4
2016	0세	1.7	0.5	0.2	-	-	-	3.7
	1~4세	1.5	0.4	0.4	0.1	-	-	1.1
	5~9세	1.4	0.2	0.3	-	0.0	-	0.5
	10~14세	0.8	0.2	0.5	0.2	-	0.9	0.2
	15~19세	4.6	0.4	0.7	0.2	0.1	7.9	0.3
	20~24세	5.5	0.5	0.5	0.1	0.1	13.3	0.5
2017	0세	0.5	0.8	0.3	-	-	-	4.6
	1~4세	1.5	0.8	0.6	-	0.1	-	1.0
	5~9세	1.2	0.3	0.3	0.2	-	0.0	0.9
	10~14세	0.7	0.1	0.2	0.1	0.0	1.5	0.1
	15~19세	4.3	0.4	0.5	0.2	0.1	7.2	0.1
	20~24세	4.6	0.5	0.5	0.0	0.3	13.3	0.3
2018	0세	0.3	0.9	0.3	-	-	-	2.7
	1~4세	0.9	1.1	0.4	-	0.1	-	0.9
	5~9세	1.0	0.2	0.2	0.2	0.1	0.0	0.6
	10~14세	0.6	0.1	0.2	0.1	0.0	2.1	0.1
	15~19세	3.6	0.2	0.5	0.1	0.2	8.7	0.1
	20~24세	4.5	0.4	0.4	0.2	0.3	15.3	0.4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9	0세	1.0	1.0	0.7	-	-	-	4.9
	1~4세	1.2	0.6	0.6	0.1	-	-	1.0
	5~9세	0.9	0.3	0.3	0.0	0.0	0.1	0.9
	10~14세	0.4	0.3	0.3	-	-	2.1	0.4
	15~19세	3.0	0.4	0.6	0.1	0.1	8.5	0.3
	20~24세	3.9	0.3	0.2	0.1	0.2	17.8	0.4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을 전체, 각 범죄 종류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는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가 24,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가 23,352건, 교통범죄 16,801건, 절도 12,65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지능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범죄건수 대비 만20세 이하 인구에 따른 범죄피해율은 남자 1.1%, 여자 0.9%이며 전체 1.0%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7년~2019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7	강력범죄[2)]	627	8.0	7,237	92.0	7,864	100.0
	절도	10,532	72.1	4,277	27.9	14,609	100.0
	폭력범죄[3)]	18,691	71.0	7,607	29.0	26,244	100.0
	지능범죄[4)]	12,066	62.8	7,149	37.2	19,215	100.0
	풍속범죄	113	4.8	2,229	95.2	2,342	100.0
	교통범죄	13,643	68.8	6,198	31.2	19,841	100.0
	기타범죄	4,244	45.0	5,121	55.0	9,381	100.0
	계	59,916	60.1	39,818	39.9	99,496	100.0
	피해율	59,916/5,383,235(1.1%)		39,818/5,027,343(0.8%)		99,496/10,410,578(1.0%)	
2018	강력범죄	643	9.1	6,422	90.9	7,065	100.0
	절도	8,772	70.6	3,650	29.4	12,422	100.0
	폭력범죄	17,310	69.4	7,640	30.6	24,950	100.0
	지능범죄	13,996	64.9	7,582	35.1	21,578	100.0
	풍속범죄	121	5.3	2,159	94.7	2,280	100.0
	교통범죄	11,733	66.1	6,016	33.9	17,749	100.0
	기타범죄	4,101	43.2	5,395	56.8	9,496	100.0
	계	56,676	59.3	38,864	40.7	95,540	100.0
	피해율	56,676/5,204,957(1.1%)		38,864/4,868,419(0.8%)		95,540/10,073,376(0.9%)	
2019	강력범죄	607	8.8	6,290	91.2	6,897	100.0
	절도	8,905	70.4	3,749	29.6	12,654	100.0
	폭력범죄	15,902	68.1	7,450	31.9	23,352	100.0
	지능범죄	15,554	63.8	8,828	36.2	24,382	100.0
	풍속범죄	124	5.1	2,299	94.9	2,422	100.0
	교통범죄	10,976	65.2	5,855	34.8	16,801	100.0
	기타범죄	4,864	44.8	5,993	55.2	10,857	100.0
	계	56,932	58.4	40,464	41.6	97,365	100.0
	피해율	56,932/5,029,754(1.1%)		40,464/4,715,205(0.9%)		97,365/9,744,959(1.0%)	

* 출처: 경찰청(2017). 경찰범죄통계. pp. 466-467.
경찰청(2018). 경찰범죄통계. pp. 466-467.
경찰청(2019). 경찰범죄통계. pp. 474-47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0.11.25. 발췌.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년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비율이 높음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폭행 피해가 가장 비율이 높음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사기 피해가 가장 비율이 높음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본인 거주 지역의 안전(범죄로부터)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86.4%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있어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조손가정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하"에서 "상"으로 인식할수록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본인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성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3년에 50% 초·중반 수준으로 초등학생(68.4%)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세 집단이 모두 85% 전후 수준으로 수렴되어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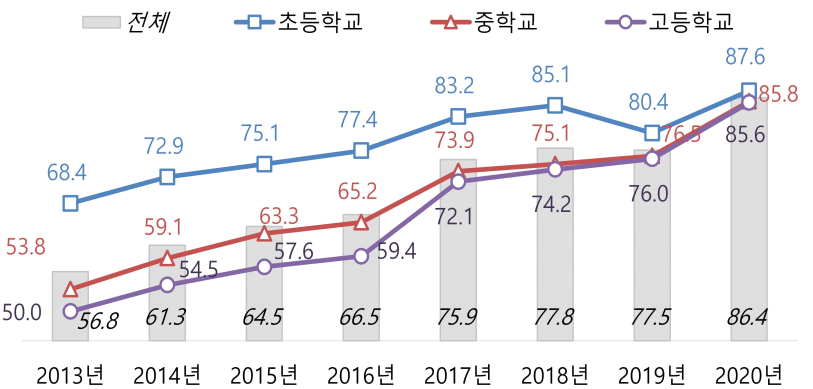
표 Ⅳ-5-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5(0.72)	2.8	10.8	55.2	31.2	100.0(8,592)	
성별	남학생	3.24(0.73)	3.3	7.9	50.6	38.2	100.0(4,461)	260.132***
	여학생	3.05(0.68)	2.3	13.9	60.2	23.6	100.0(4,131)	
학교급	초등학교	3.21(0.75)	3.6	8.8	50.3	37.3	100.0(2,866)	
	중학교	3.11(0.69)	2.4	11.8	58.6	27.2	100.0(2,741)	98.304***
	고등학교	3.12(0.70)	2.5	11.9	56.7	28.9	100.0(2,986)	
지역 규모	대도시	3.16(0.72)	2.9	10.4	54.1	32.6	100.0(3,329)	
	중소도시	3.13(0.72)	2.9	11.3	55.3	30.5	100.0(4,123)	9.716
	읍면지역	3.15(0.68)	2.3	10.1	58.1	29.5	100.0(1,14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70)	2.5	10.2	55.6	31.6	100.0(7,664)	86.374***
	한부모가정	2.98(0.78)	4.7	17.3	53.3	24.7	100.0(620)	
	조손가정	2.87(0.83)	6.1	23.0	48.5	22.4	100.0(94)	
	기타	3.18(0.87)	7.6	7.1	45.3	40.0	100.0(149)	
경제적 수준	상	3.22(0.71)	2.8	8.6	52.5	36.2	100.0(4,804)	222.196***
	중	3.07(0.68)	2.6	12.1	60.6	24.7	100.0(3,096)	
	하	2.93(0.80)	4.4	22.0	49.4	24.2	100.0(62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안전수준과 관련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9.7%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지역사회의 교통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유형에 따라 한부모가정 보다는 조손가

정, 양부모가정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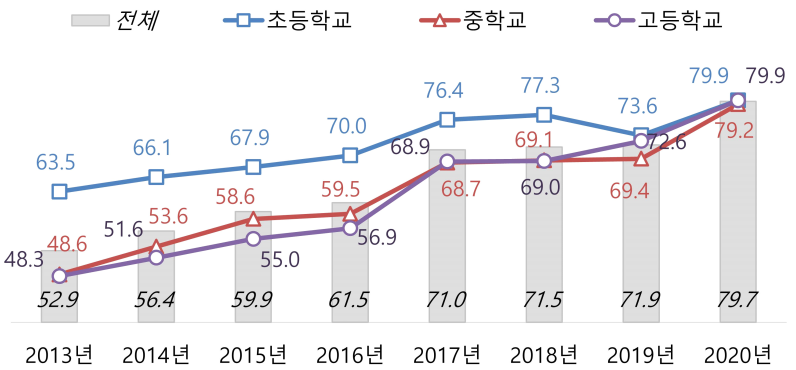
거주지역의 교통사고 안전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연도가 더해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인식 차이가 10%이상 존재했지만 2020년의 경우 모든 집단이 79%대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7(0.72)	3.6	16.7	59.2	20.5	100.0(8,535)	
성별	남학생	3.00(0.75)	4.2	15.5	56.2	24.2	100.0(4,430)	89.323***
	여학생	2.93(0.68)	3.0	18.0	62.4	16.6	100.0(4,105)	
학교급	초등학교	2.99(0.74)	4.0	16.1	56.8	23.1	100.0(2,826)	26.491***
	중학교	2.94(0.70)	3.4	17.5	61.3	17.9	100.0(2,737)	
	고등학교	2.97(0.71)	3.5	16.6	59.4	20.5	100.0(2,972)	
지역 규모	대도시	2.98(0.73)	3.7	16.3	58.4	21.6	100.0(3,312)	9.816
	중소도시	2.96(0.72)	3.7	16.9	59.0	20.4	100.0(4,085)	
	읍면지역	2.94(0.68)	3.1	17.1	62.1	17.7	100.0(1,1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7(0.70)	3.3	16.4	60.2	20.1	100.0(7,618)	45.642***
	한부모가정	2.89(0.80)	6.0	20.5	52.2	21.2	100.0(618)	
	조손가정	2.95(0.84)	6.1	19.0	48.8	26.0	100.0(90)	
	기타	3.06(0.83)	6.7	11.7	50.6	31.0	100.0(146)	
경제적 수준	상	3.02(0.72)	3.4	14.9	58.4	23.3	100.0(4,775)	124.068***
	중	2.93(0.69)	3.3	17.3	62.4	17.0	100.0(3,073)	
	하	2.75(0.80)	6.5	27.2	50.4	15.8	100.0(618)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 현황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2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보건법).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들의 유행으로 인해 교내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교 수는 11,657개교이며 총 8,035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11〉). 학교별로 특수학교는 배치율이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73.4%, 고등학교 72.4%, 중학교 57.8%로 중학교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Ⅳ-5-11. 2018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8년	학교 수	6,064	3,214	2,358	175	11,811
	배치율	4,343(71.6)	1,770(55.0)	1,683(71.3)	140(80.0)	7,936(67.1)
2019년	학교 수	6,087	3,214	2,356	177	11,657
	배치율	4470(73.4)	1859(57.8)	1706(72.4)	143(80.8)	8,035(69.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보건교사 배치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4.9%였던 배치율은 2019년 69.1%까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표 Ⅳ-5-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교사 배치율	64.9	65.4	63.9	64.3	64.5	67.1	69.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②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소아·청소년과 설치현황은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에게 특화된 전문의료인력 및 체계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이다. 본 지표는 어린이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통해 본 지표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환자에 대한 진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인 중심 대규모 병원의 진료환경은 어린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쉬운데, 어린이 전용 병동은 고비용·저수가로 민간병원 주도의 설립 및 투자가 저조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소아전문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상대적 수익성 저하 등으로 민간영역의 소아병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2007.8.13.).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병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2007.8.13.) 2020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병원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표 Ⅳ-5-13〉).

표 Ⅳ-5-13.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단위 : 년도)

구 분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선정연도	2005	2007	2007	2007	2010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40.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2007.8.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1882에서 2020년11월12일 인출

정부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과 같이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역에 따른 공급의 격차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시설비 및 장비를 지원하는 공공진료센터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김성주 의원실, 2020.10.5). 2017년부터 3년 1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1기 사업의 경우 서울의 3곳, 강원도 1곳, 대구 1곳, 경남 1곳, 전북 1곳 총 7곳을 운영하였으며 2기 사업은 기존 병원에 서울, 대전, 전남 3곳이 추가로 지정되었다(김성주 의원실, 2020.10.5). 전국 총 10개의 공공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입원한 환자 11만 6천 중 59.5%가 서울 외 지역의 환자임을 감안할 때(김성주 의원실, 2020.10.5.), 지역에 더 많은 공공진료센터가 설립·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5-14.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대전	부산	경북	강원	전북	전남
개소 수(총10개소)	4	1	1	1	1	1	1

* 출처: 김성주 의원실(2020.10.5.). 보도자료: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공공전문치료센터 확대 필요.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365일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소아응급 전담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소아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진료하는 병원이다(보건복지부, 2020.11.3.). 2020년 현재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된 병원은 총 11개소인데, 서울에 3개소, 울산, 인천, 경기서북, 경기동남, 충남,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말 세종, 충북, 전주 각 1개소씩 추가되었다(〈표 Ⅳ-5-15〉).

표 Ⅳ-5-15.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20년 11월 기준)

(단위 : 개소)

시 도	계	시군구	구분
서울	3	종로구	소아전문응급센터
		송파구	소아전문응급센터
		양천구	소아응급실
세종	1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센터
울산	1	동구	소아응급실
인천	1	남동구	소아전문응급센터
경기서북	1	고양시	소아응급실
경기동남	1	성남시	소아전문응급센터
충남	1	천안시	소아전문응급센터
충북	1	청주시	소아전문응급센터
전주	1	전주시	소아전문응급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2020.11.3.). 보도참고자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야간 또한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4개소와 경기, 충북, 전북 각각 2개소, 그 외 경북 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강원, 경남 지역에 각 1개소로 총 18개소의 달빛어린이 병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Ⅳ-5-16〉).

표 Ⅳ-5-16.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20년 10월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	4	2	1	1	1	1	1	2	2	1	2	18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2020).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0년 10월 26일 인출.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개정·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227).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CYS-Net), 청소년동반자,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또래상담사업,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228).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상담체계를 구축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2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7개 시도에 각 1개의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에서 214개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설치율은 전체 93.1%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100%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설치율이 낮은 지역 중 특히 대전(50.0%)과 강원(68.4%) 지역사회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설치율의 제고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표 Ⅳ-5-17〉).

표 Ⅳ-5-17.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4	24	13	8	8	5	2	4	-	31	12	12	15	14	22	21	22	2
계	231	25	14	9	9	6	3	5	1	32	13	13	16	15	23	22	22	3
설치율	93.1	96.2	82.4	100	81.8	100	50.0	83.3	100	100	68.4	100	100	100	100	91.7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228.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중독관리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에 의해 설치·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0.3). 광역의 경우 광역시·도별 1개소가 설치되며, 기초의 경우는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2개소 이상이 설치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3). 광역 및 기초, 기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Ⅳ-5-18〉).

2019년 기준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가 되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 37개소, 서울 25개

소, 경북 24개소 등 전국 시·군·구에 241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기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말하며, 전국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설치현황은 2018년도와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2018년 6개소의 기본센터가 2019년에 기본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Ⅳ-5-18.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년	광역	16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기초	235	25	16	8	10	5	5	5	1	36	18	14	16	11	20	23	20	2
	기본	8	0	0	0	1	0	0	0	0	0	0	0	0	3	2	2	0	0
	계	259	26	17	9	12	6	6	6	1	37	19	15	17	15	23	26	21	3
2019년	광역	16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기초	241	25	16	8	10	5	5	5	1	37	18	14	16	14	21	24	20	2
	기본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계	259	26	17	9	11	6	6	6	1	38	19	15	17	15	23	26	21	3

* 출처: 통계청(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0.12.01. 인출.

* 주: '기본'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를 의미.

다. Wee센터 설치현황

2008년 3월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한 Wee프로젝트는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모형을 기반으로 2009년 부터 설치·운영 되었고,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였다(최상근, 금명자, 정진, 2011).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 emotion(감성)"의 이니셜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일반학생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최상근 외, 2011). Wee프로젝트는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되는데, 1차 안전망으로서 학교 안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가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

생 조기발견과 예방,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주 대상은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이다(최상근 외, 2011). 2차 안전망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설치·운영하는 Wee센터는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주 대상자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이다(최상근 외, 2011). 3차 안전망으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설치하는 Wee스쿨은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으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상근 외, 2011).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의 경우 경기 1,610개소, 서울 830개소, 경남 494개소 등 전국 6,930개소의 Wee클래스가 단위학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Wee센터는 서울 27개소, 경기 25개소, 경북 23개소 등 전국 20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Ⅳ-5-19. (지역별) Wee센터 및 Wee 클래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Wee 클래스	830	430	434	345	169	227	186	82	1,610	328	280	347	249	389	433	494	97	6,930
Wee 센터	27	5	11	6	3	3	3	2	25	17	10	14	15	22	23	18	2	206
계	857	435	445	351	172	230	189	84	1,635	345	290	361	264	411	456	512	99	7,136

* 출처: Wee 사이트. http://www.wee.go.kr/home/find/find01001l.php에서 2020.12.01. 인출.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데,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는 자격조건에 따라 1종과 2종 대상자로 나뉜다(법제처 홈페이지, 2020). 1종 수급권자는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해당하며,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된다(법제처 홈페이지, 2020).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되며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월(30일 기준) 2만원(1종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법제처 홈페이지, 2020).

표 Ⅳ-5-20.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17년	전체	계	3,037	22,336	46,102	65,190	112,490	249,155
		남	1,607	11,250	13,479	33,196	56,889	116,421
		여	1,430	11,086	22,623	31,994	55,601	122,734
	1종	계	2,156	12,534	21,873	28,878	43,841	109,282
		남	1,151	6,264	10,902	14,755	22,833	55,905
		여	1,005	6,270	10,971	14,123	21,008	53,377
	2종	계	881	9,802	24,229	36,312	68,649	139,873
		남	456	4,986	12,577	18,441	34,056	70,516
		여	425	4,816	11,652	17,871	34,593	69,357
2018년	전체	계	2,886	20,206	43,927	60,811	101,152	228,982
		남	1,482	10,191	22,319	30,962	51,227	116,181
		여	1,404	10,015	21,608	29,849	49,925	112,801
	1종	계	2,145	11,477	21,534	27,519	40,026	102,701
		남	1,122	5,784	10,745	13,986	20,732	52,369
		여	1,023	5,693	10,789	13,533	19,294	50,332
	2종	계	741	8,729	22,393	33,292	61,126	126,281
		남	360	4,407	11,574	16,976	30,495	63,812
		여	381	4,322	10,819	16,316	30,631	62,469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 의료급여통계. pp.21-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 의료급여통계. pp.20-24.

의료급여 대상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Ⅳ-5-20〉). 1종과 2종을 합친 의료급여 수급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체 249,155명이 급여 대상자이며 연령별로는 15~19세가 11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 116,421명, 여성 122,734명으로 여성의 수가 더 많았으며 종별로는 1종 109.282명, 2종 139,873명으로 2종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는 228,98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만 여명 감소한 수치이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를 보면 남성 116,181명, 여성 112,801명으로 2017년과 달리 남성 대상자의 수가 더 많았으며 종별로는 1종 102,701명, 2종 126,281명으로 2종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는 병의원 미치료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기준으로 1세~18세 전체 미치료율은 3.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세~18세가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2세~14세가 3.4%, 6세~11세 2.3%, 1세~5세 1.7%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연령의 경우 2014년 4.7% 이후 2016년 4.0%, 2018년 3.1%의 미치료율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미치료율의 경우 2018년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표 Ⅳ-5-21.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4	N	462	507	222	267	1,458	354	367	369	360
	분율 (표준오차)	1.0 (0.6)	2.8 (0.9)	7.9 (1.8)	8.3 (1.9)	4.7 (0.7)	5.2 (1.7)	4.7 (1.3)	5.9 (1.5)	2.4 (0.9)
2015	N	348	456	240	289	1,333	326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1.7 (0.8)	3.4 (1.0)	4.3 (1.8)	6.5 (1.6)	3.9 (0.7)	5.0 (1.5)	4.0 (1.2)	3.2 (1.2)	3.7 (1.2)
2016	N	522	593	254	298	1667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1.5 (0.6)	2.8 (0.8)	6.4 (1.7)	6.3 (1.6)	4.0 (0.6)	5.4 (1.5)	3.9 (1.0)	2.6 (0.9)	4.2 (1.4)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7	N	429	559	232	287	1,50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2.7 (1.0)	0.3 (0.1)	3.1 (1.1)	5.0 (1.5)	2.6 (0.5)	3.5 (1.3)	2.5 (1.2)	2.6 (1.0)	1.1 (0.8)
2018	N	414	511	206	240	1,371	267	289	271	276
	분율 (표준오차)	1.7 (0.7)	2.3 (0.9)	3.4 (1.4)	5.5 (1.6)	3.1 (0.6)	1.4 (0.8)	3.1 (1.1)	3.5 (1.3)	4.5 (1.7)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32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치과 미치료율은 최근 1년간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며, 2018년 미치료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연령의 경우 미치료율은 9.4%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세~18세로 15.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세~14세 11.1%, 1세~5세 9.4%, 6세~11세 5.4%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8%였던 미치료율은 점점 감소하다 소폭 상승하여 2018년 9.4%의 미치료율을 보였다. 소득에 따른 미치료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Ⅳ-5-22.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4	N	462	507	224	265	1,458	353	367	371	359
	분율 (표준오차)	7.3 (1.4)	9.2 (1.8)	8.5 (2.1)	21.3 (2.9)	11.8 (1.1)	15.2 (2.3)	12.3 (1.9)	5.7 (1.5)	13.2 (2.5)
2015	N	347	456	240	289	1,332	325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6.1 (1.5)	11.0 (1.9)	6.2 (1.7)	18.3 (2.4)	10.9 (1.0)	15.3 (2.6)	12.0 (1.9)	6.3 (1.4)	10.0 (2.0)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6	N	522	592	254	298	1666	401	424	415	420
	분율	8.3	5.8	6.9	9.7	7.7	11.0	6.8	6.9	5.8
	(표준오차)	(1.3)	(1.2)	(1.9)	(1.9)	(0.8)	(2.1)	(1.6)	(1.5)	1.2)
2017	N	430	560	232	287	1,509	295	308	305	297
	분율	7.8	6.0	5.3	11.1	7.8	13.2	6.8	7.3	6.2
	(표준오차)	(1.6)	(1.2)	(1.8)	(2.2)	(0.9)	(2.6)	(1.5)	(1.6)	(2.2)
2018	N	291	473	161	179	1,104	214	234	214	215
	분율	9.4	5.4	11.1	15.0	9.4	13.2	10.1	9.2	8.7
	(표준오차)	(2.0)	(1.4)	(2.5)	(3.1)	(1.3)	(2.3)	(2.6)	(2.5)	(2.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23>). 구체적으로 현재 흡연율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19년 조사 당시 중, 고등학생 전체 흡연율은 6.7%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및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에서는 중학생(3.2%)보다 고등학생의 흡연율(9.9%)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중학생의 경우 중1에서 중3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 5.0%). 고등학생 역시 중학교에서의 증가세를 그대로 이어가 고1의 경우 8.3%에서 고2 10.0%, 고3 11.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흡연율은 2009년 12.8% 이후

감소세가 2016년까지 지속되다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이 가장 높았던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9년 당시 흡연율이 18.6%였지만 점차 낮아져 2019년 11.4%로 나타났다.

표 Ⅳ-5-23.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2016	6.3	2.5	9.5	0.8	2.3	4.2	7.1	9.4	12.0
2017	6.4	3.0	9.2	0.7	3.2	4.9	7.0	9.7	10.9
2018	6.7	3.0	9.8	0.8	3.2	4.9	7.7	9.4	12.0
2019	6.7	3.2	9.9	1.0	3.5	5.0	8.3	10.0	11.4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8.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중, 고등학생들의 현재 음주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24〉). 흡연과 마찬가지로 현재 음주율 역시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대상자의 분율을 의미한다(교육부 외, 2019).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중, 고등학생 전체 음주율은 15.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결과 대비 1.9% 감소한 수치이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은 7.6%, 고등학생 21.8%로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학년별로 중, 고등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율 역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3.9% 고등학교 3학년 25.3%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1.1%에서 2016년 15.0%까지 낮아지다 2018년까지 16.9%의 증가추이에서 2019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량이 가장 높은 고3의 경우 2010년대 초반까지는 3명 중 1명이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2019년에는 4명 중 1명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과 흡연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와 증가 추이를 번갈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감소추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표 Ⅳ-5-24.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2016	15.0	6.5	21.9	3.7	5.9	9.6	16.6	22.4	26.9
2017	16.1	7.6	23.0	4.2	7.7	11.0	16.5	25.1	26.9
2018	16.9	8.5	24.2	4.1	8.1	12.8	18.1	24.7	28.6
2019	15.0	7.6	21.8	3.9	7.4	11.2	17.1	22.8	25.3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2-9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0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9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89.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평생 약물 경험률 역시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Ⅳ-5-25〉).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상자의 0.5%가 기분의 변화 및 환각, 살빼기 등의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 각성제, 히로뽕 등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경우 흡연, 음주와 달리 낮은 경험률을

보였지만 각성효과가 크고 중독성 또한 강력한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유사한 수치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표 Ⅳ-5-25.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학생	0.6	0.5	0.6	-	0.5	0.8	0.6	0.5
여학생	0.6	0.4	0.4	-	0.3	0.4	0.4	0.5
전 체	0.6	0.5	0.5	-	0.5	0.6	0.5	0.5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18-31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5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1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18.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④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을 통해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먼저 흡연예방교육의 경험률 추이를 보면,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교급의 경험률이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경험률을 보면 2010년 56.2%에서 2018년 72.5%까지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의 증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의 추이를 보면, 흡연예방교육과 달리 모든 교급과 학년에서 경험률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흡연예방교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 고등학생 전체 경험률은 2018년 42.0%로 2010년 36.3%에 비해 증가값이 크지 않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경험률이 2010년 53.5%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5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래도 여전히 다른 교급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의 차이는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경험률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음주와 흡연 모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이고, 그에 대한 폐해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을 함께 묶어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표 Ⅳ-5-26.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2018	72.5	79.1	66.7	80.5	79.6	77.3	70.6	70.3	60.4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71.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주: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의 출처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본 지표에 대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7차 조사에 신규년도 조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올해는 2018년 결과로 대체함.

표 Ⅳ-5-27.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2018	42.0	48.8	36.1	51.4	48.3	46.9	41.0	39.4	29.2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2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125.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의 출처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본 지표에 대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7차 조사에 신규년도 조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올해는 2018년 결과로 대체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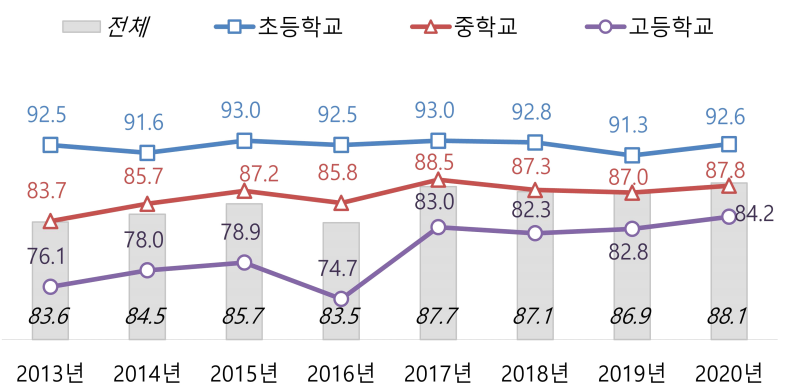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분석결과 88.1%가 건강하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 읍면지역 보다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부모가정 보다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는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집단에 비해 “중”, “상”집단이 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Ⅳ-5-28.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9(0.66)	1.1	10.8	55.9	32.2	100.0(8,595)	
성별	남학생	3.21(0.68)	1.2	11.1	53.3	34.4	100.0(4,456)	27.853***
	여학생	3.18(0.64)	0.9	10.4	58.8	29.9	100.0(4,139)	
학교급	초등학교	3.33(0.63)	0.8	6.6	51.6	41.0	100.0(2,870)	207.067***
	중학교	3.15(0.64)	1.0	11.3	59.4	28.4	100.0(2,740)	
	고등학교	3.10(0.68)	1.5	14.3	56.9	27.3	100.0(2,985)	
지역 규모	대도시	3.21(0.65)	0.9	10.1	56.3	32.7	100.0(3,325)	14.163*
	중소도시	3.20(0.66)	1.2	10.6	55.6	32.6	100.0(4,130)	
	읍면지역	3.13(0.68)	1.2	13.3	56.2	29.3	100.0(1,14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65)	0.9	10.2	56.4	32.5	100.0(7,669)	93.958***
	한부모가정	3.03(0.74)	2.0	20.1	51.0	26.8	100.0(619)	
	조손가정	3.30(0.67)	2.5	4.2	54.6	38.7	100.0(94)	
	기타	3.26(0.75)	4.0	6.2	50.1	39.7	100.0(149)	
경제적 수준	상	3.29(0.64)	0.9	7.8	52.7	38.5	100.0(4,809)	350.325***
	중	3.11(0.64)	1.1	12.3	61.4	25.2	100.0(3,094)	
	하	2.88(0.73)	2.6	25.2	53.7	18.4	100.0(621)	

*p < .05, ***p < .001.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수준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2013년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016년과 2017년 사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본인을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차이는 시간의 지나도 좁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운동 실천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회가 24.5%, 한 달에 1~2회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2%대의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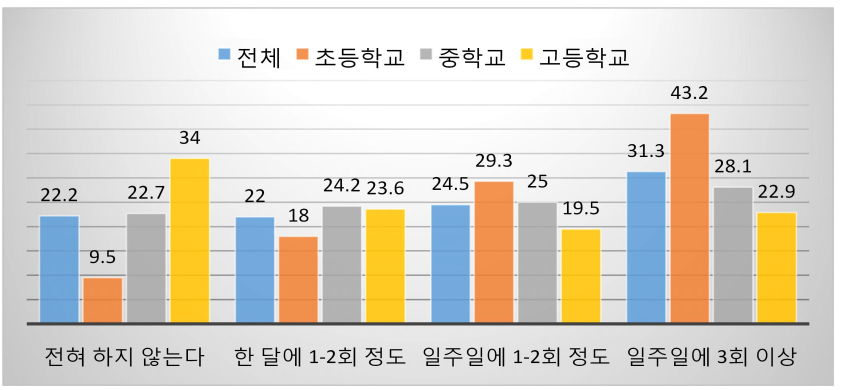


그림 Ⅳ-5-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운동 여부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운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운동하지 않는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유형의 경우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일반계고 학생의 운동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서 조손가정, 양부모, 한부모로 갈수록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상"에서 "하"로 갈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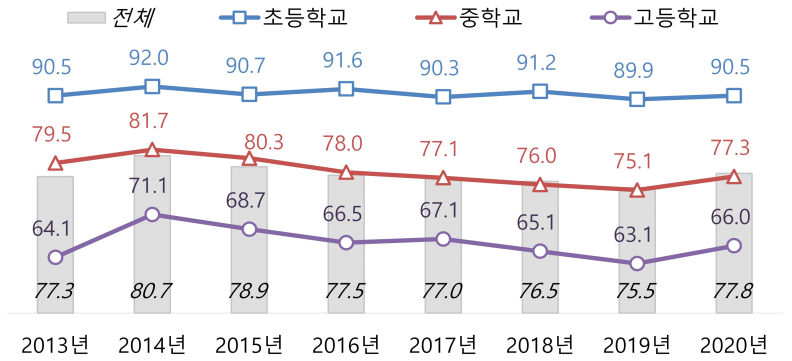
표 Ⅳ-5-29.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2	22.0	24.5	31.3	100.0(8,591)	
성별	남학생	16.6	17.2	26.3	39.9	100.0(4,454)	453.378***
	여학생	28.2	27.1	22.6	22.1	100.0(4,136)	
학교급	초등학교	9.5	18.0	29.3	43.2	100.0(2,867)	689.833***
	중학교	22.7	24.2	25.0	28.1	100.0(2,739)	
	고등학교	34.0	23.6	19.5	22.9	100.0(2,984)	
고교 유형	일반계고	35.4	24.6	19.3	20.8	100.0(2,406)	34.972***
	특성화계고	28.4	19.6	20.5	31.5	100.0(5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9	21.9	24.9	31.2	100.0(7,668)	23.951**
	한부모가정	27.1	24.4	19.4	29.0	100.0(618)	
	조손가정	18.3	17.5	24.8	39.4	100.0(94)	
	기타	18.8	18.6	24.4	38.2	100.0(148)	
경제적 수준	상	17.6	20.4	26.4	35.5	100.0(4,810)	222.044***
	중	27.0	24.6	22.4	26.0	100.0(3,092)	
	하	34.9	21.7	20.2	23.1	100.0(619)	

$^{**}p < .01$, $^{***}p < .001$.

한 달에 최소 1~2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응답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77.3%였으며 2014년 8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뒤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75.5%까지 감소했다 2020년 77.8%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교급별 차이를 보이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갈수록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난 7년 간 계속 유지되었다.



* 주: '전혀 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③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7.2시간 동안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분석결과 9시간 이상 수면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시간 이상~9시간 미만이 20.4%로 많았으며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18.8%,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17.1%,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11.0%, 5시간 미만도 5.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면시간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수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5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반대로 갈수록 9시간 이상 잔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64.5%가 9시간 이상 잠을 잔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5.9%에 그쳤다. 고교유형에 따라 일반계고 학생의 수면시간이 더 짧았으며, 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상"에서 "하"로 갈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다.

표 Ⅳ-5-30.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N)	χ^2
전체		5.5	11.0	17.1	18.8	20.4	27.2	7.2(1.72)	100.0(8,230)	
성별	남학생	4.0	8.3	15.9	19.6	21.9	30.3	7.4(1.65)	100.0(4,279)	151.810***
	여학생	7.2	14.0	18.3	18.0	18.7	23.8	7.0(1.76)	100.0(3,951)	
학교급	초등학교	0.5	0.7	2.5	7.4	24.4	64.5	8.7(1.18)	100.0(2,717)	4,414.529***
	중학교	4.3	8.3	16.4	27.1	28.5	15.3	7.0(1.36)	100.0(2,638)	
	고등학교	11.4	23.3	31.5	21.9	9.1	2.8	5.9(1.27)	100.0(2,876)	
고교 유형	일반계고	11.8	25.5	33.1	20.3	7.7	1.7	5.8(1.21)	100.0(2,315)	131.234***
	특성화계고	9.5	14.5	24.7	28.6	15.2	7.5	6.4(1.38)	100.0(561)	
학업 성적	상	3.5	7.9	13.7	17.3	22.3	35.3	7.6(1.68)	100.0(2,591)	484.698***
	중	4.7	10.1	16.6	18.6	20.9	29.0	7.3(1.69)	100.0(3,677)	
	하	9.8	17.3	22.7	21.3	16.9	12.1	6.4(1.60)	100.0(1,908)	
경제적 수준	상	4.3	9.6	14.4	17.8	20.7	33.2	7.4(1.72)	100.0(4,606)	293.719***
	중	6.4	12.4	19.4	20.2	21.2	20.3	6.9(1.65)	100.0(2,967)	
	하	10.5	15.9	25.8	19.6	14.4	13.9	6.4(1.66)	100.0(597)	

***p 〈 .001.

앞서 나타난 수면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도에 따라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대별 분석결과 조사가 진행된 7년 간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수면시간 차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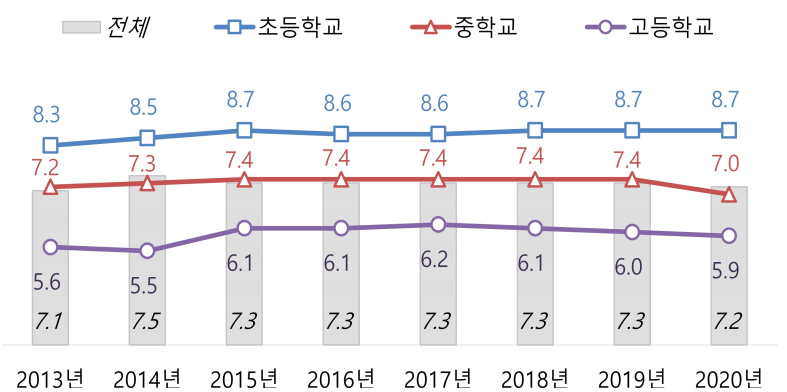


그림 Ⅳ-5-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수면시간에 이어 수면시간이 부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47.7%가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52.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학생은 42.8%가 부족하다고 한 반면 여학생은 52.9%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계고 학생보다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더욱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하"집단으로 갈수록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조사한 수면시간의 결과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Ⅳ-5-31. 수면 부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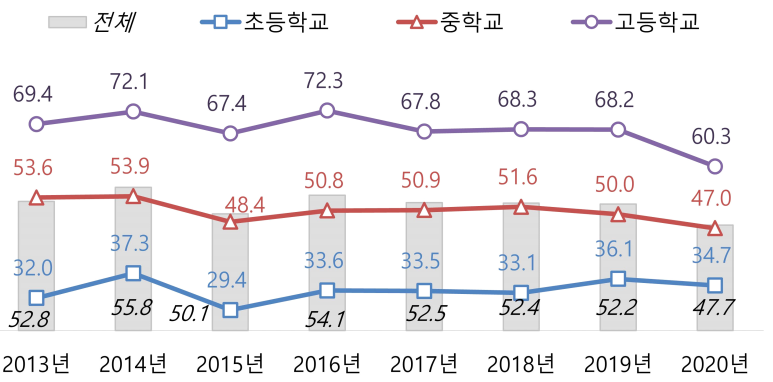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47.7	52.3	100.0(8,425)	
성별	남학생	42.8	57.2	100.0(4,356)	86.687***
	여학생	52.9	47.1	100.0(4,069)	
학교급	초등학교	34.7	65.3	100.0(2,739)	376.180***
	중학교	47.0	53.0	100.0(2,714)	
	고등학교	60.3	39.7	100.0(2,972)	
고교 유형	일반계고	62.2	37.8	100.0(2,397)	17.558***
	특성화계고	52.7	47.3	100.0(575)	
학업 성적	상	43.0	57.0	100.0(2,627)	121.514***
	중	45.5	54.5	100.0(3,768)	
	하	58.4	41.6	100.0(1,972)	
경제적 수준	상	43.8	56.2	100.0(4,702)	124.963***
	중	50.2	49.8	100.0(3,047)	
	하	66.7	33.3	100.0(609)	

***p 〈 .001.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이 수면 부족을 경험하였으나 2020년에 와서 47.7%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교급별 감소폭을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7년 간 소폭의

증감을 보였지만, 중학생은 주로 50%이상을 유지해오다 47.0%로 감소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0% 후반에서 70% 초반의 응답률을 보이다 2020년 60.3%로 큰 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고등학생의 수면부족에 대한 경험률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비대면 수업 전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Ⅳ-5-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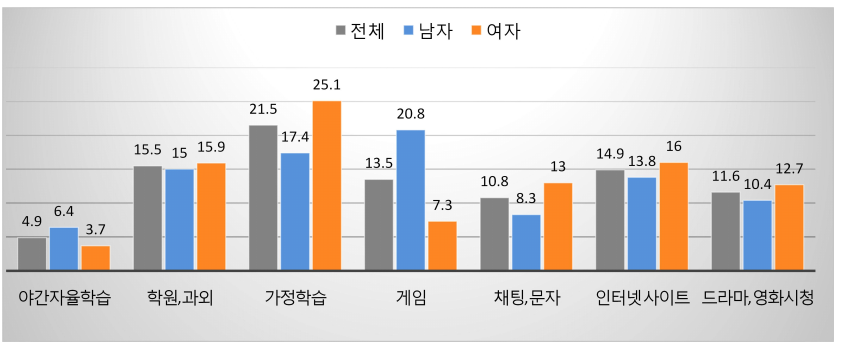


그림 Ⅳ-5-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수면부족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순위 응답을 보면, 숙제, 인터넷 강의 등 가정학습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원 및 과외 15.5%, 동영상, 블로그 등 인터넷 이용 14.9%,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게임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 두 가지가 모두 학업과 관련된 이유였는데 학습관련 된 두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항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수면을 부족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학생은 게임이 20.8%로 가장 높은 원인이었지만, 여학생은 가정학습(25.1%)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게임(26.0%),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정학습(20.4%, 24.9%)으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 학생은 가정학습(28.4%)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경우는 인터넷사이트 이용(18.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거주지역의 규모의 경우 모두 가정학습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대상자는 학원과 과외(16.4%, 15.1%)라고 응답한 반면 읍면지역 응답자는 게임(15.2%)이라고 생각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가정의 응답자는 가정학습(22.3%), 한부모가정의 경우 인터넷사이트 이용(21.4%), 조손가정은 학원, 과외(28.3%)라고 응답해 가정유형별로 수면부족의 원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인 “상”과 “중”인 대상자는 가정학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30.7%, 19.4%) “하”집단은 인터넷사이트 이용(18.2%)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모든 집단이 가정학습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두 번째 이유에서 “상”집단은 학원, 과외(18.3%), “중”집단과 “하”집단은 인터넷사이트 이용(18.1%, 17.7%)이라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Ⅳ-5-32.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4.9	15.5	21.5	13.5	10.8	14.9	11.6	7.1	100.0(3,799)	
성별	남학생	6.4	15.0	17.4	20.8	8.3	13.8	10.4	7.9	100.0(1,759)	202.355***
	여학생	3.7	15.9	25.1	7.3	13.0	16.0	12.7	6.3	100.0(2,040)	
학교급	초등학교	0.0	17.1	16.9	26.0	4.0	11.3	10.0	14.7	100.0(935)	482.190***
	중학교	2.7	15.3	20.4	12.9	14.3	16.7	13.2	4.6	100.0(1,196)	
	고등학교	9.3	14.8	24.9	7.0	12.2	15.7	11.5	4.6	100.0(1,669)	
고교유형	일반계고	10.1	16.0	28.4	5.0	11.5	15.2	10.6	3.2	100.0(1,392)	148.012***
	특성화계고	5.8	8.9	7.4	16.8	16.1	18.0	15.7	11.3	100.0(276)	
지역규모	대도시	2.8	16.4	24.2	11.8	11.3	15.2	11.5	6.9	100.0(1,493)	60.955***
	중소도시	5.3	15.1	20.3	14.5	10.3	14.9	12.0	7.6	100.0(1,785)	
	읍면지역	9.8	14.4	18.0	15.2	11.4	14.6	10.8	5.8	100.0(52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5.0	15.9	22.3	13.0	10.5	14.6	11.6	7.2	100.0(3,354)	57.150***
	한부모가정	4.1	8.9	16.9	16.2	14.2	21.4	12.6	5.7	100.0(322)	
	조손가정	12.6	28.3	9.6	22.4	4.5	4.3	7.4	10.9	100.0(43)	
	기타	2.0	21.4	17.5	14.5	8.9	15.1	14.2	6.5	100.0(58)	
학업성적	상	5.9	18.2	30.7	9.3	6.6	11.3	9.0	9.1	100.0(1,090)	188.673***
	중	4.5	16.3	19.4	15.3	10.5	15.4	12.3	6.4	100.0(1,628)	
	하	4.6	11.7	15.7	14.7	15.5	18.2	13.6	6.0	100.0(1,058)	
경제적 수준	상	4.0	18.3	22.4	13.3	10.4	12.3	11.4	7.8	100.0(1,945)	58.886***
	중	5.5	13.0	20.6	13.8	10.9	18.1	11.9	6.2	100.0(1,440)	
	하	6.9	10.9	20.5	12.3	12.1	17.7	13.0	6.7	100.0(388)	

***p 〈 .001.

수면부족 이유에 대한 전체 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학원·과외, 가정학습)요인의 경우 2019년 조사에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조사들의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게임, 인터넷 사이트 이용, 드라마 및 영화 시청 등 미디어를 이용으로 인한 수면부족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디어의 이용을 무조건 통제할 수 없지만 건강한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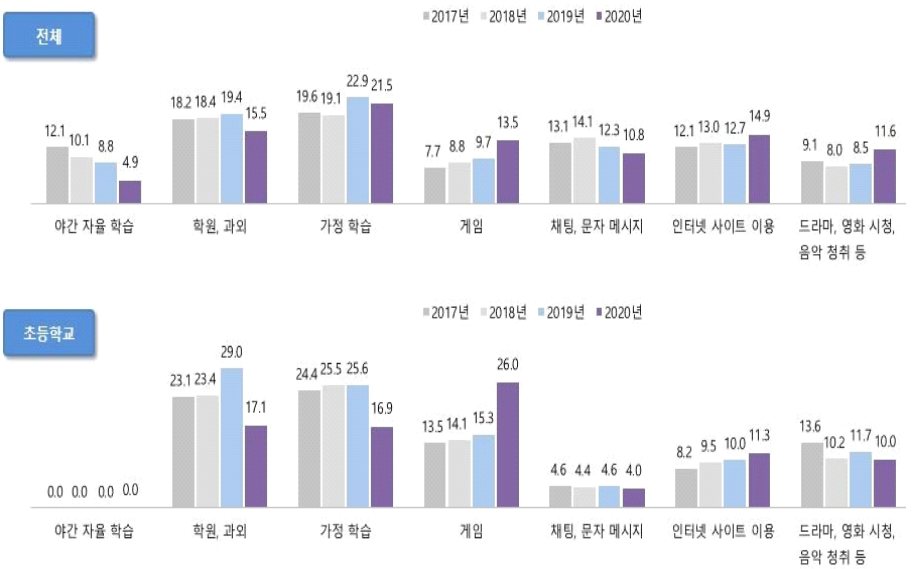


그림 Ⅳ-5-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중학생의 경우 학원과 과외로 인한 수면부족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학습으로 인한 수면부족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게임, 인터넷 사이트 이용, 드라마, 영화 감상과 같은 미디어 이용시간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수면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습과 여가 간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면부족에 대한 야간자율학습의 원인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가정학습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미디어 과이용은

물리적 시간을 통해 수면부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눈과 손목관절 등에도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수면부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 중, 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미디어 이용 간의 균형과 조절이 필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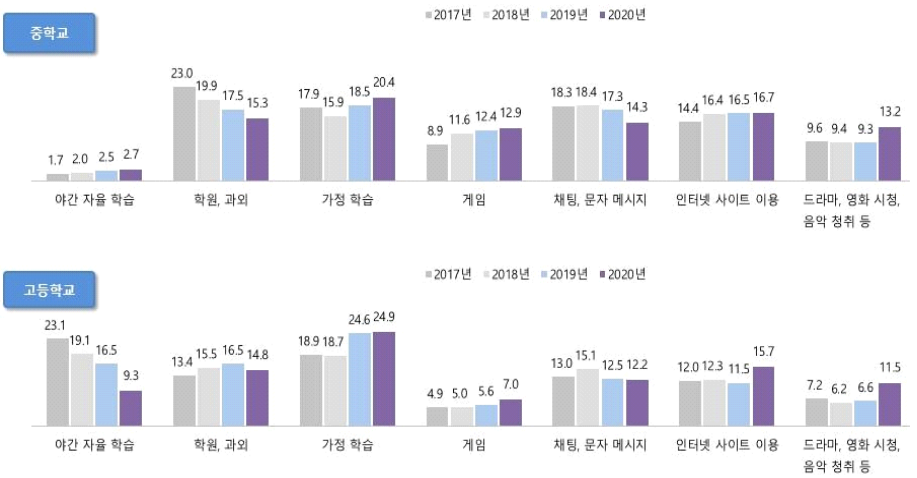


그림 Ⅳ-5-10.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수면이 부족한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33〉). 가정학습이 37.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33.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순위 응답만을 분석했을 때 두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았던 학원 및 과외는 27.7%로 나타났으며, 가정학습과 함께 묶어보면 학습관련 요인은 65.3%의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게임 27.0%, 드라마, 영화 시청 25.9%, 채팅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정학습으로 인한 원인이 10%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게임의 경우는 남학생 39.0%, 여학생 16.6%로 매우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급에 있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갈수록 게임으로 인한 수면부족 인식이 증가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가정

학습이 45.4%로 높은 비중을 보인데 비해 특성화계고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양부모가정은 가정학습(38.7%)이, 한부모가정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이용(42.4%)이, 조손가정에서는 게임(36.4%) 각각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과 "중"집단에서는 가정학습이 50.4%와 35.9%로 가장 높았으며 "하"집단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38.9%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서 "상"집단은 가정학습이, "중"과 "하"집단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집단의 경우 가정학습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의 비중이 각각 36.8%와 36.9%로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표 Ⅳ-5-33.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7.2	27.7	37.6	27.0	23.1	33.8	25.9	10.3	100.0(3,799)
성별	남학생	9.0	25.1	32.4	39.0	18.6	33.7	22.5	11.5	100.0(1,759)
	여학생	5.7	29.9	42.0	16.6	27.1	34.0	29.0	9.4	100.0(2,040)
학교급	초등학교	0.0	25.6	37.3	38.1	13.1	25.6	28.3	20.8	100.0(935)
	중학교	5.1	28.3	33.8	29.3	27.5	38.2	26.5	7.7	100.0(1,196)
	고등학교	12.8	28.5	40.4	19.1	25.6	35.3	24.3	6.3	100.0(1,6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4.1	31.4	45.4	16.2	23.8	33.9	23.1	5.2	100.0(1,392)
	특성화계고	6.4	13.6	14.9	33.8	34.6	42.3	30.0	12.3	100.0(276)
지역 규모	대도시	4.1	28.2	40.8	25.8	22.9	33.2	26.3	11.0	100.0(1,493)
	중소도시	7.8	28.1	36.3	27.5	22.2	33.6	25.9	10.8	100.0(1,785)
	읍면지역	14.3	25.2	32.7	28.8	27.1	36.4	24.9	6.7	100.0(52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2	28.6	38.7	26.1	22.8	33.6	25.7	10.4	100.0(3,354)
	한부모가정	7.2	17.3	28.8	33.9	26.8	42.4	27.7	9.0	100.0(322)
	조손가정	17.1	32.8	23.9	36.4	20.7	9.9	25.3	14.9	100.0(43)
	기타	2.0	30.0	33.9	29.0	19.3	21.0	37.0	6.5	100.0(58)
학업	상	8.9	33.9	50.4	18.9	15.6	27.8	22.6	13.1	100.0(1,090)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성적	중	6.6	28.3	35.9	28.4	23.0	34.7	26.2	9.8	100.0(1,628)
	하	6.6	20.5	27.1	32.8	30.8	38.9	29.4	8.2	100.0(1,058)
경제적 수준	상	5.9	29.9	38.8	26.6	22.8	30.9	25.9	11.5	100.0(1,945)
	중	8.0	26.0	36.8	27.1	23.4	36.9	25.7	8.9	100.0(1,440)
	하	10.3	23.0	34.3	27.5	23.6	37.9	28.1	9.1	100.0(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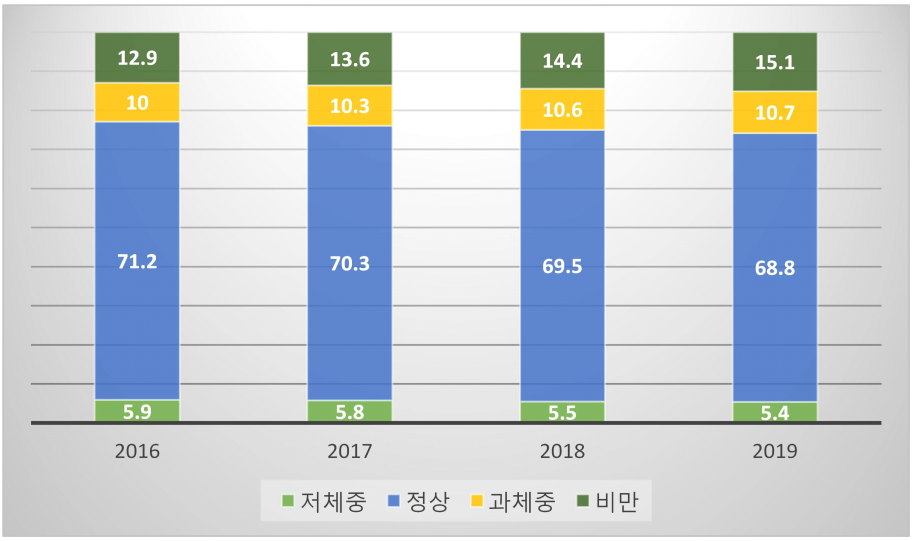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관련 원인이 65.3%로 수면부족에 있어 영향력이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게임, 채팅, 인터넷사이트 이용, 드라마·영화시청은 모두 미디어 관련 원인이다. 이들의 비중을 합치면 109.8%로 학습관련 원인보다 더 큰 영향력 변인이 된다. 다만 연도별 추이에서 살펴봤듯이 특히 올해 미디어 관련 원인들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별한 배경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반복될 수 있고 기간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미디어역량의 강화, 학습과 미디어 사용 간의 균형 등 다양한 대응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가. 비만율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통계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체질량지수 BMI 기

준)을 살펴보면(〈표 Ⅳ-5-34〉), 2019년 전체 기준으로 저체중 5.4%, 정상 68.8%, 과체중 10.7%, 비만 15.1%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5-11]), 정상 체중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본 그림은 〈표 Ⅳ-5-34〉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5-11.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표 Ⅳ-5-34. 2016~2019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6년	전체		5.9	71.2	10.0	12.9
	초등학생	남학생	5.9	69.5	10.9	13.8
		여학생	6.6	75.5	9.0	8.8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중학생	남학생	6.2	68.3	10.3	15.2
		여학생	5.0	74.3	10.1	10.6
	고등학생	남학생	6.8	67.0	9.9	16.3
		여학생	4.2	71.9	10.0	13.9
2017년	전체		5.8	70.3	10.3	13.6
	초등학생	남학생	5.4	69.9	10.8	14.0
		여학생	6.8	73.1	10.2	9.9
	중학생	남학생	5.9	68.7	10.6	14.8
		여학생	5.1	74.5	9.4	11.0
	고등학생	남학생	6.6	64.8	10.4	18.1
		여학생	4.8	70.3	9.9	15.1
2018년	전체		5.5	69.5	10.6	14.4
	초등학생	남학생	4.9	68.3	11.3	15.5
		여학생	6.0	72.9	10.2	10.9
	중학생	남학생	5.7	67.6	10.6	16.0
		여학생	4.8	72.9	9.9	12.4
	고등학생	남학생	6.3	64.6	10.7	18.4
		여학생	5.2	69.7	10.4	14.7
2019년	전체		5.4	68.8	10.7	15.1
	초등학생	남학생	5.1	66.8	11.5	16.6
		여학생	5.8	72.9	10.7	10.6
	중학생	남학생	5.3	66.2	11.3	17.2
		여학생	4.9	72.4	10.1	12.5
	고등학생	남학생	6.0	64.3	9.9	19.7
		여학생	5.4	68.6	10.0	16.1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이하 / 과체중군, 85백분위 수초과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적용하여 분석

〈표 Ⅳ-5-3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과 성별을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이 1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남자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비만형 체중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학교 남학생 17.2%, 초등학교 남학생 16.6%

순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들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남, 여 모두 비만율이 높아지는데, 활동량은 적어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증가하며, 더불어서 입시 또는 진로 선택에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나. 그 외 질환별 유병률

비만율 이외에 아동·청소년들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주의력결핍 장애의 유병률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5-35.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단위 : %, 명)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7	천식	1-11세	3.3(0.8)	508	2.1(0.8)	480	2.7(0.6)	988
		12-18세	2.7(0.9)	273	4.6(1.4)	246	3.6(0.8)	519
	알레르기비염	1-11세	26.0(2.6)	508	17.1(1.9)	480	21.7(1.7)	988
		12-18세	32.1(3.4)	273	20.2(2.7)	246	26.4(2.2)	519
	아토피피부염	1-11세	9.1(1.7)	508	10.6(1.5)	480	9.8(1.1)	988
		12-18세	13.6(2.4)	273	14.9(2.4)	246	14.2(1.7)	519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7(0.4)	507	0.1(0.1)	480	0.4(0.3)	987
		12-18세	1.3(0.8)	273	1.0(0.6)	246	1.1(0.5)	519
2018	천식	1-11세	3.7(1.0)	471	0.9(0.4)	458	2.3(0.5)	929
		12-18세	3.1(1.3)	247	2.5(1.2)	227	2.8(0.9)	474
	알레르기비염	1-11세	21.3(2.7)	471	17.4(2.5)	458	19.4(2.0)	929
		12-18세	25.5(3.0)	247	19.1(3.3)	227	22.4(2.2)	474
	아토피피부염	1-11세	12.1(1.8)	471	9.0(1.8)	458	10.6(1.3)	929
		12-18세	14.7(2.9)	247	18.8(2.8)	227	16.7(2.2)	474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5(0.3)	471	0.0(-)	458	0.3(0.2)	929
		12-18세	3.8(1.5)	247	1.3(0.8)	227	2.6(0.9)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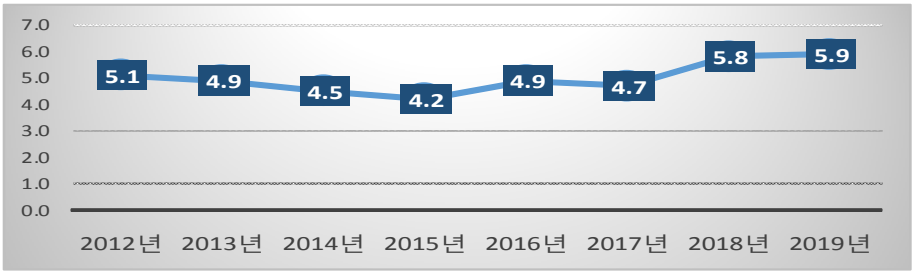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2018년 결과를 기준으로 1세~11세 전체 천식 유병률은 2.3%였는데, 그 중 남자 아동의 유병률이 3.7%로 높게 나타났다. 12세~18세 천식 유병률은 2.8%로 나타났으며 여자아동의 천식율이 1세~11세에 비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비염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높았는데, 전체 발병률은 11세 이하 19.4%, 18세 이하 22.4%로 약 5명 중 1명이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토피의 경우 11세 이하 10.6%, 18세 이하 16.7%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함께 높아졌다. 주의력결핍장애는 11세 이하 0.3%, 18세 이하 2.6%로 여자아동에 비해 남자아동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적 건강

①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6.9명으로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통계청, 2020.9.22.). 특히 고의적 자해(자살)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며 2019년 10대(10~19세) 자살률은 5.9%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20.9.22.). 고의적 자해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과 사회적 해결책 모색이 강조된다.



* 출처: 통계청(2013.09.25). 보도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p.17, 통계청(2014.09.23). 보도자료: 2013년 사망원인통계 p.17. 통계청(2015.09.23). 보도자료: 2014년 사망원인통계 p.16. 통계청(2016.09.27). 보도자료: 2015년 사망원인통계 p.20. 통계청(2017.09.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8.09.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9.0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0.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그림 Ⅳ-5-12.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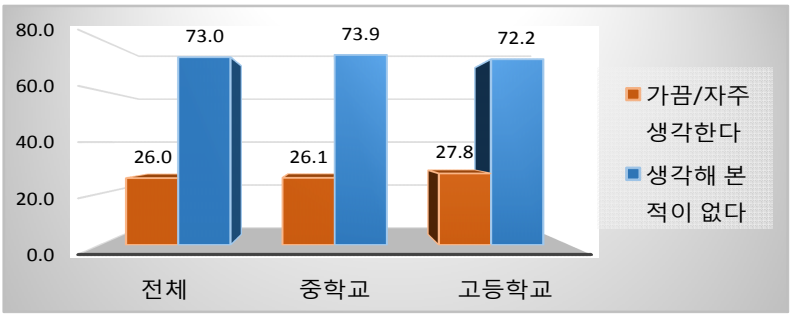


그림 Ⅳ-5-1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단위: 비율)

본 연구를 통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73.0%, '가끔 생각한다' 23.1%, '자주 생각한다' 3.9%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27%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였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성화계고보다는 일반계고 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중", "상" 보다 "하"집단이,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에서 "하"로 갈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눈여겨 볼 집단 간 차이는 성별, 학업성적,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다. 남학생은 가끔이라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경우가 19.6%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을 포함하여 여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적에 있어서도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죽음에 대한 생각 정도는 23~25%였지만 하위권 집단의 경우 34.2%로 다른 집단과 10%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죽음을 생각할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또는

낮은 성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비슷한 수치로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35.3%로 높게 응답되었는데, 한부모가정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생활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하"집단(45.2%)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관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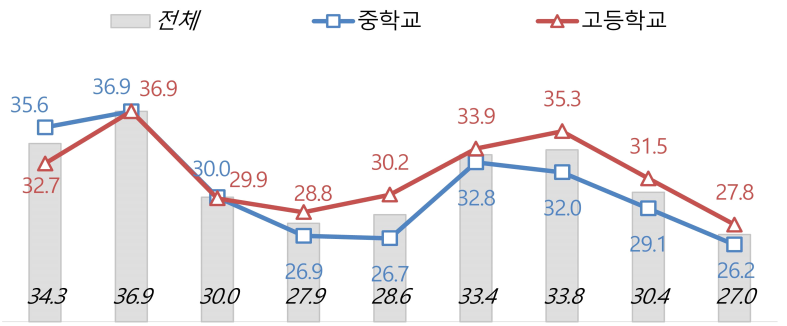
표 Ⅳ-5-36.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73.0	23.1	3.9	100.0(5,669)	
성별	남학생	80.5	17.6	2.0	100.0(2,940)	186.061***
	여학생	65.0	29.1	5.9	100.0(2,729)	
학교급	중학교	73.9	23.3	2.9	100.0(2,707)	14.170***
	고등학교	72.2	23.0	4.8	100.0(2,962)	
고교 유형	일반계고	70.8	24.5	4.8	100.0(2,393)	15.416***
	특성화계고	78.2	16.8	5.0	100.0(5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7	22.7	3.6	100.0(5,067)	31.797***
	한부모가정	64.7	28.0	7.3	100.0(462)	
	조손가정	84.9	12.7	2.4	100.0(50)	
	기타	70.4	29.6	0.0	100.0(66)	
학업 성적	상	75.1	22.0	2.9	100.0(1,452)	76.432***
	중	77.0	19.9	3.1	100.0(2,428)	
	하	65.7	28.5	5.7	100.0(1,765)	
경제적 수준	상	75.6	21.3	3.2	100.0(2,831)	128.669***
	중	73.9	23.0	3.1	100.0(2,285)	
	하	54.8	34.6	10.6	100.0(522)	

***p < .001.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의 결과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Ⅳ-5-14]).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와 증가를 번갈아 보이던 추세는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7.0%의 수준을 나타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 2011년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으로 질문함.

그림 Ⅳ-5-14.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죽고 싶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37〉). 전체 대상자의 39.8%는 학업 부담, 성적문제와 같은 학업문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25.5%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간의 갈등도 1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4.8%, 경제적인 어려움 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학교급, 고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업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두 번째로는 중학생은 가족간의 갈등(22.2%),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9.4%)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유형에서 일반계고는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지만 특성화계고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졸업 후 진로 유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 학업문제로 죽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상: 43.6%, 중: 39.3%, 하: 29.3%), "하"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26.5%)과 가족간의 갈등(22.4%)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5-37. 죽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39.8	16.0	4.8	1.7	25.5	12.2	100.0(1,504)	
성별	남학생	38.0	17.2	4.2	2.4	25.3	12.7	100.0(560)	5.483
	여학생	40.8	15.3	5.1	1.3	25.7	11.9	100.0(944)	
학교급	중학교	38.0	22.2	6.7	0.8	21.0	11.3	100.0(695)	60.626***
	고등학교	41.3	10.7	3.1	2.6	29.4	12.9	100.0(809)	
고교 유형	일반계고	46.3	10.4	2.7	2.3	26.4	11.8	100.0(689)	54.783***
	특성화계고	12.8	12.4	5.5	3.8	46.5	19.1	100.0(12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8	14.6	5.0	1.1	25.9	11.7	100.0(1,314)	65.874***
	한부모가정	22.6	26.7	3.9	7.4	23.5	15.9	100.0(157)	
	조손가정	33.8	30.4	0.0	0.0	16.9	18.9	100.0(8)	
	기타	34.7	19.1	0.0	0.0	30.5	15.8	100.0(19)	
학업 성적	상	42.8	17.4	3.7	1.2	23.9	11.0	100.0(355)	18.670
	중	42.4	13.9	4.8	1.0	26.5	11.5	100.0(552)	
	하	35.2	17.1	5.4	2.7	25.9	13.7	100.0(592)	
경제적 수준	상	43.6	13.7	5.5	0.4	25.8	11.1	100.0(678)	68.055***
	중	39.3	15.8	4.0	1.4	25.2	14.3	100.0(586)	
	하	29.3	22.4	4.6	6.8	26.5	10.5	100.0(233)	

***p 〈 .001.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문제'로 수정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보기문항이 새로 추가됨.

② 우울증

세 가지 항목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그림 Ⅳ-5-15]). 그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27.7%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6.1%,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27.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7% 내외의 아동·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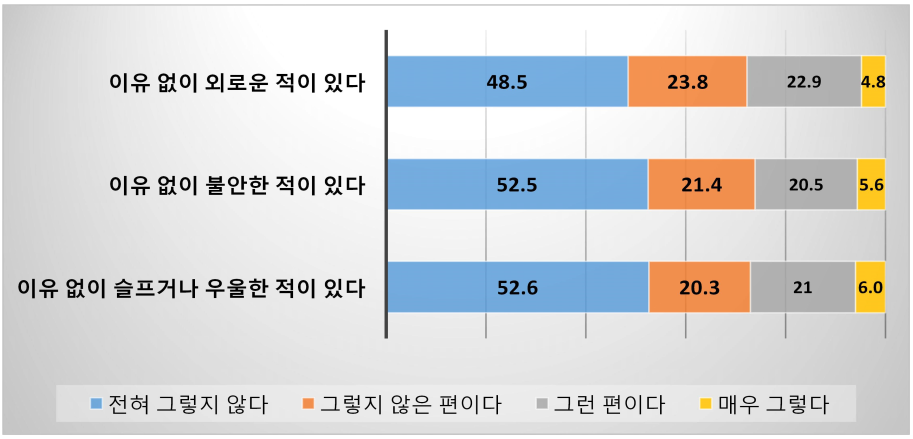


그림 Ⅳ-5-15.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문항은 4점 만점 중 평균 1.84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배경변인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평균(2.04점)이 남학생 평균(1.65점)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1.60점)보다 중학생(1.91점)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2.01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1.58점)이 가장 낮았으며 양부모가정(1.82점), 한부모가정(2.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성적에 따라서는 "상" 평균 1.71점, "중" 평균 1.80점, "하" 평균 2.08점 순으로 높아졌으며, 경제적 수준은 "상" 평균 1.72점, "중" 평균 1.93점, "하" 평균 2.28점로 "상" 집단에서 "하" 집단으로 갈수록 측정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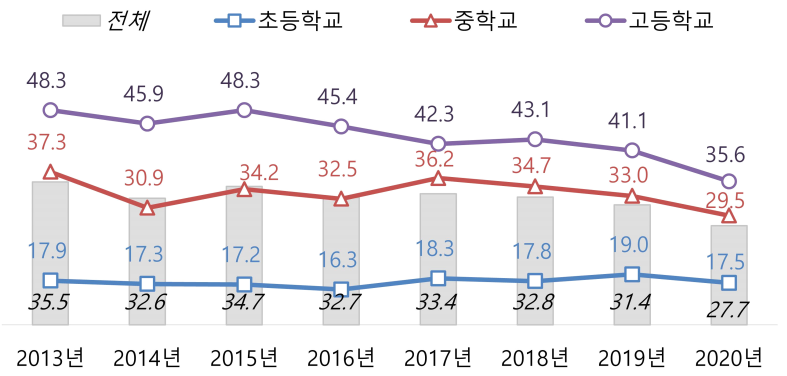
표 Ⅳ-5-38.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4(0.94)	48.5	23.8	22.9	4.8	100.0(8,577)	
성별	남학생	1.65(0.86)	57.5	22.7	17.0	2.8	100.0(4,443)	377.832***
	여학생	2.04(0.98)	38.8	25.1	29.2	7.0	100.0(4,134)	
학교급	초등학교	1.60(0.85)	61.1	21.3	14.2	3.3	100.0(2,866)	342.795***
	중학교	1.91(0.94)	43.6	26.8	24.3	5.2	100.0(2,730)	
	고등학교	2.01(0.97)	40.8	23.5	29.8	5.8	100.0(2,981)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2(0.96)	39.8	24.2	30.3	5.7	100.0(2,403)	7.373
	특성화계고	1.96(1.00)	45.0	20.7	27.7	6.6	100.0(5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2(0.93)	49.0	24.0	22.5	4.4	100.0(7,654)	73.121***
	한부모가정	2.10(1.01)	37.7	23.1	30.3	8.8	100.0(620)	
	조손가정	1.58(0.87)	65.4	13.3	19.4	1.9	100.0(94)	
	기타	1.75(0.97)	54.8	22.7	15.1	7.5	100.0(149)	
학업 성적	상	1.71(0.88)	54.4	23.8	18.4	3.3	100.0(2,687)	211.928***
	중	1.80(0.91)	49.4	24.8	21.9	3.9	100.0(3,832)	
	하	2.08(1.01)	39.0	21.8	30.8	8.3	100.0(1,998)	
경제적 수준	상	1.72(0.89)	54.1	22.8	19.6	3.4	100.0(4,805)	256.262***
	중	1.93(0.95)	43.3	25.9	25.3	5.5	100.0(3,089)	
	하	2.28(1.03)	31.4	20.9	36.0	11.7	100.0(618)	

***p 〈 .001.

분석결과 나타난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Ⅳ-5-16]). 문항 전체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3년 35.5%에서 2017년 33.4%, 2020년 27.7%로 완만한 감소추이를 보였다. 교급별로 추이의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6.3%~19.0% 사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2013년 37.3%에서 역시 소폭의 증가와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9.5%의 응답률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다른 교급에 비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2013년 48.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35.6%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의할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6.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항목은 분석결과 4점 만점 중 평균 1.7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배경문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 평균은 1.60점으로 여학생 평균 1.99점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1.59점, 중학교 1.84점, 고등학교 1.94점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반계고는 1.96점, 특성화계고 1.86점으로 비슷하지만 일반계고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 있어서 조손가정 1.58점, 양부모가정 1.78점, 한부모가정 1.9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집단을 보면 "상" 집단 1.69점, "중" 집단 1.76점, "하" 집단 1.99점로 성적이 "상"에서 "하"로 인식할수록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상" 집단 1.68점, "중" 집단 1.89점, "하" 집단 2.17점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체감하는 불안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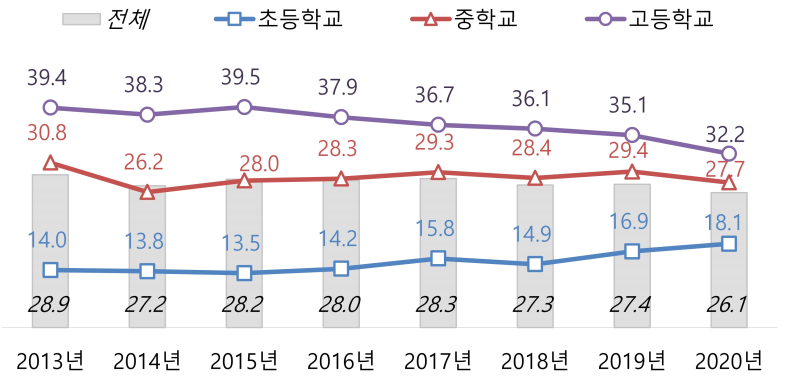
표 Ⅳ-5-39.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79(0.95)	52.5	21.4	20.5	5.6	100.0(8,572)	
성별	남학생	1.60(0.86)	61.6	19.6	15.6	3.2	100.0(4,439)	364.327***
	여학생	1.99(1.00)	42.6	23.4	25.8	8.1	100.0(4,133)	
학교급	초등학교	1.59(0.86)	63.1	18.8	14.5	3.6	100.0(2,862)	231.219***
	중학교	1.84(0.95)	49.1	23.1	22.2	5.5	100.0(2,730)	
	고등학교	1.94(1.00)	45.3	22.4	24.7	7.5	100.0(2,97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96(0.99)	43.8	23.2	25.6	7.4	100.0(2,402)	13.942**
	특성화계고	1.86(1.02)	51.6	19.0	21.2	8.2	100.0(5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8(0.95)	52.6	21.7	20.4	5.3	100.0(7,651)	39.004***
	한부모가정	1.96(1.02)	45.6	21.1	24.7	8.6	100.0(620)	
	조손가정	1.58(0.92)	67.9	10.1	18.2	3.9	100.0(93)	
	기타	1.67(0.96)	61.9	15.0	17.3	5.9	100.0(149)	
학업 성적	상	1.69(0.91)	57.9	20.0	17.5	4.5	100.0(2,687)	136.270***
	중	1.76(0.92)	52.7	22.6	20.2	4.5	100.0(3,830)	
	하	1.99(1.03)	44.5	21.1	25.3	9.1	100.0(1,996)	
경제적 수준	상	1.68(0.91)	58.0	19.8	17.9	4.3	100.0(4,800)	202.101***
	중	1.89(0.97)	46.9	24.0	22.8	6.4	100.0(3,089)	
	하	2.17(1.06)	36.9	21.0	30.4	11.7	100.0(617)	

$^{**}p < .01$, $^{***}p < .00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문항의 결과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률은 2013년 28.9%에서 2020년 26.1%까지 범위 안에서 미세한 증감을 반복하였다. 교급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교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이후로 3년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학생의 경우 2013년 30.8%에서 이후 20%대로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27.7%의 응답률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2.2%로 감소하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7.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 측정을 위한 구성문항 중 마지막 문항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40〉). 문항의 평균값은 4점 만점 중 1.81점으로 분석되었다. 본 문항 역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 평균(2.07점)은 남학생 평균(1.56점)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평균 1.55점, 중학생 평균 1.87점, 고등학생 평균 1.98점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슬픔과 우울을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반계고 2.01점, 특성화계고 1.89점로, 일반계고 학생의 체감 수준이 더 높았으며 가족유형의 경우 조손가정(1.49점)보다 양부모가정(1.79점),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2.07점)의 평균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상" 집단(1.67점)에서 "하" 집단(2.05점)으로 갈수록 체감하는 슬픔과 우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도 "상" 집단(1.69점)에서 "하" 집단(2.28점)으로 갈수록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하" 집단의 슬픔 및 우울 체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고 있어 본 집단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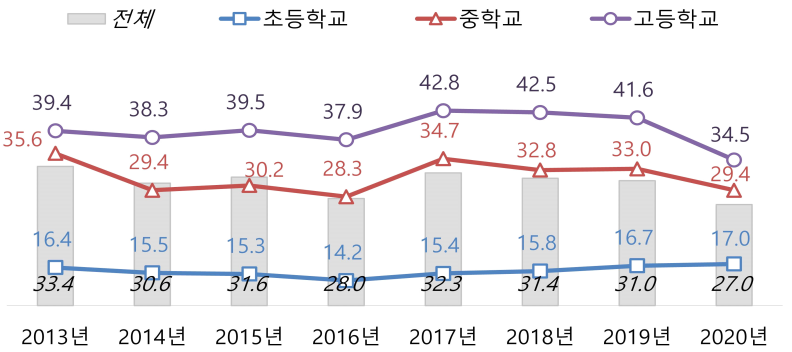
표 Ⅳ-5-40.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1(0.97)	52.6	20.3	21.0	6.0	100.0(8,555)	
성별	남학생	1.56(0.84)	63.8	19.5	13.8	2.9	100.0(4,428)	599.452***
	여학생	2.07(1.03)	40.6	21.2	28.8	9.4	100.0(4,127)	
학교급	초등학교	1.55(0.86)	65.5	17.4	13.2	3.8	100.0(2,850)	331.833***
	중학교	1.87(0.97)	48.1	22.5	23.3	6.1	100.0(2,728)	
	고등학교	1.98(1.02)	44.4	21.0	26.4	8.1	100.0(2,97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1(1.01)	42.9	21.8	27.4	8.0	100.0(2,400)	14.568**
	특성화계고	1.89(1.03)	51.0	18.0	22.5	8.5	100.0(5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9(0.96)	53.0	20.4	20.9	5.7	100.0(7,637)	75.080***
	한부모가정	2.07(1.05)	41.2	21.4	26.4	11.0	100.0(618)	
	조손가정	1.49(0.86)	71.6	10.4	15.1	2.9	100.0(93)	
	기타	1.60(0.92)	64.1	18.1	11.7	6.1	100.0(148)	
학업 성적	상	1.67(0.91)	59.0	19.8	16.5	4.7	100.0(2,682)	186.840***
	중	1.78(0.95)	53.4	20.5	21.1	5.1	100.0(3,825)	
	하	2.05(1.04)	42.3	20.6	27.2	9.9	100.0(1,990)	
경제적 수준	상	1.69(0.92)	58.1	19.5	17.7	4.8	100.0(4,792)	251.081***
	중	1.89(0.98)	47.8	21.8	24.0	6.4	100.0(3,080)	
	하	2.28(1.08)	33.8	19.0	33.0	14.2	100.0(617)	

**p 〈 .01, ***p 〈 .001.

본 문항 결과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친 값을 통해 살펴보면([그림 Ⅳ-5-18]), 전체 응답률은 2013년 33.42%에서 2016년 28.0%까지 감소했다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0년 다시 감소한 27.0%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급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10%대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중학교와 유사한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중학교 29.4%, 고등학교 34.5%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8.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표 Ⅳ-5-41.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전체(*N*)	우울증		
			M	*SD*	*t*/*F*(Scheffé)
전체		8,582	1.81	.87	-
성별	남학생	4,446	1.60	.76	-23.705***
	여학생	4,136	2.03	.91	
학교급	초등학교[a]	2,840	7.8	.04	275.436*** c>b>a
	중학교[b]	2,725	6.9	.04	
	고등학교[c]	2,966	6.5	.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659	1.80	.00	19.804*** b>a>c
	한부모가정[b]	620	2.05	.04	
	조손가정[c]	94	1.55	.08	
	기타[d]	149	1.67	.07	
학업 성적	상[a]	2,690	1.69	.02	101.215*** c>b>a
	중[b]	3,834	1.78	.01	
	하[c]	1,998	2.04	.02	
경제적 수준	상[a]	4,808	1.70	.01	136.838*** c>b>a
	중[b]	3,089	1.90	.02	
	하[c]	618	2.24	.04	

***p < .001.

우울증을 측정한 세 문항을 합한 값의 평균을 확인한 뒤, 각 배경변인 별 평균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의 전체 평균은 1.87점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분석 결과, 먼저 성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t값 -23.705로 $p <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동일하게 "상" 집단에서 "하"집단으로 갈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한 정도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행복한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5-42〉).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1.3%,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는 12.9%, '행복한 편이다'는 57.4%, '매우 행복하다'는 28.4%로 응답되어 전체 대상자의 85.8%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에 있어 남학생 평균 3.20점, 여학생 평균 3.06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 확인 결과 초등학생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3.11점, 고등학생 2.99점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고,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 2.95점, 양부모가정 3.14점, 조손가정 3.26점으로 조손가정 청소년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성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 역시 상위권으로 느낄수록 행복감의 체감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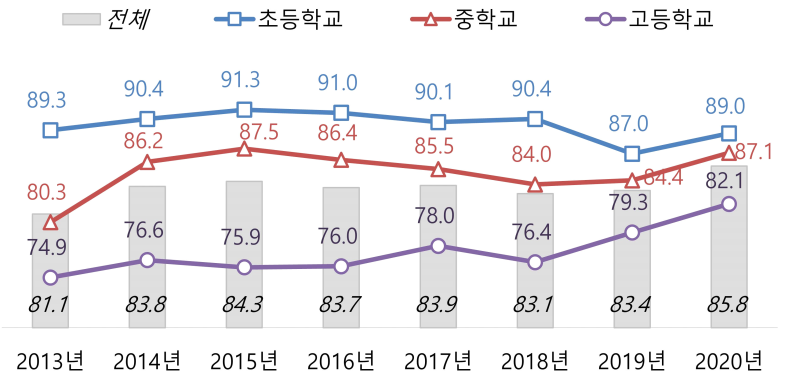
표 Ⅳ-5-42. 행복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3(0.67)	1.3	12.9	57.4	28.4	100.0(8,259)	
성별	남학생	3.20(0.66)	1.1	10.6	55.5	32.8	100.0(4,263)	100.890***
	여학생	3.06(0.67)	1.4	15.2	59.5	23.8	100.0(3,996)	
학교급	초등학교	3.31(0.69)	1.1	9.9	46.3	42.7	100.0(2,580)	422.672***
	중학교	3.11(0.62)	0.8	12.1	62.2	24.9	100.0(2,712)	
	고등학교	2.99(0.65)	1.9	16.1	62.8	19.3	100.0(2,9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4(0.66)	1.1	12.3	58.0	28.6	100.0(7,385)	75.861***
	한부모가정	2.95(0.73)	3.0	19.9	55.9	21.2	100.0(595)	
	조손가정	3.26(0.77)	3.8	8.6	45.7	41.9	100.0(86)	
	기타	3.19(0.77)	2.6	14.1	45.3	38.0	100.0(137)	
학업 성적	상	3.28(0.65)	0.7	8.6	52.7	38.0	100.0(2,579)	348.508***
	중	3.14(0.64)	1.1	11.6	59.9	27.4	100.0(3,675)	
	하	2.92(0.69)	2.3	21.1	59.2	17.5	100.0(1,951)	
경제적 수준	상	3.23(0.66)	0.9	9.8	54.3	35.0	100.0(4,600)	435.295***
	중	3.05(0.63)	1.0	14.4	63.3	21.3	100.0(2,993)	
	하	2.74(0.75)	5.3	28.4	53.2	13.1	100.0(604)	

***p 〈 .001.

체감하는 행복감의 연도별 추이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 항목의 합산값 기준으로 살펴보았다([그림 Ⅳ-5-19]). 전체적으로 81.1%~85.8% 범위에서 증가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89.3%에서 2015년 91.3%로 최고치를 보인 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에는 89.0%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의 행복도 수준을 보였으며 2013년 80.3%에서 2015년 87.5%로 증가 후 점차 감소했지만 2019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87.1%의 응답률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세 교급 중 가장 행복도가 낮은 편인데, 2013년 74.9%에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다 2020년 82.1%의 응답률을 보였다.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9.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앞 선 문항에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응답률은 40.6%였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응답이 2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10.5%,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7.8%,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5.5%,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급의 경우 학업문제 항목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33.1%, 중학교는 42.9%, 고등학교 43.0%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은 42.0%가 학업문제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한부모가정은 29.5%, 조손가정 12.1%가 학업문제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집단은 45.2%, "중" 집단 38.7%, "하" 집단 33.6%가 학업문제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항목의 경우는 "상" 0.5%, "중" 0.2%인데 반해 "하" 집단은 7.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표 Ⅳ-5-43.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40.6	10.5	5.5	1.7	7.8	24.0	10.0	100.0(1,129)	
성별	남학생	42.3	10.8	4.0	2.1	5.3	25.3	10.2	100.0(484)	12.828
	여학생	39.3	10.2	6.6	1.3	9.7	23.1	9.7	100.0(645)	
학교급	초등학교	33.1	14.5	8.9	2.3	10.8	18.8	11.7	100.0(276)	56.473***
	중학교	42.9	11.3	5.4	0.7	9.6	20.9	9.2	100.0(341)	
	고등학교	43.0	7.8	3.8	2.0	5.0	28.9	9.5	100.0(5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0	8.9	5.2	1.7	7.4	24.3	10.6	100.0(962)	47.314***
	한부모가정	29.5	20.4	8.1	1.6	10.8	24.2	5.4	100.0(132)	
	조손가정	12.1	13.2	0.0	6.6	28.8	9.3	29.9	100.0(8)	
	기타	54.8	21.0	8.6	0.0	3.4	7.8	4.4	100.0(21)	
학업 성적	상	48.1	11.3	4.0	0.7	6.9	20.1	8.9	100.0(235)	17.955
	중	39.9	11.7	5.6	1.2	7.5	23.8	10.3	100.0(457)	
	하	37.1	8.9	6.3	2.7	8.7	25.9	10.3	100.0(432)	
경제적 수준	상	45.2	8.2	7.0	0.5	7.7	21.0	10.6	100.0(478)	93.488***
	중	38.7	9.2	5.5	0.2	9.8	27.2	9.5	100.0(445)	
	하	33.6	18.6	2.3	7.9	4.1	23.7	10.0	100.0(198)	

***p 〈 .001.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추이[88]를 살펴보면([그림 Ⅳ-5-20]), 먼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중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이유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삭제됨에 따라, 2017년부터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Ⅳ-5-20.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④ 삶의 만족도

2015년부터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의 복지수준(subjective well-being)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진행하였다(김영지 외, 2017: 301).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of life satisfaction)'를 사용하였으며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중 하나를 선택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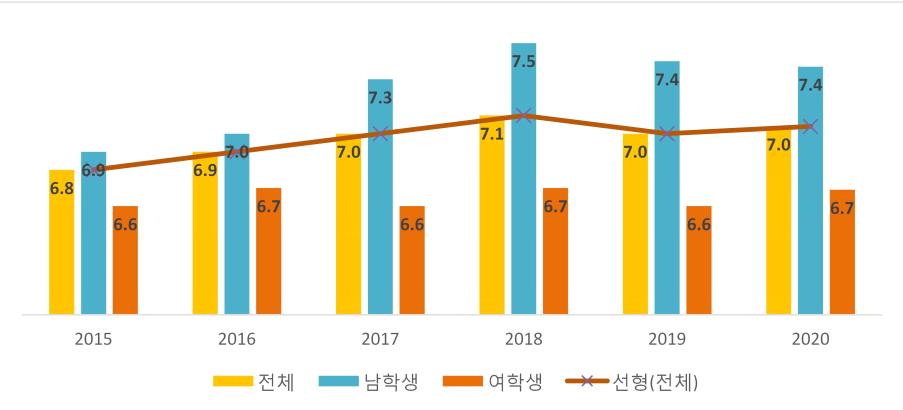


그림 Ⅳ-5-21.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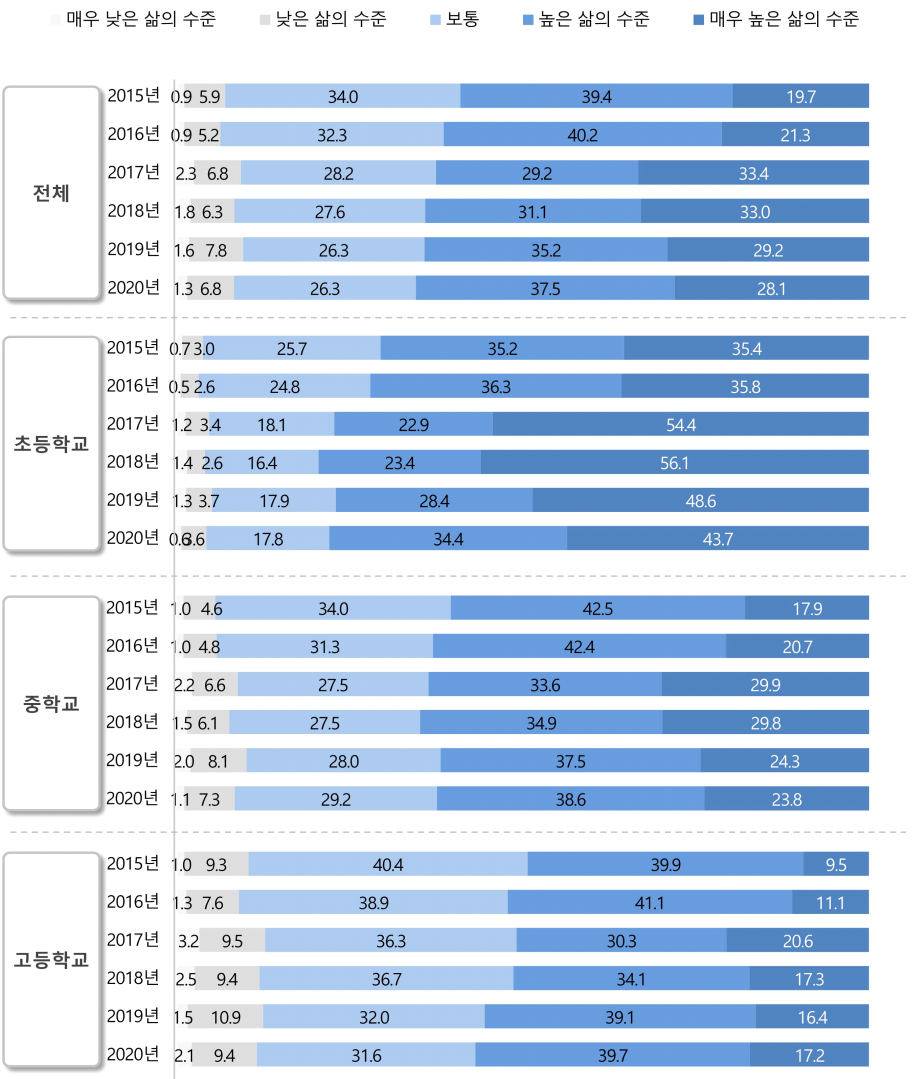
2020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표 Ⅳ-5-44〉), 10점 만점에 전체 평점은 7.0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성적, 경제적 차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급에서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 청소년은 한부모가정 청소년보다 삶에 만족하였으며, 조손가정 역시 한부모가정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4. 삶의 만족도

구분		전체(*N*)	*M*	*SD*	*t*/*F*(Scheffé)
전체		8,532	7.04	2.22	-
성별	남학생	4,416	7.37	2.14	14.295***
	여학생	4,116	6.69	2.24	
학교급	초등학교[a]	2,840	7.79	.04	275.436*** a>b>c
	중학교[b]	2,725	6.85	.04	
	고등학교[c]	2,966	6.51	.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624	7.10	.03	31.580*** a>b, c>b
	한부모가정[b]	612	6.21	.10	
	조손가정[c]	93	7.21	.26	
	기타[d]	144	7.17	.22	
학업 성적	상[a]	2,671	7.68	.04	304.498*** a>b>c
	중[b]	3,815	7.08	.03	
	하[c]	1,987	6.12	.05	
경제적 수준	상[a]	4,780	7.56	.03	416.193*** a>b>c
	중[b]	3,078	6.58	.04	
	하[c]	612	5.35	.10	

***p < .001.

삶의 만족도 결과를 이용하여 교급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과 매우 높은 삶의 수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하지만 낮은 삶의 수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삶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중, 고등학교는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1) 매우 낮은 삶의 수준: ⓪, ①　낮은 삶의 수준: ②, ③　보통: ④, ⑤, ⑥
높은 삶의 수준 ⑦, ⑧　매우 높은 삶의 수준 ⑨, ⑩
2) 본 그림은 최창욱 외(2018)의 [그림 Ⅳ-110]에 2019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재작성 하였음.
3) 위의 그래프에는 지면상 삶의 만족도 수준의 '매우 낮음'과 '낮음' 수치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Ⅳ-5-22.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⑤ 자아존중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3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그런 편이다 45.1%, 매우 그렇다 32.5%로. 77.6%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72.7%(그런 편이다 46.2%, 매우 그렇다 26.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경우 27.2%(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Ⅳ-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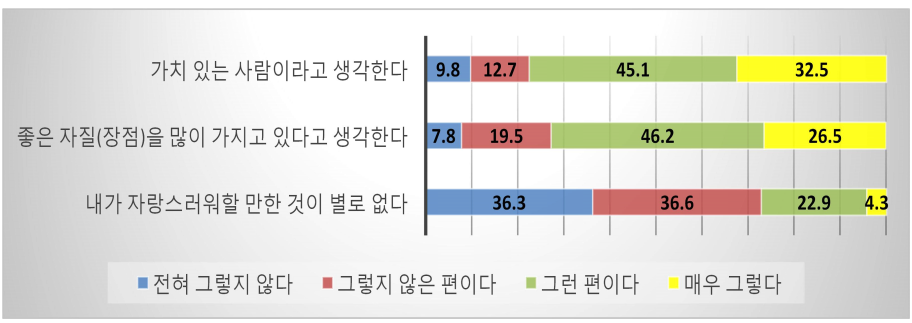


그림 Ⅳ-5-23.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첫 번째 문항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3.00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 남학생(3.01점)은 여학생(2.99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2.99점)은 초등학생(2.94점)보다, 중학생(3.08점)은 고등학생(2.99점)보다 가치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유형에서도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가정 3.03점, 한부모가정 2.81점, 조손가정 2.74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의 경우 "하" 집단에서 "상" 집단으로 갈수록 가치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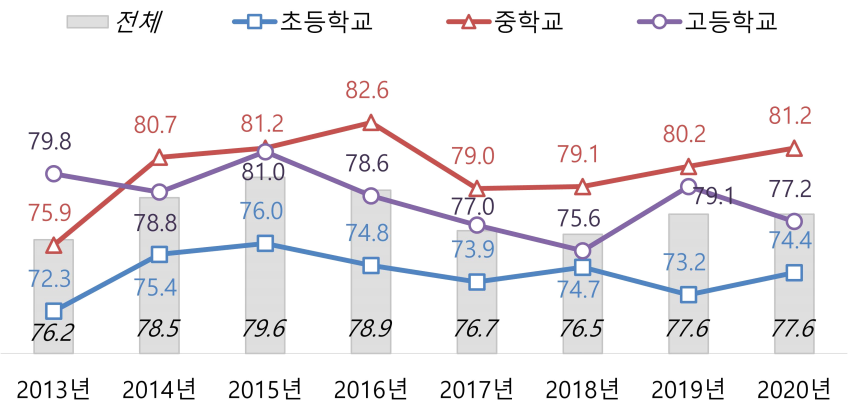
표 Ⅳ-5-45.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0(0.92)	9.8	12.7	45.1	32.5	100.0(8,552)	
성별	남학생	3.01(0.96)	11.7	10.2	43.2	34.9	100.0(4,429)	99.283***
	여학생	2.99(0.87)	7.7	15.3	47.0	30.0	100.0(4,123)	
학교급	초등학교	2.94(1.03)	15.4	10.2	39.6	34.8	100.0(2,847)	217.178***
	중학교	3.08(0.81)	5.1	13.6	49.0	32.2	100.0(2,726)	
	고등학교	2.99(0.89)	8.6	14.2	46.7	30.5	100.0(2,9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90)	9.0	12.2	45.6	33.2	100.0(7,633)	91.114***
	한부모가정	2.81(0.97)	12.8	19.7	41.1	26.4	100.0(619)	
	조손가정	2.74(1.10)	21.5	12.2	37.2	29.1	100.0(93)	
	기타	2.71(1.11)	23.0	11.1	38.1	27.8	100.0(148)	
학업 성적	상	3.18(0.93)	9.2	8.0	38.7	44.2	100.0(2,678)	357.141***
	중	2.98(0.90)	9.6	12.1	48.5	29.7	100.0(3,821)	
	하	2.82(0.90)	10.3	20.1	47.2	22.4	100.0(1,995)	
경제적 수준	상	3.09(0.93)	10.0	9.3	42.3	38.5	100.0(4,790)	268.269***
	중	2.92(0.87)	8.7	16.1	49.4	25.8	100.0(3,081)	
	하	2.75(0.90)	11.2	22.4	46.3	20.1	100.0(616)	

***p 〈 .001.

본 문항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응답률은 연도별로 감소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79.6%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 76.2%로 가장 낮았고 2020년은 77.6%로 2019년도와 같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증감을 보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13년 중학교 75.9%, 고등학교 79.8%였지만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중학교 81.2%, 고등학교 77.2%로 변화가 있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4.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문항인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 분석결과 전체 평점 2.91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2.95점)은 여학생(2.88점)보다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초등학생(2.99점)은 중학생(2.89점)과 고등학생(2.86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양부모가정의 청소년(2.94점)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각각 2.72점)보다 높은 값을 가졌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 집단에서 "상" 집단으로 갈수록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5-46.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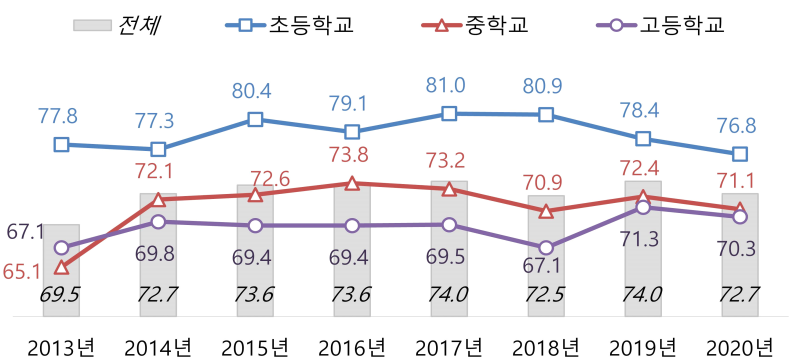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87)	7.8	19.5	46.2	26.5	100.0(8,548)	
성별	남학생	2.95(0.90)	9.0	16.4	45.0	29.6	100.0(4,426)	98.486***
	여학생	2.88(0.84)	6.4	22.9	47.4	23.3	100.0(4,12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2.99(0.86)	7.2	16.1	47.2	29.6	100.0(2,839)	73.390***
	중학교	2.89(0.84)	6.2	22.7	46.7	24.4	100.0(2,730)	
	고등학교	2.86(0.91)	9.7	19.9	44.7	25.6	100.0(2,9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86)	7.0	19.3	46.9	26.9	100.0(7,630)	86.653***
	한부모가정	2.72(0.97)	13.7	23.8	39.6	22.9	100.0(619)	
	조손가정	2.72(1.07)	20.6	13.3	40.0	26.1	100.0(93)	
	기타	2.80(1.01)	15.6	15.6	41.9	26.9	100.0(148)	
학업 성적	상	3.18(0.82)	4.9	11.7	43.5	39.9	100.0(2,673)	574.686***
	중	2.88(0.83)	7.2	19.9	50.4	22.5	100.0(3,824)	
	하	2.62(0.91)	12.7	29.1	41.5	16.6	100.0(1,994)	
경제적 수준	상	3.04(0.86)	6.7	14.6	46.4	32.4	100.0(4,789)	320.504***
	중	2.78(0.85)	8.2	25.3	47.2	19.4	100.0(3,078)	
	하	2.61(0.93)	13.5	29.0	40.1	17.4	100.0(617)	

***p 〈 .001.

본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여 교급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9.5%에서 2020년 72.7%로 전반적으로 70% 초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 고등학교는 유사한 경향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5.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 측정 마지막 항목인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평균값은 1.95점(부정적 문항)이며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1.84점)보다 여학생(2.07점)이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으며 중학생(2.03점)과 고등학생(2.04점)은 초등학생(1.78점)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부모가정(2.13점)은 양부모가정(1.94점)과 조손가정(1.74점)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고 인식했으며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Ⅳ-5-47.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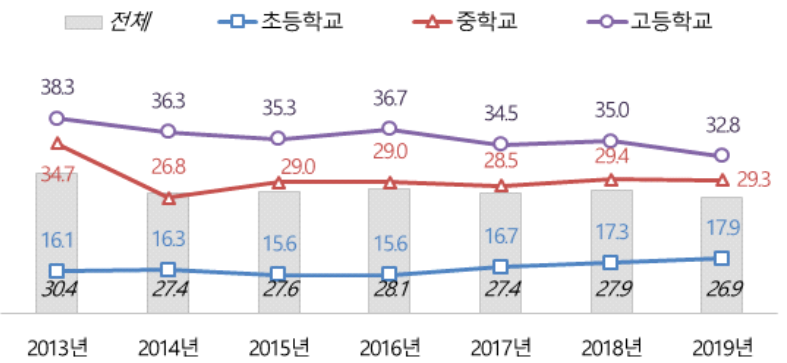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5(0.87)	36.3	36.6	22.9	4.3	100.0(8,566)	
성별	남학생	1.84(0.85)	41.5	35.9	19.3	3.3	100.0(4,438)	142.330***
	여학생	2.07(0.88)	30.6	37.4	26.7	5.3	100.0(4,128)	
학교급	초등학교	1.78(0.84)	45.2	35.1	16.2	3.4	100.0(2,856)	194.585***
	중학교	2.03(0.86)	31.1	39.0	25.5	4.4	100.0(2,732)	
	고등학교	2.04(0.89)	32.3	35.9	26.8	4.9	100.0(2,9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0.86)	36.2	37.1	22.7	4.0	100.0(7,646)	59.539***
	한부모가정	2.13(0.97)	32.5	31.5	27.0	9.0	100.0(619)	
	조손가정	1.74(0.77)	45.2	36.9	17.2	0.8	100.0(93)	
	기타	1.79(0.86)	46.6	30.1	20.9	2.4	100.0(149)	
학업 성적	상	1.69(0.80)	49.6	34.3	13.6	2.5	100.0(2,685)	611.158***
	중	1.96(0.83)	33.4	40.5	22.8	3.3	100.0(3,826)	
	하	2.29(0.92)	23.6	32.2	35.8	8.4	100.0(1,997)	
경제적 수준	상	1.80(0.83)	43.4	36.2	17.4	3.0	100.0(4,800)	479.133***
	중	2.10(0.86)	28.2	38.3	29.1	4.4	100.0(3,083)	
	하	2.43(0.95)	19.3	31.6	35.7	13.5	100.0(618)	

***p 〈 .001.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항에 대한 교급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감소해가는 추이를 보였으며 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보다 낮은 응답률을 유지해갔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수치가 높았으며

2019년 중학교 29.3%, 고등학교 32.8%의 응답률을 보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6.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표 Ⅳ-5-48.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	*SD*	*t*/*F*(Scheffé)
전체		8578	3.00	.71	
성별	남학생	4443	3.04	.71	6.960***
	여학생	4135	2.93	.71	
학교급	초등학교[a]	2866	3.05	.01	19.267*** a>b, a>c
	중학교[b]	2732	2.98	.01	
	고등학교[c]	2981	2.94	.0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a]	7657	3.01	.00	17.236*** a>b
	한부모가정[b]	620	2.80	.03	
	조손가정[c]	93	2.91	.08	
	기타[d]	149	2.90	.06	
학업 성적	상[a]	2688	3.22	.01	316.295*** a>b>c
	중[b]	3833	2.97	.01	
	하[c]	1998	2.72	.02	
경제적 수준	상[a]	4807	3.11	.01	198.545*** a>b>c
	중[b]	3087	2.87	.01	
	하[c]	618	2.65	.03	

***p < .001.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의 평균을 배경문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모두 $p <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그리고 고등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모두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Ⅳ-5-27]). 가장 많은 대화상대는 어머니로 36.6%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구가 36.0%, 형제자매가 7.1%, 아버지 4.5%, 이웃친척 1.4%, 청소년 관련기관과 학교 상담교사, 담임교사는 각각 0.3%에 머물렀으며 대화상대가 없는 경우도 11.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결국 아동·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약 50%는 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과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담기관 및 학교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등 공식적인 상담 관련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러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11.6%가 된다는 것은 기관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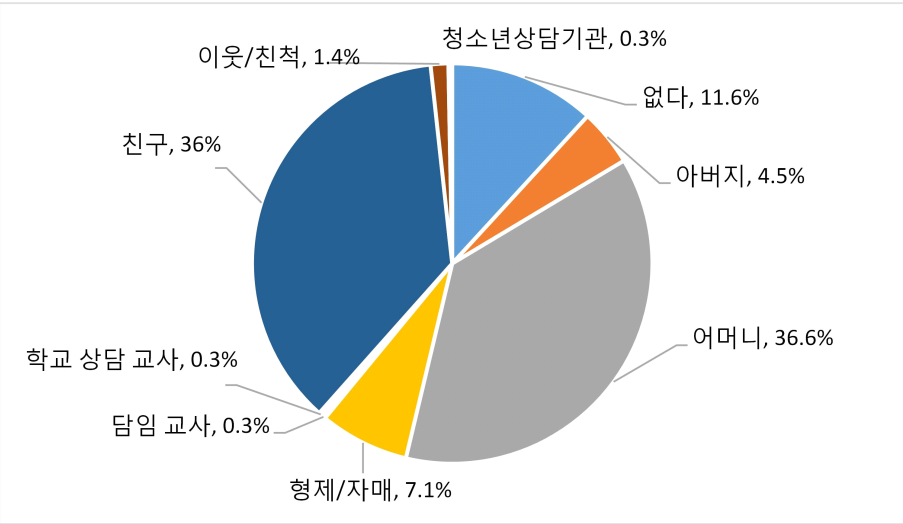


그림 Ⅳ-5-27. 고민거리 대화상대

배경변인에 따른 대화상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은 어머니 37.7%, 친구 33.1%로 높게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친구가 가장 많은 39.0%, 다음으로 어머니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46.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9.6%, 43.4%로의 응답률로 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급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양부모가정의 경우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례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가정은 친구가 36.8%로 가장 많았고, 조손가정 역시 친구가 33.0%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 집단은 어머니 46.2%, “중”집 단과 “하” 집단은 친구와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수준에 있어서 “상” 집단은 어머니가 40.7%로 가장 많았고 “중” 집단과 “하” 집단은 친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하” 집단의 경우 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20.9%로 나타나 물질적, 정서적 고립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5-49. 고민거리 대화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기관선생님	기타	전체(N)	χ^2
전체		11.6	4.5	36.6	7.1	0.3	0.3	36.0	1.4	0.3	2.0	100.0(8,329)	
성별	남학생	11.8	7.0	37.7	5.8	0.5	0.3	33.1	1.4	0.3	2.2	100.0(4,281)	186.612***
	여학생	11.3	1.8	35.4	8.5	0.1	0.4	39.0	1.3	0.3	1.7	100.0(4,049)	
학교급	초등학교	10.0	4.5	46.7	7.9	0.2	0.3	24.6	2.2	0.3	3.2	100.0(2,758)	353.904***
	중학교	13.3	4.0	33.3	6.8	0.2	0.4	39.6	0.9	0.4	1.0	100.0(2,685)	
	고등학교	11.5	4.9	29.9	6.6	0.5	0.3	43.4	1.1	0.2	1.6	100.0(2,88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1.0	4.3	37.7	7.1	0.2	0.3	36.0	1.2	0.4	1.9	100.0(7,437)	134.279***
	한부모가정	16.4	7.1	25.6	7.4	1.0	0.8	36.8	3.3	0.2	1.2	100.0(602)	
	조손가정	18.5	7.3	21.8	6.7	1.7	0.0	33.0	3.2	0.0	7.8	100.0(93)	
	기타	15.8	1.5	32.2	9.9	0.9	0.8	33.4	2.0	0.0	3.5	100.0(140)	
학업성적	상	9.5	4.4	46.2	7.2	0.2	0.3	28.4	1.5	0.2	2.1	100.0(2,610)	285.730***
	중	10.8	4.3	36.1	7.6	0.3	0.3	37.0	1.1	0.3	2.1	100.0(3,718)	
	하	15.9	4.8	24.3	6.1	0.4	0.4	44.4	1.5	0.5	1.7	100.0(1,945)	
경제적수준	상	8.9	5.1	40.7	6.8	0.3	0.4	33.9	1.5	0.4	2.1	100.0(4,637)	193.033***
	중	13.7	3.6	32.5	7.9	0.3	0.2	38.3	1.2	0.4	2.0	100.0(3,018)	
	하	20.9	4.4	24.3	6.3	0.2	1.0	40.9	1.0	0.0	1.0	100.0(609)	

***p 〈 .00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 · 청소년복지 예산

①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 간 아동빈곤율 비교를 위해 OECD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0세~17세를 기준으로 제시된다. 최신자료 중 국가의 수치가 충실하게 입력된 2016년 자료를 분석시점으로 하였다.

아동빈곤율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북유럽이 낮으며, 유럽대륙국가, 영미국가 순으로 높은 아동빈곤율을 보였다. 복지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국가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7.7%), 덴마크(3.7%), 핀란드(3.3%)는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럽대륙국가인 프랑스(11.5%), 독일(12.3%)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중심의 복지정책의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영국(11.8%), 미국(20.9%), 호주(12.5%)는 편차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빈곤율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15.2%)는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5-50〉에는 일부국가가 제외되어 있지만, 표에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미국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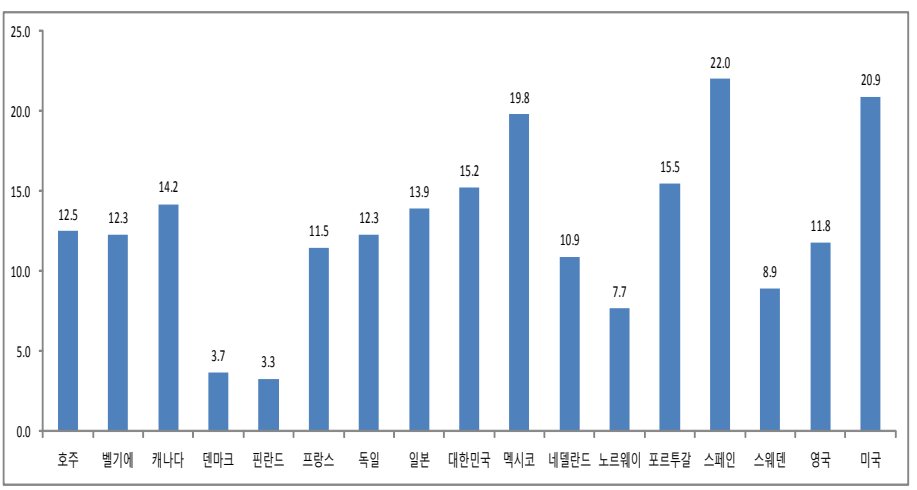
표 Ⅳ-5-50. 국가별 아동빈곤율

(단위: %)

국가명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동빈곤율	12.5	12.3	14.2	3.7	3.3	11.5
국가명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아동빈곤율	12.3	10.0	17.3	15.2	19.8	10.9
국가명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아동빈곤율	7.7	15.5	22.0	8.9	11.8	20.9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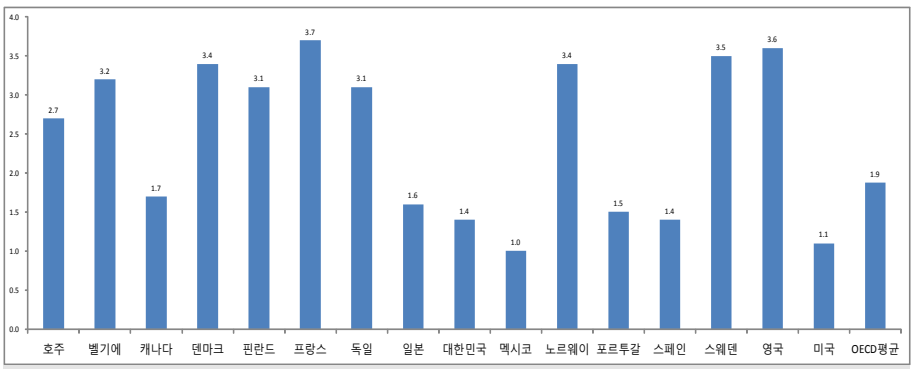
아래 [그림 Ⅳ-5-28]은 국가별 아동빈곤율을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프 수치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며, 덴마크와 핀란드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부유럽국가와 영미권 국가에 비해 하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그림 Ⅳ-5-28.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6년 기준)

아동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공적지출은 어떤 수준인지 국가 간 자료를 비교하였다. 자료는 OECD에서 제시한 가족 · 아동 관련 공적지출 비중(GDP 대비)이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3.1%), 덴마크(3.4%), 스웨덴(3.5%)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미권 국가인 영국(3.6%), 호주(2.7%), 미국(1.1%)등이다. 유럽대륙국가인 프랑스(3.7%), 독일(3.1%)등은 전반적으로 지출수준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4%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며, 멕시코(1.0%), 미국(1.1%)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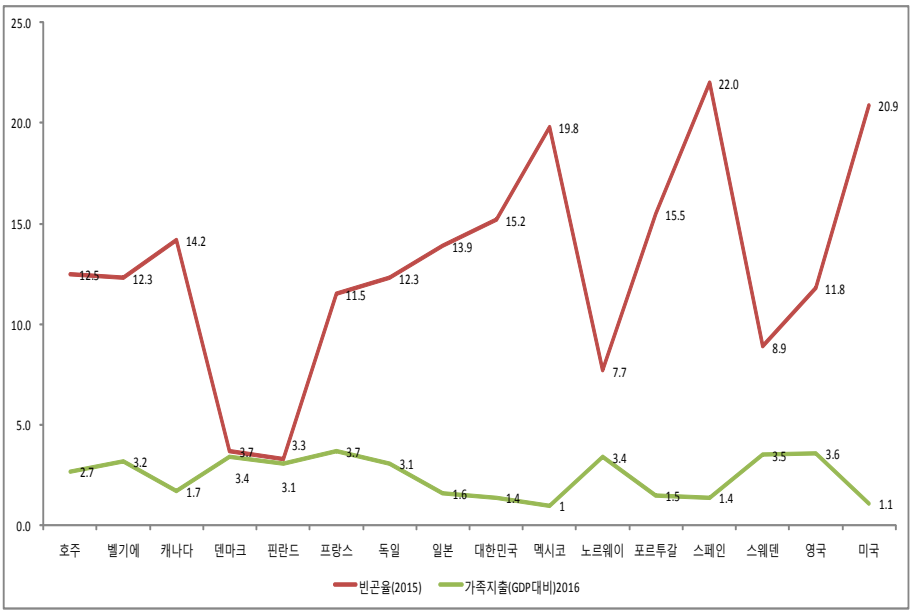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그림 Ⅳ-5-29.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2015년 기준)

공적 가족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적가족지출비중과 아동빈곤율을 국가별로 제시하였다. 공적가족지출비중이 높은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은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출비중이 낮은 국가들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등은 아동빈곤율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확인된 빈곤율 수치([그림 Ⅳ-5-28])와 가족지출([그림 Ⅳ-5-29])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그림 Ⅳ-5-30])을 보면 아동빈곤율이 낮은 나라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가족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책적 개입(가족지출)이 아동빈곤율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따른 아동빈곤율의 차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 주: 1) 지출과 정책효과간 시간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2) 그림 Ⅳ-5-28과 그림 Ⅳ-5-29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Ⅳ-5-30.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간의 관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아동빈곤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빈곤율 조사는 소득과 소비영역으로 구성되며, 소득은 세부적으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

분소득으로 구분된다. 지출은 소비지출과 가계지출로 되어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로, 연구자 및 국가별로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중위50%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표 Ⅳ-5-51. 아동빈곤율

구분	연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소득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빈곤율	2016	15.9	20.7	26.1	12.2	17.9	23.8	11.9	17.6	23.7	6.0	10.8	17.1	8.2	13.1	19.1
	2017	16.0	20.8	26.0	12.1	17.5	23.5	11.8	17.3	23.2	5.8	10.4	16.3	7.9	12.6	18.8
	2018	16.0	21.0	26.0	11.8	16.9	23.0	11.3	16.7	22.6	5.5	10.3	16.3	7.7	12.4	18.3
아동빈곤율	2016	10.3	15.5	21.0	9.3	15.2	21.5	9.3	15.2	21.7	1.3	3.9	8.5	2.7	5.7	11.0
	2017	9.6	14.5	19.7	8.6	13.9	20.1	8.5	14.2	19.9	1.7	4.1	8.0	2.8	5.5	10.4
	2018	8.3	13.1	18.5	7.3	12.3	18.8	7.0	12.3	19.0	1.1	3.4	7.4	2.0	4.6	9.2

* 출처: 이현주, 박형존, 이정윤(2020). 2019 빈곤통계연보 〈표 3-18〉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50, 〈표2-2〉 중위소득 지출 기준 빈곤율 p.30.

* 주: 1) 빈곤율을 조사하는 원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변경되어 2016년 이후 수치부터 제시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단위는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등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대상이다. 문항은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현주 외, 2020).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3년간(2016~2018)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빈곤율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동빈곤율은 모든 세부항목에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소득부분에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빈곤율이 0.3%~0.8%까지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중위소득 50% 기준, 2016~2018). 이러한 아동빈곤율의 감소와 시장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빈곤율 감소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빈곤율 조사에서 2018년 중위 50% 기준 아동빈곤율이 13.1%이지

만, 전체 빈곤율은 21.0%로 아동빈곤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표 Ⅳ-5-5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19세 미만)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3	20,871	37,804	217,593	1,258,582
	1.7	3.0	8.6	100.0
2014	20,428	34,928	196,479	1,237,386
	1.7	2.8	7.9	100.0
2015	24,242	73,176	353,528	1,554,484
	1.6	4.7	11.4	100.0
2016	21,988	73,282	343,420	1,539,539
	1.4	4.8	11.2	100.0
2017	19,886	65,139	301,851	1,491,650
	1.3	4.4	10.1	100.0
2018	21,744	64,948	281,224	1,653,781
	1.3	3.9	8.5	100.0
2019	31570	101,611	222,850	1,792,012
	1.8	5.7	12.4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7a, 2018a, 2019i, 2020a). 2016년-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2019년의 구분은 영유아기 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로 구분되어, 본 표에서 영유아기는 0~4세, 학령기는 5~9세, 청소년기는 10~19세에 기입함.

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나이별 수급자 비중의 차이는 변동이 없으나, 10~19세의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지속되고 있다. 10~19세의 청소년기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아동기의 수급자 수는 0~9세를 합한 수치도 10만 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0~9세)보다 청소년기(10~19세)의 수급자 비중이 높은 것이 정책적 지원의 차이인지, 인구상 변화에 따른 것인지는 추가 분석과 청소년기의 수급자 수가 많은 것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한부모가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 수는 2015년 19,561천 가구에서 2019년 20,891천 가구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한부모 가구 수는 2015년 1,608천 가구에서 2019년 1,529천 가구로 비중이 8.2%에서 7.3%로 감소하였다.

표 Ⅳ-5-53.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가구(A)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한부모 가구	1,608	1,540	1,533	1,539	1,529
한부모 가구비율	8.2	7.8	7.6	7.5	7.3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20년 12월 9일 인출.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세대수와 세대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6	수	187,841	468,414	145,258	362,674	41,627	103,966	956	2,311
	비율	100.0%	-	77.3%	-	22.2%	-	0.5%	-
2017	수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비율	100.0%	-	78.0%	-	21.5%	-	0.5%	-
2018	수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비율	100.0%	-	78.2%	-	21.3%	-	0.5%	-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3.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세부적으로 총 세대수는 2016년에 187,841세대이며, 세대원은 468,414명이었고, 2018년에는 182,731가구, 세대원은 452,341명이다. 모자가족은 2016년 145,258세대였으나, 2018년은 142,830세대로 약 2,500세대가 감소했으나 비중은 0.9% 증가하였다. 반면 부자가족은 2016년 대비 2018년 0.9% 감소하였고, 세대원은 약 7천 명 가량 감소하였다. 조손가족의 비중과 세대수, 세대원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서비스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 · 양육시설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 파악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원수준, 그리고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양육시설 예산을 통해 정부의 지원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Ⅳ-5-55〉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20년 5,0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은 2012년 6,913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2,79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예산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3,028백만원이었고 가정위탁지원 예산은 2019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감소하여 1,044백만원이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예산 중 하나이며 2020년 현재 136,000백만원으로 4,148개소에 월 569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표 Ⅳ-5-55.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20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2	7,600	6,913	960	1,521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2013	15,261	7,259	1,014	1,369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2014	7,630	7,407	1,024	1,232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2015	7,630	8,623	1,021	1,232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2016	7,630	13,714	1,000	1,232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2017	6,867	16,476	1,012	1,241	112,100 (4,113개소, 월 473만원)
2018	6,524	19,132	1,021	1,285	122,600 (4,124개소, 월 516만원)
2019	6,198	21,163	3,218	1,500	126,000 (4,135개소, 월 529만원)
2020	5,088	22,793	3,028	1,044	136,000 (4,148개소, 월 569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6c, 2017d, 2018e).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각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2018). 각 연도 기금사업활동.
보건복지부(2019h).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p.428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7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에 포함되는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학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 등 제공된다(여성가족부, 2019c: 639). 지원사업 대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5-56〉).

표 Ⅳ-5-5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	학교수[1] (초·중·고)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대응투자)
2006년	30지역 (기존15, 신규15)	인구25만 이상	163교 (초99, 중61, 고3)	153,175명 (16,719명)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2007년	60지역 (기존30, 신규3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26,826명[2] (35,110명)	642억 원 (374억 원,268억 원)
2008년	60지역 (기존60)	인구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04,464명 (27,904명)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2009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8교 (초304, 중230, 고4)	490,081명 (40,275명)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2010년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4교 (초296, 중234, 고3)	452,467명 (35,725명)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2011년	11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356교 (초670, 중681, 고5)	1,086,434명 (71,853명)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2012년	143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302,250명 (72,881명)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2013년	148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247,836명 (65,291명)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2014년	14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8교 (초903, 중880, 고65)	1,256,387명 (60,056명)	1,404억 원 (1,297억 원, 107억 원)
2015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3교 (초890, 중861, 고70)	1,186,303명 (54,357명)	1,286억 원 (1,232억 원, 54억 원)
2016년	-	단위학교	1,795교	-	1,286억
2017년	-	단위학교	1,806교	-	1,352억
2018년	-	단위학교	3,573교 (사업학교 1,720교, 연계학교 1,853교)	-	1,426억
2019년	-	단위학교	3,578교 (사업학교 1,749교 연계학교 1,829교	-	1,392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p.323. 여성가족부(2016b). 2016 청소년백서. p.306.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332.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371.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373.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 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수 포함.

2019년 기준으로 총 3,578개교가 지원대상이며 그 중 사업학교 1,749교, 연계학교 1,829교이며 사업예산 지원액은 1,392억인데 이는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63개교였던 지원대상 학교는 점차 증가하다 2011년에 1,356개가 넘어섰고, 2018년에는 3,573개교로 큰 폭의 증가

를 보였다. 예산 역시 2006년 359억원에서 2011년 1,566억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2020년 1,392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다. 드림스타트 사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는 2006년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로, 희망스타트에서 2008년 드림스타트로 변경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640)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677억 예산을 이용하여 150,052명의 아동 및 97,739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Ⅳ-5-57.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07	16	50	3,769	2,465
2008	32	98	9,901	6,516
2009	75	225	26,208	17,141
2010	101	301	32,641	21,699
2011	131	372	44,651	29,332
2012	181	462	65,724	42,387
2013	211	576	95,133	61,630
2014	220	632	107,127	66,551
2015	229	658	125,562	80,102
2016	229	668	134,853	86,681
2017	229	668	144,289	93,298
2018	229	677	150,052	97,739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205.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205.

연도별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 지역은 2007년 16개 지역에서 2009년 75개로 증가하다 2010년 101개로 늘어나고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2015년 229개 지역이 된 후 계속 유지 중이다. 사업예산과 아동 수는 2007년 50억, 3,769명이었는데, 2009년 225억, 26,208명으로 큰 폭의 증가이후 점진적인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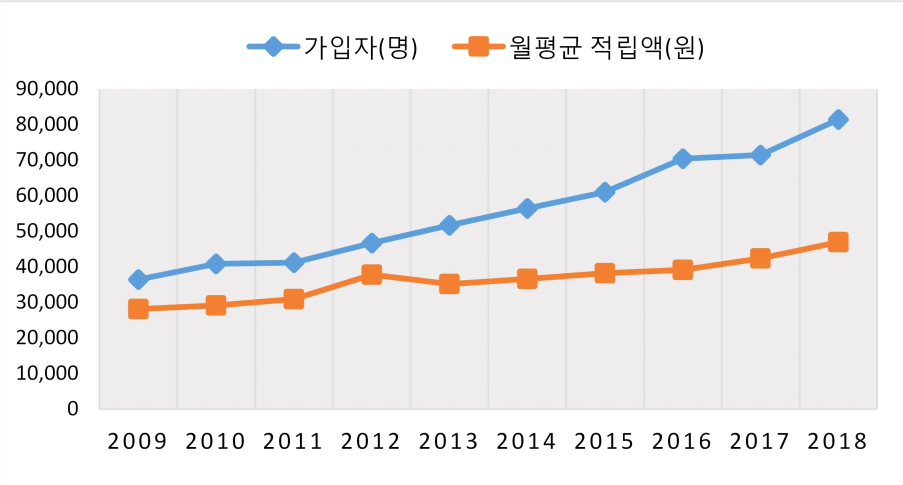
가 추이를 보이다 2016년부터 예산은 유지 및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용아동의 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과 보호대상 아동에게 있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의지 함양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9b: 210). 디딤씨앗통장은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만 0세~17세까지 아동(후원자)의 저축액을 정부가 매칭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9b: 211). 저축액은 학자금과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e: 233).

디딤씨앗통장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가입 아동의 수는 81,412명으로 2009년 36,469명에 비해 만여 명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적립액 또한 2009년 28,184원에서 2018년 46,970원으로 증가하였다. 적립금의 경우 아동적립금은 258억원에서 2,229억원으로, 정부 적립금은 223억원에서 1,62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 3,853억이 적립되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매월 8만원을 0세에서 17세까지 적립할 경우 총 1,936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본 수령액이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매칭 금액의 증가를 통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청소년백서. p.164.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182.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210.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212.

* 주: 본 그림은 〈표 Ⅳ-5-58〉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Ⅳ-5-31.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표 Ⅳ-5-58.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 (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2017	71,457	42,416	1,861	1,369	3,230
2018	81,412	46,970	2,229	1,624	3,853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2016 청소년백서. p.164.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182.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210.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212.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5장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장애의 경우, 장애아동 · 청소년의 교육 및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2019년 특수학교의 수는 177개교로 2015년 대비 10개교, 2018년 대비 2개교가 증설되었다. 특수학급 수는 11,105개로 2015년 대비 1,237개, 2018년 대비 429개가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전년 대비 2,178명 증가하여 92,958명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아동·청소년 통합비율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 대상 92,958명 중 71.6%인 66,499명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으며 그중 50,812명은 특수학급에, 15,687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다. 장애청소년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2019년 7,727명의 졸업자 중 49.3%가 진학하였고 11.0%가 취업하였는데 특수학교의 경우 진학자는 55.7%, 취업자는 2.6%였으며 특수학급 졸업자 중 43.2%가 진학하였고, 18.2%가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학급의 경우 55.8%가 진학을 하였으며 5.2%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졸업생 중 진학률은 일반학급이, 취업률은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 사망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률과 신생아 후기 사망률을 합한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6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천 명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0세가 인구 10만 명당 268.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4세가 14.5명, 5세~9세가 7.7명으로 낮아지다 다시 10세~14세에 8.0명, 15세~19세 22.4명, 20세~24세 33.6명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20~24세가 인구 십만 명당 2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0세가 16.6명,

15~19세가 14.4명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의 원인은 0세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인이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세는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4세, 15~19세, 20~24세 연령대에서는 모두 자살이 2.1명, 8.5명, 17.8명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 중 범죄피해율의 결과는 2019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는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가 24,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가 23,352건, 교통범죄 16,801건, 절도 12,65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안전(범죄로부터)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86.4%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9.7%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먼저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 수는 11,657개교이며 총 8,035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병원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진료센터제도는 2017년부터 3년동안 1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1기 사업은 총 7곳을 운영하였으며 2기 사업은 기존 병원에 서울, 대전, 전남 3곳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365일 받을 수 있는 센터로, 2020년 현재 서울에 3개소, 울산, 인천, 경기서북, 경기동남, 충남,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말 세종, 충북, 전주 각 1개소씩 추가되어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4개소와 경기, 충북, 전북 각각 2개소, 그 외 경북 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강원, 경남 지역에 각 1개소로 총 18개소의 달빛어린이 병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관 중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개

시도에 각 1개씩, 전국 시·군·구에서 214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설치율은 전체 93.1%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100%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 37개소, 서울 25개소, 경북 24개소 등 전국 시·군·구에 241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Wee프로젝트 기관으로,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의 경우 경기 1,610개소, 서울 830개소, 경남 494개소 등 전국 6,930개소의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Wee센터는 서울 27개소, 경기 25개소, 경북 23개소 등 전국 20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먼저 의료급여대상 아동·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1종과 2종을 합친 의료급여 수급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228,982명이 급여 대상자이며, 연령별로는 15~19세가 101,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치료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도 기준으로 1세~18세 전체 미치료율은 3.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세~18세가 5.5%로 가장 많았다. 치과 미치료율은 전체연령의 경우 9.4%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세~18세로 15.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세~14세 11.1%, 1세~5세 9.4%, 6세~11세 5.4% 순으로 분석되었다. 중,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6.7%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고등학생 전체 음주율은 15.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결과 대비 1.9% 감소한 수치이다. 평생 약물 경험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0.5%가 기분의 변화 및 환각, 살빼기 등의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 각성제, 히로뽕 등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증진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19점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분석결과 88.1%가 건강하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운동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회가 24.5%, 한 달에 1~2회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2%대의 응답을 보였다. 아동 ·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7.2시간 동안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분석결과, 9시간 이상 수면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시간 이상~9시간 미만이 20.4%로 많았으며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18.8%,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17.1%,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11.0%, 5시간 미만도 5.5%로 조사되었다. 수면부족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1순위 응답을 보면, 숙제, 인터넷 강의 등 가정학습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원 및 과외 15.5%, 동영상, 블로그 등 인터넷 이용 14.9%,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게임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건강 조사와 관련한 비만율과, 천식, 비염, 아토피, 주의력결핍장애에 관해 조사한 결과, 2019년 전체 기준으로 저체중 5.4%, 정상 68.8%, 과체중 10.7%, 비만 15.1%로 나타났으며 정상 체중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 우울,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73.0%, '가끔 생각한다' 23.1%, '자주 생각한다' 3.9%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27%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항목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27.7%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6.1%,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27.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7% 내외의 아동 · 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분석결과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1.3%,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는 12.9%, '행복한 편이다'는 57.4%, '매우 행복하다'는

28.4%로 응답되어 전체 대상자의 85.8%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응답률은 40.6%였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응답이 24.0%,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10.5%,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7.8%,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5.5%,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순으로 응답되었다.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전체 평점은 7.0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그런 편이다 45.1%, 매우 그렇다 32.5%로 77.6%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72.7%(그런 편이다 46.2%, 매우 그렇다 26.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의 경우 27.2%(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대화상대는 어머니로 36.6%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구가 36.0%, 형제자매가 7.1%, 아버지 4.5%, 이웃이나 친척 1.4%, 청소년관련기관과 학교 상담교사, 담임교사는 각각 0.3%에 머물렀으며, 대화상대가 없는 경우도 11.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동·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약 50%는 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과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담기관 및 학교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등 공식적인 상담 관련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러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11.6%가 된다는 것은 기관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아동빈곤율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3년간(2016~2018)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빈곤율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동빈곤율은 모든 세부항목

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15.2%)는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편으로 자료가 제시된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미국과 같이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지원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10~19세의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게 지속되고 있다. 10~19세의 청소년기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아동기의 수급자 수는 0~9세를 합한 수치도 10만 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한부모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수는 2015년 19,561천 가구에서 2019년 20,891천 가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한부모 가구 수는 2015년 1,608천 가구에서 2019년 1,529천 가구로 비중이 8.2%에서 7.3%로 감소하였다.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세대수와 세대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먼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아동복지지설 기능보강 예산과 요보호아동자립지원예산, 가정위탁지원예산 모두 감소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예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예산은 증가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총 3,578개교가 지원대상이며 그 중 사업학교 1,749교, 연계학교 1,829교이고, 사업예산 지원액은 1,392억인데 이는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677억 예산을 이용하여 150,052명의 아동 및 97,739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2018년 가입 아동의 수는 81,412명으로 2009년 32,197명에 비해 만여 명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적립액 또한 2009년 28,186원에서 2018년 46,970원으로 증가하였다. 적립금의 경우 아동 적립금은 258억원에서 2,229억으로, 정부 적립금은 223억에서 1,624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 3,853억이 적립되었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속한 소분류 지표인 '교육기회 보장 정도'에서 '학생진학률'에 관한 세부지표를 제외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고려하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세부지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소분류 지표인 '학교부적응률'에서는 2019년 세부지표 '학업포기 결심 여부와 이유'를 명명을 달리하여 '학업중단 생각 여부와 이유'로 수정하였다.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에 속하는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2019년에 세부지표에 속하였던 '학교문화'와 '학교생활만족도'의 2개 세부지표를 하나로 통일하여 '학교생활만족도'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2019년 소분류지표의 명칭이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로·직업 교육'으로 수정하고 2개의 세부지표명도 변경하여 '진로교육 현황'과 '직업교육 현황'으로 하였다.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 Ⅶ-1-1〉은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에 대한 비교 내용이 나타나있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구매력 가치로 치환한 화폐단위로 불리는 구매력지수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사용한다. OECD는 2018년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의 기준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각국의 교육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한 값을 전체 학생수로 나누고, 이 값을 다시 PPP로 나눈 것으로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산출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각국의 교육기관이 지출한 모든

금액을 학생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PPP로 나눈 값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산출하게 되었다.

표 Ⅳ-6-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2 (2015)	한국	8,811	28	9,728	30	9,896	31
	OECD 평균	8,247	22	9,518	25	15,028	41
2013 (2016)	한국	9,341	29	9,913	30	9,353	29
	OECD 평균	8,477	22	9,811	25	15,772	41
2014 (2017)	한국	9,656	29	10,316	31	9,570	28
	OECD 평균	8,733	22	10,106	25	16,143	40
2015 (2018)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2016 (2019)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2016-2018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산출 기준 변경
기존 산출식:{(경상비+자본비)/학생 수}/PPP
신규 산출식:{(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유·초·중등 교육단계에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약 6조 8천억 원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3)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4) 공교육비 비율: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5) 한국 1인당 GDP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2012년 US$ 32,022, 2013년 US$ 32,664, 2014년 US$ 33,632, 2015년 US$ 35,204, 2016년 US$ 37,143
6) 한국 PPP(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환율은 2000년 $1당 731.19원, 2005년 $1당 788.92원, 2010년 $1당 823.67원, 2012년 $1당 860.25원, 2013년 $1당 871.41원, 2014년 $1당 870.74원, 2015년 $1당 870.93원, 2016년 $1당 862.55원

〈표 Ⅳ-6-1〉을 보면 최근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이 OECD보다 공교육에의 투입 비용이 각각 9%와 8%나 상회하여 30%와 33%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고등교육과정에서 한국의 공교육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0%나 적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사립대학 비율이 전체 대학 수의 80%가 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교육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나쳐 과잉 교육의 상황이며,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 교육시간에 여가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표 Ⅳ-6-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9)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19).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p.447.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표 Ⅳ-6-2〉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2011년~2010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으로부터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의 학생 수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쳐 2011년 이후 모든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만큼 학생 개개인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더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0.6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6-3. 학급당 학생 수(2011~2019)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24.5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5.2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8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6.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p.447.

〈표 Ⅳ-6-3〉에서는 2011년~2019년 동안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 개개인 교육의 기회에 대한 보장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 또한 한국의 저출산 추세 영향으로 인해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뚜렷이 증명하는 것이 최근 유치원의 2019년 학급당 학생 수는 17.0명으로 모든 학교급과 연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Ⅳ-6-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국제비교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2002)	한국	32.1	21.5	20.9	36.5	38.5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2007)	한국	28.0	20.8	16.0	32.6	35.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2012)	한국	21.1	19.7	16.5	27.5	34.7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2017)	한국	16.8	15.7	14.1	23.4	30.0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2018)	한국	16.5	14.7	13.8	23.2	28.4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2019)	한국	16.4	14.0	13.2	23.1	27.4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51.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표 Ⅳ-6-4〉는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놓은 표이다. 조사의 시점인 2000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은 32.1명 21.5명, 20.9명이어서 OECD 평균에 학교급별로 각각 14.4명, 6.5명, 7.0명이나 많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이 차이가 많이 줄어 학교급 별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OECD평균보다 0.2명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가 과거 보다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학급당 학생 수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인데, 이것이 저출산에 기인했다는 것은 국가의 인적 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그다지 반길 만한 사실은 아니다.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20년 소분류 지표 '교육기회 보장 정도'의 세부지표로 새롭게 채택되었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지나치게 학업시간이 많아 이들의 놀 권리, 여가 및 문화 향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의 공교육에서 학업을 마치면 학생들은 다시 학원이나 과외 선생으로부터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함께 사교육은 위에서 말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표 Ⅳ-6-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	29.1	26.3	31.2	32.1	39.9	31.9	44.8	54.9
2019	32.1	29.0	33.8	36.5	42.9	34.7	47.4	59.9
증감률	10.4	10.3	8.4	13.6	7.5	9.1	5.8	9.1

* 출처: 통계청(2020.4).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p.36.

〈표 Ⅳ-6-5〉와 〈표 Ⅳ-6-6〉은 한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Ⅳ-6-5〉를 보면, 초·중·고 전체 2018년 사교육비가 평균 29.1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3만원이 상승하여 평균 32.1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비는 증가되어 2019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평균 36.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비교했을 때에 2019년 이들의 전체 평균 사교육비 액수는 평균 42.9만원에 달했고, 대학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 평균 59.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사교육비가 늘어가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표 Ⅳ-6-6〉에서는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읽을 수 있는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사교육비가 10.4%p 증가하였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였고, 사교육에의 참여율도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6-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18	2019	증감률	2018	2019	전년 차
전체	29.1	32.1	10.4	72.8	74.8	1.9
200만원 미만	9.9	10.4	5.2	47.3	47.0	-0.3
200~300만원 미만	15.6	17.0	9.1	59.4	60.4	1.0
300~400만원 미만	22.2	23.4	5.5	70.7	70.7	0.1
400~500만원 미만	27.9	30.0	7.5	75.6	78.0	2.3
500~600만원 미만	32.9	35.4	7.7	79.1	79.8	0.7
600~700만원 미만	37.3	40.4	8.1	81.1	83.6	2.6
700~800만원 미만	42.2	46.4	9.7	83.7	87.0	3.3
800만원 이상	50.5	53.9	6.6	84.0	85.1	1.1

* 출처: 통계청(2020.4).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p.42.

* 주: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 포함

(2) 학교 부적응률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인재 등용을 위해 시험을 치러온 제도는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민주주의 사회를 맞아 사회이동의 중요한 기재가 되었다. 특히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하는 진로는 학벌사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더더욱 전공학과가 아니라 대학교가 전국적으로 순위가 매겨져 차별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학벌사회에서 가장 좋은 지위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및 교육 구조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의 교육은 패러다임도 교육받을 권리 차원

에서 평준화 교육을 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여 각기 재능과 특기가 다른 학생들은 입학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금의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은 명백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① 학업중단율

〈표 Ⅳ-6-7〉은 2012년~2019년 동안의 한국 학생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인 2012년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0.7%로 0.1%p 증가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2019년에 각각 0.8%와 1.7%로 각각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학업중단 학생 수가 7~8만 명이 나오자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Ⅳ-6-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19)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 출처: 교육부(2020.8.28). 2020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사망자는 학업중단자에 미포함
4) 구분연도는 학년도임.
5)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학생 수

가장 최근인 2019년 현재 52,261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나왔는데,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업도 어려워 이들이 사회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조속히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표 Ⅳ-6-8〉은 학업중단 생각에 대한 경험을 2020년 초·중·고 학생 8,43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학생의 23.6%가 학업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19.6%)보다 여학생(27.8%)이 더 학업중단에 대하여 생각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은 고등학생이 32.3%로 학업중단 생각 경험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학생이 20.5%, 초등학생이 17.1%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3명 중 1명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에서는 5명 중 1명 정도가 나온 것은 심히 우려가 되는 수치이다. 특히 가장 대학입학 시험과 멀리 떨어져있는 초등학생도 5명 중 1명 가까이 학업중단을 생각해보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가를 말해주고 있다. 학업 성적에 따른 학업중단 경험을 비교해보면 학업성적이 하위 그룹의 학생은 37.6%가 학업중단 생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위 그룹 학생은 20.5%, 상위 그룹 학생도 16.0%로 응답하였다. 성적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도 5명 중 1명 가깝게 학업 중단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이들이 얼마나 학업에 대하여 힘들어하는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표 Ⅳ-6-8. 학업중단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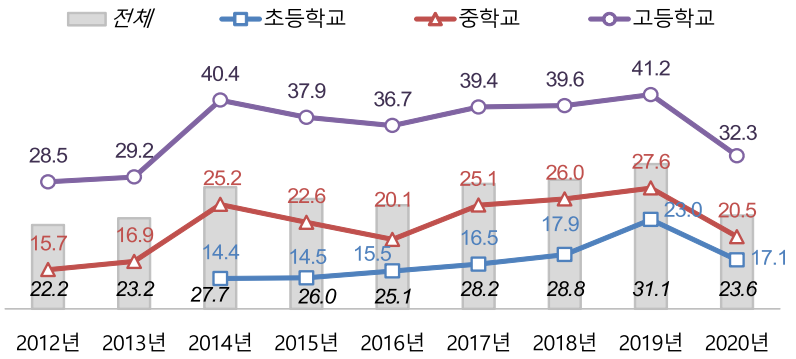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3.6	76.4	100.0(8,430)	-
성별	남학생	19.6	80.4	100.0(4,356)	79.471***
	여학생	27.8	72.2	100.0(4,074)	
학교급	초등학교	17.1	82.9	100.0(2,721)	204.165***
	중학교	20.5	79.5	100.0(2,732)	
	고등학교	32.3	67.7	100.0(2,977)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2	66.8	100.0(2,403)	4.529*
	특성화계고	28.6	71.4	100.0(574)	
학업 성적	상	16.0	84.0	100.0(2,640)	308.422***
	중	21.6	78.4	100.0(3,753)	
	하	37.6	62.4	100.0(1,977)	
경제적 수준	상	19.3	80.7	100.0(4,705)	175.488***
	중	26.5	73.5	100.0(3,050)	
	하	41.9	58.1	100.0(611)	

*p 〈 .05, ***p 〈 .001.

[그림 Ⅳ-6-1]에는 2012년~2020년 기간 동안에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의 추이가 비율로 잘 나타나있다. 그래프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4년 학업중단 생각 경험이 초등학생 14.4%,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5.2%, 40.4%로 가장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초등학생은 반면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인 학업 중단 경험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020년에 대폭 하락하여 초등학교 17.1%, 중학교 20.5%, 고등학교 32.3%로 보이고 있다. 작년인 2019년 조사 시점인 2012년 이후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최고조에 달해 초등학생 23.0%, 중학생 27.6%, 고등학교 41.2%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 간 결과인데 2020년에 학업 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대폭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6-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표 Ⅳ-6-9〉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물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학생 1,968명 중 가장 많은 30%를 차지한 이유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27.2%로 보이고 있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이유이었다. 세 번째로 많았던 학업중단 경험의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로 14.5%였고, 근소한 차이로 네 번째 학업중단 경험의 이유가 된 것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괴롭힘을 당해서'가 5.1%,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가 3.6%,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못해서'가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0.4%, 기타가 3.2%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부하기 싫어서' 27.2%와 '성적이 좋지 않아서' 14.5%를 합하면 41.7%를 나타내 직접 학업으로 인한 이유로 5명 중 2명이 넘게 학업을 중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12.7%를 나타내고 있는 학업중단 경험의 이유인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

서'도 학업의 내용에 대한 부적응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30%를 차지한 이유인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도 학업에 대한 반작용인 거부와 심적 소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현행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표 Ⅳ-6-9. 학업중단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5.1	14.5	3.6	0.4	27.2	3.3	12.7	30.0	3.2	100.0(1,968)
성별	남학생	3.9	10.8	4.6	0.4	31.1	4.2	13.3	27.7	4.0	100.0(845)
	여학생	6.0	17.2	2.9	0.5	24.3	2.6	12.3	31.6	2.6	100.0(1,123)
학교급	초등학교	9.1	10.6	5.4	0.4	37.4	3.2	7.9	24.0	1.9	100.0(462)
	중학교	5.9	9.1	3.2	0.0	24.4	3.8	10.8	39.9	2.9	100.0(555)
	고등학교	2.7	19.5	3.0	0.7	23.9	3.0	16.2	27.0	4.1	100.0(951)
고교 유형	일반계고	2.1	22.0	2.3	0.6	24.5	2.9	15.4	26.1	4.3	100.0(787)
	특성화계고	5.3	7.2	6.6	1.2	21.0	3.4	20.2	31.7	3.2	100.0(164)

* 주: 2019년 조사부터 1개 선택으로 변경됨(2018년까지는 우선순위별로 3개 선택).

[그림 Ⅳ-6-2]에는 2017년~2020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려고 생각해본 경험에 대한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추이의 변화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의 학업 중단 경험 이유가 다른 요인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Ⅳ-6-2. 학업중단 생각 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소분류 지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은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에 속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 지표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면서 가지게 되는 학교와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중요한 생각들이

다. 이 소분류 지표는 2019년 세부지표로 선정되었던 '학교문화'가 빠지게 되고, 친구 간 존중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 수업에 대한 재미, 학교의 즐거움 등에 관하여 묻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세부지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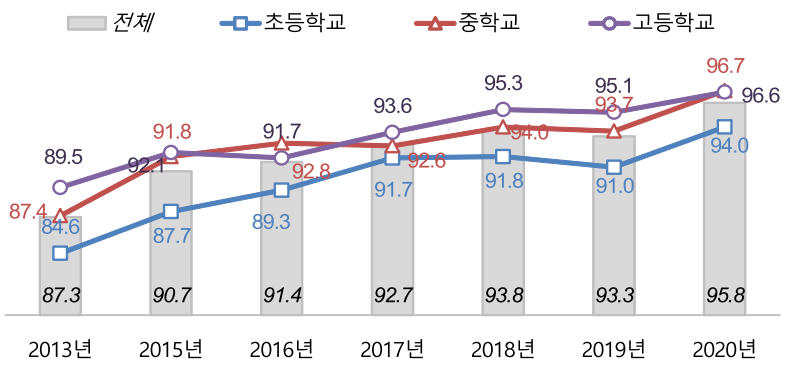
〈표 Ⅳ-6-10〉에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들 중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긍정 응답을 합하여 95.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94.6%)이 여학생(97.1%)보다 긍정 대답이 적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94.0%)이 상대적으로 중학생(96.7%)과 고등학생(96.6%)보다 학생 간 다소 존중과 배려가 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계고 학생(97.1%)이 특성화계고 학생(94.9%)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간 존중과 배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2(0.57)	0.6	3.6	59.4	36.4	100.0(8,558)	-
성별	남학생	3.27(0.59)	0.9	4.5	61.0	33.6	100.0(4,430)	56.769***
	여학생	3.36(0.55)	0.3	2.6	57.7	39.4	100.0(4,128)	
학교급	초등학교	3.25(0.59)	0.9	5.1	61.8	32.2	100.0(2,847)	73.887***
	중학교	3.32(0.55)	0.4	2.9	60.6	36.1	100.0(2,737)	
	고등학교	3.37(0.57)	0.6	2.7	55.9	40.7	100.0(2,975)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9(0.56)	0.6	2.3	54.3	42.8	100.0(2,397)	26.009***
	특성화계고	3.26(0.58)	1.0	4.1	62.8	32.1	100.0(578)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그림 Ⅳ-6-3]은 2013년에서 2020년 동안의 학교에서 학생 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었던 긍정 응답의 비율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인 2013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 이러한 학생 간 상호 존중과 배려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3년에 이러한 긍정 응답의 비율이 초등학교 84.6%, 중학교 87.4%, 고등학교 89.5%로 80%대였던 것이 2020년에 와서는 초등학교 94.0%, 중학교 96.7%, 고등학교 96.6%로 거의 1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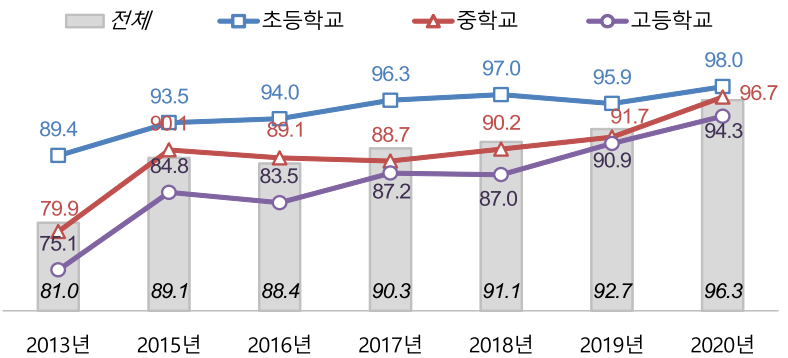
〈표 Ⅳ-6-11〉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 8,558명 중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 가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96.3%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95.6%)보다 여학생(97.0%)이 선생님으로부터 더 존중을 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을 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98.0%, 중학교 96.7%, 고등학교 94.3%의 긍정 응답 비율로 각각 조사되었다. 고교 유형에서는 특성화계고 학생(92.3%)이 상대적으로 일반계고 학생(94.7%)보다 선생님으로부터 덜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3(0.60)	0.9	2.8	48.5	47.8	100.0(8,558)	-
성별	남학생	3.41(0.62)	1.4	3.0	48.8	46.8	100.0(4,430)	25.095***
	여학생	3.46(0.57)	0.4	2.6	48.1	48.9	100.0(4,128)	
학교급	초등학교	3.61(0.55)	0.5	1.4	34.2	63.8	100.0(2,847)	476.227***
	중학교	3.38(0.57)	0.6	2.7	54.4	42.3	100.0(2,738)	
	고등학교	3.30(0.62)	1.5	4.2	56.7	37.6	100.0(2,974)	
고교 유형	일반계고	3.32(0.62)	1.6	3.7	56.0	38.7	100.0(2,396)	13.997**
	특성화계고	3.24(0.62)	1.3	6.5	59.3	33.0	100.0(578)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그림 Ⅳ-6-4]에서는 교사로부터의 학생 존중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2013년~2019년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7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급에서 시작연도인 2013년에 비해 약 10%이상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

년 긍정 응답 비율이 79.9%였는데, 7년 뒤인 2020년에선 96.7%로 나타나 무려 1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개정되어 2011년 3월 11일 이후부터 학교에서 체벌이 법적으로 없어진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표 Ⅳ-6-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6(0.81)	6.1	22.5	50.9	20.5	100.0(8,553)	-
성별	남학생	2.84(0.84)	7.0	23.1	48.7	21.2	100.0(4,427)	23.760***
	여학생	2.88(0.78)	5.2	21.9	53.2	19.8	100.0(4,126)	
학교급	초등학교	2.98(0.78)	4.4	18.1	52.9	24.6	100.0(2,842)	112.286***
	중학교	2.77(0.80)	7.1	25.2	51.4	16.4	100.0(2,738)	
	고등학교	2.82(0.83)	6.9	24.3	48.5	20.3	100.0(2,974)	
학업 성적	상	3.07(0.77)	3.8	14.8	52.4	29.0	100.0(2,685)	515.440***
	중	2.87(0.76)	4.8	22.2	54.7	18.4	100.0(3,819)	
	하	2.56(0.86)	11.7	33.5	41.8	13.0	100.0(1,990)	
경제적 수준	상	2.95(0.79)	5.0	18.9	52.2	23.9	100.0(4,790)	211.971***
	중	2.78(0.80)	6.2	26.6	50.4	16.8	100.0(3,079)	
	하	2.55(0.89)	14.1	29.7	43.1	13.1	100.0(616)	

***p 〈 .001.

〈표 Ⅳ-6-12〉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의 수업시간이 재밌는지를 물어본 설문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가운데 학교에서의 수업이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응답은 남학생(69.9%)보다 여학생(73.0%)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77.5%)이 중학생(67.8%)이나 고등학생(68.8%)보다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수업에 더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업성적이 하위 그룹인 학생(45.2%)의 2명 중 1명 가까이는 학교 수업에 재미가 없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하위 그룹의 학생도 43.8%의 부정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Ⅳ-6-13〉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긍정 응답은 전체 학생 중 7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 응답 비율은 남학생(69.8%)보다 여학생(73.7%)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 보면 초등학생이 75.5%로 중학생 70.2%, 고등학생 69.2%보다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데, 경제적 수준 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의 긍정 응답은 56.2%에 불과했다.

표 Ⅳ-6-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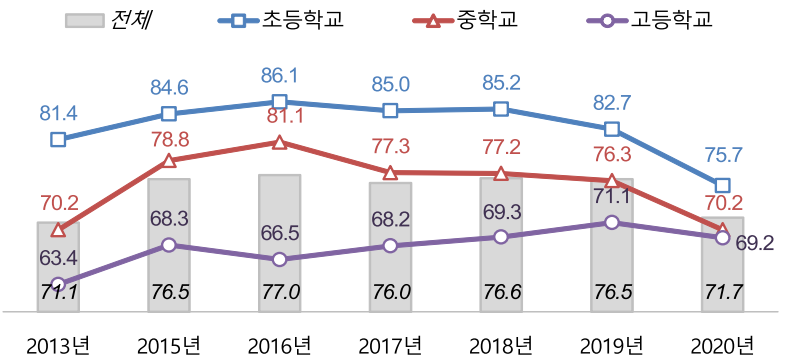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7(0.84)	7.1	21.2	49.7	22.0	100.0(8,553)	-
성별	남학생	2.84(0.86)	8.0	22.2	47.8	22.0	100.0(4,428)	21.073***
	여학생	2.90(0.81)	6.1	20.2	51.7	22.0	100.0(4,125)	
학교급	초등학교	2.96(0.83)	5.8	18.5	49.3	26.4	100.0(2,841)	66.770***
	중학교	2.82(0.82)	7.5	22.2	51.3	18.9	100.0(2,738)	
	고등학교	2.82(0.85)	7.9	22.9	48.5	20.7	100.0(2,975)	
학업 성적	상	3.06(0.79)	4.2	15.7	50.1	30.0	100.0(2,683)	357.464***
	중	2.87(0.80)	6.1	21.5	52.0	20.4	100.0(3,819)	
	하	2.61(0.88)	12.8	27.9	44.9	14.4	100.0(1,991)	
경제적 수준	상	2.95(0.82)	5.9	18.2	50.6	25.3	100.0(4,788)	173.026***
	중	2.80(0.82)	7.4	24.0	50.1	18.4	100.0(3,078)	
	하	2.56(0.90)	14.1	29.7	41.8	14.4	100.0(619)	

***p 〈 .001.

[그림 Ⅳ-6-5]에는 2013년~2020년 기간 동안에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긍정 대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잘 나타나있다.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에 초등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81.4%, 중학생이 70.2%, 고등학생이 63.4%로 보였는데, 2020년 현재는 초등학생 75.7%, 중학생 70.2%, 고등학생 69.2%로 중학생을 제외하고는 부정 응답이 다소 증가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7.0%p와 6.1%p의 큰 폭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2) 진로·직업교육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에 속하는 2개의 소분류 지표 중 하나는 '진로·직업교육'이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는 "일반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특히 그동안 정부가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 교육에 관하여 정책을 소홀히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최고인 것도 한국이 학벌사회이기도 하지만 진로 교육을 다양하게 마련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최근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가는 것도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 잘못 설계되고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진로교육 현황

〈표 Ⅳ-6-14〉에는 학교에서 수행되는 진로활동의 참여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총 29,549명이 참여한 2019년 조사에서 아래의 표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에는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과목,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 동아리 활동, 창업체험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진로와 직업' 수업과목과 진로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활동들이 수행 중에 있다.

표 Ⅳ-6-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점)

학교급	학교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 활동 만족도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 동아리	창업체험	
초등학교	90.3	-	82.5	80.6	54.5	-	55.0	4.09
중학교	92.4	89.0	86.5	90.0	71.2	51.9	48.7	3.88
고등학교	84.3	84.0	85.5	78.3	70.8	60.1	41.8	3.80

* 출처: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김다래(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89-93.

* 주: 1) 본 조사에는 초등학생 6학년 8,994명, 중학생 3학년 10,548명, 고등학생 2학년 10,007명 등 총 29,549명이 참여함.
2) 만족도 문항의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임.

대체로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과목,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의 수행에는 80%가 넘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09점, 중학생이 3.88점, 고등학생이 3.80점을 보이고 있다.

②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세~29세 1,9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15세~18세(526명)는 54.1%, 19세~29세(1,412명)는 48.1%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직업교육이 과거보다 더 많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직업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인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을 보면 15세~18세는 50.8%였고, 19세~29세는 42.0%로 나타났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110).

한편 같은 조사에서 학교에서 상담교사나 교사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19세~29세의 응답자 192명은 같은 질문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51.4%이고, 도움이 실제로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53.8%로 조사되었다(김형주 외, 2019: 130).

〈표 Ⅳ-6-15〉에는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기타 직업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2018년~2020년 기간의 연도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청년 인구 중 18% 정도에 해당되어 5명 중 1명 가깝게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간 평균 수치로 보면 남자(15.7%)보다는 대체로 여자(20.8%)가 학교 밖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유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Ⅳ-6-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

(단위 : 천명, %)

년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 출처 : 통계청(2018~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 인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함(검색일: 2020년 10월 6일).
통계청(2020.7.22). 보도자료: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9.

* 주: 학교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표 Ⅳ-6-16〉에는 한국의 직업교육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3년 동안(2017년~2019년)의 진로 상황이 잘 나타나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2017년에 95,131명이었다. 이들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32.4%에 해당하는 21,767명이었으며, 취업자는 50.4%, 무직이거나 진로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16.6%에 해당되었다. 이후 진학으로의 진로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에는 졸업자 전체의 35.6%, 2019년에는 42.2%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업으로의 진로는 감소되어 2018년에는 41.7%, 2019년에는 31.3%로 나타났다. 무직이거나 진로 미상으로 나타난 비율도 2018년 21.9%, 2019년 25.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취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진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이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통계를 보자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진학도 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실태라 아니할 수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긴급히 요청된다.

표 Ⅳ-6-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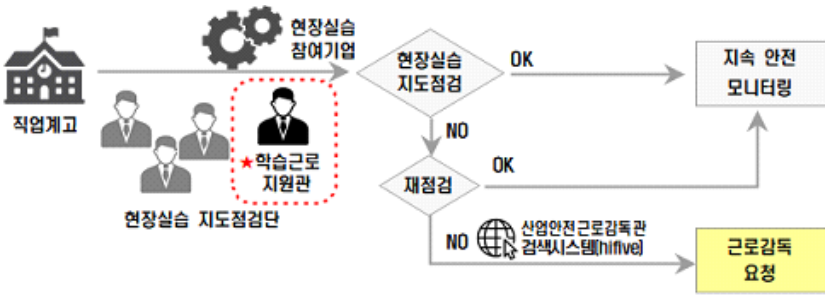
(단위 : 명, (%))

년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무직 및 미상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학			
2017	95,131	30,839 (32.4)	21,767	3	8,489	396	78	106	47,946 (50.4)	15,770 (16.6)	576 (0.6)
2018	90,921	32,372 (35.6)	23,333	4	8,696	183	65	91	37,954 (41.7)	19,918 (21.9)	677 (0.7)
2019	89,146	37,642 (42.2)	26,929	6	10,386	135	34	152	27,865 (31.3)	22,769 (25.5)	870 (1.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7-2019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628&menuId=1_8_68&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0.10.06. 인출.

* 주: 1)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되며, 기타는 입대자와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2) 소계: (A/B)%

교육부는 이러한 직업계 졸업생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5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여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이름 아래 다음과 같은 4대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5.22.). 첫째는 학생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2020.3월)하여 올해 10월부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출처: 교육부(2020.5.22.). 보도자료: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p.4.

그림 Ⅳ-6-6.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둘째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는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우수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우대와 은행 금리 우대, 정책 자금, 조달 자금, 보증지원 우대, 매출채권보험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교 졸업생의 취업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하고, 현장실습 학점제,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2020년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 지표에 속하는 중분류 지표 중 하나인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항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와 2항 "당사국은 문화적 ·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에도 하위 지표들은 크게 변함이 없어 '여가 · 문화 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와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정도'의 2개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었다. '여가 · 문화 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소분류 지표는 2019년의 '여가 · 문화 · 예술 시설 수 및 이용 만족도'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세부지표의 구성은 '청소년 여가 · 문화 · 예술 시설 수'와 '청소년 여가 · 문화 · 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로 변동이 없었다.

①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시설 수

〈표 Ⅳ-6-17〉은 2018년과 2019년의 국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 예술 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건립되어 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은 비 숙박 시설이고, 주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수련시설들에는 다양한 활동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 2018년에 비해 13개 시설이 증가되어 전국에 총 814개의 시설이 건립되

어 있고, 이중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은 592개소로 72.7%에 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시설 유형은 비 숙박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국에 285개소가 설치되어 전체 총 시설 수의 35.0%에 해당되는데, 이 시설은 청소년수련관보다 규모는 작으나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형 청소년수련시설이다.

표 Ⅳ-6-1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8년	전 체	801	185	270	181	39	115	11
2019년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공 공	592	187	285	63	19	25	13
	민 간	222	1	4	108	19	89	1

* 출처: 여성가족부(2019.3.18.).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 기준),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2에서 2020.10.06. 인출.

〈표 Ⅳ-6-18〉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2019년도 전국 현황이 나타나 있다. 2019년 기준 전국에 총 801개소 시설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수련시설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 160개소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강원도로 8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경기도의 반 정도에 해당되고 있다. 이어서 경남 75개소, 서울 66개소, 경북 62개소, 전남 58개소, 전북 54개소, 제주 51개소, 충남 50개소, 충북 43개소 등의 순으로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전국에서 유스호스텔은 제주가 19개소로, 특화시설은 서울이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시설 유형들은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수련시설의 지역적 균형 설치가 요청된다.

표 Ⅳ-6-18.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1	185	270	181	39	115	11
서울	66	32	19	3	-	4	8
부산	25	8	12	3	1	1	0
대구	17	5	6	2	0	2	2
인천	27	8	6	5	3	5	0
광주	15	5	8	1	0	0	1
대전	16	4	8	3	0	1	0
울산	11	3	7	1	0	0	0
세종	4	1	3	0	0	0	0
경기	160	35	64	37	9	14	1
강원	80	16	32	17	4	10	1
충북	43	6	14	18	1	4	0
충남	50	11	13	14	3	9	0
전북	54	11	19	12	3	8	1
전남	58	8	23	12	6	9	0
경북	62	15	17	14	2	14	0
경남	75	17	15	25	4	14	0
제주	51	3	23	4	2	19	0

* 출처: 여성가족부(2019.3.18.).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 기준),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2에서 2020.10.06. 인출.

〈표 Ⅳ-6-19〉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청소년의 연간 이용 정도가 나타나 있다. 1년 중 한 번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총 응답자 8,434명 중 33.8%에 달해서 3명 중 1명에 해당되었다. 1주일에 1~2회로 꾸준히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5.5%에 불과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이용 정도를 보면 여학생(71.6%)이 남학생(61.1%)보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74.8%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65.5%, 고등학생이 가장 낮아 58.9%를 보이고 있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공공도서관 이용의 편차가 적지 않았는데 일반계고 학생의 이용률은 63.5%인 반면, 특성화계고 학생은 39.6%로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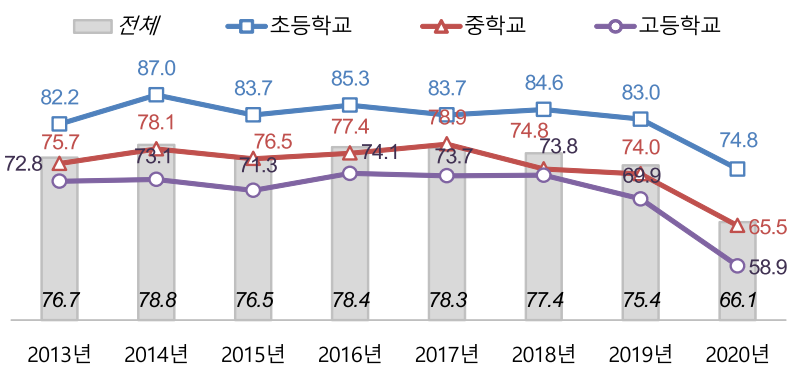
표 Ⅳ-6-1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 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3.8	29.2	18.8	12.6	5.5	100.0(8,434)	-
성별	남학생	38.9	27.6	17.2	10.9	5.4	100.0(4,350)	111.128***
	여학생	28.3	31.0	20.5	14.4	5.7	100.0(4,084)	
학교급	초등학교	25.2	29.5	19.3	17.0	9.0	100.0(2,742)	275.082***
	중학교	34.5	31.4	18.4	11.7	4.0	100.0(2,724)	
	고등학교	41.1	27.0	18.7	9.4	3.8	100.0(2,969)	
고교 유형	일반계고	36.5	28.2	20.5	10.5	4.3	100.0(2,395)	118.216***
	특성화계고	60.5	22.0	11.3	4.9	1.4	100.0(573)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그림 Ⅳ-6-7]에는 2013년~2020년의 8년 간 초·중·고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의 추이가 잘 나타나있다. 전체적인 그림의 모습을 보면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 비해 초·중·고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그래프의 추이는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수치로 확인해 보면 2013년 공공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82.2%, 중학생 75.7%, 고등학생 72.8%였던 것이 2020년에는 초등학생 74.8%, 중학생 65.5%, 고등학생 58.9%로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6-20〉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1년 동안 한 번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23.9%에 해당되었다. 응답자들 중에는 1년에 1~2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7.3%로 가장 많았다. 1주일에 1~2회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4%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24.3%)과 남학생(23.5%)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26.4%로 조사되었고, 이어서 중학생이 21.9%, 고등학생이 23.5%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Ⅳ-6-2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여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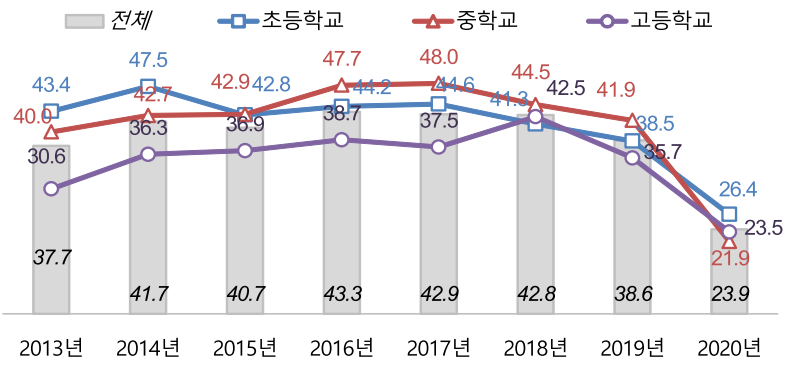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6.1	17.3	3.3	1.9	1.4	100.0(8,348)	-
성별	남학생	76.4	16.4	3.7	2.1	1.3	100.0(4,292)	13.151*
	여학생	75.7	18.3	2.9	1.6	1.5	100.0(4,057)	
학교급	초등학교	73.6	17.8	4.3	2.3	2.0	100.0(2,684)	43.782***
	중학교	78.0	17.6	2.3	1.2	0.8	100.0(2,705)	
	고등학교	76.5	16.7	3.3	2.1	1.4	100.0(2,960)	

*p 〈 .05,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8]에는 이러한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정보에 대한 2013년~2020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공공도서관의 이용 추이와는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는 2018년까지 이용 정도가 증감이 반복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2018년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이용의 감소 추세가 읽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조사의 시작연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43.4%, 중학생 40.0%, 고등학생 30.6%였던 것이 2020년에는 초등학생 26.4%, 중학생 21.9%, 고등학생 23.5%로 크게 하락하였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표 Ⅳ-6-21〉에는 청소년이 2020년 설문조사에서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체육시설을 연중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9.4%에 해당되어 5명 중 2명 정도의 학생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1~2회 꾸준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0.9%로 10명 중 1명 정도로 조사되었다. 체육시설의 이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56.1%)이 남학생(64.9%)보다 이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78.3%를 보였고, 다음으로 중학생이 61.1%, 고등학생이 가장 낮아 44.0%로 나타났다.

표 Ⅳ-6-21.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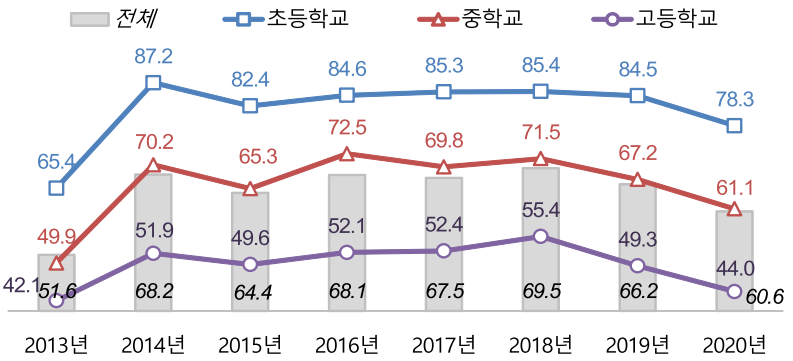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9.4	26.7	13.4	9.6	10.9	100.0(8,367)	-
성별	남학생	35.1	22.5	14.8	12.6	15.0	100.0(4,312)	332.272***
	여학생	43.9	31.2	12.0	6.4	6.5	100.0(4,055)	
학교급	초등학교	21.7	29.4	17.0	13.0	18.9	100.0(2,700)	828.067***
	중학교	38.9	30.1	13.2	8.7	9.1	100.0(2,710)	
	고등학교	55.9	21.1	10.4	7.4	5.1	100.0(2,957)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Ⅳ-6-9]에서는 2013년에서 2020년 동안 학생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 초등학생 65.4%, 중학생 49.9%, 고등학생 42.1%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보였던 것이 이듬해인 2014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초등학생 87.2%, 중학생 70.2%, 고등학생 51.9%를 나타낸 것이 특이 사항이다. 그 이후 학교급별 체육시설 연간 이용률은 그다지 큰 추이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2018년 이후에는 하락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2020년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78.3%, 중학생이 61.1%, 고등학생이 44.0%를 보이고 있어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 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9. 체육시설 이용 여부(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표 Ⅳ-6-22. 문화 예술 공간이용(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7.7	31.1	25.9	13.5	1.9	100.0(8,407)	-
성별	남학생	32.4	28.7	23.6	13.2	2.1	100.0(4,330)	109.447***
	여학생	22.7	33.7	28.3	13.8	1.6	100.0(4,076)	
학교급	초등학교	22.2	40.0	24.1	11.4	2.3	100.0(2,714)	196.155***
	중학교	28.8	30.1	25.5	14.1	1.5	100.0(2,726)	
	고등학교	31.8	23.8	27.8	14.8	1.8	100.0(2,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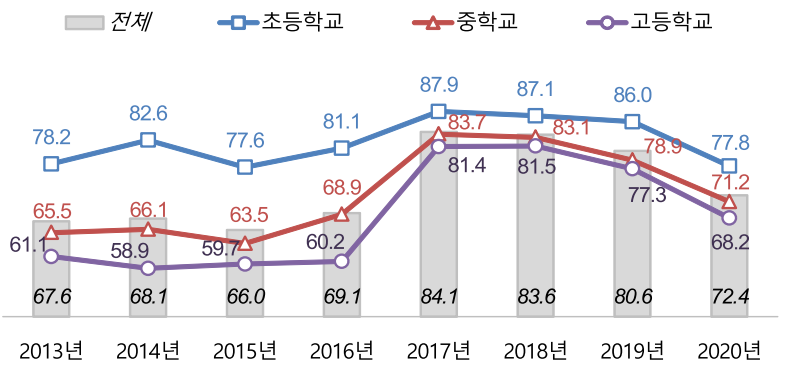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Ⅳ-6-22〉는 2020년 1년 동안 공연장, 미술과, 박물관과 같은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년 동안 문화 예술 공간을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7.7%에 해당하였다. 1주일에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9%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한 이용은 여학생(77.4%)이 남학생(67.6%)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문화 예술 공간 이용이

제일 많아 78.8%에 달했고, 이어서 중학생이 71.2%, 고등학생이 68.2%로 나타났다.

[그림 Ⅳ-6-10]에는 2013년~2020년 기간 동안에 초·중·고 학생들이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해 본 경험의 추이가 비율로 잘 나타나 있다. 2013년~2015년 사이에는 큰 변화의 추이가 없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이를 보여서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한 초등학생이 78.2%, 중학생이 65.5%, 고등학생이 61.1%였던 것이 2017년에는 초등학생 87.9%, 중학생 83.7%, 고등학생 81.4%로 모두 80% 이상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한 이용률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20년에 와서는 초등학생이 77.8%, 중학생 71,2%, 고등학생 68.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0. 문화 예술 공간 이용 여부(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②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시설 이용만족도

표 Ⅳ-6-23.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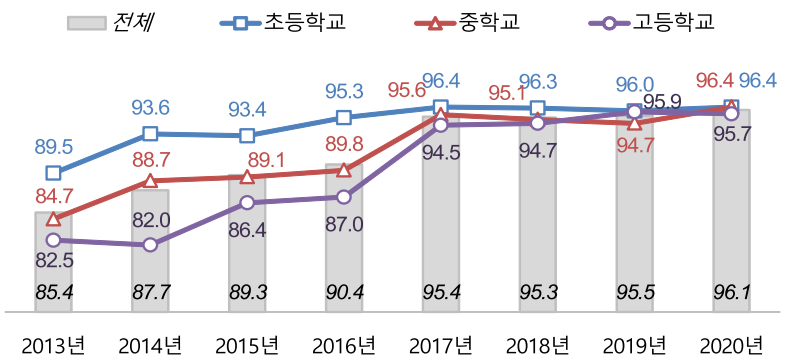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전체(N)	χ^2
전체		3.22(0.52)	0.6	3.2	69.4	26.7	100.0(7,076)	-
성별	남학생	3.22(0.56)	1.0	4.0	67.1	27.9	100.0(3,532)	41.131***
	여학생	3.23(0.49)	0.2	2.5	71.7	25.6	100.0(3,544)	
학교급	초등학교	3.34(0.57)	0.7	2.9	58.4	38.0	100.0(2,464)	268.489***
	중학교	3.19(0.50)	0.6	3.0	72.7	23.7	100.0(2,262)	
	고등학교	3.13(0.47)	0.5	3.8	77.8	17.9	100.0(2,350)	

***p 〈 .001.

〈표 Ⅳ-6-23〉은 2020년도 여가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한 만족도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설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합한 긍정 응답의 비율이 전체 7,076명의 응답학생 중 96.1%를 차지해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 응답은 남학생(95.0%)과 여학생(97.3%)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96.4%로 같고, 고등학생이 95.7%로 조금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Ⅳ-6-11]에서는 여가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한 만족도에 대한 학교급별 긍정적 응답의 2013년~2020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은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승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긍정 응답의 상승세는 멈추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는 초등학생의 여가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한 긍정 응답이 89.5%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84.7%, 고등학생이 82.5%로 나타났었다. 2020년 현재에는 2013년보다 여가문화예술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승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긍정 응답이 동일하게 96.4%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95.7%로 조사되었다.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2)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정도

2020년도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소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는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정도'는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속하는 중분류 지표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에 속하는 지표이다. 이 소분류 지표는 2019년과 달라진 것 없이 아래와 같은 3개의 세부지표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학습시간'으로 구성되었다.

①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도

2020년 4월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내용 중에서 2019년 13세~24세 청소년은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주중 74.4%, 주말 67.3%)을 가장 많이 하며, 다음으로 휴식활동(주중 62%, 주말 62.4%), TV 및 DVD 시청(주중 59.5%, 주말 51.5%) 등의 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다. 한편,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58%),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48.8%), 문화예술 관람(48.5%),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0.2%), 휴식활동(27.2%)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복수 응답하였다. 남녀의 여가활동을 비교했을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스포츠 활동 및 관람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26).

표 Ⅳ-6-24.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

년도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2018년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년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주: 1) 2018년, 2019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8년 10,498명, 2019년 10,060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8년 696명, 2019년 661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표 Ⅳ-6-24〉에는 2018년과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15세~19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조사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2018년 696명, 2019년 661명이었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15세~19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취미·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각각 38.5%와 35.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2018년 30.2%와 2019년 30.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도자료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3세~19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주중에는 15.1%, 주말에는 14.0%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26).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여가활동 설문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휴식활동', 그리고 'TV · DVD 시청'이 설문 문항의 선택 지문에 포함되어 있어 이곳으로 응답이 몰린 것으로 유추된다.

〈표 Ⅳ-6-25〉에는 최근 15세~19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활용 시간에 대한 2018년과 2019년도의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2018년도 평일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전체 여가활동 시간 2.8시간 중 67.9%에 해당하는 1.9시간이었고, 2019년에는 전체 여가활동 시간 3.0시간 중 63.3%인 1.9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휴일의 경우를 보면 2018년에는 전체 여가활동 시간 5.1시간 중 54.9%에 해당하는 2.8시간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였고, 2019년에는 전체 여가활동 시간 5.5시간 중 47.3%에 해당하는 2.6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해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표 Ⅳ-6-25.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년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년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9a). 2018,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p.44.

* 주: 1) 2018년, 2019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8년 10,498명, 2019년 10,060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8년 696명, 2019년 661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표 Ⅳ-6-26〉에는 평일 하루 중 학생들이 가지는 여가 시간에 대한 2020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8,563명의 응답학생 중 평일에 여가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평일 하루에 여가 시간이 5시간 이상이 되는 학생은 18.2%로 나타났다.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의 분포를 가장 많이 차지한 그룹은 여가 시간이 2~3시간의 그룹으로 전체 학생 중 23.3%에 해당되었다. 여가 시간이 평일 하루에 여가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비율이 남학생(10.4%)이 여학생(9.3%)보다 약간 많았고, 여가 시간이 5시간 이상 되는 비율도 남학생(19.4%)이 여학생(1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이나 특성화계고 학생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이 2~3시간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이 1~2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입학시험에 가까이 갈수록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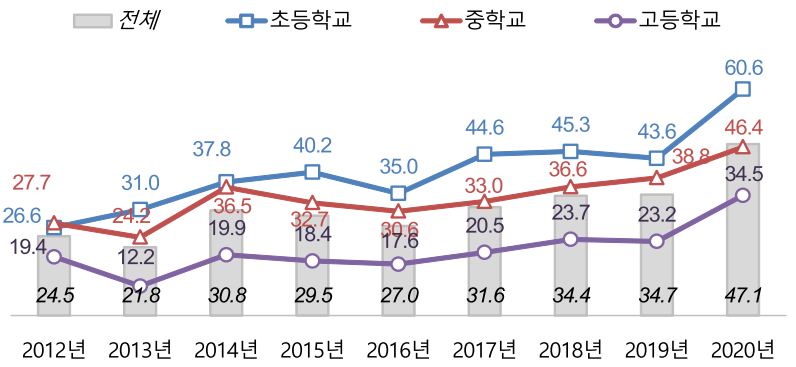
표 Ⅳ-6-26. 평일 여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9.8	19.8	23.3	18.0	10.9	18.2	100.0(8,563)	-
성별	남학생	10.4	19.9	23.3	16.9	10.2	19.4	100.0(4,432)	19.611**
	여학생	9.3	19.8	23.4	19.1	11.6	16.9	100.0(4,131)	
학교급	초등학교	7.0	12.9	19.5	20.0	14.5	26.1	100.0(2,843)	500.494***
	중학교	8.2	19.7	25.7	18.9	10.8	16.7	100.0(2,741)	
	고등학교	14.0	26.6	24.9	15.2	7.4	11.9	100.0(2,97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5.2	29.0	24.9	14.7	6.5	9.6	100.0(2,400)	111.409***
	특성화계고	9.1	16.4	24.8	16.9	11.1	21.6	100.0(579)	

**p 〈 .01, ***p 〈 .001.

[그림 Ⅳ-6-12]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청소년의 평일 여가 시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일 청소년의 여가 시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2년 초등학생의 평일 여가 시간(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것을 합한 결과)이 26.6%, 중학생이 27.7%, 고등학생이 19.4%이었는데, 2020년 현재는 초등학생이 60.6%, 중학생이 46.4%, 고등학생이 34.5%로 나타났다. 이는 9년 동안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평일 여가 시간이 34%나 증가되어 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중학생에 있어서는 18.7%,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15.1%가 증가한 결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증가의 폭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에 가지 않게 됨으로써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2. 평일 여가 시간(연도별 추이)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평일 하루 여가 시간에 관한 조사와는 반대로 〈표 Ⅳ-6-27〉은 청소년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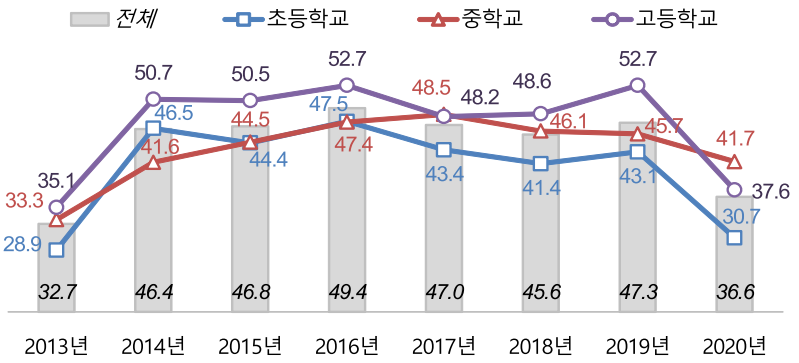
총 조사 학생 8,575명 중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19.1%로 나타났고, 반면에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학생은 3.7%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하루 평균 학습 시간 분포도는 23.8%로 나타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었고, 이러한 분포도는 학생의 성별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도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오직 특성화계고와 고등학생의 경우에서 나타났는데, 특성화계고 학생의 경우에는 평일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이하게도 고등학생의 경우는 1시간 미만의 평균 학습 시간 분포도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많은 분포도가 2~3시간으로 20.2%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특성화계고의 분포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표 Ⅳ-6-27. 평일 공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9.1	20.4	23.8	17.3	10.3	5.3	3.7	100.0(8,575)	-
성별	남학생	21.3	21.3	24.0	15.7	9.5	4.5	3.6	100.0(4,440)	56.867***
	여학생	16.8	19.5	23.6	19.1	11.3	6.0	3.7	100.0(4,135)	
학교급	초등학교	18.0	24.8	26.6	15.3	8.5	4.2	2.7	100.0(2,852)	190.338***
	중학교	14.9	18.5	24.9	19.9	12.0	6.0	3.8	100.0(2,739)	
	고등학교	24.1	18.0	20.2	16.9	10.6	5.6	4.5	100.0(2,984)	
고교 유형	일반계고	17.1	16.4	22.6	19.7	12.3	6.6	5.2	100.0(2,405)	431.825***
	특성화계고	53.3	24.6	10.5	5.4	3.6	1.3	1.3	100.0(579)	

***p 〈 .001.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6-13.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그림 Ⅳ-6-13]은 학생들의 평일 공부 시간(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것을 합한 결과)에 대한 2013년~2020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추이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의 시작 연도인 2013년에 학생들의 평일 공부 시간의 비율이 초등학생 28.9%, 중학생 33.3%, 고등학생 35.1%로 가장 낮았다가, 2014년에는 초등학생 46.5%, 중학생 41.6%, 고등학생 50.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후에는 학생들의 평일 공부 시간의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초등학생이 30.7%, 중학생이 41.7%, 고등학생이 37.6%를 나타냈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평일공부시간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시간이 감소하여 학습시간이 평소보다 부족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소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29조는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고, 31조는 이들이 여가와 놀이 및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의 6영역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대분류 인권지표로 구성하였다. 교육의 기회보장 정도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OECD와 비교하여,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이 OECD보다 공교육에의 투입 비용이 많으나,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공교육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교육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학생 수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이러한 경향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잘 보장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낮아져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사교육의 축소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평균 36.5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교부적응률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현재 52,261명의 학업중단자가 나왔는데, 이미 학업중단으로 나와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5명 중 1명 이상인 23.6%가 학업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3명 중 1명이 해당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물은 결과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30%로 가장 많았고, '공부하기 싫어서' 27.2%, '성적이 좋지 않아서' 14.5%,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2.7%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학생들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다고 한 긍정 응답의 비율이 95.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도 긍정 응답이 96.3%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추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들 중에서 학교의 수업시간이 재미있었다고 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1.4%로 나타났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질문에의 긍정 응답도 전체 학생의 71.7%로 나타났다. 최근 2020년에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로 · 직업 교육에 있어서의 조사결과,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09점, 중학생이 3.88점, 고등학생이 3.80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15세~18세(526명)는 54.1%, 19세~29세(1,412명)은 48.1%로 나타났다.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기타 직업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 정도에 해당되어 5명 중 1명 가깝게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직업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3년 동안(2017년~2019년)의 진로 상황을 보면, 이들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32.4%였고, 취업자는 50.4%, 무직이거나 진로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16.6%에 해당되었다. 취업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도 점차 진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가 · 문화 · 활동 인프라 및 만족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수련시설의 지역적 균형 설치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또한, 여가 및 문화 예술 공간과 시설 이용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13세~24세 청소년은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주중 74.4%, 주말 67.3%)을 가장 많이 하며, 다음으로 휴식활동(주중 62%, 주말 62.4%), TV 및 DVD 시청(주중 59.5%, 주말 51.5%) 등의 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다. 15세~19세 청소년들의 2019년도 평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전체 여가활동 시간 3.0시간 중 63.3%인 1.9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휴일의 경우를 보면 전체 여가활동 시간 5.5시간 중 47.3%에 해당하는 2.6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여가 및 학습 시간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먼저 평일에 여가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였고, 여가 시간이 2~3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평일 여가 시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학습 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2-3시간 학습한다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학습 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 시간의 급격한 하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줄어들어 학습 시간이 평소보다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 · 청소년 난민 수

법무부(2020a)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64,357명(2019년에는 15,451명이 신청)이며, 난민인정심사를 완료한 31,852명 중 인정은 744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790명, 불인정은 29,318명, 철회는 10,18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5,879명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였고, 그 중 인정 79명, 인도적 체류허가 232명, 불인정 5,287명, 철회는 4,139명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말까지의 누적 난민보호율은 11.3%이고, 2019년 한해의 난민보호율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 2019년에는 15,451건으로 전년 대비 72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0a: 92-95).

법무부(2020a)의 '2019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신청자 64,357명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15,763명(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이 11,473명(17.8%),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6,688명(10.4%), 인종 3,928명(6.1%), 가족결합(2.4%)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에 한정하여 신청자 15,451명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가 3,792명(24.5%), 정치적 의견이 1,933명(12.5%),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462명(9.5%) 등의 순이었다(법무부, 2020a: 96).

표 Ⅳ-7-1.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129	4.5	2,896	13	13.8	94	44	8.2	539	-	-	1,745	-	-	363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16-2018, 2019b).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2020a). 2019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2-102.

우리나라의 아동 · 청소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64,357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은 2,400명(3.7%)이며, 2019년의 신청자 15,451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은 459명(3.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의 수가 급증했던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2013년(69명)부터 2018년(556명)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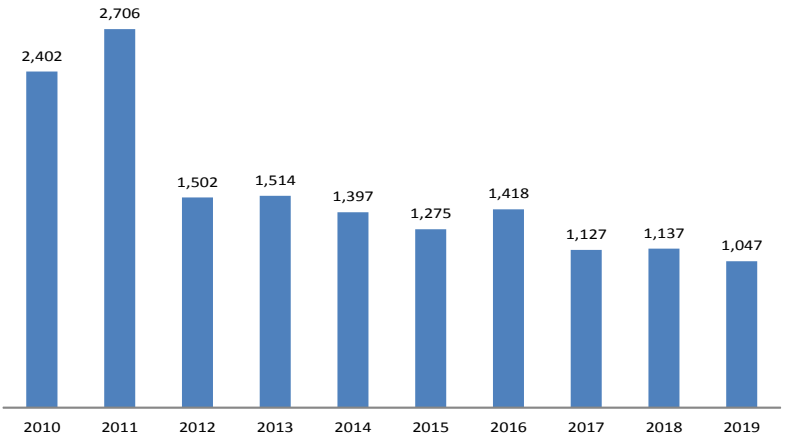
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459명으로 전년 대비 9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숫자 역시 2018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2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으며, 2019년 한 해 동안은 79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법무부, 2020a: 98).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인정자 79명 중 18세 미만은 37명으로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1〉). 이 비율은 2019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1,022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326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31.9%와 비교할 때 14.9%p 높은 수치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까지 총 2,217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3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법무부, 2020a: 100).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말까지 총 2,217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은 466명(2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2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41명(17.7%)으로 나타났다(〈표 Ⅳ-7-1〉).

②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면 2019년 한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1,047명이었으며, 2018년(1,137명)에 비해 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20.9: 147). 통일부(2020.9)의 북한이탈주민통계에 기초할 때,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0세~19세 사이의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5,097명이다. 이중 남자 청소년은 2,348명(46.1%)이고, 여자 청소년은 2,749명(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일부(2020.4). 2020 통일백서. p 280.

그림 Ⅳ-7-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표 Ⅳ-7-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697	2,615	2,142	1,376	573	342	9,396
여	646	2,103	6,952	7,523	4,581	1,453	994	24,252
합계	1,297	3,800	9,567	9,665	5,957	2,026	1,336	33,648

* 출처: 통일부(2020.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0.9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2020년 9월 말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 수

행정안전부(2019.11)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054,621명이었으며, 2017년 1,861,084명에 비해 193,537명(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문화가족 자녀는 237,506명(외국인 주민수 전체 중 11.6%)이었으며, 이중 국내출생 자녀는 226,145명(95.2%),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1,361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3〉).

표 Ⅳ-7-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8년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7년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증감(%)	15,051 (6.8)	7,592 (6.7)	7,459 (6.9)	1,208 (11.9)	616 (12.8)	592 (11.1)	13,843 (6.5)	6,976 (6.4)	6,867 (6.6)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p.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2018년 11월 1일 인구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표 Ⅳ-7-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인 자녀		국내출생 자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37,506		11,361		226,145	
소계		114,125	48.1	2,787	24.5	111,338	49.2
미취학 아동	0세	15,324	6.5	48	0.4	15,276	6.8
	1세	15,481	6.5	150	1.3	15,331	6.8
	2세	16,139	6.8	334	2.9	15,805	7.0
	3세	16,482	6.9	456	4.0	16,026	7.1
	4세	16,450	6.9	553	4.9	15,897	7.0
	5세	16,596	7.0	589	5.2	16,007	7.1
	6세	17,653	7.4	657	5.8	16,996	7.5
소계		92,368	38.9	4,480	39.4	87,888	38.9
초등학생	7세	17,984	7.6	640	5.6	17,344	7.7
	8세	17,656	7.4	677	6.0	16,979	7.5
	9세	16,796	7.1	801	7.1	15,995	7.1
	10세	15,928	6.7	859	7.6	15,069	6.7
	11세	14,100	5.9	811	7.1	13,289	5.9
	12세	9,904	4.2	692	6.1	9,212	4.1
소계		31,013	13.1	4,094	36.0	26,919	11.9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인 자녀		국내출생 자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중고생	13세	7,801	3.3	654	5.8	7,147	3.2
	14세	6,258	2.6	741	6.5	5,517	2.4
	15세	5,105	2.1	669	5.9	4,436	2.0
	16세	4,638	2.0	653	5.7	3,985	1.8
	17세	4,027	1.7	690	6.1	3,337	1.5
	18세	3,184	1.3	687	6.0	2,497	1.1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p.78.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2018년 11월 1일 인구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취학아동 연령(만 6세 이하)이 48.1%(114,12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이 38.9%(92,368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 13.1%(31,0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자녀와 귀화 및 외국인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연령이 4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 38.9%, 중고생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귀화 및 외국인 자녀의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생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생이 36.0%, 미취학 아동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4〉).

(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2020.2)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37,255명이며, 초등학생이 103,958명(75.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21,747명(15.8%), 고등학생이 11,520명(8.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5〉).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한국출생(108,069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자녀(20,459명), 중도입국(8,69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 출생	68,624	12,273	8,417	89,314	76,201	13,617	8,445	98,263	83,620	15,906	8,543	108,069
중도 입국	4,865	1,740	1,187	7,792	5,046	1,933	1,341	8,320	5,163	2,153	1,381	8,697
외국인 자녀	9,317	1,970	994	12,281	11,869	2,577	1,183	15,629	15,175	3,688	1,596	20,459
계	82,806	15,983	10,598	109,387	93,116	18,127	10,969	122,212	103,958	21,747	11,520	137,225
비율	75.7	14.6	9.7	100	76.1	14.8	8.9	100	75.8	15.8	8.4	100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주: 1) 다문화 학생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2_1) 국내 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2_2)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 국적에 따름

표 Ⅳ-7-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단위 : 명)

연도 /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8%	1.35%	1.68%	1.91%	2.19%	2.51%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에는 67,806명에서 2019년에는 137,22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019년 현재 2.51%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0.44%에서 2019년에는 2.5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Ⅳ-7-7〉), 전체 수는 2010년 1,143명에서 2019년에는 2,531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7-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9.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edu/status01.do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등을 말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8년의 경우 1.03%로 전체학생(0.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0.14%p 감소하였다(〈표 Ⅳ-7-8〉).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5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1.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 1.34%, 초등학생 0.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7-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0.93 (0.53)	0.83 (0.45)	0.77 (0.41)	0.81 (0.43)	0.87 (0.47)	0.94(0.50)
다문화	1.03 (0.38)	1.01 (0.38)	0.85 (0.29)	0.88 (0.29)	1.17 (0.32)	1.03(0.27)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 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표 Ⅳ-7-9.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7	전체 학생	0.87 (0.47)	0.61 (0.13)	0.66 (0.27)	1.47 (1.18)
	다문화학생	1.17 (0.32)	0.99 (0.15)	1.47 (0.52)	2.11 (1.37)
2018	전체 학생	0.94 (0.50)	0.66 (0.13)	0.73 (0.32)	1.62 (1.31)
	다문화학생	1.03 (0.27)	0.87 (0.11)	1.34 (0.44)	1.91 (1.35)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 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보다 더 높은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Ⅳ-7-10〉). 2019년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3.0%이며, 이는 2018년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인 1.03%(〈표 Ⅳ-7-9〉)보다 1.97%p 높은 수치이다.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10.8%에서 2017년에 2.0%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2.5%, 2019년에는 3.0%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7%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7-10.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5년도	'14. 4. 재학생 수(명)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명)	2	20	27	49
	중도탈락률(%)	0.2	2.9	7.3	2.2
'16년도	'15. 4. 재학생 수(명)	1,224	824	427	2,475
	중도탈락생 수(명)	7	19	26	52
	중도탈락률(%)	0.6	2.3	6.1	2.1
'17년도	'16. 4. 재학생 수(명)	1,143	773	601	2,517
	중도탈락생 수(명)	11	14	26	51
	중도탈락률(%)	1.0	1.8	4.3	2.0
'18년도	'17. 4. 재학생 수(명)	1,026	697	661	2,384
	중도탈락생 수(명)	7	20	32	59
	중도탈락률(%)	0.7	2.9	4.8	2.5
'19년도	'18. 4. 재학생 수(명)	932	682	751	2,365
	중도탈락생 수(명)	13	22	35	70
	중도탈락률(%)	1.4	3.2	4.7	3.0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9.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edu/status01.do 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3)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②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차별경험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차별경험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8: 467). 2018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표 Ⅳ-7-11〉),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2%였으며,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2.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8~24세(10.1%)의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11세(9.7%), 12~14세(8.8%), 15~17세(7.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학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8.9%)가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13.9%)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장배경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17.6%)가 차별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거주 경험'(9.0%), '국내에서만 성장'(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2012	13.8	86.2	100.0(66,536)
	2015	6.9	93.1	100.0(82,476)
	2018	9.2	90.8	100.0(94,524)
성별	여성	9.2	90.8	100.0
	남성	9.2	90.8	100.0
연령	9-11세	9.7	90.3	100.0
	12-14세	8.8	91.2	100.0
	15-17세	7.7	92.3	100.0
	18-24세	10.1	89.9	100.0
재학여부	학교에 다님	8.9	91.1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3.9	86.1	100.0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8.5	91.5	100.0
	외국 거주 경험	9.0	91.0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17.6	82.4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10.2	89.8	100.0
	한국계 부+외국계 모	8.6	91.4	100.0
	외국계 부모	10.9	89.1	10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6	90.4	100.0
	기타귀화자	5.3	94.7	100.0
거주지역	동부	9.0	91.0	100.0
	읍면부	9.6	90.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6	88.4	100.0
	100-200만원 미만	10.0	90.0	100.0
	200-300만원 미만	11.2	88.8	100.0
	300-400만원 미만	7.8	92.2	100.0
	400-500만원 미만	9.7	90.3	100.0
	500만원 이상	6.3	93.7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29.
여성가족부(2016a).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77, p.462.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 주: 1) 3년마다 가구조사로 실시되는 조사로, 9-24세 자녀 대상으로 지난 1년 간의 차별경험을 질문한 결과임. 응답자 사례수는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표 Ⅳ-7-12.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단위 : %, 점)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2015년		77.9	16.0	8.8	22.8	*	32.3
2018년	차별한 사람(%)	64.0	9.1	6.8	12.8	28.1	11.3
	차별정도(점)	2.51	1.40	1.34	1.54	1.79	1.41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3-584.

* 주: 1)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차별정도는 1~4점 척도로 값이 클수록 차별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차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Ⅳ-7-12〉), 친구(64.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터의 고용주/직장동료(28.1%), 이웃(12.8%), 모르는 사람(1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2015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신규 조사항

목으로 포함된 '일터의 고용주/직장동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차별경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Ⅳ-7-13〉), 15세~19세 북한이탈자녀 가운데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에 8.8% 였으며, 2018년의 6.0%에 비해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13.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경험

특성별	2017		2018		2019	
	차별/무시당한 경험여부		차별/무시당한 경험여부		차별/무시당한 경험여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 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구금 현황

이주아동의 자유박탈과 관련하여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구금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Ⅳ-7-14〉), 2017년의 경우에는 화성외국인 보호소 24명, 청주외국인 보호소 8명, 여수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 3명 등 총 35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4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 25명,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 4명 등 총 53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18명이 증가한 것이다(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 57-58).

표 Ⅳ-7-14. 이주아동 구금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4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8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4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이주아동 구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2019.5.20.자 결정)). http://incrc.org/ 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 주: 2019. 4. 30. 기준

(3)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결혼이민이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61%에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거주가 안착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되었다면 향후부터는 이민자와 그 2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 데도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이 공교육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고,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6.25.: 1-2). 또한, 여성가족부(2018.3)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8-2022)의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분야의 주요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3).

표 Ⅳ-7-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15년)		84.7	70.2	59.9	62.2	53.4	33.5	-	18.3	19.5	20.4
전체(2018년)		95.1	84.6	71.6	69.9	60.5	40.2	36.4	31.2	31.7	32.2
성별	여성	96.0	85.5	73.1	72.8	62.6	41.1	38.6	32.9	33.0	33.7
	남성	64.2	83.6	70.3	67.0	58.5	39.3	34.3	29.7	30.2	30.9
연령	9-11세	98.2	84.7	61.8	66.2	52.4	29.8	29.6	25.9	25.8	25.8
	12-14세	97.3	89.4	80.9	72.7	64.4	40.1	39.5	34.1	34.1	34.9
	15-17세	95.6	85.8	84.1	76.1	71.5	50.7	46.2	37.9	40.3	40.6
	18-24세	80.4	74.4	73.5	69.8	69.8	62.6	41.9	36.4	36.4	39.6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97.1	86.1	72.6	70.5	60.6	38.8	36.1	31.0	31.6	31.9
	학교에 다니지 않음	67.4	63.3	60.4	61.8	60.1	59.5	39.8	34.4	32.1	38.2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97.4	86.5	73.1	70.8	61.3	40.3	36.9	31.4	31.5	32.3
	외국 거주 경험	96.4	86.5	73.6	67.5	65.2	40.6	34.6	32.2	33.0	33.2
	외국에서 주로 성장	64.7	59.0	52.0	62.1	44.9	38.7	32.4	27.3	31.2	31.6
한국 국적	있음	96.8	86.0	72.7	70.4	61.2	40.2	36.6	31.4	31.6	32.3
	없음	47.3	44.5	41.1	53.2	42.6	40.5	29.0	28.0	31.8	31.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6.0	87.6	80.4	72.7	60.1	39.9	36.2	31.3	31.5	32.2
	100-200만원 미만	97.3	89.1	73.1	74.5	64.0	43.0	37.8	31.4	32.6	32.8
	200-300만원 미만	95.0	84.0	72.8	73.7	64.3	44.9	43.3	35.5	35.4	37.7
	300-400만원 미만	94.7	85.9	70.2	68.5	62.9	36.9	37.5	30.1	28.0	27.8
	400-500만원 미만	94.8	82.8	67.8	66.5	63.2	42.0	37.3	31.7	32.5	33.3
	500만원 이상	93.3	79.0	71.0	63.1	57.2	39.6	35.8	31.6	32.3	33.0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91-596.

* 주: *는 2015년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표 Ⅳ-7-16.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15년)		61.1	31.4	19.0	20.3	10.9	3.4	-	1.4	1.9	1.5
전체(2018년)		80.0	42.8	25.6	26.3	12.4	2.1	4.3	0.7	1.3	1.2
성별	여성	81.7	41.5	24.1	27.6	12.3	2.2	4.7	0.7	1.0	1.1
	남성	78.3	44.0	27.1	25.0	12.5	2.0	4.0	0.8	1.5	1.4
연령	9-11세	87.7	45.4	18.3	30.0	11.6	0.7	4.1	0.7	1.2	1.1
	12-14세	82.4	46.8	31.0	25.8	12.9	1.1	5.4	0.7	0.6	0.7
	15-17세	78.0	42.1	36.0	23.5	12.2	2.1	4.3	0.7	1.8	2.0
	18-24세	52.4	27.9	28.2	18.1	14.2	8.5	3.1	1.1	2.0	1.8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83.0	44.4	26.2	27.1	12.5	1.1	4.4	0.7	1.2	1.1
	학교에 다니지 않음	38.4	20.5	18.5	15.8	11.5	15.1	3.0	1.0	2.6	3.4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82.7	44.6	26.3	26.3	12.2	1.9	4.5	0.6	0.9	1.1
	외국 거주 경험	81.4	37.2	27.4	27.2	12.5	1.0	2.0	1.0	0.7	0.1
	외국에서 주로 성장	44.5	28.3	15.5	25.0	14.8	5.6	5.2	1.6	6.2	4.8
한국 국적	있음	81.6	43.8	26.1	26.4	12.5	2.0	4.4	0.7	1.0	1.1
	없음	33.2	14.0	11.5	23.1	10.1	4.8	2.3	1.4	7.9	5.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0.2	56.6	43.3	34.6	23.9	2.5	9.4	1.7	1.6	1.1
	100-200만원 미만	81.4	53.7	25.6	30.0	13.2	1.8	9.5	0.9	0.8	1.0
	200-300만원 미만	80.0	44.3	24.7	28.4	15.1	2.8	3.0	0.5	1.9	1.7
	300-400만원 미만	81.1	40.4	25.5	27.3	10.6	1.1	2.5	0.5	1.0	1.0
	400-500만원 미만	82.4	37.1	22.5	24.4	9.6	2.4	3.2	0.3	1.4	1.3
	500만원 이상	74.4	32.1	23.6	16.4	8.6	2.5	2.5	1.3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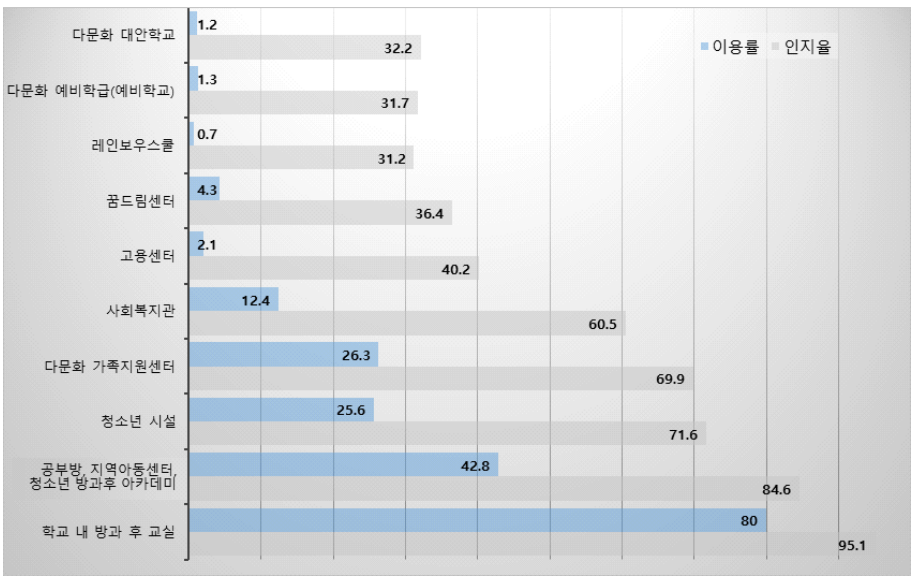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91-596.

* 주: *는 2015년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a: 591-596).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2018년의 경우, 학교내 방과후교실이 9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84.6%), 청소년시설(7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69.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8

년의 경우에는 학교내 방과후 교실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26.3%), 청소년시설(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결과는 2015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Ⅳ-7-16〉).

이상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에 비해서 실질적인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7-1]). 특히 학교내방과후교실에 비해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은 인지도와 실질적인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이들 시설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용률 향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진 작성

그림 Ⅳ-7-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복수응답)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 · 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에 수용된 수용인원수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보호소년은 법원으로부터 제7호부터 제10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말하며, 위탁소년은 법원으로부터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말한다.

표 Ⅳ-7-17.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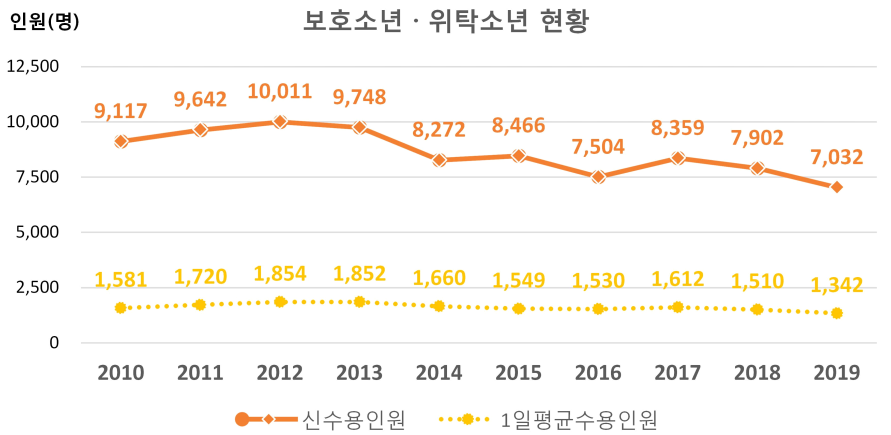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수용인원	계	9,117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보호소년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위탁소년	6,295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581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보호소년	1,163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위탁소년	418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1) 보호소년: 법원으로부터「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법원으로부터「소년법」제18조(임시조치)제1항제3호에 따라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이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보호소년의 경우, 신수용인원은 2019년의 경우 2,077명이었으며, 전년대비 1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16년까지는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수용인원도 2019년의 경우 946명이었으며, 2018년 대비 1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의 경우에는 신수용인원이 2019년의 경우 4,955명이었으며,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도 2019년에는 396명으로, 2017년의 444명에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그림 Ⅳ-7-3.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총 2,328명 중 1개월 미만 수용자가 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773명, 12개월

이상이 447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214명, 3개월 미만이 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498). 평균수용인원은 2018년에 5.10개월로 나타났는데, 2017년의 4.85개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9b: 450).

표 Ⅳ-7-18.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월)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728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월 미만	161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3월 미만	132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4
6월 미만	588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6월 이상 12월 미만	311	262	177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12월 이상	536	501	483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평균 수용기간	7.90	5.71	4.61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0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98.
* 원자료: 법무부(2019a). 2018 법무연감.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청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의 경우 18세가 17,407명(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7세 15,513명(23.5%), 16세 13,306명(20.1%), 15세 11,595명(17.5%), 14세 8,321명(12.6%)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6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청소년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Ⅳ-7-19.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134,992 (10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8)
2009	113,022 (10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0)	445 (0.5)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53.
* 원자료: 대검찰청(2019.12). 2019 범죄분석. p.494.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강간 등이 26명(2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도 등이 14명(12.1%), 폭력·상해 11명(9.5%), 절도 10명(8.6%), 사기·횡령 9명(7.8%), 과실범 4명(3.4%), 살인 3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504). 그리고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절도와 살인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간, 폭력·상해, 강도, 과실범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0.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절도	사기·횡령	폭력·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0	146(100)	45(30.8)	3(2.1)	1(0.7)	32(21.9)	33(22.6)	11(7.5)	3(2.1)	18(12.3)
2011	114(100)	26(22.8)	-	5(4.4)	33(28.9)	18(15.8)	10(8.8)	1(0.9)	21(18.4)
2012	170(100)	42(24.7)	2(1.2)	17(10.0)	54(31.8)	24(14.1)	11(6.5)	2(1.2)	18(10.6)
2013	152(100)	43(28.3)	1(0.7)	17(11.2)	46(30.3)	16(10.5)	7(4.6)	0(0)	22(14.5)
2014	131(100)	34(26.0)	2(1.5)	5(3.8)	34(26.0)	11(8.4)	6(4.6)	2(1.5)	37(28.2)
2015	130(100)	26(20.0)	10(7.7)	10(7.7)	27(20.8)	14(10.8)	5(3.8)	2(1.5)	36(27.7)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 출처: 법무부(2020.6.). 2020 교정통계연보. p.72-73.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626.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21〉), 2018년의 경우 3년 미만이 55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33명(31.4%), 10년 미만 13명(12.4%), 1년 미만 2명(1.9%), 6개월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각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3년 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1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1.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0	146 (100)	-	23 (15.8)	58 (39.7)	45 (30.8)	15 (10.3)	5 (3.4)	-	-
2011	114 (100)	1 (0.9)	10 (8.8)	48 (42.1)	38 (33.3)	12 (10.5)	4 (3.5)	1 (0.9)	
2012	170 (100)	-	12 (7.1)	94 (55.3)	44 (25.9)	13 (7.6)	4 (2.4)	3 (1.8)	-
2013	152 (100)	-	8 (5.3)	87 (57.2)	39 (25.7)	10 (6.6)	3 (2.0)	5 (3.2)	-
2014	131 (100)	-	7 (5.3)	67 (51.1)	42 (32.2)	11 (8.4)	2 (1.5)	2 (1.5)	-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627-628.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신병이 유치되어 있는 소년이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으로 소년보호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소년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보호사건의 고유한 제도로서, 소년보호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황지태, 김지영, 원혜욱, 김지연, 2016: 8-9).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사법에서 법적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국선 보조인 선정건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국선보조인 선정건수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통계가 없고, 각 가정법원의 내부자료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자료협조체제가 구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국선보조인 조력횟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의 조력횟수는 2016의 경우 4,359회로 나타났다(대한민국정부, 2017: para. 185). 그리고 2011년부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표 Ⅳ-7-22.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단위: 회)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 원자료 : 법무부 내부 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소년사법 시설들이 수용정원 대비 과밀정도를 산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년사법시설들의 비인권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없고, 수용시설별로 내부자료로 작성되거나 별도로 분류된 통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지표산출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확인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되었다.

표 Ⅳ-7-23.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

분류심사원	수용인원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62 (95.3%)	216 (127.1%)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205.8 (129.7%)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64 (91.4%)	89 (127.1%)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4 (120%)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28 (56%)	34 (68%)	33 (66%)	38 (76%)	37 (74%)	31 (62%)	33.7 (67.5%)
광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27 (54%)	39 (78%)	45 (90%)	41 (82%)	53 (106%)	45 (90%)	42.9 (85.8%)
대전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38 (95%)	26 (65%)	31 (77.5%)	42 (105%)	39 (97.5%)	44 (110%)	33.9 (84.7%)
춘천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3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6 (20%)	14 (46.7%)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2.8 (42.7%)
제주소년원 (위탁대행) / 정원 1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3 (30%)	4 (40%)	4 (40%)	2 (20%)	3 (30%)	3 (30%)	2.6 (26.4%)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전국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 대비 1일 수용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Ⅳ-7-23〉),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2018년의 경우 124.7%였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1년간의 평균은 1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소년원은

2018년에 117.1%였고, 11년간의 평균도 120%로 높았다. 대전소년원의 경우에는 2018년에 110%였고 11년간 평균은 84.7%로 나타났다. 광주소년원은 2018년에 90%였고, 11년간 평균은 85.8%로 나타났다. 대구소년원은 2018년에 62%였고, 11년간 평균은 67.5%였다. 춘천소년원은 2018년에 46.7%로 나타났으며, 11년간 평균은 42.7%였다. 제주소년원은 2018년에 30%였고, 11년간 평균은 26.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부산소년원은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의 평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 정원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Ⅳ-7-24〉), 연도별 평균이 100%가 넘는 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159.4%), 오륜정보산업학교(140.3%), 읍내정보통신학교(141.1%), 고룡정보산업학교(105.1%), 대산학교(138.3%), 정심여자중고등학교(174.6%), 신촌정보통신학교(106.7%) 등 7개였으며, 평균이 100%를 넘지 않은 소년원은 송천중고등학교(78.7%), 미평여자학교(55.6%), 한길정보통신학교(87.5%) 등 3개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년원 중 70%가 정원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서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24.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

소년원	수용인원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5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94 (129.3%)	269 (179.3%)	236 (157.3%)	234 (156%)	246 (164%)	204 (136%)	239.3 (159.4%)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10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86 (186%)	132 (132%)	119 (119%)	139 (139%)	125 (125%)	111 (111%)	140.3 (140.3%)

소년원	수용인원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88 (97.8%)	137 (152.2%)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126.1 (141.1%)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2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39 (115.8%)	130 (108.3%)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	126.1 (105.1%)
송천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4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23 (87.9%)	123 (87.9%)	108 (77.1%)	92 (65.7%)	81 (57.9%)	91 (65%)	110.2 (78.7%)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10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54 (154%)	123 (123%)	115 (115%)	98 (98%)	122 (122%)	121 (121%)	138.3 (138.3%)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9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	46 (51.1%)	45 (50%)	45 (50%)	45 (50%)	85 (94.4%)	50 (55.6%)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 / 정원 8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179 (223.8%)	123 (153.8%)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39.6 (174.6%)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4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29 (72.5%)	36 (90%)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5 (87.5%)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100명	연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인원 (수용률)	69 (69%)	117 (117%)	93 (93%)	89 (89%)	107 (107%)	103 (103%)	106.7 (106.7%)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4-3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성인과 혼거수용 문제이다. 형집행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소년수용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로 신분변경이 될 경우에는 성인과 분리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개의 교정기관 중에서 분리수용을 밝힌 교정기관은 8개(20.51%)에 불과하였으며, 26개의 교정기관(66.67)은 형집행법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 30).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정기관에서의 수년수형자를 성인과 분리수용하기 위한 관련부처의 관심과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처우불복제도는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 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처우 및 인신 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무연수원, 2020.5: 372).

표 Ⅳ-7-25.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내용 / 연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 ·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372.
법무부(2020.6.). 2020 교정통계연보. p.123-128.

수용자의 처우불복신청은 2019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4,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 · 고발 916건, 청원 558건, 행정심판 509건,

행정소송 91건, 헌법소원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25〉).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성인 포함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것으로,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건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리된 통계치 생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항고는 271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건수는 232건으로 나타났다. 처리유형은 기각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용(환송) 26건, 취하 18건, 기타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항고의 경우에는 2020년에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처리는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유형은 기각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취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6. 소년보호 항고 · 재항고 사건 수

연도	구분	금년접수	처리				
			합계	인용(환송)	기각	취하	기타
2019	항고	244	252	29	201	20	2
	재항고	21	19	-	17	2	-
2020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 출처: 법원행정처(2019). 2019 사법연감. p.1067.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

여 실시되는 제도로서,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그리고 보호관찰 부과연령은 10세로 하향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509). 2018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27,733명이며, 이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45,364명으로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27〉).

표 Ⅳ-7-27.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184,813	54,824	29.7
2009	218,049	66,789	30.6
2010	196,233	71,015	37.0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0.3
2013	175,318	65,815	37.5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09.
* 원자료: 법무부(2009-2019a). 법무연감.

사회봉사명령이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 유도 등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무보수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제공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에 대한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며,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연령은 14세로 낮아졌고,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초

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512). 2018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6,258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9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262명이었다(〈표 Ⅳ-7-28〉).

표 Ⅳ-7-2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69	3	5,208	133	301	24
2016	6,026	1,282	4,744	1	4,373	130	215	25
2017	6,656	1,122	5,534	4	5,246	159	99	26
2018	6,258	996	5,262	6	4,923	177	117	39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13.
* 원자료: 법무부(2019).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 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게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도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513). 2018년의 경우,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4,490명으로 전년대비 5,28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은 2018년의 경우 4,025명이었으

며, 협력집행(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465명이었다(〈표 Ⅳ-7-29〉).

표 Ⅳ-7-2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87	9,954	43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33	-	-	21	2	6	4
2017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8	4,490	4,025	465	1	52	53	-	8	351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14.
* 원자료: 법무부(2019).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19b: 469). 2018년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청소년은 3,031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기소유예자 20,237명 대비 1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30〉).

표 Ⅳ-7-3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범죄(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C/B×100)
2008	134,992	64,680	5,886	9.1
2009	113,022	57,951	7,104	12.3
2010	89,776	45,313	2,967	6.5
2011	89,068	41,720	1,363	3.3
2012	107,490	44,349	5,812	13.1
2013	91,633	34,866	4,548	13.0
2014	77,594	28,759	3,473	12.1
2015	71,035	28,333	3,413	12.0
2016	76,000	26,558	3,409	12.8
2017	72,759	25,416	3,495	13.8
2018	66,142	20,237	3,031	15.0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70.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9), 검찰연감. 대검찰청(2009-2019). 범죄분석.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선도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다르다. 여기에서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방법으로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도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비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여성가족부, 2019b: 472). 2018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266,032명이었으며, 이중 보호관찰소에서 선도위탁을 실시한 인원은 2,519명(0.9%)이었고, 재범 등으로 인한 위탁 취소는 112명이었다.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기소유예자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59,183명이 감소하였으며, 선도대상자도

1,85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8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73.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9). 검찰연감.

이상에 언급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함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에 따른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이승현, 권해수, 2018: 32). 전국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1개 비행예방업무대행 소년원(제주)에서는 각 관할 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비행예방 전문교육 및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소년의 비행성향 개선 및 재비행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은 3~5일 과정의 통학형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비행유형별 예방교육과 법교육, 문화예술교육, 장애체험, 심리치료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교육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가 추진되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나기가족캠프를 대안교육이나 보호자교육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가 부산, 청주, 서울남부, 서울북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등 교육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20.5: 636-637). 그러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지표생산을 위해서는 관련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18년의 경우 20.2일이었으며, 2017년 대비 1.4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32〉). 그리고 2018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5시간이었고, 2017년 대비 13.3시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2.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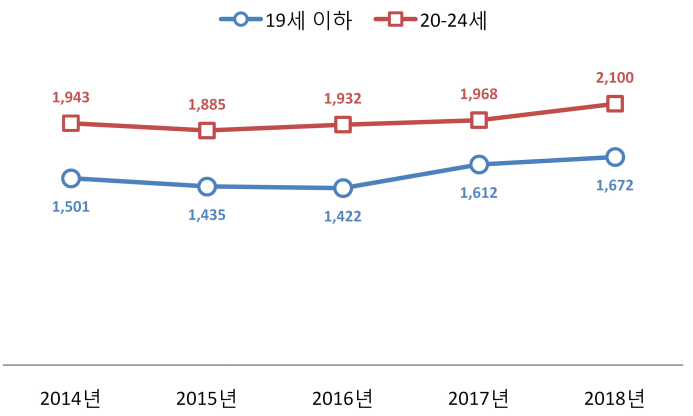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3	전 체	20.7	179.7	20.6	169.8	20.7	176.3
	19세이하	19.9	174.5	19.6	159.5	19.7	165.6
	20-24세	21.1	187.6	20.6	170.1	20.8	176.3
2014	전 체	20.8	179.8	20.5	168.9	20.7	175.9
	19세이하	19.5	168.9	18.9	155.0	19.1	161.5
	20-24세	20.9	184.7	20.5	169.7	20.7	175.1
2015	전 체	22.5	188.5	22.2	176.7	22.4	184.2
	19세이하	20.8	164.9	19.6	151.9	20.2	158.8
	20-24세	22.2	187.3	21.9	176.3	22.0	180.3
2016	전 체	21.8	186.3	21.6	174.5	21.7	182.0
	19세이하	20.0	165.4	18.4	144.4	19.2	155.5
	20-24세	21.7	187.2	21.3	174.8	21.4	179.4
2017	전 체	21.7	185.4	21.4	173.0	21.6	180.8
	19세이하	20.7	175.5	19.4	155.6	20.0	165.0
	20-24세	21.4	183.6	20.9	170.3	21.1	175.5
2018	전 체	20.4	172.0	20.0	160.1	20.2	167.5
	19세이하	19.0	153.4	18.1	141.6	18.5	147.3
	20-24세	20.3	172.8	19.6	158.8	19.9	164.2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6b, 2017, 2018b).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19-420.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근로시간은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임.

② 청소년노동자의 임금수준

2018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월평균 1,672,000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2,100,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세 이하 근로자와 20세-24세 청소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그림 Ⅳ-7-4])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XⅣ.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그림 Ⅳ-7-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표 Ⅳ-7-33〉). 하지만 전체 평균과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처럼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격차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청소년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7-33.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212	18,835	21,203	22,193	12,076 (66.3)	13,053 (69.3)	14,492 (68.3)	15,472 (69.7)	16,709	17,381	19,522	20,573
19세 이하	9,265	9,896	11,479	12,461	7,356 (79.4)	7,828 (79.1)	9,215 (80.3)	9,754 (78.3)	7,827	8,336	9,820	10,506
20~29세	13,066	13,495	15,374	16,353	9,459 (72.4)	10,175 (75.4)	11,472 (74.6)	12,342 (75.5)	11,938	12,431	14,177	15,139
30~39세	18,382	18,920	21,387	22,250	13,860 (75.4)	14,694 (77.7)	15,823 (74.0)	16,834 (75.7)	17,749	18,280	20,530	21,451
40~49세	20,682	21,430	24,093	25,057	14,217 (68.7)	15,237 (71.1)	16,771 (69.6)	17,430 (69.6)	19,575	20,279	22,730	23,750
50~59세	19,565	20,609	22,802	24,069	13,362 (68.3)	14,406 (69.9)	16,064 (70.4)	17,213 (71.5)	17,860	18,923	21,043	22,410
60세 이상	14,831	15,083	17,521	18,421	10,922 (73.6)	12,193 (80.8)	13,425 (76.6)	14,819 (80.4)	12,874	13,722	15,552	16,760

* 출처: 고용노동부(2017.5).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2
고용노동부(2018.4.).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4.
고용노동부(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List.do?menuId=0010001100116114&leftMenuId=0010001100116&bbsId=LSS106 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청소년의 실업률은 2019년에 15-24세가 10.4%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34〉).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5-24세는 2019년에 남자는 11.1%로 여자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실업률이 높은 경향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15-19세 연령급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8.6%로 나타났으며, 15-24세의 실업률 10.4%보다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5-19세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7-34. 청소년 실업률 추이

성별	연령계층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8
계	계	4.4	3.7	3.7	3.6	3.7	3.7	3.8	3.8	3.1
	15-19세	14.5	12.3	11.9	10.6	10.0	8.7	9.3	8.6	8.0
	15-24세	10.8	10.2	9.7	10.5	10.7	10.3	10.5	10.4	8.5
남자	계	5.0	4.0	4.0	3.6	3.8	3.8	3.9	3.9	3.0
	15-19세	15.2	13.0	15.1	10.4	10.9	9.8	10.4	10.9	10.3
	15-24세	13.5	12.1	11.1	11.3	11.0	11.2	11.1	11.1	9.2
여자	계	3.6	3.4	3.3	3.5	3.6	3.5	3.7	3.6	3.2
	15-19세	13.8	11.7	9.6	10.7	9.2	7.7	8.4	6.6	6.0
	15-24세	9.1	8.9	8.9	10.0	10.5	9.7	10.2	9.9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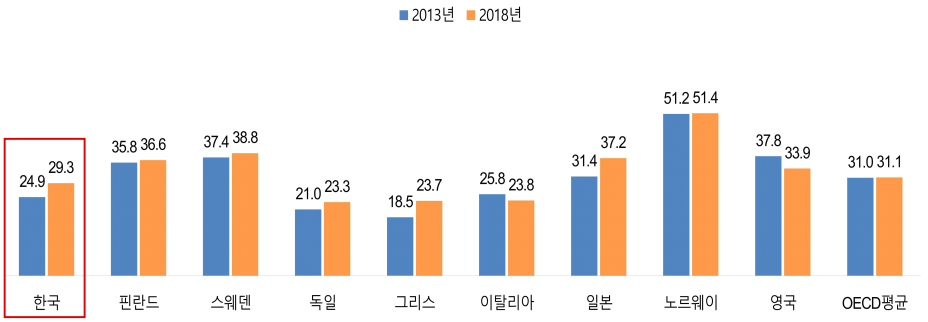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 에서 2020년 9월 26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에 29.3%로 OECD 평균인 31.1%보다 1.8%p 낮았다([그림 Ⅳ-7-5]).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의 24.9%보다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고용된 청소년(15-24세) 대비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VII.
* 원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그림 Ⅳ-7-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3/2018)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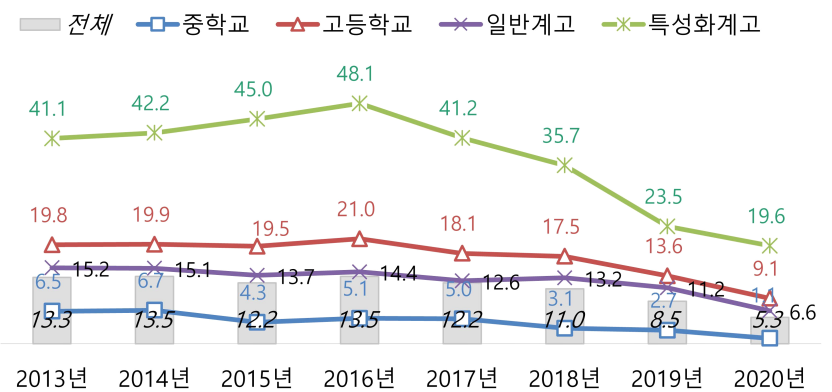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5.6%)이 여학생(4.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9.1%)가 중학교(1.1%)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19.6%)가 일반계고(6.6%)보다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8.7%)이 대도시(4.9%), 중소도시(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12.1%로, 양부모가정(4.7%)이나 조손가정(3.4%)보다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4.7%), 상(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10.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5.5%), 상(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7-3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3	94.7	100.0(5,656)	
성별	남학생	5.6	94.4	100.0(2,933)	1.723
	여학생	4.9	95.1	100.0(2,724)	
학교급	중학교	1.1	98.9	100.0(2,703)	182.337***
	고등학교	9.1	90.9	100.0(2,954)	
고교 유형	일반계고	6.6	93.4	100.0(2,390)	92.945***
	특성화계고	19.6	80.4	100.0(564)	
지역 규모	대도시	4.9	95.1	100.0(2,138)	23.160***
	중소도시	4.5	95.5	100.0(2,715)	
	읍면지역	8.7	91.3	100.0(8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	95.3	100.0(5,058)	47.408***
	한부모가정	12.1	87.9	100.0(459)	
	조손가정	3.4	96.6	100.0(51)	
	기타	4.3	95.7	100.0(63)	
학업 성적	상	2.5	97.5	100.0(1,442)	52.488***
	중	4.7	95.3	100.0(2,430)	
	하	8.1	91.9	100.0(1,759)	
경제적 수준	상	4.1	95.9	100.0(2,822)	34.364***
	중	5.5	94.5	100.0(2,286)	
	하	10.3	89.7	100.0(517)	

***p 〈 .001.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7-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경험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처우의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먼저 주요 항목에 대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61.4%였으며,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생(70.8%)이 고등학생(6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5%였으며, 중학교(13.9%)가 고등학교(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4%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7.7%)가 중학교(4.5%)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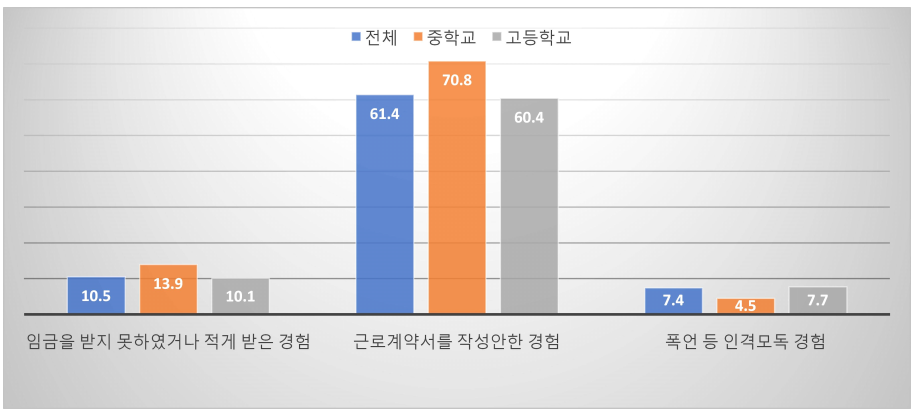


그림 Ⅳ-7-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10.5%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여학생(9.0%)이 남학생(11.7%)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13.9%)가 고등학교(10.1%)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고교유형별는 일반계고(10.3%)가 특성화계고(9.8%)보다 높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피해경험의 비율에 있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상반되는 추이를 보였다.

표 Ⅳ-7-3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9.5	8.4	2.1	100.0(296)	
성별	남학생	88.3	9.8	1.9	100.0(165)	1.030
	여학생	91.1	6.6	2.4	100.0(131)	
학교급	중학교	86.0	10.0	3.9	100.0(28)	0.635
	고등학교	89.9	8.2	1.9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89.7	8.8	1.5	100.0(158)	0.518
	특성화계고	90.1	7.3	2.5	10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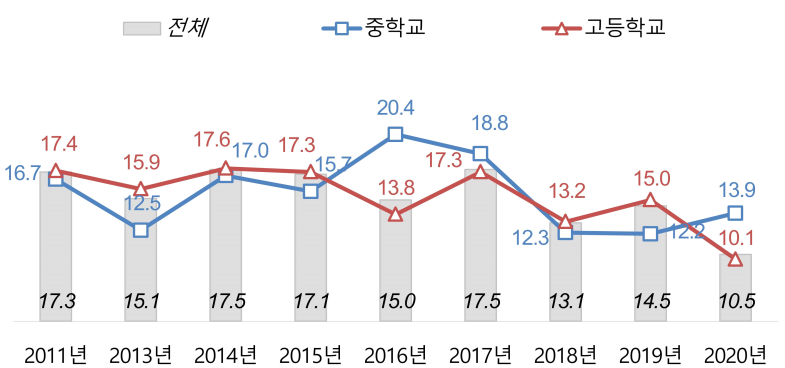


그림 Ⅳ-7-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4.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1-2번은 10.0%, 3번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1.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17.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4.3%로 중학교(13.1%)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14.8%로 일반계고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피해경험은 전년 대비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3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5.8	10.0	4.2	100.0(296)	
성별	남학생	88.3	7.8	3.9	100.0(165)	2.174
	여학생	82.7	12.8	4.5	100.0(131)	
학교급	중학교	86.9	13.1	0.0	100.0(28)	1.604
	고등학교	85.7	9.7	4.6	100.0(268)	
고교유형	일반계고	86.1	10.7	3.3	100.0(158)	1.825
	특성화계고	85.2	8.3	6.5	10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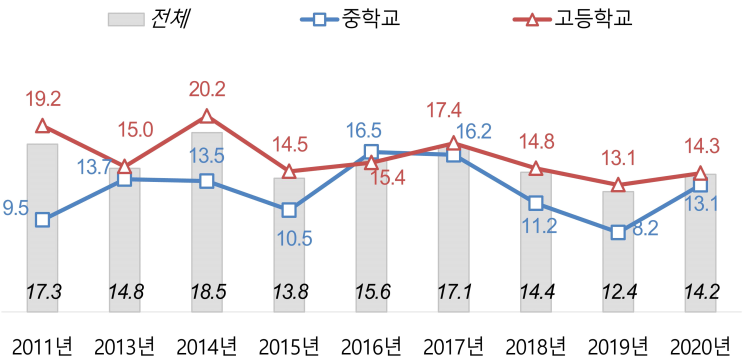


그림 Ⅳ-7-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6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63.0%)이 여학생(59.4%)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70.8%)가 고등학교(60.4%)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61.6%)가 특성화계고(58.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학업성적별로는 하(66.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60.8%), 상(3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경험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다.

표 Ⅳ-7-3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61.4	31.3	7.3	100.0(296)	
성별	남학생	63.0	28.1	8.9	100.0(165)	2.665
	여학생	59.4	35.4	5.3	100.0(131)	
학교급	중학교	70.8	29.2	0.0	100.0(28)	2.779
	고등학교	60.4	31.6	8.0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61.6	32.7	5.7	100.0(158)	2.987
	특성화계고	58.7	29.9	11.5	100.0(110)	
학업 성적	상	38.7	54.6	6.7	100.0(36)	11.439*
	중	60.8	30.1	9.1	100.0(114)	
	하	66.7	27.1	6.2	100.0(143)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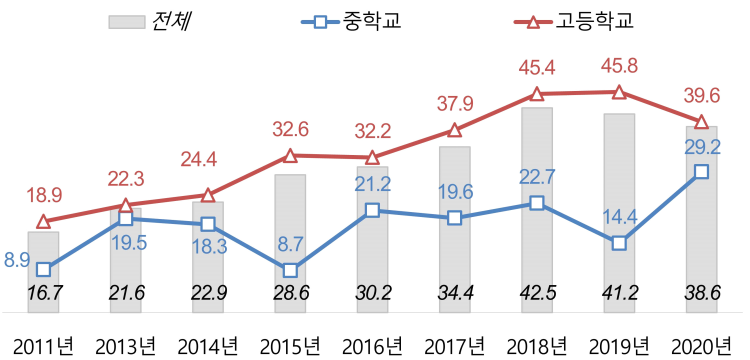


그림 Ⅳ-7-1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8%였다. 성별로는 여학생(9.3%)이 남학생(4.8%)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7.0%)가 중학교(4.5%)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10.2%)가 일반계고(4.8%)보다 높

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11.8%)가 대도시(5.6%), 읍면지역(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21.2%로 중(6.2%)이나 하(3.7%)보다 높았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20.0%)가 상(6.0%)이나 중(2.1%)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감소, 2020년에는 소폭 증가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0.3%p 증가하였다.

표 Ⅳ-7-3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3.2	5.8	1.0	100.0(297)	
성별	남학생	95.2	3.8	1.0	100.0(165)	2.754
	여학생	90.7	8.3	1.0	100.0(132)	
학교급	중학교	95.5	4.5	0.0	100.0(28)	0.421
	고등학교	93.0	5.9	1.1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5.2	3.3	1.5	100.0(158)	4.992
	특성화계고	89.9	9.6	0.6	100.0(111)	
지역 규모	대도시	94.4	4.0	1.6	100.0(105)	11.439*
	중소도시	88.2	10.7	1.1	100.0(121)	
	읍면지역	100.0	0.0	0.0	100.0(70)	
학업 성적	상	78.8	19.5	1.7	100.0(36)	14.923**
	중	93.8	5.0	1.2	100.0(115)	
	하	96.3	3.0	0.7	100.0(143)	
경제적 수준	상	94.0	4.8	1.2	100.0(117)	19.229***
	중	97.9	2.1	0.0	100.0(125)	
	하	80.0	17.0	3.0	100.0(53)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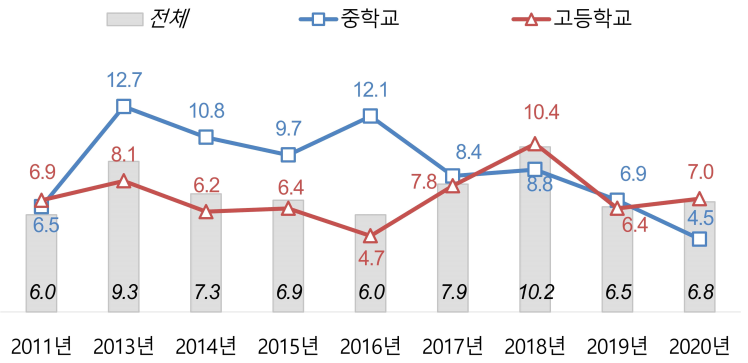


그림 Ⅳ-7-1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4.7%였으며, 2019년 대비 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5.3%)이 여학생(3.8%)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8.3%)가 고등학교(4.3%)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5.5%)가 일반계고(3.4%)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Ⅳ-7-4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5.3	3.3	1.4	100.0(296)	
성별	남학생	94.7	4.0	1.3	100.0(165)	0.689
	여학생	96.1	2.3	1.5	100.0(131)	
학교급	중학교	91.7	8.3	0.0	100.0(28)	2.888
	고등학교	95.7	2.8	1.5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6.6	2.1	1.3	100.0(158)	0.720
	특성화계고	94.5	3.6	1.9	10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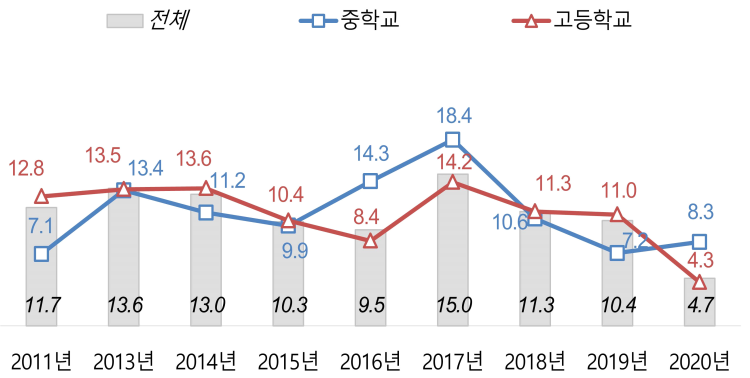


그림 Ⅳ-7-1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7.4%였으며, 2019년 대비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8.8%로 여학생(5.5%)보다 인격모독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7.7%)가 중학교(4.5%)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9.8%)가 일반계고(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차이는 없었다.

표 Ⅳ-7-4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2.7	5.6	1.8	100.0(296)	
성별	남학생	91.2	6.4	2.4	100.0(165)	1.359
	여학생	94.5	4.5	1.0	100.0(131)	
학교급	중학교	95.5	4.5	0.0	100.0(28)	0.650
	고등학교	92.4	5.7	2.0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3.9	4.0	2.2	100.0(158)	2.151
	특성화계고	90.2	8.1	1.7	100.0(110)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매년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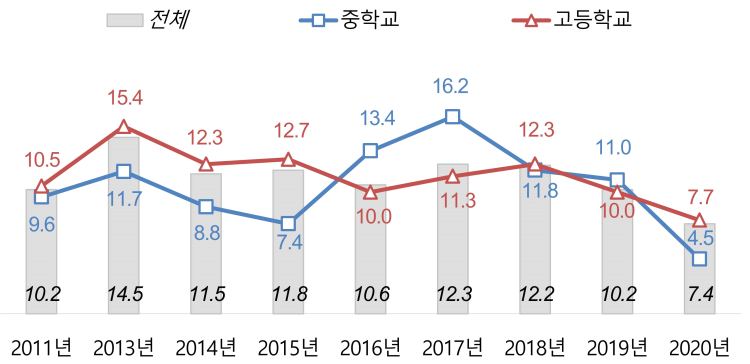


그림 Ⅳ-7-1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9%였으며, 2019년 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3%로 여학생(0.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5%로 고등학교(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0%로 특성화계고(1.0%)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4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8.2	1.5	0.4	100.0(296)	
성별	남학생	96.7	2.7	0.6	100.0(165)	4.443
	여학생	100.0	0.0	0.0	100.0(131)	
학교급	중학교	95.5	4.5	0.0	100.0(28)	2.040
	고등학교	98.4	1.2	0.4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8.0	1.3	0.7	100.0(158)	0.808
	특성화계고	99.0	1.0	0.0	10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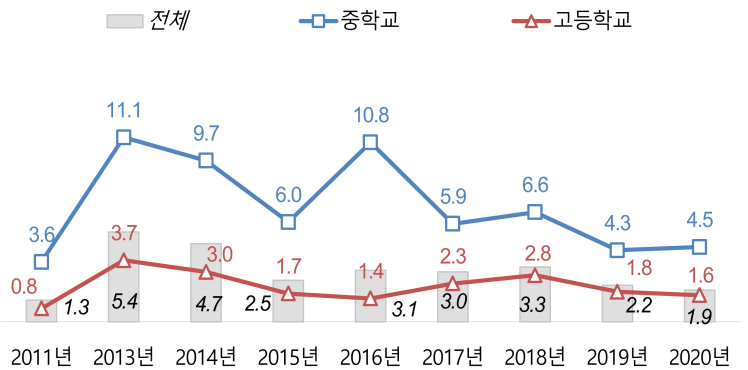


그림 Ⅳ-7-1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3%로, 2019년 대비 2.4%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14.5%)이 남학생(14.3%)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15.4%)가 중학교(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17.3%)가 특성화계고(12.6%)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업성적별로는 상(26.0%)이 중(18.1%)과 하(8.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의 비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Ⅳ-7-4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2020(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85.7	9.7	4.6	100.0(296)	
성별	남학생	85.8	10.2	4.1	100.0(165)	0.306
	여학생	85.5	9.2	5.3	100.0(131)	
학교급	중학교	95.5	4.5	0.0	100.0(28)	2.683
	고등학교	84.6	10.3	5.1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82.7	12.7	4.6	100.0(158)	2.596
	특성화계고	87.4	6.8	5.8	100.0(110)	
학업 성적	상	73.9	13.3	12.7	100.0(36)	11.588*
	중	81.8	13.1	5.0	100.0(114)	
	하	91.4	6.3	2.3	100.0(143)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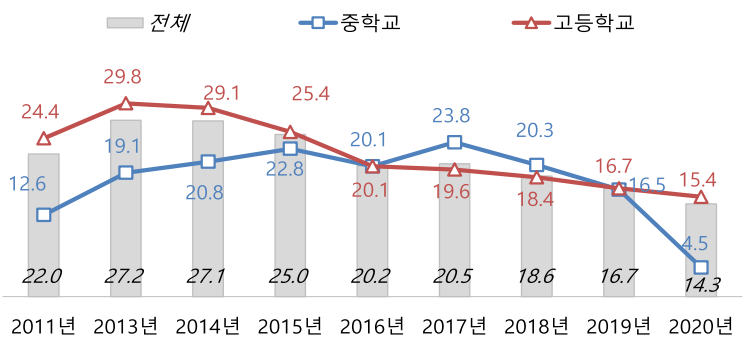


그림 Ⅳ-7-1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연도별 추이)

본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경험 중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2.9%)이 남학생(2.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4.5%)가 고등학교(2.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3.6%)가 일반계고(2.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적피해경험의 비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4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χ^2
전체		97.2	2.1	0.7	100.0(296)	
성별	남학생	97.3	1.4	1.3	100.0(165)	2.449
	여학생	97.1	2.9	0.0	100.0(131)	
학교급	중학교	95.5	4.5	0.0	100.0(28)	1.127
	고등학교	97.4	1.8	0.8	100.0(2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8.1	1.3	0.7	100.0(158)	0.695
	특성화계고	96.5	2.6	1.0	10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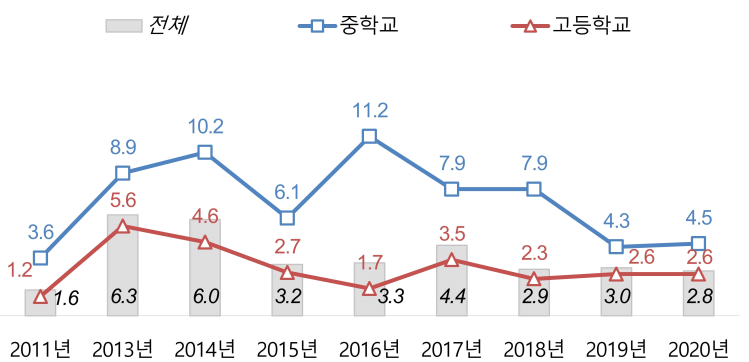


그림 Ⅳ-7-1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연도별 추이)

③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의 경험률의 경우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36.1%였는데, 이는 2016년(28.8%)에 비해 7.3%p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42.0%)가 중학교(28.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55.5%)가 일반계고(3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받은 곳은 학교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8.5%), 청소년시설(8.1%),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였으며, 이는 2016년 대비 0.7%p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74.3%)가 고등학교(70.6%)보다 높았고,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73.0%)가 일반계(6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7-4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구분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복수응답)				교육이 도움됨
			학교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2016	28.8	26.5	6.2	6.7	2.7	71.2
	2018	36.1	33.8	8.5	8.1	3.2	71.9
중학교	2016	26.8	24.5	5.9	7.6	2.6	75.7
	2018	28.9	26.0	7.9	9.1	3.0	74.3
고등학교	2016	30.5	28.3	6.6	5.8	2.9	67.6
	2018	42.0	40.3	8.9	7.2	3.4	70.6
ㄴ일반계고	2016	25.4	23.1	4.8	4.8	2.5	64.9
	2018	39.1	37.6	7.2	6.2	2.8	69.8
ㄴ특성화고	2016	53.9	52.4	14.8	10.6	4.8	73.6
	2018	55.5	53.6	17.4	11.9	6.5	73.0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213~215

* 주: '교육이 도움된다'는 값은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4) 성적 착취

(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46〉), 2019년의 경우 4,468명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대비 1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계와 기소현황도 2019년에는 4,521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642명이 기소처리 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자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접수 인원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대검찰청, 2020.10: 34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 Ⅳ-7-46.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 출처: 대검찰청(2018.10).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10).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10). 2020 검찰연감. p.350.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3)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이며,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임. (기소인원과 불기소인원에 대한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②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은 2013년 이후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2020년 5월 19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형량은 〈표 Ⅳ-7-47〉과 같다.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아동 · 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 · 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 ·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피해아동 · 청소년'이 아닌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 · 청소년'으로 정의함으로써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유입 아동 · 청소년들이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5.19. 일부개정).

표 Ⅳ-7-47.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 · 치상(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유사강간(제7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제추행(제7조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7조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7조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 음모(제7조의2)(신설 20.6.2)	3년 이하 징역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	간음 혹은 간음하게 하는 경우 (제8조1항)(개정 2020. 5. 19.)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제8조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9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10조)	강간 등 살인 · 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제11조)	제작수입수출(제11조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 · 배포 · 전시(제11조2항) (개정 2020. 6. 2.)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 상영(제11조3항)(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지(제11조5항) (개정 2020. 6. 2.)	1년 이상의 징역
		알선행위(제11조4항) (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음란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매매 혹은 국외 이송, 국외거주 아동 · 청소년을 국내 이송(제12조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의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제13조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 [(제13조3항) (신설 2020.5.19)	해당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폭행 · 협박 · 선불금 · 업무고용 등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4조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강요행위를 범한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 약속(제14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제14조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및 알선정보제공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범죄사용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 건물 제공(제15조1항)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 장소 제공, 알선정보 제공(제15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제15조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	폭행 ·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강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출처: 법제처(2020).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법제처(2020).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법제처(20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19. 개정, 2020.11.20.시행) 주요 개정내역
가. 피해아동 · 청소년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 · 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 ·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별현황은 법규정이고 실제 엄벌에 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김진애 보도자료(2020.10.19.)에 따르면, 19세미만 성폭력사범의 경우 2015년에 4,516명에서 2019년 4,468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2015년 38.7%에서 2020년 36.3%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은 2015년에는 14.4%였으나 2019년에는 9.3%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의정부지검이 5.6%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서울서부지검의 15.2%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0% 내외의 구속률을 보였다. 이는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7-48.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단위 : %)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B)	변화율 (B/A)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27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20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13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14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18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361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65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72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65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56

* 출처: 국회의원 김진애(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주: 관련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추행)

(2)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

국내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있다. 2019년 1월 현재의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의 현황은 〈표 Ⅳ-7-49〉와 같다.

표 Ⅳ-7-49.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70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1	성폭력 피해여성	• 일반(1년+1년6월) • 장애인(2년+회복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 청소년)	40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11)	탈성매매 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1년(수사 · 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2	자활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탈성매매 여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29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2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07 (40)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 · 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시설
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6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	• 6월(+3월 2회) ※ 장기시설: 2년이내	생활시설
1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시설
14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14호	가정 · 성폭력 피해여성	• 2년(+2년)	생활시설
15	청소년성문화센터	58	유아 · 초 · 중 · 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19.01). 2019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0.

* 주: 1) 2019년 1월 기준
2)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19.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19.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19.1월~)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현황

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19년 현재 전국에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2개소 감소하였다.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9년의 경우 276,12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77,925건(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32,519건(22%), 수사·법적지원 22,331건(15%), 의료지원 8,473건(6%), 시설입소연계 7,063건(5%)의 순이었다(<표 Ⅳ-7-50>).

표 Ⅳ-7-50.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

(단위 :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개소수		169	154	159	167	167	170	168
	상담건수		145,446	146,750	158,188	158,029	180,572	241,343	276,122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심리, 정서적 지원	건	48,473	46,414	57,469	65,178	68,352	92,293	77,925
		%	54	51	57	57	56	58	53
	수사, 법적 지원	건	15,921	15,944	14,760	16,614	15,736	20,795	22,331
		%	18	18	15	15	13	13	15
	의료지원	건	5,227	5,652	5,760	6,326	6,304	8,290	8,473
		%	6	6	6	6	5	5	6
	시설입소연계	건	2,076	890	1,199	1,747	3,317	4,371	7,063
		%	2	1	1	2	3	3	5
	기타	건	17,569	21,684	21,749	24,114	29,130	34,579	32,519
		%	20	24	22	21	24	22	22
	합계	건	89,208	90,584	100,937	113,979	122,839	160,328	148,31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각 연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 주: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입소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3) 기타: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지원 등

2019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51〉), 전체 상담건수 912건 중 여성이 840건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62건으로 6.8%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건수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세 이하가 22건(2.4%)이었으며, 8세-13세가 62건(6.8%), 14세-19세가 102건(1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은 691건으로 전체 상담인원의 75.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상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51.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5 (0.5)	640 (70.2)	90 (9.9)	56 (6.1)	22 (2.4)	27 (3)	840 (92.1)
남	0 (0.0)	46 (5.0)	11 (1.2)	5 (0.5)	0 (0.0)	0 (0.0)	62 (6.8)
총계	5 (0.5)	691 (75.8)	102 (11.2)	62 (6.8)	22 (2.4)	30 (3.3)	912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0.3).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p.3.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5453&board_md=view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주: 성별이 '미상'인 값은 제외함.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9년 기준 총 32개소이며, 2018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다. 연도별 개소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0개소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1개소가 증가한 31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19년에도 1개소가 추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20.8: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입소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52〉), 2019년의 경우, 총 287명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며, 이중 24세 이하는 212명으로 총 73.9%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세 미만은 1명(0.3%), 5세-12세 이하는 15명(5.2%), 13세-18세 이하는 125명(43.6%), 19세-24세 이하는 71명(24.8%)이었다.

표 Ⅳ-7-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	1.4	7.0	46.2	26.9	18.5	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	0	2.4	37.6	32.7	27.3	0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	0	1.1	30.0	38.3	30.6	0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	0	1.7	31.2	34.7	32.4	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	0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	0.3	5.2	43.6	24.8	25.8	0.3
	장애인	168	0	6	47	52	60	3
		100%	0	3.6	28	31	35.6	1.8

* 출처: 여성가족부(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표 Ⅳ-7-53〉), 2019년의 경우 총 141,719건으로 전년 대비 21,04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건수는 2015년부

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지원 내용 별 실적을 살펴보면 심리 · 정서적 지원이 66,514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 20,928건(14.8%), 의료지원 13,898건(9.8%), 학교문제(전학)지원 11,907건(8.4%), 수사 · 법적지원 1,284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5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 · 정서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15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	53.8	2.4	12.4	6.9	9.9	14.6
2016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	51.2	1.0	9.0	7.4	10.9	20.4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	52.1	1.1	7.4	9.0	14.1	16.4
2019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	46.9	0.9	9.8	8.4	14.8	19.2

* 출처: 여성가족부(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2019년 기준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30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40개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2019년 한해 동안 입소한 인원은 총 1,274명이었고, 자활지원인원은 920명, 상담건수는 61,554건이었다. 2020년 5월 19일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1.20.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에 대한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지원센터를 2021년에 전

국에 1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11.19.).

표 Ⅳ-7-54.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담소	26	28	29	29	30
지원시설	40	39	39	40	40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내부행정자료)(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6개 광역지자체의 보고를 통해 취득)

* 주: 1) 누적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및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있음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3.16.시행)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범죄 피해자로 확대된 제도로서,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20.5: 198-199).

2018년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7-55〉), 접수된 건수는 총 22,859건이며, 이 중 국선보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22,755건이고 지정률은 99.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는 2,811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정 건수도 2,852건이 증가하였다.

기관별 접수건수는 경찰이 14,9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 7,011건, 검사 856건, 상담소 등 5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선변호사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이 2013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리고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로 이 제도가 확대된 것과 더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20.5: 198).

표 Ⅳ-7-5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199.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 · 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 주: 1) '12. 3. 16.「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2) '13. 6.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3) '14. 9. 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5) 소결

특별보호조치의 지표체계는 2019년도와 유사하게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를 조사하였다. 소년 사법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 노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수준,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수를 살펴보았으며, 아동·청소년 난민 수, 탈북난민 아동·청소년 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를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난민 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64,357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400명(3.7%)이며, 2019년의 신청자 15,451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59명(3.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9%,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총 5,097명이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237,506명이었고, 이중 국내출생 자녀는 95.2%,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1.03%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3.0%)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을

살펴보면 사회적 차별경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친구(64.0%)가 가장 많았다. 이주아동의 자유박탈과 관련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의 경우 총 53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도 초창기에는 초기적응 지원에 집중하였다면 최근들어 이민자뿐만 아니라 2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지원하는데에도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정책적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실질적인 이용률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 사법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을 조사하였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경우 신수용인원은 2019년의 경우 2,077명이었으며, 전년대비 1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의 경우에는 신수용인원이 2019년의 경우 4,955명이었으며,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원 수용기간별로는 2018년의 경우, 총 2,328명 중 1개월 미만 수용자가 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773명, 12개월 이상 447명,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14명, 3개월 미만 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8세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7세(23.5%), 16세(20.1%), 15세(17.5%), 14세(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간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와 살인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간, 폭력·상해, 강도, 과실범 등은 2019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현황을 보면 3년 미만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수를 살펴보면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의 조력횟수는 2016의 경우 4,359회로 나타났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7개소 중 2개가, 소년원은

10개소 중 7개가 정원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용자의 처우불복신청은 2019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4,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 916건, 청원 558건, 행정심판 509건, 행정소송 91건, 헌법소원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수와 관련해서 항고는 271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건수는 232건이었다. 처리유형은 기각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운영과 관련하여 사회 내 처분 청소년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27,733명이었으며, 이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6,258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9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262명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을 집행받은 청소년은 총 4,490명으로 전년대비 5,289명이 감소하였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을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소유예자는 266,032명이었으며, 이중 보호관찰소에서 선도위탁을 실시한 인원은 2,519명(0.9%)이었다. 그리고 기소유예제도와 함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노동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 근로일수는 2018년의 경우 20.2일이었으며, 2017년 대비 1.4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의 실업률은 15-24세의 경우 2019년에 10.4%이었으며, 2018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이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노력과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고용청소년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

년의 비율은 2018년에 29.3%로 OECD 평균인 31.1%보다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61.4%였고, 조사대상 청소년의 10.5%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4.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8%였으며,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7.4%였으며,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9%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3%로 나타났으며,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의 경험률은 2018년에 36.1%로 나타났으며,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수준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수준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을 조사하였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4,468명이 접수되었으며, 4,521명이 처분 받았고 1,642명이 기소되었다.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은 2020년 5월 19일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은 2015년에는 14.4%였으나 2019년에는 9.3%로 대폭 감소하여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정도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19년 현재 전국에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2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22%), 수사·법적 지원(15%), 의료지원(6%), 시설입소연계(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6.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건수가 20.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9년 기준 총 32개소이며, 연령별 입소현황을 살펴보면, 24세 이하가 73.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5세 미만은 0.3%, 5세-12세 이하는 5.2%, 13세-18세 이하는 43.6%, 19세-24세 이하는 24.8%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66,514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30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40개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는 12개소이며, 이들 시설에 2019년 한 해 동안 입소한 인원은 총 1,274명이었고, 자활지원 인원은 920명, 상담건수는 61.554건으로 나타났다. 국선보호사 접수 및 지정건수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원대상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로 제도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5 정책 제언[89]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제안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최종 정책과제를 선정·제안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결과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협약 이행분석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아동권리 관점이 대폭 확장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채택되었지만,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책조정의 기능이 부재한 현재, 일관된 자료수집체계 구축과 포괄적 전략의 실효적인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아동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89) 5장 1절의 1) 협약 이행분석 시사점과 2절 정책과제 중 가정환경 상실아동 탈시설 정책, 우범소년 규정 사제, 이주아동 구금 금지 등 3개 과제는 김희진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이, 1절의 2) 실태분석 시사점과 2절 정책과제는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황세영 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4장과 동일 영역을 집필하였다.

가 개선되었으며,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재하며, 아동의 의견청취 기회가 실제로 환류되는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이를 통한 포괄적 전략 이행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적정한 예산 할당 및 중앙 단위의 일관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법·제도 전반에 반영하며,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 궁극적으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선거권 연령 하향 외에 대부분의 개선조치가 '보호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은 개별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을 핵심요소로 하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자유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필수요인으로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다. 보편적 출생등록을 통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 연령과 소속에 따른 배제 없이 누구나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권리, 어린 연령의 아동도 가능한 한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아동의 인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등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범국가 단위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일관된 법체계 마련, 아동과 관련된 사안 전반에 의견을 진술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확대 과정에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적절한 선거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이 보편적으로 확산된 현재 아동의 권리 실현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 및 국가의 책무도 강화되어야 한다.

(3) 폭력 및 학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하며, 특히 장애아동·이주아동 등 모든 아동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기반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가정환경을 위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돌봄 공백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아동학대 및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은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설보호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탈시설계획은 정책 전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원가정 지원 원칙을 실천하며, 아동의 자립지원과 가정형 보호를 촉진하여 단계적인 탈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수용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과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 보장적 조치도 조금씩 보완되었으나, 부모의 체포 및 구속 단계부터 수용단계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수용자 자녀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을 조력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이 55%로 나타났으며,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은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단서 조항 때문에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아동은 교육과 돌봄 공백 상황에 방치되어 통합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수교사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계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이란 지식습득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학습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양하며, 권리존중과 의무이행을 통해 선순환을 실천하는 교육환경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실현을 위한 일관된 법률이 부재하며,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아동인권교육 및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속 가정환경 등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며, 놀이 및 여가에 대한 권리는 저연령 아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명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방지를 적절한 성교육 시행, 학교생활규정과 생활지도 내 차별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인권 내용을 명시한 법률 제정, 그리고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및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여가 활동 지원 등 아동의 입체적 삶의 모습을 지지하는 적절한 법·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 대안적 교육체계 마련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7) 특별보호조치

법무부는 만 14세 미만 아동은 실무상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아동보호의 대안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구금된 대부분의 아동은 동반 수용된다. 더욱이 구금 가능 연령을 14세로 고려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보육, 교육 접근권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예외적으로 고려된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며 인터넷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등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도 새로운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원회의 권고에 명백히 반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보호소년법 개정을 통해 독방처우를 정당화하고 의료접근권을 축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강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수립 등도 이루어졌으나, 성폭력과 성착취, 성매매를 구분하는 현행 법률은 성매매 피해아동을 낙인화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 실천, 이주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단,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 소년보호시설 수용아동의 처우개선 등 기존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며, 변화된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할당과 종사자 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착취범죄의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성인에게 의율하는 시각을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성착취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논의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020년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성범죄 처벌 관련 법 제정이 두드러지며 놀 권리와 노동인권, 아동학대, 참여 등 다양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것이 고무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권리 업무를 전담하여 안정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은 3.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21.2%, 7.9%, 24.7%로 전년도 대비 비교적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생활 영역별 인권존중도는 가정(96.3%), 학교(95.6%), 우리나라 전체(83.7%), 사이버 공간(82.3%) 순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인권존중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의식과 태도 문항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69.6%),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87.3%), 학생자치조직의 의의(86.9%), 표현의 자유 보장(96.9%) 등에 높은 인식을 보였고 차별상황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금지(97.8%), 양성평등의식(97.1%),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평등권(94.3%) 보장 등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률은 46.5%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수업시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32.6%), 성차별(23.3%), 학업성적(22.6%), 외모 · 신체조건(20.8%) 등으로 인한 차별 순이었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나이(9.2%), 외모 · 신체조건(9.1%), 성별(8.1%), 학업성적(7.3%) 순으로 높았다. 2020년에는 모든 차별 영역에서 차별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률이 하락하였다. 이는 인권교육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행위 감소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등교와 비대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차별 행위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에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구축(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추이와 유사하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또한 10명 중 2~3명은 나이에 따른 차별, 성차별, 외모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률도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아동 ·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제도화가 필수적임에도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과 아동정책 주류화를 위해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와 조직이 마련된만큼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체계를 잡고 전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사결정 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진로 · 직업(94.2%), 상급학교 결정

(94.0%), 공부시간 · 방법 결정(91.0%), 집안의 중대사 결정(90.5%)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정도는 학생회 의견존중 · 반영도 54.6%, 예산 · 장소 · 시간 보장 46.7%, 학생회의 자치권 44.9%,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 38.2% 등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27.4%, 학교규칙 제 · 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81.7%로 나타났고 모두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9년 기준 239개가 구성 · 운영되어 98.4%의 운영비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율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정책분야에서도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13개 사항에 대해 8개가 수용, 4개 신중 검토, 1개 불수용이 결정되었다. 아동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1.9%로 여전히 10% 내외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71.0%로, 최근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27.2%)', '참여활동 정보 부족(25.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등의 응답을 보였다.

사상의 자유는 91.5%가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82.1%로 나타났고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44.1%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2.8%이고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6.5%로 최근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27.8%), 복장(30.3%), 소지품(9.7%) 검사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7.3%), 징계사항(15.2%), 시험성적(13.5%) 공개도 감소폭이 컸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7.6시간이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0.2시간, 0.3시간 감소하였다.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30.2%로 전년도에 비해 0.9%p 늘어났고, 이들이 주로 이용한 컨텐츠는 게임과 영화·TV·동영상, 메신저 등이다. 성인용 영상물의 이용률은 39.4%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일반 공공도서관은 997개소, 어린이도서관은 99개소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필요가 있다. 학생 독서량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성인용 콘텐츠, 온라인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으로, 2018년 기준 각각 51.3%, 36.5%, 71.0%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도움 정도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미디어 역량 지표는 정보 수집, 정보 신뢰, 이슈 참여, 콘텐츠 제작, 개인정보 이해, 학업관련 활용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조사 기준 학교급이 높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적 권리 영역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생활 보호 영역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과 교육비 미납, 징계사항, 개인시험성적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차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의 영향이 아닌지 내년 추이와 비교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현황 분석 결과, 조례시행 지역에서는 상담·구제 조치 및 학교 지원정책을 통해 학생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과 관련하여 올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지표들을 추가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능동적인 대처와 참여를 위해서는 올해 8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안전보장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폭력 및 학대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간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이행 노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아동 및 청소년 폭력이 전반적으로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맞벌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일찍 학교의 방과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해매체에 부정적으로 조기 노출되어 있어 공격성의 증가나 성적 가해 등 부정적인 심리와 정서 및 욕구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벌사회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급학교 입학시험에서 오는 심한 경쟁이 초등학생에게 까지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학생들의 이로부터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을 전체 초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미디어 교육을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시대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해매체로부터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모든 수행 평가가 경쟁을 조장하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적 영역

인 학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한다. 부모로부터의 자녀 폭력에 대해 부모 상담과 봉사명령 등 확실한 제도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이행되도록 실천성이 높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에 대한 근절 대책도 법·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6,417건이며 그 중 24,604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그 중 여아대상 학대가 51.8%, 남아대상 학대는 48.2%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6.9%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친부모가 73.5%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학대의 결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가 나왔으며 그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라는 그늘 안에서 많은 학대사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3자에 의한 개입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전담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그들의 업무과중,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음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진정성 있게 예방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체계부터 점검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임에 대한 조사결과, 야간시간 방임 50.5%, 비위생적 의복 및 침구 사용 6.2%, 질병 발생에 대한 무관심 3.4%, 결식 방치 4.7%, 결석에 대한 무관심 1.1%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연도별로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파악한 결과 아동학대사례는 2006년 5,202건에 비해 2018년 24,604명으로 약 373%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기관수는 2006년 42개소에서 2018년 62개소로 약 48%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근무자들은 상당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아동학대의 사례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의 증가가 시급하며,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각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재정의하는 방법도 참고해야 한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보육 시설 수와 재원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시설 수의 감소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시설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운영주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수요자에 맞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해 입양률을 살펴본 결과, 2019년 704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는데, 그 중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317명(45.0%)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입양 특례법의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국외입양이 50%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내 입양 문화와 입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다시 돌아봐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90]. 가해자는 큰 고민 없이 입양했으며, 학대 과정에서 수차례 신고가 되었지만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학대는 계속 자행되었다. 본 사건을 통해서 입양 과정의 문제점, 학대 발생과 대응 과정까지 모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후 사후관리가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의무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대 발생 시 공적체계의 투입과 자세한 현황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90) 국민일보(2020.11.11.).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 "증거인멸 우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47700.에서 2020.12.10. 인출.

사례이다.

가출과 관련하여 직접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가출을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의 2.9%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쉼터를 이용해본 대상자는 3.3%뿐이다. 이용기관에 대해 50.8%가 만족하지 않는 편으로 응답하였다. 가출청소년의 61%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가출했으며 20.8%가 학업문제로 가출했다.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원인들은 산재해 있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은 많지 않을뿐더러, 만족도가 낮으며 청소년들이 찾지도 않는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내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서비스 개편, 기관 홍보, 욕구조사 등 다양할 것이다.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2019년 특수학교의 수는 177개교로 2018년 대비 2개교가 증가하였다. 특수학급 수는 11,105개로 2018년 대비 429개가 증가하였다. 교원 수 역시 2018년 대비 734명이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29.0%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었고, 71.0%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데, 일반학교에 배치된 인원 중 대다수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들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진학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일반학급 내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며, 취업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특정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20~24세가 인구 십만 명당 2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0세가 16.6명, 15~19세가 14.4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의 원인은 0세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인이 4.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1~4세는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4세, 15~19세, 20~24세 연령대서는 모두 자살이 2.1명, 8.5명, 17.8명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 특히 스쿨존에서의 운수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자살예방센터가 실치 · 운영 중에 있지만 법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그 영역에 한정되는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인들의 거주지가 지역사회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동 · 청소년 범죄피해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아동 · 청소년 전체 피해는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가 24,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가 23,352건, 교통범죄 16,801건, 절도 12,65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관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개 시도에 각 1개씩, 전국 시 · 군 · 구에서 214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 37개소, 서울 25개소, 경북 24개소 등 전국 시 · 군 · 구에 241개소의 센터가 설치 · 운영 중이다. Wee프로젝트 기관으로, 단위학교에 설치 · 운영되는 Wee클래스의 경우 경기 1,610개소, 서울 830개소, 경남 494개소 등 전국 6,930개소의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Wee센터는 서울 27개소, 경기 25개소, 경북 23개소 등 전국 20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관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작용하는지, 서비스 과잉 또는 결핍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대화상대는 어머니로 36.6%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구가 36.0%, 형제자매가 7.1%, 아버지 4.5%, 이웃친척 1.4%,

청소년관련기관과 학교 상담교사, 담임교사는 각각 0.3%에 머물렀으며 대화상대가 없는 경우도 11.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약 50%는 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과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다음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이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안에는 상담교사와 Wee클래스, 담임교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이용률이 0.3%로 나타난 것은 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결과이다. 더하여 대화할 곳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6%나 되는 결과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전체적인 재개편을 요구하는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루빨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노력이 요구된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에 비추어 보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조사결과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고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심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평준화를 화두로 여론을 조성하고, 혁신적으로 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2020년 조사결과 나타난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의 상황도 모두 한국의 심한 경쟁 교육 때문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조사에서 응답한 학업중단의 이유인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84.4%로 이 모두가 극심한 경쟁을 야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선택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교육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나 산학협력 도제학교 수를 대대적으

로 확대하여야 한다. 일반고에서 직업계고로 전환하는 학교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학업중단의 이유 중 하나는 특성화고교에 입학하려고 해도 특성화고교이 입학정원이 적어서 입학을 하지 못하고 인문계고로 진학하게 되어 수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부는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조사에서 나타난 현재의 진로·직업 교육의 결과는 매우 비판적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로·직업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산업자원부와 기업 및 산업 영역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투입해야만 한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천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여가, 놀이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인권적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양한 여가 및 문화 예술 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함께 발굴해야 할 것이다.

(7) 특별보호조치

2019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8%이며,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북 아동·청소년의 수도 누적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탈북학생의 적응과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출생 자녀가 95.2%,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4.8%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학생의 중단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역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적응지원에 집중하던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을 이민자와 2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 데도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흐름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다문화가

정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기반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은 신수용인원이 2,077명이었으며, 1일 평균수용인원은 946명, 소년원 수용기간은 1개월 미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죄명은 강간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 형기별로는 3년 미만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인권친화적 사법환경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횟수는 4,359회였으며, 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이 100%가 넘는 기관은 2018년도 기준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7개소 중 2개소, 소년원의 경우에는 10개소 중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건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4,2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수는 2020년의 경우, 항고 271건, 재항고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유형별로는 기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년 사법 아동들의 인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수준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2019년에 10.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노동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9.3%였으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61.4%, 임금 미지급/적게 지급 10.5%, 폭언 등 인격모독 7.4%, 시간초과근무 14.2%, 부당해고 6.8% 등 부당처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2018년에 36.1%였고, 교육받은 기관은 학교가 33.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상당히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제도권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교밖 비제도권 교육기관으로 확장해서 학교에서의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함께 제도권 밖의 공간에서도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인원은 4,468명이었으며, 19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도 2020년 11월 20일부터 강화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실제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지원시설과 지원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1)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 · 6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등을 통해 최종 16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V-2-1. 아동 · 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91]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 (신규)	제5 · 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권고 이행계획 수립)	제5 · 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추진계획 수립 · 시행 추진시스템 제도화	제5 · 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점검 (매년 이행 실적 제출 및 점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	●	●
과제2.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 (신규)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시범적용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홍보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확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	●	●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신규)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 실태 분석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정책 거버넌스 토대 마련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	●	●
과제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신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관련 법제 검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 계획 수립	연령적합 설계규약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	●

과제명[91]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Ⅲ. 폭력 및 학대							
과제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개선 (신규)	아동학대 지역특성 고려한 배치인력 구성	업무 특성에 맞는 인력선발	현장조사, 조치를 위한 관련법 ·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법무부	●	●	●
과제2.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방교육 도입 (신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7조 내용 개정	학교폭력 예방 교재 개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	●	●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가정환경상실아동의 탈시설 정책 수립 (신규)	원가정 지원과 가정형 보호 촉진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아동보호 체계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탈시설 정책 도입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	●
과제2. 입양 관련 사후관리의 내실화 (신규)	입양특례법 제25조 1항 수정	의무적 모니터링 기간 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 및 파양 데이터 수집	보건복지부 법무부	●	●	●
과제3.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활성화 (신규)	이용자 및 이용대상자 욕구조사	이용자 욕구에 맞춘 쉼터 기능 개편	홍보 및 운영	여성가족부	●	●	●
Ⅴ.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인 통합교육 전면 실시 (보완)	장애 · 비장애 아동용 통합 학습 과정 마련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직제 개편 (보조인력 팀제)	일반학급 완전통합 교육 전면실시	교육부	●	●	●
과제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	법률안 개정	자립 지원관 계획 수립	자립 지원관 운영	보건복지부	●	●	-

과제명[91]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Ⅵ.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직업계고 확대 방안 마련(보완)	특성화고와 산학형 도제학교 일원화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으로 학교 수 확대	관련 법 · 제도 개선	교육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	●	●
과제2. 경쟁주의적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지구의 전국적 확대	마을결합 혁신학교 체제 구축	미래교육 지구 확대	혁신교육 지구 질적 제고	교육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	●	●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보완)	제도권/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	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확충 및 협력기관 확대 운영	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	●	●
과제2. 우범소년 규정 삭제 (신규)	아동사법 관련 종사자 대상 필수적 아동인권 교육 실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삭제	위기아동 ·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	●	●
과제3. 이주아동 구금 금지	구금시설 개선 및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비구금적 대안 모색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	●

91) 인권정책 과제 중 제3 · 4차와 제5 · 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과제임에도 그간의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검토하여 이행노력이 부족한 경우는 이전에 제시한 정책과제 제안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2)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Ⅰ-1.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도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정부는 2019년 10월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담은 제7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함. 협약 이행 진전사항과 제한점을 담는 국가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을 받은 시점부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성과를 점검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평가 ·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작동 미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받고 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9). ○ 정부는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권리업무를 위탁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협약 업무 사무국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됨. 이에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및 이행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엔심의 주기에 따라 협약이행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연도별 이행상황 정기적 점검 시스템 구축 - 제5 · 6차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소관부처(부서)를 명확히 하고 부처별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까지의 연도별 이행계획을 담은 '아동권리협약 및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2021~2024)' 수립 - 이행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치와 일정 기한 설정. 소관부처는 매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추진실적 점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적과 계획을 심의하고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관련 사항 협의 - 25개의 협약관련 부처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권고사항 취지에 맞는 정책목표 설정 및 실적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담당자 워크숍 등 협약 권고사항 이행 지원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화 - 주무부처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협약 기능 강화, 부처별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법규 마련 : 아동복지법 제10조의3(아동권리협약 이행계획의 수립 · 시행) 조항 신설 등 검토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에 협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정하는 조항 마련 검토 ○ 협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자원 배정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Ⅰ-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안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일반논평 제5호, 2012년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권고, 2013년 일반논평 제14호 등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기해 옴. ○ 정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3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조항을 마련함.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권고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하며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을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8). ○ 아동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영향평가가 아동정책 주류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도록 함.
세부과제	1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적용 확대로 제도의 완결성 제고 - 정부는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범운영 등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1차 시범적용(이양희 외, 2019.11) 이후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의 2차 시범운영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영향평가 세부운영 지침, 평가지표, 매뉴얼 등 보완사항 도출 및 제도 보완 - 아동정책영향평가(전문평가, 자체평가)의 시범적용 대상 확대 및 사회적 인식 확대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 배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가 범부처, 범사회적으로 아동정책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 시스템 및 법적 기반 구축 - 영향평가 자체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주요 현안 전문영향평가 확대, 공무원 교육 및 설명회, 사회적 인식과 관심 확대 사업, 지원단 운영 등 영향평가제도의 정교한 운영시스템과 기반 마련 -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반영도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 마련,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법령과 정책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개선조치 이행계획 제출 의무 등이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 영향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II-1.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에서 학교의 학생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아동 친화적인 절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 바 있음. 모든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일부 지역의 조례 시행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무부처, 유관부처, 교육청, 학교 간 역할분담과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 - 전국 규모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기존 교육부 및 교육청별 관련 정책사업 분석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정책 진단 실시 - 학생 인권 상담·구제 기구의 전국적 시행을 위한 성과·한계 분석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의 필요성과 실태에 대한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국민,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 2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정책 거버넌스 토대 마련 -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등 관련 주체 간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과 관련된 논의구조 마련 -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체계에 대한 상호소통 및 합의안 마련 3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 관련 정책 주무부처로서 교육부의 역할 명시 및 부처 내 전담부서의 업무 명확화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18)에 학생인권교육, 학생자치,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조성 관련 세부과제 발굴 및 강화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인권보호 조항 검토 및 개정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부처	○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Ⅱ-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올해 8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초안을 제시하고,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견 표명, 리터러시 함양,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혐오표현 및 성착취 방지 등 다각도에서 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적 제도 및 조치를 제안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8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20.8.27)을 발표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여 디지털 격차와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범부처 미디어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함.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방지 대책 및 능동적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세부과제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관련 법제 검토 · 개선 - 현재 디지털 환경 관련 법률들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접근권, 차별금지, 사생활보호권, 교육권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아동의 의견청문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권, 피해구제 조치 등에 대한 법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장민영, 2020).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원칙과 조항에 비추어 디지털 환경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해야 하는 '연령적합설계규약' 도입 등(한국인터넷진흥원, 2020.3), 게임, 소셜미디어, 앱, 웹사이트,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아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 계획 수립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침해 사안 실태 조사 및 아동 · 청소년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의 기본원칙 마련 - 관련 사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 및 정책방안 마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인터넷 환경 접근권, 아동 사생활권 보호, 매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 폭력 및 학대

Ⅲ-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현장에 투입하였음. ○ 시행 2달이 안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현실 비판과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언론을 통해서도 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 “혼자 밤에 가해자 만나러...” 아동학대 공무원 아찔한 현실(국민일보, 2020.12.09.)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행 한 달...1명이 24시간 대기출동?(KBS NEWS, 2020.11.02.)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시행 두 달..“인력 태부족”(KBS NEWS, 2020.12.04.)
세부과제	1 지역 아동학대 발생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 - 현재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목표인력을 채우지 못한 곳이 많으며 1인이 전담인 지역, 전담이 아닌 겸직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한 명의 전담공무원이 50~60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음. 지역적특성(인구,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연계협력기관을 통해 전담공무원 자체 업무량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과 전문성, 사명감 있는 전담인력 배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대기에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해야 할 경우도 더러 발생함. 업무 자체가 힘들고 학대아동과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사명감이 없이는 부담이 큰 직렬임. 따라서 전담공무원 배치에 있어 단순 인사이동이 아닌,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신규 인력 배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공성 강화 - 국가의 공적 업무를 시행하는 공무원이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관련 법령에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명시 및 전담공무원의 현실적 업무 범위 명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법령 변경 및 강화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관련 업무 집행 시 실효성 강화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법무부

Ⅲ-2.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에 따른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방교육 도입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도 2013년 이후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 폭행, 구타,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이나 구타의 경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에서 1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조기개입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세부과제	1 초등교육과정에서의 면밀한 학교폭력 실태 분석 - 전국 규모의 초등학교 대상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 2 초등교육과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 대책 마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연령대별 교재 개발 - 교재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교육시수 확보 - 실태조사 시 가정폭력도 함께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부모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 마련 3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1의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를 “학기별 초등학생은 2회 이상, 중 · 고등학생은 1회 이상)으로 개정 -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2에서 예방교육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중 ·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학급단위로만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초등학교는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시수 확보에서 중 · 고등학교보다 부담이 적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에 따른 조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
관련부처	○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Ⅳ-1. 가정환경상실아동의 탈시설 정책 수립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보호자 또는 연고자 대리양육을 실시하거나 입양을 하도록 하고, 가정형 보호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시설 입소를 결정해야 함. ○ 그러나 한국은 시설보호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가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만기 퇴소하는 실정임. 가정위탁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격차도 큼.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32(a)).
세부과제	1 원가정 지원과 가정형 보호 촉진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 위기가정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에 앞서 원가정 지원과 원가정 복귀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상담 및 지원체계 개선 -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관련 부서(아동보호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청소년 관련 부서 등)간 업무조정과 협력체계 구축(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지침 및 참고모델 개발) -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및 위탁가정 예산 국고 전환 - 지자체와 중앙당국(예: 아동권리보장원)이 주도하는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마련 - 시설보호조치 및 재배치 결정에 아동의 의견청취권 필수적 보장 2 아동보호체계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아동학대 조사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대한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시작된 만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 · 정기적 아동권리교육 실시 -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확보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지원과 개입이 일관된 원칙하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상시 운영을 위한 사무국 마련 등 아동복지법 또는 조례상 근거 필요 ○ 보호조치 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Ⅳ-2. 입양 관련 사후관리의 내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국내입양 진행과 관련하여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관리는 1년 까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입양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대해 파악이 어려우며, 파양에 대한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의 사후관리가 끝난 이후 입양아동은 무방비 상태에 놓임. 특히 나이가 어린 입양아동일수록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부(보건복지부)에서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입양 전(全)과정에서의 공적책임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후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동반될 필요성이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권고 E.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서도 입양과 관련하여 파양 사례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세부과제	1 입양 성립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의무 기간 연장 - 입양 성립 후 1년 간 입양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와 보고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추적조사가 어려움.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아동이 만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지속해야 하되, 보고 기간은 첫 1년 이후 2년에 1회, 3년에 1회, 5년에 1회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음. 2 파양정보수집 - 입양가정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이 지나 파양이 이루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파양 결정을 통보받은 시 · 군 · 구청장은 이를 입양기관에 통보하고 입양기관이 파양 정보를 취합, 자료화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입양특례법 제25조 1항.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를 법 개정을 통해 입양 아동이 만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이라는 점을 명시 ○ 예) 10세까지 2년에 1회, 20세까지 3년에 1회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법무부

Ⅳ-3.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활성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 조사결과 가출 후 관련 서비스 기관 이용률은 8.5%이며 가출 경험이 있는 전체 대상자의 3.3%만이 가출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출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성매매, 절도 등의 범죄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가출 이후 많은 사례가 청소년쉼터로 연계된다면 가출청소년 집단에 대한 규모 산출 및 보호, 가정복귀, 범죄 노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세부과제	1 욕구조사 - 무엇보다 가출청소년들이 왜 가출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쉼터에 대한 인지도부터,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통제와 간섭, 가정에 연락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2 쉼터 기능 개편 -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에 대해 이용자 욕구를 토대로 쉼터의 역할을 개편하고 가출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싶은 쉼터로 기능의 개편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호텔 청년주택처럼 모텔을 매입하고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또는 학위취득 등의 조건으로 숙소 형식으로 쉼터의 기능을 개편하는 것도 방법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에서 가출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의 전환과 함께 청소년쉼터 체계를 입소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체계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홍보강화 - 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이용자 욕구에 맞춰 개편하고,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준수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법무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V-1. 장애인 통합교육 전면 실시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및 분석 한 결과, 장이인 대상 교육의 분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따라 졸업과 취업에 차이가 나타남. ○ 진학률은 완전통합교육을 받은 일반학급의 학생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률은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18.2%로 가장 많았음. ○ 통합교육은 장기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반교사들의 인식,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와 협력 부족, 통합 교과과정 미비 등 다양한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김동일, 정광조, 2014).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권고 F.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세부과제	1 장애인 통합교육의 전면실시 -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학생들이 취업, 진학 부분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특성상 통합교육을 장애인 교육의 의제로 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교육의 비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필요함. - 통합교육의 전면 실시에 앞서 통합교과과정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장애학생 중심의 통합교과과정 수립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에서 장애 ·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를 선정. 본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할 예정임. 2 통합교육 담당교사와 보조인력제 - 저학년 시기부터 통합교육의 실시를 권장하고 특히,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동 · 청소년을 위해 통합교육 보조인력제를 도입하여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팀 체제로 학급을 운영하는 제도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일반학급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 · 비장애 통합교육과정 필요
관련부처	○ 교육부

V-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중인 아동 · 청소년들 중,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성인 거주시설로 전원조치 되는 아동 · 청소년들도 있지만, 지원이 된다면 좀 더 자립 훈련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도 있음. ○ 개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립서비스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현재는 거주시설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자립지원에 필요한 장소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
세부과제	1 법률안 개정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20.12.10.) 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자립 이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자립 준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어떠한 대상이 되었건 자립을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함. 따라서 법률안 공표 전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 아동 · 청소년 자립지원관 마련 - 장애는 있지만 기능 수준이 높은 장애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탈시설 자립이 가능하나 훈련이 필요함.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자립 훈련을 위한 자립지원관이 갖추어져 있음. 따라서 장애 아동 ·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관이 시설 외부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3 기관 별 자립지원제도 운영 시스템 지원 -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이 마련되면 훈련이 가능한 장소와 담당근무자,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개별 기관 마다 컨설팅을 통해 기관 특색에 맞는 자립지원시스템이 필요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2020.12.10.)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Ⅳ-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직업계고 확대 방안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 10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5~6만 명에 달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중학교에서 직업계고에 진학을 하려고 해도 진학의 문이 좁아 입학하지 못하고 다시 일반고로 배치됨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과 학습으로 등교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학생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진로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계고 수를 정부가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직업계고 수의 확대 -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는 현재 총 52개교(국립6, 사립5, 공립41)로 입학정원이 6,534명에 달하고 있음(2020. 10. 15 기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67개 사업단과 183개교가 있고(2020. 3 기준),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계 특성화고 463개교와 특성화 대안고등학교 25개교를 합해 총 488개교가 있음(2020. 8. 28.기준). - 정부는 일반고에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전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 대폭 지원해서 직업계고 수를 확대하고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의 상호 이동의 문을 열어둠. 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일원화 - 현재 분리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일원화하여 직업계고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2개의 직업계고 유형으로 정비함. - 일원화된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독일의 산학일체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졸업 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직업계고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초중등교육법의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일원화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1항 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입시킴.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직업학교로 성격이 같으므로 일원화 검토
관련부처	○ 교육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Ⅳ-2. 경쟁주의적 학교교육개선을 위한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지구의 전국적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업중단 이유 조사 결과 학생 30.0%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27.2%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14.5%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12.7%'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로 이를 모두 합하면 84.4%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현행 일반학교에서의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오는 심한 학업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또는 행복교육지구)사업 확대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어 지역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삶과 배움이 일치되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교 밖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진로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세부과제	1 지역교육 공동체 중심의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지구 체제의 구축 - 마을,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밖 유관기관 등이 지역교육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의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확대 조성함. -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와 협력의 교육정책 기조 아래 지역 교육력 제고와 창의 · 인성 · 민주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함. - 지자체 내 교육 · 청소년 담당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교육 · 청소년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임. 2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확대 및 부처 협력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지구 모델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예산과 행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의 11개 미래교육지구를 점차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 - 학교 안팎 교육 · 청소년 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정비 및 법제화 검토
관련부처	○ 교육부, 행정안전부

(7) 특별보호조치

Ⅷ-1.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0년도 본 인권실태조사 일환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61.4%),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0.5%),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7.4%) 등 부당처우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2018년 기준 36.1%로 여전히 낮음(여성가족부, 2018a).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에서도 청소년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근로감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대상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후 재발방지 여부를 점검하는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권고함(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para. 122에 대한 권고사항).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국적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비제도권 교육에서도 청소년대상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세부과제	1 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내실화 -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학교와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 직업교육 실시 일반고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2 학교밖 비제도권 교육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내실화 -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 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센터 등 학교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확대 운영 - 체험중심/현장중심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법개정 등 특이사항	○ 노동인권교육 시수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총론 및 지침 개정 필요
관련부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Ⅷ-2. 우범소년 규정 삭제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소년법은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즉, 소년법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형사절차로 기능하며, 형사절차 이상의 적법절차 원칙과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권리 보장이 요청됨. ○ 리야드지침 및 아동사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4호는 소위 '지위비행'을 범죄로 보고 형벌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장이 우범소년 통고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되는 등 우범소년 규정은 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가중하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손쉽게 박탈할 우려가 있음. ○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 · 6차 최종견해는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을 명확히 권고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7(e)). 연령을 이유로 범죄와 무관하게 아동에 대한 처벌적 제재를 부과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삭제 - 경찰 및 통고 주체자(보호자,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의 장),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현행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소년법 개정 추진 2 위기아동 ·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개선 - 위기아동에 대한 복지적 개입 관점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정보연계 강화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보호대책 강화 3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 우범소년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막고, 가능한 적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실시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소년법 개정 및 위기아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및 정보연계를 뒷받침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관련부처	○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Ⅷ-3. 이주아동 구금 금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배치하는 것을 '보호'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에 해당함.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상, 동반 또는 미동반 아동이 구금되는 실정임.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2013년~2015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아동이 67명이며, 자유박탈아동한국실무그룹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5월) 구금된 아동은 평균 7.7일, 최장 140일까지 구금되었음. ○ 2020년 발표된 유엔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는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구금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하기 위해'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금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함. ○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 · 6차 최종견해는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적 대안을 보장할 것, 망명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으며(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3(a)),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 4차 최종견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aras. 66-67) 및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17-19차 최종견해(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paras. 17-18)에서도 반복된 내용임. 이주아동 구금 금지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 ·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1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구금 금지 원칙을 법률상 명시 - 아동구금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제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본국은 물론 연령을 증명할 수 없어 아동을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할 우려) 2 구금시설 개선 및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 법 개정 전까지 아동보호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간동안 아동의 가족실 이용, 교육, 급식 및 의료서비스 등 접근권 보장 - 이주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호소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의무화 3 비구금적 대안 모색 - 아동보호체계에 미동반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보호조치 포함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비구금적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책정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구금'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지침 마련
관련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대중 (2020). 아동권리 이슈 Brief 1: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 대응.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강미정 (2020.11).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 성착취에 관한 이행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전문가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강정은 (2020.1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아동 성착취와 아동사법에 관한 이행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전문가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2017 의료급여통계.**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의료급여통계.**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경기도교육청 (2011).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2011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교육청 (2019a). 내부자료: 학생인권 보호활동 보고(2019년 2월~2019년 12월).

경기도교육청 (2019b). 내부자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상담현황(2017년 1월~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 (2020a). **2020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기본 계획**.

경기도교육청 (2020b). 내부자료: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교육

활동 검토 요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main.do
경찰청 (2017). **2017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7.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경찰청 (2018). **2018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8.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경찰청 (2019). **2019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9.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7.5).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 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8.4).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 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 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 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공현 (2020.11).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이행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전문가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각 지역별(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내용 참고 및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5).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5.7). **보도자료: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5380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6.11.). 보도자료: 인권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564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6.30).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26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7).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통계포털(KOSIS).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1-2019).**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D3_460.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6.25.).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제9차 목요대화 개최.** https://www.opm.go.kr/opm/thursday/report.do?mode=view&articleNo=127551&srYear=20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Month=06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2020.7.17.). **보도자료: 아동 중심 · 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208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국민일보 (2020.11.11.).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구속. ”증거인멸 우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08312&code=61121111에서 2020년 12월 10일 인출.

국민일보 (2020.12.9.). "혼자 밤에 가해자 만나러…" 아동학대 공무원 아찔한 현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8645&code=11131100에서 2020년 12월 12일 인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 2020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년 10월 7일).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M&outConn=Y#none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국회의원 김진애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굿네이버스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서울: 굿네이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 (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세종: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2020.8.27.).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a). 2020 주요업무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b). 2021 주요업무 추진 계획(검토본).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c).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요 사항 안내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d). 내부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e). 내부자료: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수행 지침.
교육부 (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03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70517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교육부 (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4098&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3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350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교육부 (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9b).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8990&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2020년 11월 26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6953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교육부 (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1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19.8.29.).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40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교육부 (2020.1.15). **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501

&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교육부 (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 2020년 11월 2일 인출.

교육부 (2020.5.4). **보도자료: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51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교육부 (2020.5.22.). **보도자료: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68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교육부 (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310에서 2020년 11월 12일 검색 및 인출.

교육부 (2020.7.31). **보도자료: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 6차 대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42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교육부 (2020.8.28.). **2020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kess.kedi.re.kr/post/6706365에서 2020년 11월 1일 인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20.02.28.). **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88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4&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b). 교육통계연보(유초등통계).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628&menuId=1_8_68&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6-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및 추경포함).**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6&seq=66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5&seq=75

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7).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7.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8).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8.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김경욱 (2020.11).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분야 협약 이행 현황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청소년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일, 정광조 (2014). 국내 통합교육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반응모형 가능성 탐색: 통합학급에서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9**(1), 159-184.
김미숙, 김시아, 정익중 (2020). 이번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 아동보호전담요원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 . **한국아동복지학, 69**(3), 57-88.
김선숙, 조소연, 이정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동과 권리, 24**(3), 409-438.
김성주 의원실 (2020.10.5.). **보도자료: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공공전문치료센터 확대 필요.** https://blog.naver.com/ksjwithjj?Redirect=Log&logNo=222107114347&from=postView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김소아 (2020).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 (20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효과·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덕 (2020.11). 가정환경에 관한 이행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전문가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김진 (2020.11). 가정환경에 관한 이행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전문가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김형욱, 김민태, 김태영, 허연실, 전지선, 조현정, 구선희, 김경은, 박선미 (2013).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경기: 경기도교육청.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임희진, 하형석, 정윤미 (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연구보고 19-R45). 서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남태훈, 이한섭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초·중등 수업 자료.** 경기: 경기도교육청.

뉴스핌 (2020.10.22). **[2020국감] 박능후 "보호출산제 도입 적극 추진할 것".** https://m.newspim.com/news/view/20201022001687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대검찰청 (2018.10).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10). **2019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12). **2019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10). **2020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랄라 (2020).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자료집.** 3-43.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11.25.).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http://minbyun.or.kr/?p=46596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박환보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9a). **2018 법무연감.** 경기도: 법무부.

법무부 (2019b).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0a).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0b). **2020 국제 심포지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자료집.** 125-144.

법무부 (2020.6). **2020 교정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2020.2.14.). **주요뉴스: '코로나19' 길어지자 법무부 "소년원 면회 재개".** https://www.cppb.go.kr/cppb/594/subview.do;jsessionid=2HsQ3ezZl-Rsojvc5v9Yp5jYmX5fkQRxmBy3F4UE.wizard-10-wrr7m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법무부 (2020.4.1.). **언론보도: 코로나 19로 외부교류 차단된 소년원.... 화상면회 특별활동 늘려.** https://www.cppb.go.kr/cppb/596/subview.do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법무부 (2020.5.8.). **보도자료: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법무부 (2020.9.14). **보도자료: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https://mojhome.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YspYi4-thld6YTMxrbvR7KG34AeW8PuVeEoSNIFA.wizard-10-4wjr8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법무부 (2020.11.25). **공지사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https://www.corrections.go.kr/bbs/corrections/38/534351/artclView.do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법무연수원 (2020.5). **2019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19). **2019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202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법제처 (20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법제처 (202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남녀교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베이비뉴스 (2020.10.7.). **[국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0곳 중 6곳 특수교사 없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19에서 12월 4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4). **2014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8285&SEARCHKEY=TITLE&SEARCHVALUE=%BB%E7%C8%B8%BA%B9%C1%F6%BD%C3%BC%B3%20%C6%F2%B0%A1에서 2017년 10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2016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6c).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434&SEARCHKEY=

TITLE&SEARCHVALUE=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기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7c). **2017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7d).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e).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웹사이트 https://www.icareinfo.go.kr/NEW_USR_main.asp??=CENTERINFO/DATA/STAT_GUIDE/view&bbs_no=225&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4&CONT_SEQ=293130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8c).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5304&page=1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d). **2018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site/hp3/contents

/data_n/reference04_1.jsp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8e).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https://dadol.or.kr/board/library/detail?absnum=3&page=1&searchtype=searchsubject&searchtext=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b). **2019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0년 11월 29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가정위탁 현황(2019.12.31. 기준).**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3&page=1&CONT_SEQ=358393&PAR_CONT_SEQ=356050에서 2020년 11월 29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e).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8849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f).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8849에서 2019년 9월 11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g).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9624&page=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h).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5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2019i).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보건복지부 (2019j).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menuNo=2001400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3.12.). 보도자료: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57&CONT_SEQ=348054&SEARCHKEY=CONTENT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9087&PAR_CONT_SEQ=355890에서 2020년 11월 15일 검색.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205&page=1&CONT_SEQ=356696&PAR_CONT_SEQ=355585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PAR_CONT_SEQ=355586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d). **2020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3).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 평가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0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5.11.). **보도자료: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CONT_SEQ=354458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5.2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4637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8.27). **보도자료: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208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9.28.). **보도자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89&SEARCHKEY=TITLE&SEARCHVALUE=%EA%B3%B5%EA%B3%B5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10.7). **보도자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2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0&CONT_SEQ=360203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11.3.). **보도참고자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41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11.15.). **복지뉴스 · 이슈: 아동학대 작년 3만건 넘어…"학대 의심 땐 분리해야".** 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93680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12.2.). **보도자료 :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 도입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1466에서 2020년 12월 9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 (2007.8.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1882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 (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에서 2019년 9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대한민국 제5 ·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세종: 복지부 · 국제아동인권센터.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https://dadol.or.kr/biz/biz_intro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file:///C:/Users/User/Downloads/2020_%EC%95%84%EB%8F%99%EB%B3%B4%ED%98%B8%EC%84%9C%EB%B9%84%EC%8A%A4_%EC%97%85%EB%AC%B4_%EB%A7%A4%EB%89%B4%EC%96%BC.pdf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공무원용)**. 서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55&listSize=10&pageNo=1&bcode=06_3&category=%EC%97%B0%EA%B5%AC%EC%9E%90%EB%A3%8C에서 2019년 9월 11일 인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침.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53829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199336에서 2019년 10월 6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 (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file:///C:/Users/User/Downloads/1_19%EB%85%84+%EC%95%84%EB%8F%99%EC%83%9D%ED%99%9C%EC%8B%9C%EC%84%A4+%ED%8F%89%EA%B0%80%EC%A7%80%ED%91%9C.pdf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서미향, 이우창 조성범, 이한섭, 이정연, 공현, 오동석, 박주현, 정예림, 조여람, 강유빈, 서수현, 한수연 (2020). **학생인권의 광장 - 인권, 학교와 마주 본 10년의 여정**. 경기: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2020.9.16.).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2293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3.).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9.). **학생인권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5.). 내부자료: 2019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9.). 2020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 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 게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

/noticeView.do (검색일: 2020.11.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studentrights.sen.go.kr
서정아, 연보라 (2017).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결과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스웨덴 아동권리지표 웹사이트. https://max18.barnombudsmannen.se/max18-statistik/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스페인 아동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 http://www.infanciaendatos.es/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managementOrganView.do?mi=1074
아동권리보장원 (2020a).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b).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내부자료.
아시아경제 (2020.10.21). **"코로나 장기화 여파"…청소년 '극단선택' 상담 두배 늘어.**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2111282895650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2-R4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돌봄연계모형 개발연구**(KYWA-2014-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2018).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

보고 11-R3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연구보고 10-R2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2020.9.15.).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서울: 양형위원회.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a).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b).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b).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c).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pageIndex=1&upDispYn=&schBgnDt=&schEndDt=&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b).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c).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xk0jWGs+5ik-y3zDb1imOpjA.mogef20?mid=plc505&bbtSn=704760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9.01).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3.18.).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년 10월 0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3.31.).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년 10월 06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4.27.). **보도자료: 2020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38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8.7.). **보도자료: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출판기념회 개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257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11.16.). **보도자료: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262020년 12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11.19.).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48541151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bbs/storage/view.do (검색일: 2020년 11월 26일)

유니세프 홈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

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467-48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YZcRJyCcxbxocXhKb5ARDZOHaLkMsBJ1wPb3ZejVw/edit?usp=sharing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대한민국의 제 17,18,19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비공식 국문번역 초안)**. 서울: 난민인권센터.

윤혜미 (2020). 아동권리 이슈 Brief 1: 코로나19와 아동학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이승현, 권해수 (2018).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양희, 정병수, 김미성, 김상원, 김희진, 이승미, 강수철, 류준범, 정금숙, 오주석, 정미경, 전재현 (2019.11).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도로교통공단.

이은선 (2020.11).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분야 협약 이행 현황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청소년 워크숍 자료(미간행 내부자료).

이은정 (2014). 국내 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 (132), 11-22.

이정연, 김명랑, 안수현, 이용민, 이혜선 (2018). **2018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김명랑, 안수현, 이용민, 이혜선 (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윤희정, 안수현, 박근덕, 이혜선 (2017).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윤희정, 정우진, 이혜선 (2016).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현주, 박형존, 이정윤(2020). **2019년 빈곤통계연보**(정책자로 2019-06).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의안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7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S0N1D1O2I5E1W0I3J6W1S5A9V3G2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이주아동 구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2019.5.20.자 결정)). http://incrc.org/에서 2020년 11월 6일 인출.

장민영 (2020).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대회(2020. 11. 19) 자료집. 75-94.

전라북도교육청 (2020a). 내부자료: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현황.

전라북도교육청 (2020b). 내부자료: 학생인권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http://school.jbedu.kr/human/M010202/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79323/detailRP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2020).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 경기도교육청.

제38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7.28.).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E&outConn=Y#none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제38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8.25.). http://likms.assembly.

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1&commCode=AE&outConn=Y#none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회의록(2020.11.26.).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551#none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2.6.).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 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 1. 1기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0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2020).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0년 10월 26일 인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0).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file/d/10JKo-dNTexNMg5ib7kr8d4jjPxtejMTu/view?fbclid=IwAR3FYWhUFxtK6ghPWG5OBVdWm5Qjxau0O2f3tbS3B5bR7udFwoaeiYEc61k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최진응 (2020).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연구보고 18-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컬쳐타임즈 (2020.7.8). **[기획기사] 보편화된 만큼 어려워진 장애학생 통합교육, 협력교수로 대안을 모색하다.** http://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6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19.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edu/status01.do에서 2020년 11월 2일 인출.

통계청 (2012, 2014, 2016, 20181 2020).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3R&conn_path=I2에서 2020년 11월 29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 (2013.9.25). **보도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85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4.9.23). **보도자료: 2013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5.9.23). **보도자료: 2014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6.9.27). **보도자료: 2015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5634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7.9.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26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8.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6665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2018.9.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7071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8~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3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통계청 (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73552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7606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통계청 (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에서 2020년 11월 26일 검색.

통계청 (2020.4).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0.7.22). **보도자료: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3994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통계청 (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219

&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공공도서관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9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0년 10월 12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에서 2020년 10월 1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0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전체사건 접수/처리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20년 12월 9일 인출.

통계청(KOSIS). (2010~2019).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O155&seqNo=&lang_mode=ko&language=

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1월 26일 검색 및 인출.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 에서 2020년 9월 26일 인출.

통계청 KOSIS.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통계청(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20년 09월 07일 인출.

통계청 KOSIS.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 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0월 20일 인출.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http://daitda.or.kr/data/files/2017/04/21/d5b7058accbb8f41008e097a46bdf4e6.pdf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통계.** 세종,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2020.4). **202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0.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0.9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0년 11월 2일 인출.

한겨레 (2020.6.23). **교육감 승인받아야만 조사?…"누더기 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50677.html#csidxc7243a52c96a90d8891b52aa2b4b9f8에서 12월 4일 인출.

최상근, 금명자, 정진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연구보고 CR2011-32).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3).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5453&board_md=view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19년 8월 21일 인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3). 해외 개인정보보호동향 보고서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분석 (1).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리서치(2020).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서울: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2020.10.6.). **"원격도 방문도 힘든 특수학교… 학습권 침해 더 심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509270002887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김다래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08-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019.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https://www.

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 2020년 11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환경부 (2020.4.21).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 세종: 환경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a).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세종: 환경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b). **SDGs 세부 목표 및 지표 의견수렴.** 세종: 환경부.

황지태, 김지영, 원혜욱, 김지연(2016).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ustralia government (2018).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Australia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in 201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AUS/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Belgium government (2017).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Belgium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in 201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BEL/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Child Rights Connect (2020). My pocket guide to CRC reporting. Geneva: Child Rights Connect.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InformationForChildren.aspx에서 2020년 12월 9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1). General comment No.

1 on the Aims of Educatio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GC%2f2001%2f1&Lang=en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General comment No. 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GC/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GC%2f2003%2f5&Lang=en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CRC (2020). Draft General Comment No. 25: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C/GC/25&Lang=en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Daraganova, G. & Joss, N. (Eds.) (2018) *Growing Up In Australia –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18.*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2019). Comments on the concept note of th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에서 2020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Kamarotos, A. (2020).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2020 국제 심포지엄: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자료집.** 55.

KBS NEWS (2020.11.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행 한 달... 1명이 24시간

대기 · 출동?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8560에서 2020년 12월 10일 인출.

KBS NEWS (2020.12.4.).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시행 두 달…"인력 태부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4096에서 2020년 12월 10일 인출.

Kim Bung-Nyun (2020). **Our effort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child mental healthproblems in the time of school closure in Korea.** COVID-19: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care - Disruption or Evolution?. 2-61.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Netherland) (2019). *Annual Report Youth Monitor 2019 Summary.* Hague, Heerlen: Statistics Netherlands.

Netherland government (201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NLD/4.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Sarah D'hondt et Catherine Péters (2016). *Indicateurs nationaux des droits de l'Enfant: Make them count.* Bruxelles: Commission nationale pour les droits de l'Enfant.

Singapore government (2017). Combined fourth and fifth reports submitted by Singapore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in 201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SGP/4-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Sweden government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SWE.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Switzerland government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CHE.2-4.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UK government (2014).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n the Child. CRC.C.GBR.5.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에서 2020년 5월 21일 인출.

UK Government (2019). Response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call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contributions in advance of the drafting a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에서 2020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UN General Assembly (2019).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leading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74/13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13850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UN(United Nations).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https:

//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에서 2020년 11월 22일 인출.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20.4). CRC COVID-19 Statement.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CRC/STA/9095&Lang=en에서 2020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UNICEF (2019).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Are we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for children? The situation in 2019. https://data.unicef.org/resources/progress-for-every-child-in-the-sdg-era-2019/에서 2020년 2월 11일 검색 및 인출.

UNICEF,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COVID-19 and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https://www.unicef.org/albania/media/2716/file/Technical%20Note.pdf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United Nations (2019). Rights of the Independent Expert leading 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74/136). https://undocs.org/A/74/136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United Nations (2020). Rights of the Child (A/RES/74/133). https://undocs.org/A/RES/74/133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ited Nations(UN). Questionnaire: Concept note of th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 Ireland's Response.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GCChildrensRightsRelationDigitalEnvironment.aspx에서 2020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Technical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ersion 2. https://alliancecpha.org/en/system/tdf/library/attachments/the_alliance_covid_19_tn_version_2_05.27.20_final_2.pdf?file=1&type=node&id=37184에서 2020년 12월 4일 인출.

Wee 사이트. http://www.wee.go.kr/home/find/find01001l.php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법률 문헌(판결 및 결정)]

대법원 2020.6.8. 자 2020스575 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8.20. 자 2020고합94 판결.

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11헌마232 결정.

부 록

1.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 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2. 2020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 · 중등용)
5.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보건복지부 공식 번역본)

부록 1.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td><td rowspan="4">1-1.
인권일반
(제4조,
42조)</td><td rowspan="3">1-1-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td><td>1-1-1-1.
아동 · 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td><td>▪ 아동 · 청소년 관련 주요 법 제 · 개정 현황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td></tr>
<tr><td>1-1-1-2.
아동 · 청소년
인권기구 · 조직</td><td>▪ 아동 · 청소년 인권관련 기구 및 조직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td></tr>
<tr><td>1-1-1-3.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td><td>▪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3~2019)
- 출처: 1)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예산.
2)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td></tr>
<tr><td>1-1-2.
인권에
대한 인식</td><td>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td><td>▪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문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모른다</th><th>이름만 들어봤다</th><th>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 (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th></tr>
<tr><td>(1) 유엔(UN) 아동권리협약</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d>(2) 학생인권조례</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국가인권위원회</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1-1-2-2.
아동 ·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td><td>
▪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존중받지 못한다</th><th>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th><th>존중받는 편이다</th><th>매우 존중 받는다</th></tr>
<tr><td>(1) 가정</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학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우리나라 전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td><td>1-1-2-3.
인권의식 및 태도*</td><td>
▪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문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r><td></td><td></td><td rowspan="2">1-1-3.
인권교육</td><td>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td><td>▪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5). 2019 국가위원회 연간보고서.</td></tr>
<tr><td></td><td></td><td>1-1-3-2.
인권교육 경험
(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td><td>▪ 인권교육 경험여부
문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인권교육 실시 기관/장소
문37-1. (문37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인권교육 도움 정도
문37-2. (문37의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th><th>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th><th>도움이 되는 편이다</th><th>매우 도움이 된다</th></tr>
<tr><td>(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td><td>1-2-1.
차별
경험률</td><td>1-2-1-1.
차별받은 경험*</td><td>▪ 차별 받은 이유 및 경험 정도
문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2-1-2. 차별해 본 경험*

▪ 차별의 이유 및 경험 정도

문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나는 주위사람들을…</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td><td></td><td>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td><td>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td><td>▪ 아동 · 영향평가 실시 현황
- 출처: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자료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td></tr>
</table>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2.
시민적
권리와
자유</td><td rowspan="2">2-1.
의견
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td><td>2-1-1.
가정
에서의
참여 정도</td><td>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td><td>▪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문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1-2.
학교
에서의
참여 정도</td><td>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td><td>▪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문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아니다</th><th>그렇다</th><th>잘 모르겠다</th></tr>
<tr><td>(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2">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td><td>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td><td>▪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문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td></tr>
<tr><td>2-1-2-3.
교칙 제 · 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td><td>▪ 교칙 제 · 개정 학생 참여 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2-1-3.
사회
에서의
참여 정도</td><td>2-1-3-1.
아동 · 청소년정책 ·
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td><td>▪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2019)
- 전국 지자체 수 대비 위원회 설치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10-111. 재구성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출처: 1)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113-114.
2)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 아동총회 건의사항 및 정부 조치 현황
- 출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2020.7.17.). 보도자료: 아동 중심 · 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pp. 3-4.</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1-3-2. 아동 ·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 문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문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td><td>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td><td>2-2-1-1.
사상 ·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td><td>▪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문8. 다음은 양심 ·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r><td>2-2-2.
종교자유
보장정도</td><td>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가정, 학교)*</td><td>▪ 학교의 종교재단 학교 여부
문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종교행사 시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문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보장수준
문8. 다음은 양심 ·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td><td>2-3-1.
결사·
집회
경험률</td><td>2-3-1-1.
결사·집회 경험률
(경험여부,
피해경험)*</td><td>▪ 결사·집회 경험률
문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없다</th><th>거의
없다</th><th>가끔
있다</th><th>자주
있다</th></tr>
<tr><td>(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문10-1.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td><td>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td><td>2-4-1.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td><td>▪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문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td><td>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td><td>
▪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문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
</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5. 정보 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44
				▪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출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 인터넷 이용 목적 - 출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6-79
				▪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p.36.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구 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
				▪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 학생 독서량 -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pp.76-80.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2-5-2. 미디어 역량/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 매체이용 교육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3.
				▪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6.
			2-5-2-2. 미디어 역량	▪ 디지털 사용 역량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6.

3)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3.
폭력
및
학대</td><td rowspan="2">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
조 2항)</td><td rowspan="2">3-1-1.
청소년
폭력
경험률</td><td rowspan="2">3-1-1-1.
폭력피해 경험*</td><td>▪ 정서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2)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4) 모욕적인 말(욕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 · 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강제적인 심부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2">3-1-2.
아동 ·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td><td>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td><td>▪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문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 · 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협박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따돌림을 당함</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3-1-2-1.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인구 비율</td><td>▪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 출처: 1) 여성가족부(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2)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191.</td></tr>
<tr><td>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td><td>▪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문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문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 · 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 · 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_____)</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3-1-3.
체벌
경험률</td><td>3-1-3-1.
체벌 경험률*</td><td>▪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td>1)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td>3) 신체적 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td><td rowspan="6">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td><td rowspan="6">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td><td rowspan="6">3-2-1-1.
아동학대
사례 건수</td><td>▪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1.</td></tr>
<tr><td>▪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6.</td></tr>
<tr><td>▪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9.</td></tr>
<tr><td>▪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9~20.</td></tr>
<tr><td>▪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6.</td></tr>
<tr><td>▪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24.</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td><td>▪ 아동학대사례 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6.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8). 2014-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6.</td></tr>
<tr><td>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td><td>3-2-1-3.
방임정도*</td><td>▪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문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51.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기준).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7-18.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9). 2013~2018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0.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9). 2013~2018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세~19세) (2012년~2020년)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4-1-2. 보호 ·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 · 운영 현황(2015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 어린이집 정원 · 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8년)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8년) - 출처: 1)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0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p.23. 2) 통계청(2018.0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3) 통계청(2019.0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4) 통계청(2020.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26 5) 통계청 KOSIS (2010~2019)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8년) - 출처: 교육부(각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출처: 교육부(2019b).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 추이 - 출처: 1) 보건복지부(2017d).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 iii , p.viii. 2) 보건복지부(2019i).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5, p.7, pp.44-45.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 출처: 김희진, 임희진, 하형석, 정윤미(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pp.206, pp.270-27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8년)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2)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2015), 양계민(2016), 서정아, 연보라(2017), 양계민(2018)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
				▪ 온종일돌봄체계(학교돌봄 + 마을돌봄) - 출처: 1)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dadol.or.kr/biz/biz_intro) 2)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 긴급돌봄서비스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20.02.28.). 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통계청(KOSIS).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1-2019)
				▪ 국내 · 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출처: 통계청(KOSIS).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1-2019)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아동 · 청소년 (제20조)		4-2-1-2. 입양 사후관리	▪ 국내 · 외 입양 사후서비스 체계,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 내용,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54, pp.36-37
				▪ 국내 · 외 입양인 지원사업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20). 2020 입양실무매뉴얼. p.56.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 발생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KOSIS).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 원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2) 보건복지부(2017b).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기준). 3)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가정위탁 현황(2018.12.31.기준). 4)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가정위탁 현황(2019.12.31.기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 - 출처: 1) 김영지 외(2017).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7. p. 215. 2) 보건복지부(2018c).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3)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p.1.
		4-2-3. 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문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가출한 이유 문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191 ▪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7, 2019). 2017, 2019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9c).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 문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3-1. 양육 · 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 · 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 2019년 평가지표 비교(공통지표)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2010-2019) - 출처: 1)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7. 2)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15.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출처: 1)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2)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3)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4) 보건복지부(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평가 발표. 5)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5.
				▪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7.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 (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 보호 (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출처: 교육부(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5-1-1-2.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출처: 교육부(2019a).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출처: 교육부(2017-2019). 2017-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 연도별 영아사망률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2-1-2. 사고 사망률	▪ 사고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2"></td><td rowspan="2">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td><td>5-2-2-1.
범죄 피해율</td><td>▪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출처 : 경찰청(각 연도). 2017-2019 경찰범죄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웹사이트.</td></tr>
<tr><td>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td><td>문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 rowspan="2">5-3.
보건
서비스
(제24조)</td><td rowspan="2">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td><td>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td><td>▪ 보건교사 배치현황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td></tr>
<tr><td>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
(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td><td>▪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
- 출처: 1) 대한민국정부(2017).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40.
2)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2010.7.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8541(2019년 9월 26일 인출)</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보도자료(2007.8.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1882(2020년 11월 12일 인출)
				▪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출처 : 김성주 의원실(2020.10.5.). 보도자료: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공공전문치료센터 확대 필요. https://blog.naver.com/ksjwithjj/222107114347에서 2020.11.15. 인출.
				▪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2020년 11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2020.11.03.). 보도참고자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716에서 2020.11.15. 인출.
				▪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 현황(2019년 9월 기준)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0).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0.10.26. 인출.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228.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현황 - 출처: 통계청. 국가정신건강현황: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earch/search.do에서 2020.12.01. 인출.
				▪ (지역별) Wee 센터 및 Wee 클래스 설치 현황 - 출처: Wee 사이트. http://www.wee.go.kr/home/find/find01001l.php에서 2020.12.01. 인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 의료급여 대상 아동 · 청소년 현황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2019). 2017-2018 의료급여통계.
				▪ 아동 · 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통계.
				▪ 아동 · 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통계.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19). 제14차-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2.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19). 제14차-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평생 약물 경험률(부탄가스, 본드같은 각성제 마약, 기침 및 신경안정제 오남용 등)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19). 제14차-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7). 제12차-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5-4-1-2. 운동 실천율*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문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 수면시간 문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시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시 ☐☐ 분
				▪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수면부족 이유 문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_____)
			5-4-1-4. 아동 · 청소년의 질병유형	▪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2014~2018년도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 출처: 1)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2)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3)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4)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5-4-2. 정신적 건강	5-4-2-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 출처: 통계청(2013-2020). 보도자료: 2012-2019년도 사망원인통계.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 문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문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_____)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5-4-2-2.
우울증*</td><td>▪ 우울정도
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td><td>▪ 현재 행복 정도
문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행복하지 않은 이유
문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td><td></td><td></td><td>5-4-2-4.
삶의 만족도*</td><td>문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table>
<tr><td colspan="3">삶의 만족도 낮음</td><td>〈-</td><td colspan="3">중간</td><td>-〉</td><td colspan="3">삶의 만족도 높음</td></tr>
<tr><td>⓪</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d>⑧</td><td>⑨</td><td>⑩</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5-4-2-5.
자아존중감*</td><td>▪ 자아존중감
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나는 …</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5-4-2-6.
고민거리대화상대*</td><td>▪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문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td><td>5-5-1.
아동 · 청소년
복지 예산</td><td>5-5-1-1.
아동 · 청소년
복지예산
국가간 비교</td><td>▪ 국가별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6년 기준)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2015년 기준)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제26조 및 제18조 3항)			▪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간의 관계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년 12월 9일 검색.
		5-5-2.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빈곤율 포함)	▪ 아동빈곤율 – 출처: 이현주 외(2020). 2019 빈곤통계연보 〈표 3-18〉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50, 〈표2-2〉 중위소득지출 기준 빈곤율 p.3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19세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2017-2020). 2016년-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한부모가구 비율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2015-2045.
				▪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 취약계층 보호 · 양육시설 예산(2012년-2019년) – 출처: 1) 보건복지부(2012~2019).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보건복지부(2016c, 2017d, 2018e).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복권기금운용계획.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각 연도). 기금사업활동. 5) 보건복지부(2019h)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6)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2019.10.4) 7) 보건복지부(2020c).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p.428 8) 보건복지부(2020b).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p.27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 디딤씨앗 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백서.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간추린 교육통계.
			6-1-1-2.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19).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p.447.
				▪ 학급당 학생 수 (2011~201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19).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p.447.
				▪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간추린 교육통계. p.51. -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전체 학생 및 참여학생 기준 지출 비용 - 출처: 통계청(2020.4).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p.36.
				▪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전년 대비 비용 증감률 및 참여율 차이 - 출처: 통계청(2020.4).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p.42.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3"></td><td rowspan="2">6-1-2.
학교
부적응률</td><td>6-1-2-1.
학업중단율</td><td>▪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 출처: 교육부(2020.8.28.). 2020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td></tr>
<tr><td>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td><td>▪ 자퇴 충동여부
문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자퇴 충동의 이유
문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td></tr>
<tr><td rowspan="2">6-2.
교육의
목표
(제29조)</td><td>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td><td>6-2-1-1.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td><td>문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th>그런 편이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6-2-2.
진로 · 직</td><td>6-2-2-1.
진로교육 현황</td><td>▪ 학교 진로활동 참여현황 및 만족도
- 출처: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김다래(2019).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 pp.89-93.</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업교육	6-2-2-2. 직업교육 현황	▪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 - 출처: 1)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 인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 3) 통계청(2020.7.22). 보도자료: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9.
				▪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 졸업 후 진학자, 취업자, 무직 및 미상, 기타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7-2019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0.10.06. 인출.
				▪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 출처: 교육부(2020.5.22.). 보도자료: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6-3.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 · 문화 · 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시설 수*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각 연도). 2018,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8.12.31., 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10.06. 인출.
				▪ 전국 시 · 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20.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10.06. 인출.
				▪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문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 · 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td><td></td><td>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table>
<tr><th>내용</th><th>한 번도 없음</th><th>일 년에 1-2회 정도</th><th>2-3개월에 1-2회 정도</th><th>한 달에 1-2회 정도</th><th>1주일에 1-2회 이상</th></tr>
<tr><td>(1) 공공도서관</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r><td></td><td></td><td></td><td>6-3-1-2.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시설 이용만족도*</td><td>▪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 이용 만족도
문31-1.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td></tr>
<tr><td></td><td></td><td>6-3-2.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정도</td><td>6-3-2-1.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도</td><td>▪ 여가활동 실태(평일과 주말에 주로하는 여가활동, 만족도,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출처 : 1)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보고서.
2) 통계청 · 여성가족부(2020.4.27.). 보도자료: 2019년 사회조사 결과.</td></tr>
<tr><td></td><td></td><td></td><td></td><td>▪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td></tr>
<tr><td></td><td></td><td></td><td></td><td>▪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2018,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p.44.</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 평일 여가시간 문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6-3-2-3. 하루 평균 학습 시간*	▪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 문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 5, 36, 37(b-d), 38-40)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 특별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인구 수	7-1-1-1. 아동 · 청소년 난민 수	▪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 출처: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7-1-1-2. 탈북 난민 아동 · 청소년 수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20.4). 2020 통일백서. p 280.
				▪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20.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20.
			7-1-1-3.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 수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p.75. ▪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p.78.
		7-1-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탈북학생 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9. 4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9). 2019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19. 4월 기준).
			7-1-2-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29. 여성가족부(2016a).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77, p.462.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경험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7-1-2-3.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구금 현황	▪ 이주아동 구금 현황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이주아동 구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2019.5.20.자 결정)).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1-3.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지원시설 이용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91-596.
				▪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91-596.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 · 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시설 수용인원수	▪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98. - 원자료: 법무부(2019a). 2018 법무연감.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53. - 원자료: 대검찰청(2019.12). 2019 범죄분석. p.494.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 출처: 법무부(2020.6.). 2020 교정통계연보. p.72-73.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626.
				▪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627-628.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2. 인권 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7).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 원자료: 법무부 내부 자료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 원자료: 법무부 내부 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4-36. - 원자료: 법무부 내부 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372. 법무부(2020.6). 2020 교정통계연보. p.123-128.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 소년보호 항고 · 재항고 사건 - 출처: 법원행정처(2019). 2019 사법연감. p.1067.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09. - 원자료: 법무부(2009-2019). 법무연감.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13. - 원자료: 법무부(2019).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514. - 원자료: 법무부(2019).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통합]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70.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9), 검찰연감. 대검찰청(2009-2019). 범죄분석.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473. - 원자료: 대검찰청(2009-2019). 검찰연감.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출처: 여성가족부(2015-2019). 2015-2019 청소년백서.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XIV.
				▪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출처: 고용노동부(2017.5).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2 고용노동부(2018.4.).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4. 고용노동부(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 청소년 실업률 추이 - 출처: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지표
(소분류)</th><th>지표항목
(* 설문조사)</th><th>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th></tr>
<tr><td></td><td></td><td rowspan="2">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td><td>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td><td>▪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VII.
원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td></tr>
<tr><td></td><td></td><td>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td><td>▪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문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문27-1.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tr><th>내용</th><th>없다</th><th>1-2번</th><th>3번 이상</th></tr>
<tr><td>(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8)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9)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 2020년 기준 시간 당 8,59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213~215
	7-4. 성적 착취	7-4-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 출처: 대검찰청(2018.10). 2018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10).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10). 2020 검찰연감. p.350.
			7-4-1-2.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 국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 출처: 법제처(2020).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법제처(2020).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법제처(20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 출처: 국회의원 김진애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7-4-2.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 성폭력 ·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9.01). 2019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0.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 - 출처: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성폭력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0.3).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p.3.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20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출처: 여성가족부(2020.8).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6.
				▪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 출처: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 원자료: 여성가족부(내부행정자료)
			7-4-2-2. 피해자 국선변호가 접수 및 지정 건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20.5). 2019 범죄백서. p.199.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 · 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부록 2. 2020년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1) 승인통계 활용지표[92]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12000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 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전국 25,000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3세이상 가구원 (약 63,000명)	1년 (2003)	면접조사 (조사원→ 전담조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조사기준년 익년 초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인터넷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2-5-1-1. 매체 이용률
청소년매체이용 및유해환경 실태조사 (167001)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등 청소년 16,500명) (초등4~6학년 4,300명,	2년 (2006)	면접조사 조사대상(학생)→ 위탁기관 (조사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여성가족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간행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92) 통계별 설명자료 출처: 통계청-승인통계 현황. http://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중등1~3학년 5,100명, 고등1~3학년 7,100명)				
사회조사 (101018) (통계청)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개인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27,336가구)	1년 (1977)	면접조사 (조사대상→ 지방통계청→ 통계청)	조사기준년도 11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사회조사보고서〉	4-1-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17034)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전국)	1년 (1994)	보고 (시 · 군 · 구→시 · 도→보건복지부)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 (시도)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보건복지통계연보〉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사망원인통계 (101054) (통계청)	지정통계 (가공통계) (전수)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1년 (1999)	인터넷조사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 (시도) 〈언론(보도자료)+	5-2-1-1.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5-2-1-2.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따라 전국 시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 모성 · 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사망원인통계연보, 영아모성출생전후 기분석보고서〉	사고 사망률 5-4-2-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범죄분석통계 (135001) (검찰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 · 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개인	1년 (1976)	보고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 →검찰청)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전국) 〈간행물 범죄분석〉	7-2-1-2. 소년범죄자의교도소 수용 현황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국민건강 영양조사 (117002) (보건복지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가구 (제8기,2019~2021) ○ 전국 14,400여 가구 내 만1세 이상 가구원 - 3년 간 576개 조사	1년 (1973)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전국)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5-4-1-4. 아동 · 청소년의 질병유형 5-3-2-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구, 조사구당 목표 25가구 -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4,800개 가구			국민건강통계〉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117058)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우리나라 청소년(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및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개인 (17개 시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400개교, 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전체 유효목표 인원수=67,200명 (800개교*3학급*약28명)	1년 (2005)	인터넷조사 (표본학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조사수행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조사기준년도 12월 (시도)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교육기본통계 (334001) (한국교육개발원)	지정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등의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양질의 통계 데이터 생산 - 교육현황에 대한 대국민의	기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21,	반기 (1963)	보고 (○유초중등교육기관 - 유·초·중등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작성기준년도 8월 (시도)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6-1-2-1. 학업중단율 6-2-2-2. 직업교육 현황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수요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와 연계 -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 기초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300여개교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90여기관, 직속기관 380여기관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부설대학원,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1,900여개교		- 고등학교, 기타학교→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17079)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구 (27,120가구(유효 16,000가구)	3년 (2009)	면접조사 (조사대상→통계청 통계대행과,	조사기준년도 익년 1월 (시도)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여성가족부)		※ 협의통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표본추출틀: 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차별경험 7-1-3-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의료급여통계 (9200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보건의료정책 참고자료 및 분석통계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1년 (2016)	보고 (행정집계)	수시(다음해 9월) (전국)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의료급여통계 및 의료급여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3-2-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18020) (고용노동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	사업체 (근로자 1인 이상 33,000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약 100만명 내외	1년 (2000)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년 (전국) 〈언론(보도자료)+간행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노동자의 임금수준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규모)	작성주기 (최초 승인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해당 지표항목
		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수는 선정된 표본사업체에 따라 매년 변동함)				

부록 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자료원 타당성	지표항목 중요도
				평균	평균
1.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 · 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4.60	4.57
			1-1-1-2. 아동 · 청소년 인권기구 · 조직	4.60	4.33
			1-1-1-3.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관련 예산	4.80	4.71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4.57
			1-1-2-2. 아동 ·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	4.50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	4.67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4.40	4.71
			1-1-3-2. 인권교육 경험*	-	4.50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	4.71
			1-2-1-2. 차별해 본 경험*	-	4.50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4.80	4.5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	4.40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4.50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	5.00
			2-1-2-3. 교칙 제 · 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	4.80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 · 청소년정책 · 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25	4.00
			2-1-3-2. 아동 ·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4.20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	4.50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 · 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4.25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	4.50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 · 집회 경험률	2-3-1-1. 결사 · 집회 경험률* (경험여부, 피해경험)	-	4.50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자료원 타당성	지표항목 중요도
				평균	평균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	4.80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	4.80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4.50	4.25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5.00	5.00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5.00	4.25
			2-5-2-2. 미디어 역량	4.25	4.50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	5.00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4.57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50	4.71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	4.38
		3-1-3. 체벌 경험률	3-1-3-1. 체벌 경험률*	-	4.75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 건수	4.83	4.86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67	4.57
			3-2-1-3. 방임 정도*	-	4.29
		3-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5.00	4.57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50	4.29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36	4.50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64	4.17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45	4.42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91	4.69
			4-2-1-2. 입양 사후관리	4.18	4.33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55	4.73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64	4.83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	4.58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73	4.54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자료원 타당성	지표항목 중요도
				평균	평균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	4.25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3-1. 양육 · 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 · 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3.82	3.92
			4-3-1-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3.64	3.75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4.88	4.89
			5-1-1-2.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비율	4.88	4.90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00	4.56
	5-2.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5.00	5.00
			5-2-1-2. 사고 사망률	4.88	4.89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4.88	4.78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4.00
	5-3. 보건서비스(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4.25	3.89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4.88	4.89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4.13	4.67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2-1.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57	4.56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4.63	4.78
			5-3-3-2. 음주율	4.63	4.78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4.50	4.22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50	4.22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4.67
			5-4-1-2. 운동 실천율*	-	4.67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	4.80
			5-4-1-4. 아동 · 청소년의 질병유형	4.38	4.56
		5-4-2. 정신적 건강	5-4-2-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	4.80
			5-4-2-2. 우울증*	-	4.89
			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	4.60
			5-4-2-4. 삶의 만족도*	-	4.78
			5-4-2-5. 자아존중감*	-	4.33
			5-4-2-6. 고민거리대화상대*	-	4.11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자료원 타당성	지표항목 중요도
				평균	평균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 · 청소년 복지 예산	5-5-1-1. 아동 · 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00	4.89
		5-5-2.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4.88	4.89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63	4.90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80	4.80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4.80	4.60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4.20	4.20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5.00	4.83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	4.00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	4.80
		6-2-2. 진로 · 직업교육	6-2-2-1. 진로교육 현황	4.60	4.00
			6-2-2-2. 직업교육 현황	4.40	4.00
	6-3. 여가, 놀이 및 문화 · 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 · 문화 · 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시설 수*	4.20	4.80
			6-3-1-2.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	4.60
		6-3-2.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도	4.60	4.60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	4.80
			6-3-2-3. 하루평균학습시간*	-	5.00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 · 청소년 난민 수	5.00	4.75
			7-1-1-2. 탈북 난민 아동 · 청소년 수	4.71	4.63
			7-1-1-3.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 수	4.86	4.88
		7-1-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71	4.88
			7-1-2-2.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차별경험	4.43	4.78
			7-1-2-3.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구금현황	4.71	4.63
		7-1-3.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4.43	4.38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자료원 타당성	지표항목 중요도
				평균	평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 · 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5.00	4.80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5.00	5.00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5.00	4.40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5.00	5.00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4.75	4.60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4.75	4.20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4.75	4.83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4.75	4.60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4.83	4.75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4.83	4.71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4.83	3.43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4.67	4.00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5.00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4.50	4.29
	7-4. 성적 착취	7-4-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83	4.43
			7-4-1-2.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4.83	4.57
		7-4-2.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정도	7-4-2-1.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4.83	4.57
			7-4-2-2.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 교육 · 상담 현황	4.33	4.63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4.83	4.29

* 주. 본 조사는 2020년도 지표체계 수정(안)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 · 청소년 실태조사로 생산되는 지표항목은 자료원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함.

부록 4. 2020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 · 중등용)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1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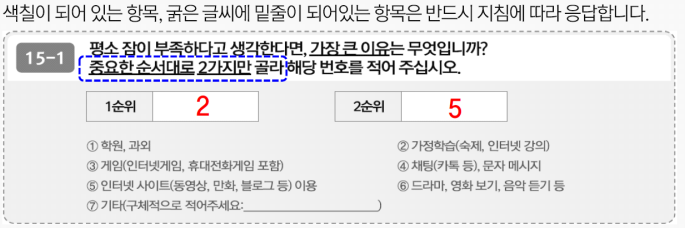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4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5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Ⅲ. 복지 및 보호

1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0분, 22시 0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1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15-1**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7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17-1**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18번 문항으로

17-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u>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u>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 <u>최근 1년 동안</u>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20-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u>한 사람만</u> 선택해 주세요.

② 없다 → 21번 문항으로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1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21-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3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3-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25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26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28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 어린이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9-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0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0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협의)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1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ankook Research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20〉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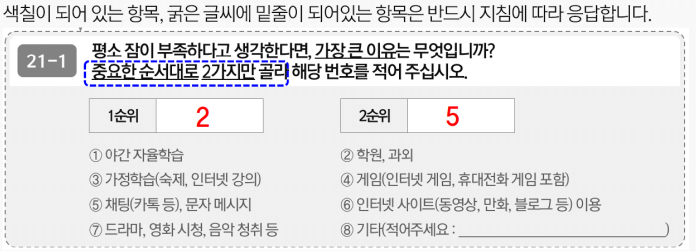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Ⅰ.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4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u>가장 큰 이유</u>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8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0-1 (위 문항에서 ③번 또는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7번 문항으로

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Ⅲ. 복지 및 보호

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0분, 22시 0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 ][ ] 시 [ ][ ] 분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1-1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3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 22-1 문항으로

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5번 문항으로

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u>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 당 8,350원, 2020년 기준 시간 당 8,59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Ⅳ. 교육 및 여가·문화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 ② 없다 → 38번 문항으로

37-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7-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 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0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공식 번역본)

유엔(United Nations) CRC/C/KOR/CO/5-6

아동권리협약

배포 : 일반
2019년 10월 24일
영어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93]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a) 2015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93)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b)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c) 아동영향평가제도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Ⅲ.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 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 · 교육적 · 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가정환경

31.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G. 교육 ·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 「난민법」 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 · 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 ·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 ·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Ⅳ. 이행 및 보고

A. 후속조치 및 보급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총회 결의안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총회 결의안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2020 Review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 rights

This study shows the outcomes of the four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iti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adolescents' human rights through: 1)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2)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monitor the fifth and sixth set of recommendations from the UNCRC, this study additionally conducted policy monitoring for each UNCRC cluster and in-depth monitoring in 2020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adolescent human rights counseling/relief.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basic resource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the collection of time series data (based on a child/adolescent rights indicator system) that can help ascertain the current status and extent to which child/adolescent human rights have progressed. The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en conducted annually (of students in Korea between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ever since it was

designated in 2009 as a National Approval Statistic (No. 402001).

This study proposes 16 child/adolescent human rights policy initiatives based on the monitoring of UNCRC implementation and analyses of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Korea. Separately, a two-volume in-depth analytical report was also published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designation of the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National Approval Statistic. The report is made up of: 1) a study that analyzes human rights status survey data to ascertain the effect of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2) a study that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papers that are based on human rights status survey data from after 2011.

Key words: child human rights, adolescent human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 human rights statu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조아미 · 임성택

20-R02 청소년 · 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 · 최정원 · 이수정 · 장혜림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 · 문호영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 · 성유리 · 박윤수 · 김보경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Ⅱ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이종원 · 남화성 · 정지희

20-R06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김형주 · 연보라 · 배정희

20-R06-1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 · 연보라 · 배정희

20-R06-2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배정희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김경준 · 김정숙 · 윤철경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 · 성윤숙 · 송태민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효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 · 김승경 · 임세희 · 최은영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황세영 · 최홍일 · 이민희 · 김진호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환보 · 주경필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황세영 · 최홍일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Ⅱ / 최인재 · 강경균 · 송민경 · 조윤정 · 김가희

20-R12 202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황진구 · 김성은 · 이용해

20-R12-1 202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황영식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 · 장근영 · 이동훈 · 윤철경 (자체번호 20-R1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 · 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헌 · 신동훈 · 변금선 · 고혜진 · 신인철 (자체번호 20-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 · 신동훈 · 고혜진 · 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 / 백혜정 · 임희진 · 송미경 · 김양희 (자체번호 20-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국내 · 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 · 이상정 · 박선영 · 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 · 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배상률 · 이창호 · 이정림 (자체번호 20-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 · 심우민 · 윤지원 · 김광희 · 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 · 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 · 이정민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 · 이정민 · 김수혜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 · 이종원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 · 김기헌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 · 이종원 · 박정배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 · 백혜정

수 탁 과 제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 · 안재영 · 황은희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헌 · 유민상 · 변금선 · 배정희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 · 양미석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 · 서정아 · 장윤선 · 서고은 · 김성은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 · 서정아 · 장윤선 · 서고은 · 김성은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 · 서정아 · 장윤선 · 서고은 · 김성은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 · 서정아 · 장윤선 · 서고은 · 김성은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 · 서정아 · 장윤선 · 서고은 · 김성은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 · 양미석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 · 양미석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 · 이윤소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 · 이윤소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 · 이윤소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 · 이윤소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 · 이선희 · 정미선 · 선보라 · 이혜옥 · 이윤소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 · 배은정 · 이윤소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 · 선보라 · 이윤소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 · 이혜옥 · 이윤소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 · 이선희 · 정미선 · 이윤소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 · 김혁진 · 김정주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헌 · 유민상 · 변금선 · 배정희

20-R40 학교 안 · 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 · 문호영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이상정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 · 황세영 · 손진희 · 박명선 · 박종원 · 조기영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 · 최홍일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 · 남화성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 · 좌동훈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 · 곽창규 · 이성규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 · 김보경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연구 / 양계민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 · 송원일 · 박지원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 · 송원일 · 배수인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 · 성유리 · 김혜원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 · 김승경 · 백혜정 · 황여정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 · 김승경 · 백혜정 · 황여정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 · 김영만 · 김용성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 · 임희진 · 정윤미

20-R60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 · 최정원 · 김성은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 · 박하나 · 김현수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 · 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퀀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 · 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고 형 석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팀장)
김 희 진 (국제아동인권센터·사무국장)
박 환 보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교수)
주 경 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수)
최 지 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학생인권옹호관)
하 형 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조사관)
허 창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조사관)

◈ 자문 및 협력진 ◈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부장)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고 재 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학생인권옹호관)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활동가)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길 현 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연구사)
김 경 욱 (전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김 미 숙 (숙명여자대학교·강사)
김 사 강 (이주와 인권연구소·연구위원)

김 선 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센터장)
김 정 덕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김 정 주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연구소장)
김 지 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교수)
김　　진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김 진 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진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김 혁 진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연구위원)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형 욱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권담당관·보호관)
노 하 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팀장)
류 승 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조사관)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박 병 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과장)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상임활동가)
변 미 혜 (함께걷는아이들 청소년팀·팀장)
손 진 희 (숭실사이버대학교·조교수)
신 두 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과장)
심 수 진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사무관)
심 의 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팀장)
양 지 혜 (위티·대표)
양 혜 진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상임활동가)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유 강 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사무관)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이 은 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활동가)
이 정 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과장)
이 창 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학생인권옹호관)
임 수 연 (전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전 경 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전 명 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노동인권전문관)
정 병 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선임연구원)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조 소 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과장)
주 성 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사무관)
한 명 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부장)
현 지 현 (법무법인 덕수·변호사)
Yoo Joan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연구보고 20-R10

2020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79-7 94330
979-11-5654-278-0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20-R10

2020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797 94330
ISBN 979-11-5654-279-7 94330
ISBN 979-11-5654-278-0 (세트)